

研究報告 92-9

헝가리의 經濟改革法制 研究

研究責任者：文俊朝（책임연구원）

共同研究者：金明淵（연구조원）

한국법제연구원

發刊辭

헝가리는 舊社會主義國家로서는 최초로 1989年 2月 우리나라와 外交關係를 수립한 나라이며, 그 후 兩國間에는 많은 국제조약이 체결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헝가리는 舊社會主義國家中에서 폴란드와 더불어 가장 적극적으로 政治的 民主화와 資本主義的 市場經濟體制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유럽,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헝가리의 이러한 國家政策 轉換의 裏面에는 經濟의 活性化라는 보다 근본적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헝가리가 최근에 國內經濟의 改革을 위한 활발한 立法活動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체제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東歐 여러나라의 改革過程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헝가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下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상당수가 헝가리에 投資하여 經濟活動을 遂行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의 목적은 第1次의으로 헝가리의 國內市場 개척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副次的으로는 貿易障壁을 回避하고 1993年 이후의 유럽통합에 대비한 橋頭堡를 確保한다는 점도 看過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우리나라와 헝가리의 經濟交流, 특히 直接投資가 더욱 확대될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편, 海外投資企業의 각종 활동은 현지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치밀한 分析과 對備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헝가리와 같이 改革을 위한 立法의 热수 속에 있는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 헝가리 국내법에 대한 研究의 當

爲性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研究書는 바로 이러한 視角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우선 형가리의 改革政策의 발전과정과 전망, 형가리의 企業改造와 私有化에 관한 法制와 그 운용상황 및 관련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競爭法, 會社法, 會計法, 勞動關聯法, 土地法, 外國人投資關聯法, 구체적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령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가리의 經濟改革이 추진되기 시작한 시점이 불과 수년전이고 이를 위해 제정된 국내법의 운용도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형가리의 經濟改革關聯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사실이 그대로 이 연구서의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서가 형가리의 改革法制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 연구서의 작성에 관계한 韓國法制研究院研究陣의 労苦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1992年 12月

韓國法制研究院
院長 李世薰

目 次

第 1 章 序 論 1

第 2 章 헝가리의 經濟改革과 立法方向 5

1. 1988年 共產黨政權의 經濟改革 5

- (1) 經濟改革의 背景과 改革初期의 立法 5
- (2) 1989年「規制緩和措置에 關한 關僚評議會 決定」 6

2. 1990年 헝가리民主丕昌政權의 經濟改革 10

- (1) 東歐의 狀況 10
- (2) 헝가리민주丕昌政權의 經濟-社會綱領 11
- (3) 헝가리經濟轉換、發展計劃 (Programme of Conversion and Development for the Hungarian Economy) 13

3. 經濟改革의 法的 基礎로서의 改正憲法 19

- (1) 意義 19
- (2) 헝가리憲法改正의 歷史的 背景 21
- (3) 憲法改正의 經緯와 特質 23
- (4) 改正憲法의 基本的 性格과 主要 內容 25

第 3 章 헝가리의 企業의 改造와 私有化 29

| | |
|-------------------------------------|----|
| 1. 東歐의 企業改造와 私有化 | 29 |
| (1) 背景 | 29 |
| (2) 企業改造와 私有화의 目的 | 33 |
| 1) 市場經濟體制의 確立 | 33 |
| 2) 유럽共同體加入을 위한 法制整備 | 33 |
| (3) 企業의 改造와 私有化的 基礎 | 34 |
| 1) 政治制度의 基本條件 | 34 |
| 2) 經濟制度의 基本條件 | 36 |
| 2. 韓가리의 企業改造와 私有化 | 38 |
| (1) 企業의 改造 | 38 |
| 1) 企業改造法의 立法背景과 趣旨 | 38 |
| 2) 企業改造法의 適用範圍와 特徵 | 41 |
| 3) 國有企業의 改造要件 | 43 |
| 4) 改造의 節次 | 46 |
| (2) 企業의 私有化 | 47 |
| 1) 背景 | 47 |
| 2) 國有財產管理廳(私有化 監督機關) | 50 |
| 3) 私有化的 概念과 形態 | 56 |
| 4) 節次面에서 본 私有化 類型 | 59 |
| 5) 西方企業의 韓가리國有企業私有化 參與 | 60 |
| (3) 企業改造、私有化的 障碍要因 | 62 |
| 1) 所有權者의 確認과 讓受人の 決定問題 | 62 |
| 2) 資產의 評價와 債務 | 64 |
| (4) 企業의 改造와 私有化的 展望 | 66 |
| 3. 國家所有로 남게 될 國有企業의 財產의 管理、保護 | 67 |
| (1) 國有企業法의 立法背景과 關聯 規定 | 67 |
| (2) 爭取적인 國家所有로 남게 될 企業財產의 管理와 利用에 關 | |

| | |
|---------------------------------------|-----------|
| 한 法案 | 71 |
| 第 4 章 헝가리의 主要 經濟改革關聯法制73 | |
| 1. 競爭法 | 73 |
| 2. 會社法 | 75 |
| (1) 制定 背景과 效果 | 75 |
| (2) 최근의 會社法 改正內容 | 76 |
| (3) 會社의 形態와 特質 | 78 |
| 1) 모든 會社에 적용되는 共通規定 | 78 |
| 2) 有限會社 | 79 |
| 3) 株式會社 | 81 |
| 4) 合名會社 | 83 |
| 5) 合資會社 | 84 |
| 6) 聯合 | 85 |
| 7) 共同企業 | 86 |
| 3. 會計法 | 86 |
| 4. 勞動關聯法 | 87 |
| (1) 勞動法 | 88 |
| (2) 社會保障法 | 90 |
| (3) 從業員株式所有制度 | 90 |
| 5. 破産과 清算關聯法 | 92 |

| | |
|------------------------------|-----|
| 6. 租稅關聯法 | 94 |
| (1) 租稅制度의 改革과 特徵 | 94 |
| (2) 附加價值稅 | 96 |
| (3) 個人所得稅 | 99 |
| (4) 法人稅 | 102 |
| 7. 金融關聯法 | 104 |
| 8. 證券去來法 | 106 |
| 9. 土地關聯法 | 108 |
| 10. 外國人投資 關聯法制 | 110 |
| (1) 外國人投資法의 變遷 | 110 |
| (2) 會社의 設立과 出資 | 111 |
| (3) 外國人 投資優待措置 | 113 |
| 1) 制限 없는 海外送金 | 113 |
| 2) 租稅減免 | 113 |
| 3) 投資促進基金 | 117 |
| 4) 投資의 保護와 國有化、收用時의 補償 | 117 |
| 5) 自由貿易地域 | 117 |
| (4) 外國人의 不動產 取得 | 119 |
| 第 5 章 結 論 | 123 |
| * 參考文獻 | 135 |

| | |
|-----------------------------|-----|
| * 資 料 | 139 |
| 憲法 | 139 |
| 經營事業組織과 會社의 改造에 관한 法律 | 156 |
| 經濟的社團에 관한 法律 | 169 |
| 國有企業에 관한 法律 | 219 |
| 營業利益稅에 관한 法律 | 227 |
| 外國人投資法 | 240 |
| 證券去來法 | 246 |
| 土地法 | 270 |

第1章 序 論

헝가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인 경제개혁정책과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1989년 개정 헌법에 의하여 국호를 헝가리공화국으로 변경함으로써 스탈린주의로부터 탈피, 국민의 광범한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경제와 자유로운 기업경쟁을 유도하며 국가와 개인의 재산에 대해 동등한 권리와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그 후, 1990년의 헝가리민주포럼내각은 가격자유화, 임금규제, 정부보조금의 삭감, 만성적 적자기업의 정리, 국유기업의 개조와 사유화, 시장 경제체제의 조속한 구축, 긴축재정 등을 포함한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수많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과도 기적 혼란과 자본과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한 경쟁력의 취약성을 극복하여 유럽사회 더 나아가 국제사회로 복귀한다는 것도 헝가리의 중요한 국가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헝가리는 서구의 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 신 Hong Kong 국가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헝가리는 사회주의국가로서는 최초로 1989년 2월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양국 대통령이 상호 공식 방문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1988년 12월 28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이래, 1989년 무역 및 경제협정, 문화협정, 외교관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체육협력에 관한 의정서, 항공협정, 관광협정, 1991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는 등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헝가리와 서방 선진국간의 경제관계의 발전단계는 대리판매단계, 유통기구참여단계를 거쳐, 직접투자단계로까지 발전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기업들도 헝가리에 투자하여, 기업활동을 수행

2 헝가리의 經濟改革法制研究

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현지생산단계에서는 외국의 사인 또는 기업이 직접 또는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되므로 헝가리의 외국인투자 등 경제관련법과 그 운용에 대한 더욱 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1) 현재, 헝가리가 시장경제에 부합되는 정치·법률·경제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의 조치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지고 있다.

이러한 헝가리의 경제개혁법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유기업의 개조와 사유화와 관련된 법령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개조와 사유화의 목적과 그 실현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사유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요인은 없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방기업의 헝가리 국유기업사유화 참여의 조건과 전망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헝가리가 서방기업의 국유기업인수에 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기업의 과다한 채무 및 외국인의 토지소유의 제한 등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계획경제체제에서의 결산방식은 현실과 괴리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으로 토지, 건물,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매매가격과 그 기초가 되는 가치평가는 체제전환시에 특히 논란이 많은 분야이다. 이에 관한 헝가리의 입법적 대응 역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기업의 개조와 사유화의 조치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회사법과 기업개조법외에도 민법, 회사법, 경쟁법, 유가증권법, 은행법, 파산법, 조세·관세법, 외환법, 소비자보호법, 보통거래약관법, 토지법, 노동법과 사회법, 환경보호법, 기업의 활동규제법 등 자본주의적 법제의 정비가 전제조건이 된다고 할 수

1) 이에 관하여는 文俊朝, “東歐圈國家와의 經濟交流에 따른 法律問題”, 東歐圈國家의 通商關係法, (法制處, 1989), pp.30~53. 참조.

第1章 序 論 3

있다. 주지하다시피 형가리의 경제 관련법 활동은 대단히 활발하여 경제개혁을 위하여 제정 또는 개정한 법령들이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반영하여 다시 대폭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법령과 제도는 대단히 많다. 회사법, 기업개조법 외에 가장 기본적인 법분야만을 지적하더라도 토지법, 외국인투자법, 국유재산보호법, 국유재산 관리청 설치법, 국유기업법, 경쟁법, 증권거래법, 기업윤리법, 파산법, 회계법, 환경법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시장경제원리를 정착 또는 심화시키기 위한 많은 법령이 제정되고 있다. 이 연구서에서는 그 중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령만을 골라 최근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그 주요 조문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第2章 形가리의 經濟改革과 立法方向

1. 1988年 共產黨政權의 經濟改革

(1) 經濟改革의 背景과 改革初期의 立法

1980년대의 동구제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심각한 재무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불가리아와 같이 소련산원유의 제3국轉賣에 의한 국제수지개선정책이 실패하여 위기를 초래한 국가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신용도가 떨어진 상황이었고 생산성의 저하, 경영위기기업의 증가, 외환시장의 붕괴 및 이로 인한 물가상승 등 경제적인 상황은 극도로 악화된 상태로까지 치닫고 있었다. 이를 더욱 부채질한 요인으로는 기간산업의 취약성, 기술수준의 낙후성, 노동규율의 방만함 등 스탈린주의적 경영관리방식의 유산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下에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추진과 더불어 서방으로부터 고도의 기술과 현대적 유통망의 도입·이전을 위하여 합작형태의 생산형기업 설립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문호의 개방은 동시에 서방으로부터의 자본재의 수입을 수반하게 되었고, 이것들은 직접투자와 간접(포트폴리오)투자의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對정부신용으로부터 對기업신용으로 그 비중이 옮겨가고 있다. 1)

헝가리는 1970년대 말부터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 등으로 인한 오랜 경기침체기간을 갖게 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 경화경상수지의 악화와 대외부채의 누적에 따라 새로운 진축정책과 개혁정책을 결합한 통합프로그램이 1987년 의회에서 승인되어 1988년 1월부터

1) 島村博, “外國人によるハンガリーの投資に関する法律,” 國際商事法務, Vol.19, No.9(1989), pp.730~731.

6 형가리의 經濟改革法制研究

실시되었다. 1988년 공산당정부치하에서 수립된 이러한 경제통합 3개년계획은 국내소비의 억제와 새로운 세제의 도입을 통해 경제를 재건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2) 1988-90년 사이에 실시된 경제안정화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 경제주체의 혼합적인 소유기반 위에서 여러 경제주체가 경쟁하는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것 이었다. 이를 위해 형가리 정부는 동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1988년), 영업이익세 도입(1989년) 등 조세체계의 개혁, 중앙은행기능의 재정립, 은행기능의 활성화·제도개선 등 금융제도의 개혁, 회사법, 기업개조법 등 기업관련법규의 개정 및 제정, 임금 및 가격자유화 조치 시행, 무역자유화조치의 시행,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의對形가리 투자장려 등의 개혁조치를 취하였다. 이를 통해 대외부문의 균형달성을, 경제구조의 개선, 경제개혁의 가속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 1989年「規制緩和措置에 관한 聞僚評議會 決定」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형가리의 개혁은 1989년 채택된 「규제완화조치에 관한 각료평의회 결정」에 의하여 그 도달목표가 분명해졌다. 당시 형가리 법무부의 「경제입법 3개년 계획」을 주제로 한 「경제적인 규제완화의 정부지도에 관한 각료평의회제안에 대하여」라는 내부문서는 그러한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었다. 동 문서는 1989년부터 1992년말 즉 EC의 경제통합시까지의 상세한 입법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제1장 「기본적 제원칙」과 「회사법」, 「외국인투자법」, 「영업이익세법」, 「개정국유기업법」 등의 입법취지를 토대로 향후 개정·보충 또는 폐지하여야 할 법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제2장 「경제법의 주요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 제원칙」의 내용은 80년대말의 형가리개혁을 추진한 법무부, 상무부 당국의 태도를 알 수 있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제1장 「기본적 제원

2) *Ibid.*

칙」은 제1항 「입법 3개년 계획의 수립근거 및 실현가능성」, 제2항 「입법계획 지도원리」 및 제3항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특징과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3)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제1장 기본적 제원칙의 제1항과 제3항의 일부를 소개하기로 한다. 제1항에서는 입법화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과도기적이고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현재의 상황으로 인하여 이 계획 또는 경제입법이 지장을 받고 있지만, 입법작업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제1항은 “현실적”인 이유를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다. 첫째, 국제적으로는 1992년 말까지 EC가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이루게 될 것이며 이러한 통합에의 대응은 헝가리의 존망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다. 상기의 계획은 이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즉, 스웨덴·스위스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92년의 EC통합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준비는 헝가리의 경우에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둘째, 헝가리의 경제개혁은 80년대 말에 발생한 새로운 국제적·국내적 정치상황에서 촉발되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헝가리는 현재 시장경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헝가리 경제법은 대단히 초보적인 단계이며 그 본질상 비집권적·간접적 계획경제와의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경제체제의 요청에 부응하기에는 대단히 불충분하다. 이러한 면에서 헝가리 경제법의 전면적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세째, 헝가리에서 진행중인 개혁은 최근 1-2년 사이에 헌법 및 행정법 등 이른바 공법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5) 1990년에도 신헌법과 새로운 형태의 국가조직(예컨대, 공화국대통령)에 관심이 집중되

-
- 3) 島村博, “ハンガリーの土地法,” 國際商事法務, Vol.18, No.7(1989), p.747.
 - 4) Bela Kadar, "The EC: A Hungarian View Toward 1992", *Case Western Reserv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2 (1986), p.336.
 - 5) 이에 관하여는 E. Gralla und P. Leonhardt, "Chronik der Rechtsentwicklung in den Osteuropäischen Staaten," *Recht in Ost und West*, Band 34, Heft 4(1990.7), pp.201~203.참조.

8 형가리의 經濟改革法制研究

었으며, 신헌법은 헌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의회제도, 정부 및 재판 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위의 첫번째의 이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종전의 경제개혁의 방향은 국제시장과의 연관성 및 경쟁력의 유지라는 추상적인 방향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EC域內에서 EFTA제국이 87년부터 강력히 추진해온 인수합병 및 유통·생산·서비스조직망의 구축에서 볼 수 있는 93년 이후의 치열한 경쟁전에 형가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전략에 따라 경제개혁의 수준과 속도를 설정하고 있다. 즉, 그 대처여하에 따라 형가리의 존망이 결정된다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⁶⁾

두번째 이유는 “철저한 시장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즉, 80년대말 이후에 형성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정치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번째 이유는 새로운 국가질서의 구축이 공법적 수단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행정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행정절차에 갈등한 재판절차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경제지도에 관한 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국가중앙회계검사원의 부활은 국회가 편성한 예산에 대한 행정당국의 집행을 감독·감사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이는 종전의 정부내 공산당조직을 통한 자기규제적 감독의 애매함과 불명확함을 배제하려는 취지이다. 이는 재정법의 근본이념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를 근거로, 제1항은 「“公法制定”에 발맞추어 경제관련법을 전면적으로 근대화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제로, 「경제에 대한 규제완화」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3항은 “부르조아 국가” 또는 다른 “사회주의국가” 및 “과거의 형가리”와 구별되는

6) Gabriella Izik-Hedri, "Ungarn on Wandel: Voraussetzungen und Perspektiven," *Osteuropa Recht*, Band 40, Heft 5(1990.5), pp.454~456.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을 전제로, 그 근본적인 기준을 법적인 측면에서는 다음의 네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7)

① 경영사업자의 평등한 조건하에서의 경쟁 및 개인사업과 협동 조합사업의 법적 보장의 전제가 되는 시장경제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경영사업자·기업의 소유권과 그 자유로운 행사 및 각종 소유 형태의 공존을 보장하는 혼합소유경제를 조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과도한 국유화는 지양하되(「사유화」계획), 국가소유의 우월성을 전제로 공민의 기업활동을 - 국가소유가 경우에 따라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사적 소유를 근간으로 하는 시민국가와는 달리 - 보장하며, 사인의 중소기업은 장려하되 기업의 활동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근로자를 500명에 제한하는 등).

③ 경제적인 합리성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하는 예컨대, 근로자의 이익을 자본주의국가보다 광범하게 보호하는 노동법상의 사회 정책의 수립과 같은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 마르크스주의를 그 이념으로 하는 제정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치적 메카니즘 및 국가체제하에서 경제가 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광범위한 국가개입여지를 인정하는 경제지도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개입은 분명히 축소되어야 한다.

이상의 개혁내용은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허용된 것만을 행할 수 있다」라는 원칙에서 「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것은 모두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으로의 일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총선의 결과 연합정부를 구성한 주요 정당의 경제강령이 상기의 노선과 조화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었다.

8)

7) 島村博, *supra* note 3, p.743.

8) Gabriella Izik-Hedri, *supra* note 6, p.457.

2. 1990年 헝가리民主포름政權의 經濟改革

(1) 改革의 背景

이상의 경제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말(현재까지도), 헝가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과도한 외채부담이다. 1989년 말 헝가리의 총외채는 204억 달러로 1인당 외채비율이 동구제국 중 가장 커졌다. 헝가리는 낙후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방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하여야 했으나 높은 외채부담으로 인해 자본재 수입이 어려웠다. 둘째, 낙후된 산업구조와 기술수준이다. 에너지 및 자원소비형 산업인 야금, 중기계 등 중공업과 화학공업이 헝가리 공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여건이 좋은 농업마저도 생산성이 저하되었다. 또한 국유기업들은 생산성이 매우 낮아 다수가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경쟁에 뒤져 서방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세째, 국가의 과도한 역할이다. 보조금, 특혜, 조세 등의 형태로 너무 많은 자원이 국가에 의해 재분배되고 있으며 국가가 GDP의 60% 이상을 운영하였다. 네째,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진행이다. 개혁이 진행되면서 특히 채무 및 자금통제의 수화조치로 인하여 1989년의 인플레이션이 공식적으로 17%를 상회하는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으며,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의 정리(또는 파산) 및 고용의 재조정, 생산업종변경 등으로 실업의 위협이 점점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90년 자유총선을 통해 집권한 헝가리민주포름내각은 가격자유화, 임금규제, 정부보조금의 삭감, 만성적 적자기업의 파산요구, 국유기업의 개조와 사유화, 시장경제체제의 조속한 구축, 긴축재정 등을 포함한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누적된 외채와 긴축정책의 부작용, 소련을 중심으로 한 코메콘체제의 붕괴로 인한 여파(소련산 에너지 수입가격의 양등, 舊코

메콩국가간의 경화결제 및 교역량감소)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구조개편 등으로 투자·생산·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2) 형가리民主포름政權의 經濟·社會綱領

민주포름정권은 「스탈린주의적인 전제지배의 각종 잔재로부터 형가리 인민을 해방시키고 형가리민족의 부흥을 파국없이 완수함」을 기본 강령으로 하고 있으며, 「헝가리와 유럽의 윤리적·정신적·정치적인 전통 및 각종 가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형가리의 창조」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同 포름은 「조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리고 「경제적인 각종의 변화는 정치적인 변화와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 인식하에 다음의 강령을 내걸고 있다. 형가리민주포름은 - 모든 진보적인 정치세력과 마찬 가지로 - 국가를 경제적인 위기에서 구출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러한 위기에서의 구출을 사회적 시장경제를 실현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한다. 9) 무제한의 경제적 자유주의 - 이는 기존 특권계층의 경제적 권력의 유지에 유용할 수도 있다 - 에 반대하는 민주포름정권의 강령은 경제적 약자 및 중산층의 강화, 소유의 민주화 및 소유자계층의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주포름정권은 근로자 및 고용자가 그 기업내에서 주식의 취득을 통하여 소유자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지원하며 기술·관리의 쇄신 및 외국자본의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10) 민주포름정권은 이상의 경제적인 제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국가지출의 절약

9) Kurt Kwasny, "Zwischen Wirtschaftsaufschwung und Armut-Demokratie: Zur Lage in Ungarn ein Jahr nach den Wahlen," *Osteuropa Recht*, Band 37, Heft 4(1991), pp.581~582.

10) 島村博, *supra* note 3, p.745.

12 형가리의 經濟改革法制研究

과 위기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의 효율적인 관리는 중소기업의 원조, 국가의 하부구조의 개선을 위한 투자, 노동시간의 단축, 자녀를 양육하는 모친에 대한 원조, 잉여노동력의 해외취업 및 형가리농촌의 경제적 복구(rehabilitation)에 의하여 상당수의 직장과 취업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것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것은 전문적 재교육프로그램이다. 이상과 같은 경제혁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극빈계층의 제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세계의 전면적인 재검토는 불가피하였다.

형가리의 경제적 발전은 새로운 혁신적인 사회정책의 수립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민주포럼정권은 사망률의 증가, 자살의 증가, 알콜중독의 만연 및 출생률의 저하 등 각종의 사회적 병폐를 해소하고 무료진료·병원의 선택 등 질병자의 제이익을 고려 하며 건강의 유지에 중점을 둔 현대적인 보건서비스의 창출에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민주포럼정권은 새로운 주택정책의 수립은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개혁은 무엇보다도 주택소유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있다. 국가소유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계층으로 하여금 당해 주거의 구입에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임차료는 시장경제의 실체에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추가 임차료를 지불할 수 없는 가정을 위하여 동시에 주택 임차료의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보장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다. 민주포럼정권은 피보험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적 비용에 충당하고恩給을 지급하는 제도에 갈음하여 국가가 연금생활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물질적 생활조건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키고 보호한다는 새로운 제도를 확립하고자 한다.

(3) 헝가리經濟轉換、發展計劃(Programme of Conversion and Development for the Hungarian Economy)

민주포름정권은 포린트화의 태환성확보, 인플레이션 억제 등 경제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충격을 극소화하고 대외신용도를 유지한다는 비교적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헝가리의 개혁은 폴란드에 비해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헝가리는 1991년 3월 시장경제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하여 사적 소유권제도의 정착, 정부의 개입축소, 수요억제의 완화, 공급확대, 물가상승억제, 실업의 해소,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균형, 외채지불이행, 국제협력강화, 포린트화의 태환성확보, 국가경제운영방침 공표, 은행·세무·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의 법률의 제정·개정을 포함한 헝가리경제의 전환·발전계획(Programme of Conversion and Development for the Hungarian Economy) 이른바, 4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¹¹⁾

헝가리는 수십년동안 실시하여온 중앙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과다고용의 폐단이 그대로 표면화되어 90년과 91년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실업문제는 경제개혁의 추진 특히, 시장경제의 확립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수십년 동안 실시된 중앙계획경제의 결과 경직되었던 고용형태의 유발요인들이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표면화하여 1990년 6만여 명이 실직하는 등 실업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개혁과정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헝가리 경제의 생산능력은 국가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은 아니나 낙후된 기술과 낮은 설비이용도로 인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는 인적자원의 낭비 및 체제의 취약성과도 관계가 있다.

또한 헝가리 경제는 코메콘체제에 따른 대소·동구 무역의 감소

11) 헝가리便覽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附設 地域情報센터, 1992), pp.84~86.

14 헝가리의 經濟改革法制研究

로 인한 산업생산의 위축과 에너지의 경화수입이라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정부의 예산적자, 기업의 불확실한 유동성, 과다한 외채 등에 의해 경제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과거의 중앙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기간산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환경파괴도 경제의 개혁과 발전을 가속화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실질소득과 재산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일부 기업가들은 경제전환기에 발생한 기회를 이용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함으로써 부의 편재현상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수입자유화 및 가격자유화가 기업에 경쟁여건을 제공하여 시장경제체제의 형성에 다소 기여하고 있지만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체계의 미비, 만연된 관료적 형식주의와 국유기업의 높은 시장독점을 등으로 인해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순조롭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헝가리 정부는 첫째, 기존 경제정책 및 경제계획의 변경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국제경제 환경에의 적응, 둘째, 사유화전략, 사회체제의 개혁, 물가통제 등의 개혁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 셋째, 경기의 활성화 도모 및 IMF와의 3개년 협정에 근거한 경제안정화 및 “국가재건계획(Programme of National Renewal)”을 토대로 한 시장경제의 법적·제도적 장치 확립, 넷째, 1993/94년부터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재정부문에서의 정부역할 확립을 위한 4개년 경제계획을 입안하였던 것이다.

4개년 계획의 기본적인 목표는 독일경제체제와 유사한 사회적 시장경제제도의 확립이다. 12)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제도의 확립, 외자의 유치 등이 절실히 요구되며 경제구조의 개편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同樣은 대외적으로

12)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Herwig Roggeman, "Unternehmensumwandlung und Privatisierung in Osteuropa und Ostdeutschland," *Recht in Ost und West*, Band 36, Heft 2 (1992), pp.38~40.참조.

로는 EC와 OECD의 가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舊소련 등 舊코메콘 국가와의 우호적 경제관계를 유지한다는 기조에 입각해 있다. 상기의 발전계획에 의하면 1991년에는 500억 포린트 상당의 기업보조금 삭감, 운송분야에서의 임금·가격 자유화, 포린트화의 태환화, 수입 자유화율의 대폭적인 확대,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장려, 사유화 촉진 및 경제구조의 개편등을 추진하게 된다.

제도적 측면에서의 주요내용은 각종 기관 및 조직의 현대화, 재산권 확립, 재산권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경쟁촉진 및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 활동이 강화되고 생산기술이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부문의 직접개입을 축소하고 위기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공정한 사업실행을 장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창출하여 자본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헝가리 정부는 민간조직의 후원, 정부개입의 범위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영역제고, 사유화도입 및 수입자유화, 관료주의의 배제 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행정업무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며, 전문적인 공무원을 양성하고 정부기관과 기업체간의 정보 흐름 및 협조를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경쟁이 심한 분야는 사용자와 피고용인 그리고 이해집단간의 현실적 결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1990년부터 시장경제지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헝가리 정부는 1991년을 전환과 사유화의 해, 1992년을 물가안정과 포린트화 태환화 달성의 해, 1993년을 경제안정과 새 출발의 해, 1994년을 성장과 유럽에 적응하는 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도별 주요 경제개혁목표는 정책의 성과 또는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법률의 문제점 등에 따라 지연 또는 변경될 수도 있다. 1991-94년간의 헝가리 경제발전은 근본적으로 경상수지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자금 조달능력, 교역조건, 수출신장률, 생산 및 소비구조, 투자효율 등 복합적인 요인들과 4개년 경제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헝가리 정부의 개혁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헝가리 정부는 교역조건

16 헝가리의 經濟改革法制研究

및 수출신장에 영향을 주는 국제시장의 변화 등의 대외적 변수와 수입수요, 경제효율의 변화, 수출 잠재력의 향상 등을 추정하여 계획기간 동안의 경제상황을 예측하였다. 경상수지적자의 보전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자금조달 능력은 이러한 경제전망의 전제조건으로 간주된다.

헝가리 정부는 경상수지가 1991년 12억 달러 적자, 1992년 6,5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나 1993년과 1994년에는 규형을 이룬다고 예측하였으나 1991년 1억 8,900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 수출과 수입이 일정수준을 유지하여 무역수지흑자가 계속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992년-94년 동안 교역조건이 불변이라는 가정과 전체교역이 코메콘체제의 붕괴 때문에 무역수지가 약 1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91년에는 對소련수출이 30% 이상 감소하고 舊코메콘 역내교역이 25%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에 이러한 수출감소를 서방국가에 대한 수출신장으로는 모두 보전할 수 없기 때문에 前年對比 5-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동구지역에 대한 수출은 1991년 9월 현재 前年同期對比 17% 감소에 그친 반면 EEC 및 EFTA로의 수출은 각각 42.4%, 147.6% 증가하는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1991년 9월 현재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6.3% 증가했다.¹³⁾

코메콘체제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1991년의 수출을 고려한다면 1992-94년간의 수출은 정부의 계획보다 빠르게 신장할 가능성이 있다. 헝가리 정부는 1990년과 1991년의 수출증가율을 고려하여, 서방시장에 대한 수출이 지속적으로 신장되고 구코메콘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이 회복되어 1992년과 1994년의 수출신장율은 7%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온 산업생산성이 정부의 효과적인 투자정책에 의해 개선된다면 수출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수입자유화시책에 따라 생산재 및 최종소비재

13) 헝가리便覽, *supra* note 11, p.86.

의 수입수요도 증가하여 1991-94년 동안 산업용 원료 중 수입원료의 비율은 1990년 수준인 약 18%에 달할 전망이다.

14)

헝가리의 1992년 경제개혁정책의 주요목표는 법과 조직을 시장경제체제의 기능활성화와 시장경제제도에 부응하도록 개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사유재산의 비중은 1991년에 추진된 사유화의 결과와 외국자본의 유입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으며, 정부소유의 비효율적 국유기업들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금융과 보험의 합리화, 임금자유화, 조세제도 및 예산개혁 등에 의해 기업의 활동영역이 확대되었으며,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수출입이 자유화되고, 기업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사이에 운영되는 외환시장에서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화를 조달하고 매각할 수 있게 됨으로써 포린트화의 태환성을 확보하는데 한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

1992년부터 EC 준회원국으로 가입됨으로써 헝가리 정부는 시장경제로의 접근, 대외무역의 확대, 해외취업 등의 기회확대를 추구하고 있고 동시에 대동구 교역축소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역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1991년에 급격히 감소된 대동구 수출이 6% 이상 증가에 따른 총수출의 6-7% 증가를 가정하여 1992년 경제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1992년 수출입은 1-3% 증가하게 되고 경상수지적자는 헝가리 정부가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6-7억 달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대외경제의 개선이 수년간 지속되어 온 경기침체를 종식시키고 경제를 성장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1990년과 1991년 구조조정하에서 성장이 저조하였던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이 1992년부터는 다소 회복되었다. 또한 헝가리정부는 사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 50인 이하의 기업생산 및 실업문제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1991년에 시행된 가격자유화의 충격을 흡수하여, 1992년 이후에는 급속한 경기후퇴 및 물가의 앙등은 없을 것

14) *Ibid.*

18 헝가리의 經濟改革法制研究

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수요와 공급의 체계적인 조정, 사유화와 수입자유화로 인한 경쟁 확대, 예산적 자감소, 인플레십리제거 등을 통하여 물가상승률은 20%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다. 이는 수출가격 14-15% 상승, 임금 20% 상승, 생산자가격수준이 17%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예상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소비재에 대한 보조금을 더욱 삭감하고 매상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함에 따른 추가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소비자물가는 21-22%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과 소외계층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차 많은 재원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1992년 공공지출 축소정책으로 재정의 소득재분배 역할은 축소될 것이다.

경제개혁을 위한 외채의 증가는 피할 수 없으나 과도한 외채는 헝가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헝가리정부의 예상에 의하면 1993년對동구 및 서방시장에 대한 수출이 약 7% 정도 증가하고 외채증가가 멎출 것이고 동시에 경제균형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수입이 45% 정도 확대된다면 헝가리 정부는 외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여건이 이와 같이 개선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소비증가 및 경제하부구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헝가리정부는 사유화의 효율적 진전으로 경쟁이 확대되면 소득창출 잠재력이 증가하여 1993년에는 5%의 GDP성장과 3%의 국내소비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개인소비가 2-2.5% 증가하고, 투자는 5% 증가하게 되고 13%의 임금상승과 10%의 수입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생산자 가격은 9-10% 상승하게 될 것이다. 헝가리정부는 경제제도의 개선, 무역자유화, 인플레십리의 타파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15% 수준으로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물가상승률 억제선을 약 13%로 계획하고 있다. 1993년에도 긴축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예산의 소득재분배 역할과 예산적자는 전년보다

축소되고 1993년 GDP에 대한 세입비율은 1992년에 비해 1%, 지출비율은 1.6% 감소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헝가리정부의 경제전망을 근거로 할 때, 근로자 50인 이하인 기업의 수는 매년 2배씩 증가하여 1994년에는 총제조업체수의 30~4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투자 및 생산성증가가 이루어진다면 1994년에는 7%의 수출증가와 6%의 GNP증가를 예측할 수 있으며, 국내소비는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생산증가와 같거나 근접한 비율로 증가하고 국민소비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국내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균형재정을 유지한다면 실질 물가상승률은 한 자리 수가 되고 물가상승심리도 해소될 것이다. 헝가리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대로, 이해조정기구의 역할이 증진된다면 명목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0% 이상 상승하여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이 시점에서 실업률이 선진국의 평균수준에 달하고, 시장원리에 부합되는 기업경영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헝가리정부는 1994년에는 높은 GNP 증가를 달성하여 세수가 확대됨으로써 정부예산균형에 바람직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GDP 對 정부예산지출비율이 1991년 64%에서 1994년에는 약 57%로 하락하여 정부예산적자는 축소 또는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3. 經濟改革의 法的 基礎로서의 改正憲法

(1) 意義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은 1989년부터 급격한 사회변혁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당명과 국호가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동구제국의 헌법규정에 명시된 「마르크스·

례닌주의 정당의 지도적 역할 규정에 극명하게 표현된 정치적 사회 관계는 재편될 수 밖에 없었으며 법치주의가 부활되기 시작하였다. 형가리와 폴란드의 80년대의 개혁, 그리고 소련의 폐레스트로이카 정책에서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하며 제시된 「사회주의적 복수주의」 원칙은 급기야는 「사회주의」라는 원리적·체제적 가치 자체에 대한 회의를 품게하는 단계로까지 발전되었던 것이다. 형가리인민공화국도 형가리공화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 바, 이는 단순히 국호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정치·경제·제도의 혁명적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민주」와 「법치」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의 목소리를 봉쇄한 천안문의 비극적 사태가 발생한 1989년 6월은 한편으로는 「폴란드의 회선거에서 「연대」(소리데러티) 세력의 압승과 통일노동자당 정권의 붕괴가 발생한 때이다. 동시에 형가리에서는 6월 16일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1956년 형가리사태」 당시의 수상 나지이무르의 복권이 이루어져, 사회주의 노동자당과 재야세력간의 원탁회의가 개최되어 새로운 정치제도와 헌법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15) 뒤이어 폴란드에서는 「연대」정권이 수립되고 형가리의회에서는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그해 여름에는 부다페스트에 집결한 독일민주공화국 국민들의 서방으로의 출국요구운동을 발단으로 한 「동독문제」는 호네커체제의 붕괴를 초래하여 베를린장벽의 철거사태로까지 이어졌으며 「민주화의 여파」는 프라하, 소피아, 그리고 부카레스트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는 동구지역에서 알바니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1990년 유고슬로비아에서는 공산주의자동맹의 당대회가 결렬되고 「정치의 독점, 폐지를 최종목표로 하여 민주관리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는 一黨制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뒤이어 발트3국에서 복수정당제를 법적

15) 早川弘道, “ハンガリーの憲法改正(1989年)”, 法律時報 第62卷 3號(1990), pp.85~86.

으로 승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동구사회주의권」은 기존의 헌법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고,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헝가리의 헌법개정은 비록 그것이 잠정적 성격을 갖는 것 이기는 하지만 다른 동구사회주의 헌법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는데 불가결한 것으로 주목을 요한다.

(2) 헝가리 憲法 改定의 歷史的 背景

제2차 세계전후 헝가리는 1946년의 국가조직법(임시헌법)에 의하여 제출발하였으며 전후세계질서라고 할 수 있는 동서 양진영의 냉전구조 형성과 더불어 1949년 마르크스·레닌주의 前衛黨에 의하여 산업국유화, 즉 집단화를 지향하는 유럽 최초의 풀로레타리아독재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소비에트형 사회주의」 채택과정은 공산당의 국가화·경제의 정치화·이데올로기적 일원화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1949년 헌법이 1936년 소비에트헌법을 모델로 하여 성립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16)

스탈린이 사망한 1953년에 일찌기 정치적 위기를 맞아 스탈린 개인숭배를 비판함으로써 1956년에는 사회적 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여기에서 그 대안이 1946년 체제인가 아니면 1949년 체제인가를 중심으로 논쟁이 전개되었다. 소련의 개입에 의한 사태진압후의 가다르 정권에 의한 화해와 개혁은 1949년 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그 틀내에서 최대한의 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1972년의 헌법 개정은 이러한 선상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호로서 「사회주의공화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변경하고, 입헌주의의 정착을 의도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의 「지도적 세력」

16) Gábor Halmai, "Von der gelebten Verfassung bis zur Verfassungsstaatlichkeit in Ungarn," *Osteuropa Recht*, Band 36, Heft 1 (1990), pp.2~5. 참조.

22 헝가리의 經濟改革法制研究

규정(제3조)을 신설한 것에서 「개혁」의 기본적 성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의 선택에 내재된 諸矛盾은 경제개혁의 추진과 더불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1983년 헌법 개정에 의한 선거제도에의 복수주의 원칙도입과 합헌성감시를 목적으로 한 상대적 독자기관으로서의 헌법평의회의 설치는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와 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산당에 의한 「정치의 독점」메카니즘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이완 현상 또는 부식현상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개선조치가 강구되었다. 즉, 국민적 통합을 위한 보완장치로서 통일전선조직인 애국인민전선의 지위와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적·지령적 경제메카니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경제·사회발전프로그램을 모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85년에 개최된 사회주의노동자당 제13차 대회는 1956년 사건이후 꾸준히 개선되어온 1949년 체제에의 전반적 재검토를 전제로 한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 대회는 「새로운 사회주의상」을 부르짖는 등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정치적·사회적 비판·창조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게 되었다. 1949년 체제를 지지하는 정치세력으로서의 공산당의 노선·정책 양면에서의 혼란과 취약성의 露呈은 1949년 체제의 재검토파인 당내 소수세력의 존재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¹⁷⁾

그리하여,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헝가리 정치제도는 1949년 체제를 근간으로 하되 새로운 정치적 요소를 내포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체제의 개혁적 보수주의와 근본적 혁신의 양자택일이 쟁점화되었으며, 1985년 「해방」40주년 그리고 1986년 임시헌법 40주년을 맞이 하여 헝가리의 戰後史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1988년의 세계적 조류는 그것을 더욱 부채질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17) Ferenc Majoros, "Ungarns neue Verfassungsordnung: Die Genese einer neuen demokratischen Republik nach westlichen Maßstäben," *Osteuropa Recht*, Band 36, Heft 3(1990), pp. 86~87.

(3) 憲法 改定過程의 經緯와 特質

헝가리에서의 1988년 헌법개정은 과거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산당에 의해 제안된 것이었다. 1988년 5월에 개최된 전국공산당협의회는 경제·사회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불가피함을 인식, 사회주의적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그 주도적인 세력으로서의 공산당의 조직개편과 내부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을 결정하였다. 동 협의회가 채택한 내용은 소련의 폐레스트로이카정책에 의한 정치개혁추진과 연계되어 있고 헝가리의 정치적 사회관계의 변동요소와도 깊숙히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사회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적 대응으로서 비공식사회단체가 잇따라 결성되었으며, 특히, 헝가리민주포럼(MDF : 1987년 9월 창설)은 종래의 이른바 「반체제소수의견」그룹이 아닌 급진적 체제개혁세력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애국인민전선도 당파인민의 연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독자적인 개혁전선형성세력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내무위원회가 작성한 1987년 1월의 문서는 시장경제로의 혁명적 전환, 결사의 자유 및 의사표현의 자유를 기초로 한 의회주권의 확립을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었다.¹⁸⁾ 그러나, 전국공산당협의회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운동과 요구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대시, 그 기본방향을 수용하고 당초 예정되었던 「가다르서기장퇴직」을 포함하는 극적인 인사쇄신에 그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치·법체제개혁의 핵심으로서의 헌법개정과 공산당 조직의 민주적 개혁이 사회주의적 법치국가의 이념형성과 제도적 구상의 중심문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면에서 「1956년 혁명」이 제시한 대안은 그 후 30년이 지나서 이상과 같은

18) 早川弘道, *supra* note 15, p.87.

24 헝가리의 經濟改革法制研究

새로운 조건과 구상하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8월이 그 초안이 공개되고 1989년 1월 의회에서 채택된 결사법의 성립과정은 헝가리의 1989년의 「급격한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제1차초안은 헝가리에서의 결사의 자유가 국제인권규약에 전반적으로 의거한 것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기본방향으로서 「당의 지도적 역할」, 즉 마르크스·레닌주의정당의 헌법적 지위 유지를 전제로 한 정치제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¹⁹⁾

그러나, 1988년 12월 의회에 상정된 최종초안은 헌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결사도 그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였다. 동년 가을의 최종초안기초과정이 사회주의노동자당내에서 사회주의적 복수주의의 내용규정을 둘러싸고 심각한 논쟁을 거쳐, 그것이 정치적 복수주의를 의미한다는 다수견해를 형성하였으며, 1946년 체제를 받쳐주던 「구정당」의 부활, 새로운 정치적 사회단체의 창설 물결과 더불어 비공식적 사회운동이 급속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당의 지도적 역할」에 입각한 「정치의 독점」이라는 헌법 메커니즘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정치적 복수주의를 인정하는 결사법이 의결되었다.²⁰⁾ 1989년 2월 2회에 걸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총회는 「1956년 사태」에 대하여 긍정반·부정반의 평가를 내리기는 하였지만 장래의 헌법체제에서의 「당의 지도적 역할」을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1949년 체제」의 사실상의 종식을 선언하였다. 이리하여 1968년의 프라하의 봄 또는 1980~1981년의 폴란드의 자제적 혁명과 그리고 소련의 혁명적 폐레스트로이카와도 다른 정치적 과도기가 시작되어 새로운 사회형성을 둘러싼 전략과 전망을 자유로운 정치·사회 제세력의 정치투쟁 속에서 구하고자 하였다.

(4) 改正憲法의 基本的 性格과 主要 内容

19) Gábor Halmi, *supra* note 16, p.8.

20) 헝가리便覽, *supra* note 11, p.83.

1988년 10월 18일 의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은 「스탈린헌법으로부터의 최종적 결별」이었다. 새로운 헌법체제의 형성까지의 「평화적·민주적 과도기」를 담당하는 이 「10월 헌법」은 1972년 개정헌법의 기본적 구성이 반영되어 1972년 헌법과 마찬가지로 전체 78조로 되어 있다. 전문에는 「복수정당제·의회민주주의·사회적 시장경제를 실현하는 법치국가로의 평화적 정치적 과도기에 기여한다」라는 개정헌법의 목적이 명시되고, 신헌법제정까지의 잠정적 성격을 가짐을 천명하고 있다. 제1조에서 「헝가리인민공화국」이라는 지금 까지의 국호를 「헝가리공화국」으로 변경하였으며 그것은 72년 개정헌법 전문에서의 「사회주의 길」, 제2조의 「사회주의 국가」규정이 의미하던 「플로페타리아독재를 본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라는 체제로부터의 이탈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72년 헌법 제2조「사회주의 국가」규정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규정(제2조)에 의하여 대체됨으로써 「사회주의적 법치국가」 개념은 완전히 배제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월 헌법은 「시민적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의 제가치」의 종합적 실현을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의 내실로 하였으며, 이 조항이외에도 「사회주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체제로서의 사회주의」를 헌법에 상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라 함은 1988년 전국당협의회 이후 기존의 스탈린주의적·국가적 사회주의에 대한 좌익적·민주적 대안으로서 당내개혁파에 의하여 발전되고, 성숙되었으며 애국인민전선과 일부 사회세력에 의해 공유되는 장래의 사회상이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연맹 등 유력한 재야의 사회세력에서는 반드시 운동이념 즉 체제선택에서의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다. 「급전」의 시기에 「평화적·민주적 과도기」를 거치기 위해서도 의회는 총선거를 실시하는 대신 헌법개정을 하였으며, 여기에서 개헌세력이었던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정치의사가 관철되었음은 당연하다. 동시에 사회주의노동자당을 이탈한 무소속의원회파를 구성하는 의회내소수세력,

그리고 여름의 의회보궐선거에서 여러 사람의 당선자를 낸 형가리 민주포름의 의회활동, 그리고 「대원탁회의」를 통하여 국가의 정치 과정에 현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사회제세력의 존재는 제2 조에 남은 「사회주의」규정이 「체제로서의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형가리의 사회주의운동에 내재하는 유력한 제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 제1조, 제2조 1항은 형가리사회당강령에 규정된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의 탐구와 부분적으로 중첩되며 형가리민주포름과 자유민주연합의 강력적 문서에 관철된 「독립·자유·민주」의 이념을 집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1)

개정헌법 제2조 2항은 「모든 권력은 인민에 속한다.」라는 구규정 을 남겨놓고 그것이 의회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인민주권」으로서 실현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어 제3항에서는 어떠한 집단과 개인에 의해서도 「권력의 독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는 점을 표명하고 1949년 = 1972년 헌법체제의 핵심을 이루던 「정치의 독점」에 대한 명확한 부정을 헌법원리로 천명하고 있다. 제3조가 정당결성의 자유를 규정하고 정당과 「공적 권리」·「국가기관」과의 혼동, 그리고 양자간의 유착을 방지하고 있는 것은 위에 설명한 바와 관련되어 있다. 22)

그러므로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제도는 「정치의 독점」, 「당의 국가화」를 배제한 「인민주권」원리를 기초로 하여 의회주권,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제, 의회선출에 의한 헌법재판소, 시민적 제권리, 각료 평의회(정부), 군대·경찰, 지방평의회(지방자치), 권력분립원칙에 입각한 재판·검찰제도로 구성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구조는 「사회적 소유와 사적 소유」의 대등한 존재위에 성립되는 계획기능 을 내포한 「사회적 시장경제」이며(제9조 1항), 자주성을 갖는 자발적 연합으로서의 협동조합 및 생산자자주관리조직의 활동을 보장한

21) Gàbor Halmai, *supra* note 16, pp.8~9.

22) Ferenc Majoros, *supra* note 17, pp. 92~93.

다(제12조).

시민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하여는 1972년 개정헌법에서 「공민은 그 제권리를 사회주의 사회의 제이익에 합치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 권리의 행사는 공민의 의무이행과 불가분하다.」(제54조 2항)라고 되어 있었으며, 「10월 헌법」에서는 기본적 권리를 「인간의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규정짓고 그 「존중과 보호는 국가의 제1차적 책무이다.」(제8조 1항)라고 규정하였다. 개정전 제54조 1항의 「헝가리인민공화국은 인권을 존중한다.」라는 규정은 모든 「인간」이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짐을 승인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으로 대체되었다. 제55조 1항은 「자유와 개인적 안전의 권리」를 규정하고 49년 헌법체제에 있어서의 시민적 권리에 대한 각종의 체제적 제약과 인신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권리실현의 법적·사회적 기반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자유로운 의견표명을 행할 권리」, 「공공의 이익에 속하는 정보를 알고 보급시킬 권리」로 규정되고 (제61조 1항), 동시에 「보도의 자유」(동2항), 「집회의 자유」(제61조), 「결사의 자유」(제62조), 「결사의 권리」(제63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²³⁾ 어느 곳에도 1972년 헌법에 있었던 「사회주의의 질서 및 성과의 보호」를 위한 제약규정은 삭제되고 「평화적 집회」 또는 「법률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결사라는 규정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이데올로기적 지배에 대하여 「과학·예술생활의 자유, 교육내용의 자유, 교육활동의 자유」가 천명되었고(제70/G조 1항) 과학적 진리의 인정하고, 「연구의 과학적 가치의 확정」이 정치적·정책적 자의에 좌우됨이 없이 과학활동자체에 위임한 것(동2항)도 주목할 만하다. 사업권의 승인(제70조 2항), 환경권, 사회권 제규정도 종래에 비해 강화되었다. 「혼합경제」화에서 사회적 제모순의 격화 또는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상황에 대하여 사회

23) 이에 관한 평가에 대하여는 Gábor Halmai, *supra* note 16, pp.10~11. 참조.

28 헝가리의 經濟改革法制研究

당강령은 「사회주의적 복지국가」의 건설에 의해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국제관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설명된 「독립」의 의미에 대하여 제5조 - 제7조에서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의 부인」을 규정한 제6조를 위시하여 72년 헌법상의 「사회주의 체계체제」에의 귀속(5조 2항)규정의 소멸에 대응한 새로운 국제관계형성을 모색한 것이 특징이다.

第3章 헝가리의企業의改造와私有化

1. 東歐의企業改造와私有化

(1) 背景

1980년대 후반 이후, 특히 90년대에 들어와 동구제국은 기존의 정치·경제제도의 오류를 인식하여 민주화와 시장경제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부합되는 정치·법률·경제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의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동구제국은 기존의 불합리한 경제구조로 인한 혼란과 사회적 궁핍을 개선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¹⁾ 회복하기 위하여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사회적·경제적 체제전환을 가능한 한 무리없이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마르크스·레닌의 국가사회주의 정치제도의 거의 완전한 붕괴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유화를 전제로 한 유일정당이 주도하는 국가경제는 유럽공동체의 12개국, 미국, 일본 심지어는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강국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및 한국에 대하여도 경쟁력을 상실하여 버렸다. 40년 동안(소련의 경우는 70년 동안)의 사회주의체제의 실패 원인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측면에서 찾아야 하지만 그러한 경제적인 측면은 이미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기본적인 법적·정치적 구조문제와 인파율

1) 독일은 구동독지역에서 대단한 단호한 경제전환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동독지역의 기업구조나 건설·기술장비상태, 경영과 노동자의 능력 및 생산량과 품질이 국내적·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호한 조치로 인하여 구동독지역에 속하였던 州에서는 약 50%의 기업들이 조업중단상태에 있다. Herwig Roggemann, "Unternehmensumwandlung und Privatisierung in Osteuropa und Ostdeutschland," *Recht in Ost und West*, Band 36, Heft 2(1992). p.36.

30 청가리의 經濟改革法制研究

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국유기업을 후자에 부합되는 형태로 개조하고 국유기업과 그 재산을 사유화하는 동구제국의 최근의 개혁조치는 가히 사회적 혁명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의 개조(Umwandlung)라 함은 과거에 국가, 또는 인민소유이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가기관의 관리하에 있었거나 유고슬라비아에서와 같이 자주관리하되 은행의 감독을 받았던 기업을 시장경제에 부합되는 기업형태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 개조되는 회사형태는 대부분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가 될 것이다. 2) 이에 반하여 사유화라 함은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분에 따라 사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개조와 사유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증가 등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동구제국의 기업개조와 사유화과정에서 「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기업과 직장의 유지」와 「기업의 개조 시의 과잉노동자의 해고」간의 모순이 첨예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야당인 사회당은 구동독지역에서의 경제 파탄을 무릅쓰고 급진적으로 기업의 개조·사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 범치국가에서 허용되느냐와 관련하여 비난을 제기한 바 있다.³⁾ 이러한 급진적 개혁의 부작용은 청가리 등 다른 동구제국에서도 예외없이 발생하고 있으며,⁴⁾ 동구의 경제학자와 기업가들은 동독지역에서의 신탁모델의 경험이 동구제국에서 진행될 사유화에까지 미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동구제국은 그동안 경제체제전환과 사유화를 위한 많은

2) *Ibid.*

3) *Ibid.*, p.38.

4) 러시아(1992년 2월 엘친대통령에 대한 데모) 및 폴란드(1992년 정부의 위기 및 총선거연기)에서의 정치적 긴장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시장경제전환과 사유화는 불가피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많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법령을 제정하여 왔는 바, 주요 분야를 개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동구체국에서 사유화가 아직 시작되기 전, 즉 1987년 폴란드, 1988년 헝가리, 1989년 그리고 1990년 5월 동독에서 이미 국유기업의 상사회사(Handels gesellschaft)로의 개조 가능성이 비교적 구체화된 입법을 통해 모색되었다. 그 후 헝가리는 동구에서는 처음으로 1989년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위하여 기업개조법을 제정함으로써 제2의 도약을 하고 있다. 폴란드도 1990년 10월 13일 국유기업사유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헝가리의 뒤를 이었다.

체코에서도 1991년 2월 26일 종합적인 체제전환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체코의 입법자들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성공적으로 완수한 “소규모 사유화”를 그 보다 앞선 “대규모 사유화”와 구분하였다.⁵⁾ 사실 최근의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분리선언전 까지 하벨대통령의 인종통합정책은 서방기업에 큰 호응을 얻어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그 배경에는 제2차세계대전전의 고도의 산업국가로서의 체코의 역사적 경험을 서구제국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루마니아에서도 1990년 8월 7일 체제전환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동법 제1조 제1항에 제기된 루마니아에서의 시장경제발전을 위한 정치적·법적 기본조건은 거의 구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의 시행은 지체되고 있다. 舊소련에서도 연방차원에서는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령은 없었다.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재산양도가 수반되는 기업임대 그리고 주로 노동자들에 대한 주식매각이 수반되는 국유기업의 주식회사로의 개조 등이 모색되어 왔다. 사유화에 대비하여 국가의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연방의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이미 공화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사유화가 진행된 바 있다. 불가피한 것으로 크게 인식되었던 포괄적 사유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미 실패로 끝난 것이기는 하

5) 동구의 기업개조와 사유화에 대하여는 Privatisa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London:Allen & Overy, 1992), pp.5~9.

지만 새로운 연방조약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다. 소련에서 토지의 소유권 취득 - 특히 외국인에 대하여 -을 제한한다는 기본방침은 사유화에 대한 가장 큰 장애요소였다.

유고슬라비아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었는데, 이미 1990년부터는 연방법과 공화국법간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으며, 1991년 이후에는 각 공화국에서 경제전환을 위한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크로아티아공화국이 최초로 1991년 4월 경제 전환과 사유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 바, 이 법은 사회주의적 기업(사회주의국가의 용어에 의하면 국가소유기업 또는 인민소유기업)의 유한회사(Kapital gesellschaft)로의 전환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전환의 시기와 방법(기업의 매각, 지분의 매각, 주식의 양도, 노동자주식의 교부 등)은 개개의 기업에 일임하고 있었다. 외국인에 의한 사유재산 취득의 법적 한계에 대하여는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에서는 논의 조차되지 아니하였다.⁶⁾

결론적으로 말해, 동구제국의 최근의 상황은 일관성 있는 종합적 경제개혁정책을 수립하여 체제전환에着手하지 않는다면 기업개조의 목표가 전혀 실현될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실현될 뿐이며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진단이 적용되고 있는 국가로는 세르비아 및 몬테니그로와 같은 유고연방의 각 공화국, 불가리아 그리고 루마니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도 기업의 자유화, 기업개조법과 회사법의 의결 등과 같은 개혁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히 헝가리와 폴란드는 거의 무제약한 포괄적인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어떠한 국가보다도 자본주의체제에 접근해가고 있다.⁷⁾

6) Herwig Roggeman, *supra* note 1, p.39.

7) *Privatisa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supra* note 5, p.10.

(2) 企業改造와 私有化的 目的

1) 市場經濟體制의 確立

舊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기업의 개조·사유화의 제1차적 목적은 가능한 한 신속하고 마찰없이 또한 사회적인 조화속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써 국제경제교류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근대산업사회 의 발전과 유럽공동체라는 정치·경제조직에 가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유화 및 사회적으로 결속된 소유질서의 발전을 통한 경제의 민주적 분권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과정에 접어들어 있다. 80년대초까지 서구(영국, 이태리, 프랑스 등)에서도 국유기업은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으나, 맨 처음 영국에서 그후에도 다른 국가에서도 전반적 사유화정책이 추진되었다. 국유기업은 一國의 경제구조상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기는 하지만,⁸⁾ 여러가지 면에서 비효율적·비탄력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과도의 집중화와 관료화로 몸살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2) 유럽共同體加入을 위한 法制整備

유럽공동체의 정식회원국이 되고자 하는 동구제국의 끈질긴 노력 을 감안해 볼 때 그들의 경제전환의 부차적인 목적은 새로운 경제

8) 어떤 경제적 분석에 의하면, 유럽공동체역내 단일시장에 참여할 때까지 유럽공동체 회원국에서의 국영부문의 경제적 가치는 영국에서의 지속적인 사유화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어들지 아니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유럽공동체 내부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하이테크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국영기업의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그 주된 근거의 하나이다. Herwig Roggemann, *supra* note 1, p.30.

34 형가리의 經濟改革法制研究

법과 회사법을 유럽공동체와 양립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유럽공동체 이사회가 제시한 (노동조합의) 공동결정권에 관한 선택案은 그에 관한 각국의 규칙이 상이한 법질서속에서 역사적으로 발전되어온 것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즉, ① 노동자들의 감독위원회 (독일의 법령에 의하면 감독위원회 구성원중 3분의 1이상 2분의 1이하) 및 관리위원회 참여, ② 감독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에서 공동결정권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동자대표기관의 설치 ③ 이러한 모델 또는 소재지국가의 표준모델에 근거한 고용계약상의 공동결정제도들이 있다. 동구제국은 각기 이상에서 제시된 공동결정권제도의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⁹⁾

한편, 조세법상 다른 회원국가에서의 기업활동으로 입은 손해는 당해 유럽주식회사(Europäische Aktiengesellschaft)의 소재지에서의 조세액산출시 고려되어야 하는가, 중소기업이 유럽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는가를 비롯한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아직 유럽공동체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유럽공동체의 법제는 형가리를 비롯한 동구제국의 입법자들이 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¹⁰⁾

(3) 企業의 改造와 私有化的 基礎

1) 政治制度的 基本條件

동구의 과거의 경험과 최근의 일련의 상황전개를 감안해 볼 때,

9) *Ibid.*

10) 1986년 1월 1일 스페인은 유럽공동체에 가입하면서 당시의 스페인 주식법의 상당부분을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가 공표한 지침에 따라 개정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은 중앙상업등기부, 최소자본, 설립시의 자본납입, 무효원인(허위기재, 허용되지 아니하는 회사목적), 대표권의 범위(정관에 부합되는 법률행위, 대외적 효력없는 내부적 제한) 등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Conference on the New Economic Laws*, (Budapest:Ministry of Finance,1992), pp.22~25.

동구제국에서의 민주적 법치국가 수립은 그에 선행하거나 최소한 동시적인 정치체제변혁 없이는 불가능하며, 기업의 사유제를 전제로 한 시장경제체제로의 경제적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이 판명되었다. 경제적 측면에만 한정된 종전의 모든 개혁, 예컨대 1965년 소련, 1956년 이후의 폴란드의 개혁시도들이 모두 실패한 것도 그와 같은 관련성을 도외시하였다는 사실에 그 원인이 있었다. 또한 유고슬라비아의 개혁정책이 왜 실패하였는가 그리고 1991년 해체된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왜 좌초하였는가에 대한 해답도 법적·정치적 제도와 경제상황간의 인과율적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제3의 방도”를 찾게 되었으며 그것은 사회국가적 요소(사회보장, 조세형평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조세경감·보조금, 교육·훈련지원 등과 같은 사회정책적 청구프로그램)를 구비한 사유화된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한 사회국가적 요소들은 부분적으로는 이미 일부 동구제국의 현행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독일의 사회국가헌법(그 이전에는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과 바이마르헌법)은 혼합적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고 사회보장과 노동법상의 노동자의 권리와 광범하게 보장하고 있는 바, 동구에서 추구하는 시장경제질서의 모델이 되고 있다.¹¹⁾

동구제국에서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정치적 기본구조부터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국가 및 정치」와 「경제」와의 분리가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분리원칙은 국가의 간섭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로서 또한 경제주체로서의 국가의 역할 수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기업의 경제활동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국가 또는 정치적 기관(공산당)이 결정하여온 구습을 과감히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경영에 따른 책임과 관련하여 국가와 기업을 엄밀히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기업의 소유자인 경우와 지분참여자

11) Herwig Roggemann, *supra* note 1, p. 31.

인 경우에는 사법상의 특권적인 지위를 향유할 수 없다.¹²⁾

서구제국과 미국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으로 사인에게 보장하는 것을 시장경제질서의 법적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한국, 대만 등에서는 국가와 경제계간의 긴밀한 계획적·유기적 협력을 통해 - 사회국가적·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다소 의문의 대상이 되겠지만 -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성취하였다. 따라서, 시장경제질서의 법적 조건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유럽적 기준보다는 오히려 동양적 기준이 동구제국에게 대하여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밖에 동구제국에 필요한 법적·정치적 기본구조를 설명한다면, 기회균등을 전제로 한 多黨制의 확립, 정치적 반대자의 인정과 법적 보호, 국가에 대해서도 법규를 집행하는 독립적인 법원, 특히 국가기관 또는 정치적기관의 경제적 파오를 조사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일관성을 요구하는 독립적 통제기관(審計院, 의회의 조사 위원회, 법원 등)의 설치, 국가와 경제계간의 불법적인 유착을 색출해 낼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자유로운 언론에 대한 법적 보호, 경제와 정치의 유착을 방지하고 국가의 권력 행사에 대한 선거인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정권교체가능성이 있는 자유선거의 확립, 시장경제하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조정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재정능력있는 노동조합(최근에도 많은 동구제국에서 노동조합의 과격한 노동쟁의로 인한 국가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등을 들 수 있다.¹³⁾

2) 經濟制度的 基本條件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시장메커니즘이 법제도적 지원하

12) 島村博, “ハンガリーの國家企業の「民営化」法”, 國際商事法務, Vol.17, No.11 (1990), p.1171.

13) Herwig Roggemann, *supra* note 1, p.32.

에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을 경우에만, 기업을 시장참여자로서의 독자적인 책임을 지고 자주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조하거나 사유화하는 조치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법과 물권법을 포함하는 민법 및 상법외에도 다음과 같은 법률들이 필요하다. 경쟁법 및 카르텔 법, 회사법, 콘제른법, 유가증권법 및 주식법, 은행 및 신용법(여기에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은행의 설립이 포함됨), 소유권법 및 채권보호법, 파산법, 조세·관세법, 외환법, 소비자보호법, 보통거래약관법, 토지법, 노동법 및 사회법 및 (노동조합의)경영에 관한 공동결정법, 영업자유에 관한 법, 기업활동상의 환경보호 및 책임에 관한 법, 기업의 활동의 남용을 방지·처벌할 수 있는 경제형법 및 (사유재산제와 사유재산의 사회적 구속성 및 현법상의 자유의 구성부분으로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한 국가이익의 전제조건과 한계를 정하는) 경제현법 등이다.

독일통일후 舊동독지역에서의 경제전환과정을 보면, 이상과 같은 법규들이 없이는 전환의 성과는 회의적이며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남용가능성과 과오를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구 동독지역에서의 경제전환과 사유화는 소유권변동조약(Einigungsvertrag)에 이르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연방입법에 의하여 진행되어 왔다. 즉, 국민소유재산의 신탁관리를 위한 관청(신탁청)의 설립에 관한 1990년 3월 1일의 결의, 주민소유의 콤비나트, 기업 및 시설의 유한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명령(1990년 3월 1일 제정), 私企業의 설립·활동 및 기업참여에 관한 법률(1990년 7월 6일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법률(1990년 7월 6일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법률과 주민소유재산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절차를 위한 시행령(1990년 7월 25일), 주민재산의 사유화 및 재구성에 관한 법률(이하 '信託法'이라 한다)(1990년 7월 17일), 신탁청의 정관에 관한 1990년 7월 18일의 각료회의 결정, 신탁법 제1차시행령(1990년 8월 15일 제정), 신탁법 제2차시행령(1990년 8월 22일 제정), 신탁법 제3차시행령(1990년 8월 29일 제정), 신탁법 제4차시행

령(1990년 9월 12일 제정), 신탁법 제5차시행령(1990년 9월 12일 제정), 현안의 재산문제를 규율하는 법률, 투자촉진을 위한 1991년 3월 22일의 법률, 및 신탁청에 의하여 관리되는 기업의 분리에 관한 1991년 4월 5일의 법률 등이다.¹⁴⁾

그 밖에도, 사인의 기본재산취득이나 내외국인에 의한 주식·지분취득에 대해 많은 제한을 남겨둔 채 경제전환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된다면 경제전환의 성과자체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2. 헝가리의 企業改造와 私有化

(1) 企業의 改造

1) 企業改造法의 立法背景과 趣旨

1988년 이후 헝가리는 국제수지의 악화와 대외부채의 누적으로 인하여 새로운 긴축정책과 개혁정책을 기조로 하는 종합경제운영계획을 시행하여 왔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실시된 경제안정화정책의 목표는 혼합적 소유제하에서의 경제주체의 경쟁을 전제로 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었다. 그 일환으로 헝가리는 1988년 회사법을 제정하고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도입하였고 1989년에는 새로운 영업이익세제도를 시행하는 등 조세제도를 개혁하였으며 중앙은행의 기능조정, 은행기능의 활성화, 금융제도개혁, 시장경제체제에 부합되도록 회사법과 기업개조법 등 기업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으며 임금과 가격의 자율화를 도모하고, 무역자유화조치, 외국인투자법의 개정 등 수많은 개혁조치를 취하였다.

이상의 법령 중에서 기업의 개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는 회사법과 기업개조법을 들 수 있다. 헝가리의 회사법은 새로운 회

14) *Ibid.*, p.33.

사의 설립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국유기업을 효율적 경영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등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다. 1989년 6월부터 시행되어온 기업개조법은 그러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며, 이 법의 제정과 더불어 소유권 구조를 국가소유에서 혼합소유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법적 체제가 일단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 법률의 구상은 이미 「회사법」초안의 준비과정에서 등장하였다. 87년 말 당시 국내경제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국유기업은 약 1,700개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경제 조직의 90%를 점하고 있었다. 기업개조법 제1차초안 요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경제의 요체를 이루는 국유기업에 대하여 「전혀 자본 감각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이 당시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것이다.¹⁵⁾ 「회사법」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유기업이 회사(경제적 사단)로 조직변경되지 않고, 그 결과 기존의 경영사업체 대부분이 「회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법률로서의 기능이 손상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사법」은 국유기업을 일정한 형태의 회사로 개조하여 「영업과 경쟁의 자유」라는 환경속에 투입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자본감각」, 「재산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자 자율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소모」를 초래하고 있던 「자주관리」의 체제를 폐지하고자 하였다.

국유기업의 「자주관리」는 「비상조치 및 사회적 희생을 강화하는」 경제·사회정책에 부합되도록 하고 또한 생산자자율성체제의 구축을 위한 정치개혁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자주관리」제도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치개혁을 권력기구 전체의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추진(종전의 「黨의 영도」와는 상반되는 집회·결사의 자

15) 島村博, *supra* note 12, p.1176.

유, 복수정당제, 내각책임제, 3권분립 제도의 도입)함에 따라 그 정치적 역할을 완수하였고 ②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영업과 경쟁의 자유」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이 「회사법」, 「영업이익세법」, 「외국인 투자법」 등의 제정과 더불어 시행됨에 따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정치적 민주화·경제적 자유화에 의한 경쟁 질서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국부적인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기업내부의 자율성만으로는 이와같은 급격한 변화에 대처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¹⁶⁾

국유기업의 자주관리기관은 84년의 「국유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평의회」, 「노동자총회」와 그 「대의원회의」의 형태로 설치되도록 승인을 받았다. 88년 시점에서 기업평의회를 일반적 관리기관으로 설치한 국유기업은 전부문에서 약 75%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기업평의회는 근시안적인 임금정책을 수립하거나, 시장경제의 제도적 대체물로서의 상징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기업경영진」이 기업평의회에 예속되는 경향이 생겨나자 이에 대한 비판이 크게 대두되어 기업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방법은 「국유기업을 완전히 또는 대부분 주식회사화하거나 유한회사화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결국 기업평의회를 지나치게 보급시킨 것 자체가 경제정책상의 오류였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업개조법의 취지를 최초로 밝힌 법무부자료는 기업의 자주관리 체제의 의의는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임금노동자의 의식이 소유자의 의식으로 변화되도록 할 수 없다는 냉정한 판단에 입각하고 있었다. 기업평의회는 동구제국의 국유기업법의 수준에서 본다면 최고도로 발달한 민주주의적인 제도일지 모르지만, 경제개혁을 가속화하는데는 한계를 지닌 것으로 판명이 난 것이다. 결국 국유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시키는 경우 일반평의회가 일반관리하였던 기업이었음을 이유로 기업평의회가 「회사법」에 규정된 주식회사와는 다른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16) *Ibid.*

기대할 수 없음은 인식하게 되었다. 이로써 「회사법」은 「기업개조법」의 매개를 통해 특정의 非國家부문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의 한계를 넘어 경제적 사단(회사)설립의 일반화와 더불어 경영조직일반에 적용되는 법률로서의 의의를 획득하게 되었다.

2) 企業改造法의 適用範圍와 特徵

① 企業改造法의 適用範圍

기업의 개조라 함은 ① 국유기업의 회사로의 조직변경, ② (예컨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화, 또한 그 逆의 의미에서) 회사형태의 변경, ③ 수개의 회사의 흡수합병·신설합병이다. 협의의 개조는 경영사업조직 전체가 17) 청산절차없이 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조직변경후의 회사가 변경전의 조직의 포괄적 권리승계인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개조에 의하여 채무가 만기에도 달하는 것도 아니며 행정청으로부터 취득한 기존의 허가증도 무효가 되지 않으며 또한 조세추징 또는 재산양도에 따른 절차수수료의 납부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국유기업 또는 회사의 협동조합화에 대하여는 개조에 관한 제규정이 준용된다. 회사로 조직변경 할 수 있는 기회는 국유기업, 국가의 기타 경영사업조직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다. 수공업과 사적인 거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도 영업이익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업개조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 네가지의 경우는 이 법률상의 개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기업개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즉, ① 국유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해산(청산 등)된 후, 원래의 설립자 또는 사원이 잔여재산을 이용하여 경제적 사단을 설립하는 경우, ② 국유기

17) 경영사업조직이라 함은 회사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① 법인격을 가지고 ② 독립채산제에 입각하여 경영되며 ③ 그 재산은 국가소유이며 ④ 국유기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체를 말한다. 島村博, *supra* note 12, p.1177.

42 헝가리의 經濟改革法制研究

업 또는 협동조합이 분할되어, 각각 경제적 사단을 설립하는 경우,
③ 국유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다른 경영사업조직에 부분적으로 또
는 전부 흡수합병되는 경우, ④ 국유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일반적
인 회사설립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하부조직을 회사화하고 소수의
「재산관리센터」를 유지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센터가 전통적인 국
유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활동을 계속한다)이다.¹⁸⁾

② 企業改造法의 特徵

기업개조법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설립시 30%의 금전출자의
이행이라는 「회사법」의 규정과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첫째, 헝가리기업의 資本難을 고려하고, 둘째, 시장경제의
형성에는 시장에의 참여자의 수적 증가가 필수불가결하며 그 증가
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서 가속화와 관
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 확실히 개조를 촉진하기 위해서
는 중앙정부의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이 법률의 핵심적인 부분은 자산계획, 특히 실세가액에 의한 부
동산 및 경지의 가액평가에 의거하여 개조 후의 사단의 자본금계획
을 수립하는 것에 있다. 법무부 자료에는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자산평가의 문제는 기업개조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근거가
되었다. 장부가격계산의 근거와, 그 방법여하에 따라서는 「영업이익
세법」상의 과세근거가 되지 않는 「留保財產」을 증가시키는 한편,
시가이하로 국유재산을 분할판매함으로써 손해의 발생을 초래하는
등 결과적으로 평가계획의 남용에 의하여 채권자나 외국인투자자에
게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미칠수 있다는 우려는 정당한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時價라는 관념이 통용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¹⁹⁾ 이 법률에서는 帳簿上의 各計定간의 유
기적 관련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달리, 청산등의 경우에 시가에

18) *Ibid.*

19) Herwig Roggemann, *supra* note 1, p.36.

의거하여 다시 계산되는 대차대조표를 「자산의 대차대조표」(제5조)라 한다.²⁰⁾

3) 國有企業의 改造要件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유기업의 여러 형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984년 국유기업법 이후 국유기업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분류되어 왔다. 즉, ① 가장 일반적으로 보급된 형태인 기업평의회가 일반관리를 하는 자주관리기업, ②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기업에서 설치된 노동자총회(또는 그 대의원회의)가 일반관리하는 자주관리기업, ③ 국가행정의 감독하에 있는 기업(이러한 기업은 다시 공익기업, 트러스트, 범률에서 지정한 기업 - 국가의 안전등과 관련된 부문의 기업 - 및 「파산관리」중인 기업으로 구별된다)이다. 1984년 국유기업법은 ③ 형태의 기업 외에는 국가행정기관으로부터 소유자의 지위를 박탈하여 국가가 가진 각종 권리를 완전히 기업의 「자주관리기관」에게 양도하였다. 그 결과, 기업은 소유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국유기업의 회사로의 조직변경절차는 上記의 기업형태에 따라 상이하다. ③ 형태의 기업에서는 회사로의 조직변경에 대한 결정권은 설립기관에 속하고, 그 결정에는 재무장관의 동의(트러스트의 경우에는 각료평의회의 승인)를 요한다(제16조). ①과 ② 형태의 경우에는 회사로의 조직변경의 결정권은 일반적으로 다수결로 의결하는 집단적 기업관리기관에 속한다.²¹⁾

20) 형가리어를 직역한다면, 「순자산의 대차대조표」로 번역하여야 하지만, 개조는 채무를 만기로는 하지 않고(제9조), 결국 부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순자산」이라는 용어는 형가리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히 「재산」 또는 「자산」에 해당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번역은 필요에 따라서 「순재산」이라 한다. 「자산」=적극재산에 해당하는 용어로써 「자기자산」 sajat uagron 이 사용되고 있는 것에서도 단순히 「자산」, 「재산」의 의미를 갖는 용어 uagron이 등장하는 경우는 문맥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순재산」, 「재산」으로 번역한다.

헝가리 의회는 경영사업조직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재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외부의 - 국내 및 외국의 - 자본을 도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직변경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1989년 기업개조법을 제정하였다. 각종 형태의 회사가 시장경제의 다양한 요청에 따라 유기적으로 발전하여야 하지만, 동시에 경제·정치적인 충격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헝가리 법질서로서는 전혀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형태의 기업의 개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회사로의 조직변경을 국고보조금지급이나 국가에 의한 기업생생의 요건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가가 회사로의 조직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각료평의회의 제안에 의거하여 설립기관이 1년내에 회사로 조직변경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행정의 감독하에 두도록 한 기업에 대해서 국회는 조직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5조 제2항). 회사로의 조직변경과 동시에 자본투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하여 ①과 ②의 기업개조에 관한 2가지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첫째의 요건은 2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要件 I. 계획자본금액의 정도

① 개조의 요건과 방식에 관하여 국가의 재산관리조직과 기업간의 협정(제17조)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제19조)에는 「설립될 회사의 資本金총액이 자산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기업의 순자산총액의 20%이상 또는 1억 포린트이상,이고 외부자본이 출자되거나 주식신청이 있을 것.」

② 이러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제20조)에는 회사의 기본자본(자본금)이 기업의 자본금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총액의 80%를 하회하지 않고 재산관리조직이 결정한 순자산감소의 상한을 하회하지 아니할 것.

21) 島村博, *supra* note 12, p.1176.

要件 II. 재산관리조직에의 지분귀속(제21조): 「회사의 기본자본(자본금)이 자산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기업의 순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의 20%에 상당하는 영업지분(주식)」이 상기 조직에 귀속될 것.

제2의 요건은 국가가 자본소유자로서 재산관리조직으로 등장하고, 완전한 사원의 권리를 그 지분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제14조)과 관련되어 있다. 「기본자본」이란 형가리어의 표현상 유한회사의 자본금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회사에 유보된 잔여주식 또는 영업지분은 회사가 자유롭게 환가할 수 있다. 다만, 그 대가는 4대1의 비율로 재산관리조직과 사단에 재배분된다(제22조). 개조(회사등기)후 3년을 한도로 하여 환가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재산관리조직의 소유로 이전하게 된다(제23조). 현상태에서의 공사채 시장의 운영방법, 주식거래체계, 인플레이션의 진행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한시적인 기업유보분의 30%-40%가 매각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법률이 상정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국가의 지배권은 사원총회에서의 의결권의 5/1에 해당한다. 또한 회사에 대하여 자유로운 양도를 보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1차초안은 하나의 금융기관, 재단 등이 15%이상의 주식(영업지분)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²²⁾

국가의 재산관리조직으로는 주식회사 형태의 특수회사, 국고 등이 고려되었고 이러한 조직의 설립없이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에 재산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또는 「보조금행정」의 악폐를 단절하기 위하여 보조금에 갈음하여 배당금을 예정하여 자치체나 각종 학교에 재배분하는 안 등 각양각색으로 검토되어 왔다. 어찌되었든 국가의 재산관리조직에 의한 제한적인 주식(영업지분)보유비율을 정한 것과 회사에 의한 잔여주식(영업지분)의 환가자유를 보장한 것은 한편으로는 국유기업의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개조를 실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 정당한 영향력행사의 기회를 보존

22) *Ibid.*, p.1177.

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4) 改造의 節次

개조를 하는 국유기업은 국유재산관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자본, 영업활동, 평가이익과 그 국유기업의 대차대조표 및 외국인의 투자 및 투자가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도 이율러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 받은 후 국유재산관리청은 ① 개조를 금지하거나, ② 개조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개조방법을 정하는 등 개조를 관리할 수 있다. 국유기업은 관리청의 이러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조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개조절차가 중단된다.

국유재산관리청은 그 결정을 30일내(60일까지 연장가능)에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국유재산관리청이 기한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제출된 조건대로 개조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유재산관리청이 결정을 내리기 前에는 개조하는 국유기업이 투자가 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조를 승인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국유기업은 국유재산관리청에 개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조계획서는 국유재산관리청의 결정에 의하여 부과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유재산관리청은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에 서명을 하게 되며, 정관이 자신이 승인한 개조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명을 거절할 수 있다.²³⁾

국유기업의 개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는, 당해 국유기업의 법적 승계인이 되므로 모든 계약과 약정을 승계하게 된다. 기업개조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소유권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국유재산관리청은 외부참가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모든 주식을 보유하며, 기업의 실질자산을 화체하는 주식은 지방의

23) *Key Legal Facts for the Foreign Investor in Hungary*, (London:All Overy, 1992), p.16.

회로 이전되고, 매각대금의 80%는 국가에 귀속되지만 잔여 20%는 회사에 귀속이 되므로 增資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그러나, 은행채무 또는 기타의 채무가 지분에 반영되는 때에는, 국가에 귀속되는 80%의 지분은 감소되거나 완전히 소멸된다.) 이상의 규정은 자주관리국유기업에만 적용되고 중앙의 통제를 받는 국유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企業의 私有化

1) 背景

헝가리의 국유기업은 국가행정 및 교통, 체신 등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기업과 제품생산·상업활동·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영리기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과거, 국유기업은 국가소유부동산에 대한 경영관리권만을 가지고 있었다. 국유기업은 전문경영인이 아닌 정부의 관료들에 의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헝가리는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경영의 자율권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1984년이후 많은 국유기업들이 그 재산의 일부로 새로운 사업단위로 개편하고 생산성과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국유기업에 의해 새로운 사업단위가 구성되어 1988년에는 4분의 3에 달하는 국유기업에서 그 경영권이 기업내의 노동자와 경영인으로 구성되는 기업협의회와 같은 자치기관으로 넘어 가게 되었다. 바꾸어 말해서 국유기업의 4분의 1만이 경영권을 기업이 직접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8년 6월 제정된 회사법은 이러한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을 훨씬 뛰어 넘어 종전의 과도한 국유화 자체를 지양하기 위하여 국가소유의 일부를 사적소유로 전환하고 영구적으로 또는 임대를 통해 사회적 조직, 사적 사업체 또는 외국인에

게 이전하는 것을 보장하였다. 회사법은 사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국유기업의 사유화추진목적은 경제력집중과 독점국유기업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시장경제에 적합한 사기업을 장려하여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기업개조법」의 제정으로 이러한 보장내용은 더욱 현실화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법령의 제정에 의하여 주권자로서의 지위와 소유자로서의 지위는 상호 분리되고, 공공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의 정치적 개입과 - 회사의 주식 또는 영업지분의 보유에 의거하여 - 경제적 지배가 법적으로 분리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89년의 기업개조법은 그 동안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 바, 첫째, 회사의 조직변경(예컨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변경)에 대한 특별한 조건을 정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규정들은 회사법의 일반규칙으로부터의 일탈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회사법의 특수한 章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기업개조법은 종전에 非會社의 형태로 활동하던 경제조직을 “회사화”하기 위한 규칙을 정한 것이었으며, 사유화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²⁴⁾

기업개조법에 의하여 국유기업은 주식회사 등으로 개조됨으로써 사유화되거나 국가와 민간이 주식을 공유하는 서방의 공영기업과 유사한 형태로 전환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법에 의해 서방자본이 헝가리 국유기업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유기업은 주식회사로 개조되면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방 자본가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되었고, 헝가리 정부 역시 국유기업을 외국에 매각함으로써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국유기업의 매각은 1989년 매각대상 56개 국유기업명단을 서방측에 제시하는 등 현실적 과제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24) 島村博, *supra* note 12, p.1177.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까지는 정부가 국유기업의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국유기업의 비율은 80년대의 96%에서 90%정도로 감소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헝가리는 1990년 국유기업의 사유화업무를 관掌하는 국유재산관리청을 설치하였고, 그 후, 자유총선을 통해 집권한 헝가리민주포럼정부는 시장경제도입의 일환으로 국유기업과 국유재산에 대한 사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사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국유기업내의 정부지분을 매각하고 사유화에 참여하는 사인(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 5월 국유기업의 자산관리 및 사유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유재산관리청은 동년 9월, 제1차사유화계획에 따라 사유화된 20개 회사의 명칭을 공포하였다. 제1차사유화계획은 대규모이고 사업성이 있는 국유기업을 사유화하고 국유재산관리청에게 필요한 사유화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이었다. 개개의 기업에 대한 사유화 조언자가 선정되었지만 실제로 사유화되는 과정은 대단히 느리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유재산관리청은 아직 사유화되지 아니한 대규모기업과 특수분야의 중소기업의 사유화를 위한 제2 및 제3의 사유화계획을 발표하였다.²⁵⁾

이러한 상황하에서 사유재산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국유재산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었기 때문에, 1990년 토지법의 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제도를 확립하고, 1991년 국유재산의 매입과 관련된 보증제도의 확립, 국유재산과 국유기업의 사유화에 수반되는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한 특별기금의 조성, 소유권의 법적 보장, 각종 소유권에 대한 동등한 기회제공, 외자도입확대 등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 바 있다. 1988년 회사법과 1989년의 기업개

25) *Key Legal Facts for the Foreign Investor in Hungary*, supra no p.17.

조법외에도 일련의 법령, 예컨대 1988년 외국인투자법, 1990년 국유재산보호법, 국유재산관리청설치법, 소매상·식당·소비자서비스부문의 국유기업 사유화법, 소유권관계의 명확한 규율·안정화를 위한 자산정책지침, 경쟁법, 증권거래법, 기업윤리법, 1991년 파산법, 회계법 등에서도 국가소유재산의 소유권변경과 사유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밖에도 국유기업의 종업원을 위해서는 종업원지주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와 저축의 장려,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위한 여신제공, 외자의 역할을 보장하는 등 각종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헝가리의 사유화를 위한 법적 기반은 어느 정도 확립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헝가리 국민과 기업의 축적된 자금 총액은 사유화 대상기업의 자산의 12~17%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내자본만으로는 사유화의 추진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사유화대상기업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자자치기구나 국민에게 국유기업의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유의할 사실은 사유화가 자본시장이 성숙되지 아니한 미숙한 시장경제상태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국가전략산업 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소유를 유지하고, 천연자원·운송·사회간접자본·에너지·중공업 분야에 대하여는 국가가 조정권과 허가권의 행사를 통해 사유화를 추진하게 된다.

2) 國有財產管理廳(私有化 監督機關)

①國有財產管理廳의 權限과 設立趣旨

구동독지역의 기업개조 방법은 헝가리와 폴란드의 그것과는 크게 대비되고 있다. 독일의 신탁청이 기업 개조 그 자체를 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반해, 헝가리에서는 기업이 사유화와의 직접적 관련하에 개별적으로 개조되고 있으며, 독일의 획일적인 개조와는

달리 기업의 자발적인 개조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²⁶⁾ 국유재산관리청설치법에 의하면 국유재산관리청은 ① 사유화정책에 있어 국가를 대표하고, ②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며, ③ 국유기업을 감독하고 국유재산을 보호하며, ④ 사유화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며, ⑤ 공인자문역과 합의된 기업의 “자발적 사유화”를 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국유기업에의 투자에 있어서는 국유기업을 대표하는 경영인들이 국유재산 처분후의 자신의 지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누구에게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는가와 관련하여 국유재산이싼 가격으로 매각되는 사례가 있다는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 국유재산관리청은 바로 이러한 각종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국유재산관리청설치법과 더불어 국유재산보호에 관한 法이 시행되었다. 이 法은 국유기업들의 자산규모, 유형, 존속기간에 대한 계약체결능력을 규율하고 있다. 예컨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출자가 국유기업 총재산의 10% 또는 20,000,000포린트 이상인 경우」와 「계약가액이 340,000포린트 (일정한 경우에는 540,000포린트)를 초과하는 자산의 매각 또는 임대차 등에 의한 이전」에 대하여는 국유재산관리청의 승인을 요한다. 이 法의 적용범위내에 있는 개조에 대한 합의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競買人이 참가하고 최고가를 신청한 경매인이 競落을 받는 방식에 의하는 때에는 국유재산관리청의 개입이 배제될 수 있다. 한편, 국유재산관리청은 사유화의 촉진을 목적으로 수백개의 중소국유기업을 위한 새로운 사유화방안을 세웠다. 공인자문역명단으로부터 자문역을 선정한 중소국유기업은 국유재산관리청의 개입없이 그 자문역의 협력만으로 사유화를 수행하게 된다.²⁷⁾

26) Herwig Roggemann, *supra* note 1, p.42.

27) *Key Legal Facts for the Foreign Investor in Hungary*, *supra* no p.17.

한편, 사유화를 위한 법적 기틀은 사유화 개념의 발전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왔는 바, 국유재산관리청의 권한은 점차 확대되었고 국유기업의 재산의 신속한 이용·매각을 위해서는 국유재산 관리청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았다. 그 결과 현재, 사유화에 대한 기업개조법의 역할을 제거하게 될 몇개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장기적인 계획에 따르면, 사유화될 재산은 항구적인 국가소유재산과 일시적인 국가소유재산이라는 두 가지 부류로 분류될 수 있다. 전자의 재산은 국가재산관리주식회사에 위탁되고 후자는 필연적으로 매각을 위하여 국가재산관리청의 통제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개조법은 향후에는 사유화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게 될 것이며 그 잔여 규정은 회사법상의 하나의 장으로 편입될 것이다. 사유화에 관한 대부분의 규칙들은 1991년의 7호 법령과 제8호 법령(기업개조법)을 통합하는 하나의 법령으로 흡수될 것이다. 국가의 항구적 소유재산에 관한 독립된 법령은 국유기업의 (국가와 사인이 각각 부분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혼합회사로의 개조라는 사유화형태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²⁸⁾

헝가리 의회에서 작성한 「잠정적 국가재산의 매각·이용·보호에 관한 법안」은 국가재산관리청이 변함없이 정부의 감독을 받고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지만, 사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제외(임무의 범위 축소)시키고 있다. 즉, 가장 신속하고 가장 유리한 매각조건에 의한 국가재산 양도를 상정하고 있다. 국가재산관리청은 사유화되어야 할 국유기업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없이 소유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기업(국가)재산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아니하고 이미 지방정부에 양도된 재산은 국가의 지배밖에 있다.

상기의 법안은, 필요한 경우 더욱 엄격한 사회적 통제를 통한 국

28) Robert Szakal, "The Legal Framework of Privatisation", *Hungarian Economic Review*, No.9(1992, 8), p.18.

가재산의 보호를 예정하고 있으며 1990년 제8호 법률인 「국유기업에 위탁된 국가재산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흡수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예컨대, 동 법안은 회사자본금에 대한 국유기업의 비금전적 출자가 200만 포린트 또는 연차보고서상의 당해 기업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산관리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 국유기업은 주식이 공개입찰된 경우가 아닌 한, 등록된 자문회사의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동 법안은 국유기업의 개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그러한 개조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첫째, 국유기업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개조계획을 국가재산관리청이 수리한 경우 또는 개조의 실행에 관하여 자문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국가재산관리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더욱 광범한 활동범위를 갖는다. 개조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국가재산관리청은 보다 간소하고 신속한 절차에 따라 개조를 수행할 수 있다. 최종결산절차가 진행중인 국유기업은 개조될 수 없으나 파산절차는 개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개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에서 주주의 권리는 국가재산관리청에 의하여 행사된다. 회사는 법적으로는 등록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보지만 그 활동은 등록전에도 가능하다. 국가재산관리청은 신속한 사유화를 위하여 등록전이라 할지라도 사원(주주)의 권리 또는 그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서는 주권(share warrant)이, 그리고 유한회사에서는 사원자격리스트가 그 매입자에 대하여 국가재산관리청이 매각하고자 하는 권리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하게 된다. 외부기업가가 개조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외부기업가의 출자는 등록자본의 일부로 간주된다. 국가재산관리청은 기업개조과정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갖지만, 이러한 사실이 국가재산관리청이 외부기업가를 참여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 법안은 국가재산의 효율적인 매각을 위하여 경매절차에 관

한 규정을 두고 있다. 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경우, 국가재산관리청은 입찰을 한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東獨地域의 信託廳과의 比較

독일에서는 1990년 5월 18일의 제1차 兩獨間의 조약이 이미 통화·경제·사회의 통합을 想定하고 있었기 때문에 1990년 8월 31일 兩獨間의 소유권변동조약을 감안하여 다소 급진적이고 종합적인 전환개념을 안출하였는 바, 이에 앞서 동독의 인민대표대회는 1990년 6월 17일 信託法案을 의결하였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신탁청은 1990년 10월 3일부터 법적 권능을 갖는 공법상의 연방관청으로서 연방재무부의 직속기관이 되었으며, 약 600만명의 직원과 총가치 6조마르크의 약 8,000개의 구사회주의기업으로부터 개조된 기업의 재산관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信託法은 (1990년 7월 1일 현재까지) 아직 개조되지 아니한 모든 사회주의 경제기업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자동적인 법적 개조를 예정하고 있었으며, 콤비나트소유의 소위 콤비나트기업도 법적으로 유한책임회사로의 개조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소유였던 콤비나트 그리고 사회주의 콘제른은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²⁹⁾ 독일에서는 이와 같이 단기간에 사유화를 이루고자 하였기 때문에 信託法 자체에 중요한 잠정적인 규칙을 두고 있는 바, 예컨대 회사의 최소설립자본금(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00,000마르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50,000마르크) 및 액면가 50마르크인 주식에 관한 규정이 그것들이다. 또한, 주식회사의 잠정적인 이사회 및 유한회사의 사장(Geschäftsführer)이 신탁청에 의해 임명될 때까지 그 기능을 총지배인 또는 경영지배인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회사경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고 있다.³⁰⁾ 이러한 경과규정은 지금도 논쟁거리로 남아 있지만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탁청은 최근까지도 관

29) Herwig Roggemann, *supra* note 1, p.43.

30) *Ibid.*, p.40.

료주의적 업무형태, 신속성과 효율성의 결여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1990년 10월의 한 보고서는 「신탁청의 관직은 전적으로 과거의 동독경제관리 또는 서독 기업출신의(임시직)관리인으로만 임명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관리요원과 직원을 물색해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신탁관리위원회에는 20인(출범당시는 16인)의 위원이 있다. 1990년 말에는 신탁청은 비개조기업의 15,000명의 새로운 감독위원회와 유한회사의 사장을 새로 임명하였다.³¹⁾

독일의 경제연구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구동독지역에서 50% 가까운 실직률을 보이고 있다. 실직률은 신탁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에서 극심한데 1990년의 2,800만명의 고용인원중 1991년 말까지는 50%에 해당하는 1,400만명이 실직을 하고 1992년 말쯤에는 30만명 이상이 추가적으로 실직할 것이라고 한다. 그 중 1992년 초까지는 약 20만명이 다른 직장에 고용되었다. 신탁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1991년의 실직자중에서 약 13%만이 취업을 하였는 바, 기업의 사유화와 고용프로그램에 의하여 100만개의 취업자리만이 -비록 일시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 생겨났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과도기중에 근무시간단축, 재교육과정, 고용촉진 등에 의하여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청이 취업문제에 조직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관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청이 19%의 지분을 가지고 연방의 諸州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持株會社(Dachgesellschaft)가 설립되었다. 또한 1991년 7월 17일에는 노동촉진·고용·구조발전을 위한 회사의 설립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이 의결되었다.³²⁾

아울러 동독지역에서의 임금수준은 서독과 서방의 기업들에게 투

31) Ibid.

32) Ibid.

56 헝가리의 經濟改革法制研究

자유인을 제공하는 방편으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서독의 3분의 2로 책정되었다. 한편, 구서독지역에 대하여는 정부적자의 확대와 조세인상(鑛油稅) 및 사회보장부담금인상 그리고 최근(1991년 2월)에는 부가가치세의 1%인상(14%에서 15%로)이 의결되었다.

사실 독일의 信託案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지향적 경제질서내에서 가장 유리한 기업형태를 모색하는 것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개조기관(Institut der Umwandlung)이 국민경제 전체의 포괄적 사유화를 실현하는데 적합한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기업개조 - 어떠한 기업의 다른 기업으로의 항구적인 법적 변경 - 는 전체 경제체제의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급진적인 법적 조치에 의하여 이를 강요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 논거의 하나였다. 기업개조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없고 전문가도 없이 그 시기만 앞당긴 것은 개조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을 수반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3) 私有化의 概念과 形態

국유기업은 비영리기업과 영리기업으로 나누어지며 후자는 국가전매기업과 제2차대전후 국유화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영리기업만을 사유화대상으로 함은 물론이다. 사유화형태로는 기업 전체의 인수, 개개의 콘제른회사의 인수, 기업의 부분매각,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의 인수 등이 있다. 사유화를 위한 일반적인 목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① 기업의 지속적 경영, ② 가능한 한 많은 일자리의 유지·조성, ③ 장래에 대한 예측능력이 있는 기업경영의 확보, ④ 가능한 한 높은 투자액, ⑤ 고질적인 기업채무의 제거 등이다. 따라서 투자가의 매입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은 ① 매입입찰가격, ② 생산계획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투자계획서 및 재무계획서로 구성되는 기업운영안, ③ 고용계획, ④

거래관계(양도인과 양수인), ⑤ 기업의 획득과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안, ⑥ 지불능력증명(Bonitätsnachweis)이다.

재사유화(Reprivatisierung)는 형가리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재사유화라 함은 1945년에서 1950년까지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성립이전의 소유자 또는 그후 소유권이 박탈된 소유자에게 재산을 환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독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보상보다는 반환(Rückgabe vor Entschädigung)”의 원칙이 확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동독지역에서 범치주의와 소유권법에 근거를 둔 수많은 재산반환신청과 이에 대한 심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³³⁾ 독일의 1991년 투자촉진법(Investions Förderungsgesetz)은 재산문제를 관할하는 관청이 신탁청의 사유화결정에 앞서 우선적인 재산반환신청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고 - 항상 이러한 원칙이 관철되는 것은 아니지만 - 규정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이러한 절차는 투자장애요소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포괄적인 재사유화는 그 실현이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동독지역의 새로운 경제질서확립에 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토지 및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그들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Vermögensgesetz 제3조) 새로운 투자도 할 수 없고 사유화 그 자체도 아무런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 된다. 이리하여 독일의 재산법(Vermögensgesetz)도 「後취득자가 일자리를 만들거나 거주공간의 수요에 현저하게 부응하게 되거나 또는 이러한 투자를 위하여 토지를 이용하고자 한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토지는 舊소유권자의 소유권청구가 있다 할지라도 양도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유권변동조약에 의거한 「특별투자에 관한 법률」은 이과 같은 소유권관계를 확정할 필요성

33) 독일의 새로운 주에서는 100만건 이상의 청구가 제기되었다. 이는 사법부, 행정부 및 신탁청이 수년 아니 수십년에 걸쳐 처리하여야 할 분량이다. 소유권회복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보상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며, 독일에서도 각각의 새로운 州마다 재산권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州官廳이 설치되어 있다.

을 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그 후 제정된 「기업사유화시의 장애제거를 위한 법률」에 의하여 대단히 확대되었다. 이러한 규칙은 모든 부동산과 기업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4조 제1항 제1호). 舊소유권자가 기업의 계속적인 운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소유권회복대상이 된 기업은 투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이 경우 舊소유권자는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구 동독지역에서 보다 신속한 경제적·사회적 부흥을 위해 사유화와 재사유화간의 충돌시의 타협적 해결이 모색되었다.

헝가리를 비롯한 동구제국에서는 사회적 궁핍을 초래함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재사유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³⁴⁾ 그러나, 원래의 소유권자를 확인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채택후 소유권이 박탈된 수 많은 토지소유자, 가옥·농장소유자 및 그 상속인에게 시장경제·사유제도의 회복과 더불어 그들의 재산을 환원 또는 보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헝가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49년 6월 8일이후 정부에 의해 몰수된 토지의 보상을 위한 補償法(1991년 9월 발효)은 재사유화의 원칙대신에 원소유자에게 국유재산의 사유화시에 자신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보상증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法은 원소유자에게 보상을 받을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보상은 금전의 형태로는 지불되지 않으며 새로이 사유화된 국유기업의 주식을 구입하여 그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표시한 증서를 제공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보상가액은 토지의 면적과 몰수로 인하여 상실된 영업상의 가치 등 토지의 가치에 기초하여 산정된다.³⁵⁾ 그러나, 국유재산관리청에 의하여 국유재산사유화 계획의 일환으로 처분된 토지의 경우에는 원소유자는 1차적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만을

34) *Hungarian Economic Review*, No.6(1992,4), p.25.

35) *Key Legal Facts for the Foreign Investor in Hungary*, supra no p.11.

가진다. 이로써, 원소유자는 국가소유의 자산 또는 지분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부분적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현재 헝가리 국민이거나 당해 재산이 몰수될 당시 헝가리 국민이었던 자이다.

4) 節次面에서 본 私有化 類型

헝가리의 국유기업의 사유화의 방법은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988년 아래 헝가리 사유화는 그 대부분이 자발적 사유화절차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으며 1990년 상반기까지 100개 이상의 국유기업이 이 절차에 따라 사유화되었다.³⁶⁾ 자발적 사유화는 국유재산관리청의 승인을 요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도 여전히 수행되고 있다. 사유화방법 중 기업이 투자가와 협력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방법은 외국인 투자가에게 가장 관심을 끄는 사유화 형태이다. 국유기업의 기업협의회가 수익성과 사유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업을 분할하거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개조하여 사유화를 추진하게 된다. 헝가리의 내국인 또는 외국인은 합작투자에 의하여 또는 인수에 의하여 사유화에 참여한다. 합작투자방식에 의하면, 국유재산관리청이 합작신청서를 접수한 후 승인 또는 기각하게 되는 바, 승인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인수에 의하는 때에는, 외국인 또는 헝가리 내국인이 국유기업과 인수에 대하여 협의한 후, 국유재산관리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국유재산관리청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매각을 승인하거나 인수신청을 기각하거나 또는 그 대안을 제시한다.

사유화방법의 두번째는 국유재산관리청이 직권으로 사유화대상기업을 선정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사유화방법에서 국유재산관리청은 사유화계획에 따라 20-30개의 대상 기업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기업군의 사유화방법 예

36) *Ibid.*

천대, 공채발행, 경매, 근로자지분배당, 외국인의 지분제한 등을 결정한다. 이와 더불어 개개의 기업에 대한 사유화의 타당성을 조사하게 되는 바, 이 때 서방의 투자은행, 법률가, 회계법인 등 자문회사를 참여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매각형태를 결정하게 되며 헝가리의 내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가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된다. 국유기업의 재산의 매각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첫째, 주식의 발행과 매각을 통해 국유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되, 기존의 경영권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둘째, 당해 국유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주식시장에 상장될 수 없지만 경쟁력이 높아 중자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 자산을 한정된 투자가집단에 매각하는 방법이며 주로 외국인 투자가에게 적용된다. 세째, 국유기업의 사유화과정에서 경영자와 근로자에게 기업지분의 일부(15%이하)를 매각하여 그들에게 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네째, 입찰과 경매를 통해 기업을 매각하는 방법도 이용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사유화의 세번째 방법중에는 헝가리의 내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가가 주도적으로 국유재산관리청과 특정 국유기업의 인수에 대해 협의하는 형태가 있다. 인수하고자 하는 측은 주도적으로 기업인수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국유재산관리청은 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유화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는 바, 이 때 서방의 투자은행, 법률가 및 회계법인이 자문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유재산관리청은 인수대상기업과 사유화조건에 관해 협상을 하게 된다. 기업협의회에서 사유화에 찬성한 경우, 국유재산관리청은 기업정보와 재정보고서를 입수하여 인수하고자 하는 측에 사유화의 조건을 제시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인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5) 西方企業의 國有企業私有化 參與

헝가리는 다른 동구제국과 비교해 볼때, 서방기업의 국유기업인

수에 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유기업의 채무문제 및 외국인의 토지소유문제 등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장애가 가로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관리청은 형가리측의 지분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을 과대평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등 서방기업에 의한 국유기업 인수에 대한 통제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형가리는 1991년 5월부터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촉진하고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기업지분 100% 소유를 인정하게 되었다. 서방기업이 국유기업의 사유화에 참여하는 형태는 합작투자에 의한 인수방법이다. 한편, 국유재산관리청은 기업사유화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많은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반면에, 외국인투자가들은 회계방법의 차이, 주식시장의 원시성, 시장조건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국유기업의 자산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유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가들은 국유기업의 자산평가, 인수기간, 관련법규 및 시장확보와 경제성 등을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신탁청은 1991년 초부터 외국인 투자가에게 정보·언어·소재지에 관한 불리한 점을 제거하고 유럽공동체역내의 기업 그리고 일본의 기업들이 구동독지역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과 동구체국의 해결책은 차이가 있다. 동구체국이 서방투자가 특히 독일의 투자가들에게 국유기업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은 1992년 2월 제네바 소재의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가 경고한 바와 같이 근거가 있다. 왜냐하면 동구체국에서 외국인(공동)소유 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창조된 가치의 상당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이다.³⁷⁾

그러나, 외국인투자는 그것이 작업장 확대외에도(*Verlängerte Werkbänke*) 기업발전·경영 그리고 상품판매를 겨냥하는 것인 한

37) Herwig Roggemann, *supra* note 1, p.47.

동구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외국인투자는 필요한 외화를 반입하게 되고 또한 자본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헝가리는 1990년이후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의 산업국유화정책의 영향으로 현재까지도 헝가리경제부문의 상당부분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거나 운용되고 있다. 특히 국유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분과 권리,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소유권 법제의 미확립, 자본부족과 개인과 기업의 낮은 구매력, 투자유인제도의 불충분, 금융·자본시장의 낙후된 서비스제도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국유재산의 사유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의 활동과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3) 業改造、私有化의 障碍要因

1) 所有權者의 確認과 讓受人の 決定問題

국유기업의 전환과정에서 법체계의 미비로 소유권 행사자가 누구인가라는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국유기업의 경영자들이 법체계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기업을 시가 이하로 국내외에 매각하거나 기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³⁸⁾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주식회사로의 개조를 거부하는 등 국유기업의 사유화과정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여 주식회사로의 개조는 기대한 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유재산관리청(State Property Agency)이 설립되어 소유권 귀속과 재산평가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들어와 많은 국유기업이 경제적 사단(즉 회사)으로 개조되

38) *Ibid.*, p.49.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상의 자산액은 새로운 회사의 자본금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거의 경영관리권은 1989년의 기업개조법(Transformation Act)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소유권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기업의 개조 및 소유권인정 과정에서 몇 가지 난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소유권자의 확인 없이 소유권이 양도 될 수는 없는 바, 사회주의적 소유제의 불명확한 개념과 재산의 불명확한 법적 상태로 인하여 그러한 확인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사회주의적 소유권은 대단히 다양한 원인(국가의 법적 승계, 수용, 법률행위)으로부터 발생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의 법적 근거는 구체적인 재산과 관련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1987년 9월 1일 전(즉 토지법 발효전)에는 각각의 국가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는 하나의 경영관리자만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부동산이 數個의 국유기업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數個의 기업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이용하고 계약을 통해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 때도 역시 경영관리자는 하나였다. 그러나 경영관리자로서 부동산을 관리한 국유기업이 회사로 개조되는 경우 그 국유기업은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의 자본금으로 당해 부동산을 출자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예컨대 건물)의 건축 또는 유지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온 다른 기업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새로운 회사가 당해 부동산을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 가액 전부가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어 舊국유기업의 지분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외부의 합작당사자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결국 그 해결책은 이해 당사자들이 경영관리권의 분배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다. 토지법 제14조는 이러한 합의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기업은 기업개조시에 부동산의 건설(조성), 유지 또는 이용을 위해 각자가 지불한 비용에 따라 경영관리권의 지분을 갖게 되고, 새로운 회사는 그러한 지분비율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게 될 것이다.

기업개조법 제17조는 개조의 조건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의 경영관리자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새로운 회사의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이해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부동산 전부가 개조의 결과로서 새로운 회사의 소유가 된다고 할지라도 다른 이해 당사자의 이용권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정된다. 이 점은 헝가리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다. 개조된 기업과 외부투자는 토지등기부상에 등록된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새로운 회사가 법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토지등기부는 계속하여 국가가 소유자이고 - 이미 소멸된 - 국유기업이 경영관리권을 갖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회사는 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저당권설정하는 것을 방해받을 수 있다. 토지등기부상의 새로운 사항에 관한 등재를 위해서는 소유권 변화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資產의 評價와 債務

기업의 개조와 사유화의 제1단계에서는 누가 즉, 어떠한 조건으로 지분 또는 기업 전부를 취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고 제2단계에서는 민법상의 계약을 통한 그러한 결정을 집행하게 된다. 특히 개조되어 사유화되는 기업의 재산에 대한 매매가격과 그 기초가 되는 가치평가(Bewertung)는 체제전환시기에 특히 다툼이 많은 문제이다. 이러한 평가문제는 조직의 해체, 기업의 재구성 및 인원의 감축·재편성과 더불어 모든 동구제국의 기업에 대하여 대단히 큰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취약한 하부구조(Infrastruktur) 및 전체적인 법체계와 통화체계의 불안정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러한 다툼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진다. 원칙적으로 기업의 매매가격은 합당하고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계획경제체제에서의 결산방식은 현실과 괴리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으로 토지, 건물,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개조와 사유화를 위해서는 매매와 투자의 이해관계자에게 실제의 가격·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원 및 경영자에 의한 기업인수시에는 노동자주식(Belegschaftsaktien)·지분에 대한 실제가격을 확정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덤평가격”이나 “과대평가된 가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구동독지역에서는 소유권변동조약(Einigungsvertrags)과 마르크貨-설립대차대조표법(DM-Eröffnungsbilanzgesetz)에 의하여 기업의 자산을 평가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여 동독지역의 기업들은 1990년 7월 1일까지 (그 중 중·대형의 유한회사의 경우는 1990년 10월 31일까지) 마르크화로 설립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마르크貨 設立貸借對照法의 1991년 12월 20일 개정법은 개조된 기업의 연말결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본관계의 새로운 확정내용을 상업등기부 등재를 위하여 1992년 12월 31일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모든 유한회사는 同日字로 해산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평가기준·방법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舊동독지역의 기업들의 모든 재산(또한 채무로서의 재산)은 독일의 상법규정에 따라 재평가되어야 했다. 이러한 재평가작업은 1990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개별적 평가원칙에 따라 행하여졌다. 원칙적으로 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가격을 확정할 수 없었던 토지 등 거래가 엄격히 제한받았던 재산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기는 하지만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을 기준일 현재로 작성되어야 할 설립대차대조표에서는 미처 감안할 여지가 없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재산에 대한 평가작업에 앞서 장래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의 對동구수출중단(그 원인은 1991년 1월 1일 이후 부터는 거래가 태환성 루블화가 아니라 독일마르크貨로 이루어져야

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을 감안해 볼 때, 그러한 진단이 얼마나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운가는 쉽게 짐작이 간다. 이와 같이 재산 평가의 문제는 수많은 불확실한 요소에 근거한 것이었고 특히 불확실한 요인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사유화에 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동구제국에서의 가치평가문제는 이와 대단히 유사하거나 부분적으로는 훨씬 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기업의 과중한 채무도 기업개조와 사유화에 대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³⁹⁾ 구동독지역에서도 신용제도(Kredit-System)의 붕괴로 인하여 기업의 채무가 가중되었으며 신뢰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개조기업에 의한 채무인수도 불가피하였다.

(4) 企業의 改造와 私有化의 展望

헝가리 정부는 437개 소규모 국유기업의 사유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1992년 5월 5일 130개 민간 컨설팅회사를 통해 중간 규모의 278개 국유기업의 사유화에 착수하였으며, 대규모 국유기업의 사유화도 민간 컨설팅회사를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헝가리 정부는 1992년 5월 28일 국유기업의 사유화 과정에서 외국기업보다는 국내투자가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유기업의 매각에 있어 입찰가격이 비슷할 경우에는 국내투자자에 매입우선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을 매입할 능력이 없는 국내투자자에 특혜임대 내지 선택매매권 부여 등으로 지원하고, 1992년중의 예상되는 사유화가액 570억 포린트 중 160억 포린트를 국내투자자에게 재정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헝가리 사유화 정책은 국내투자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국영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주식으로 국민들에게 분배하는 체

39) *Privatisa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supra note 5, p.4.

코슬로바키아의 '쿠플체 사유화' 계획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헝가리 정부는 대학과 같은 공공기관에 국유기업자산을 배분할 예정이므로 사유화 정책의 방향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헝가리 정부의 사유화정책 방향전환은 정부와 사유화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1년 상위 10개 국유기업 중 9개사가 서방기업에 매각되었고 지난 2년 동안 국유기업의 대부분이 외국법인 투자자에게 매각되었다. 이에 대해 헝가리 국민들은 외국자본의 국내침탈을 경계하게 되었고 경기침체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결국 집권당인 헝가리 민주포럼은 정부에 경기부양책의 실시를 촉구하게 되었고 정부가 이러한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사유화과정에서 국내투자가우선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동구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약 60%인 35억 달러가 헝가리에 유입됨에 따라 헝가리의 GNP 중 민간부문의 생산이 25~3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헝가리 사유화 계획이 어떻게 추진될 것이며 또한 헝가리 진출을 꾀하는 외국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1992년 5월 헝가리 정부는 1948년 이후 공산당 정권하에서 화폐의 주조뿐만 아니라 귀금속이나 보석류의 가공을 독점하고 있는 조폐국의 분할 및 재편과 골동품 경매사업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BAV사의 사유화를 결정하였는데 이 사유화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형태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國家所有로 남게 될 國有企業의 財產의 管理、保護

(1) 國有企業法의 立法背景과 關聯 規定

1989년 5월 30일 헝가리의회는 「경영사업조직 및 경제적 사단(회

사)의 개조에 관한 제13호 법률」(기업개조법), 「국유기업에 관한 1977년 제6호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제14호 법률」, 「협동조합에 관한 1971년 제3호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제15호 법률」 등 3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러한 3가지의 법률은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지니며 특히 1989년 1월 1일에 시행된 「회사법」에 규정된 회사제도를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회사법을 축으로 하는 개혁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망라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회사법을 축으로 하는 개혁이라 함은 영업과 경쟁의 자유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사업조직 및 경제적 사단의 개조에 관한 제13호 법률」은 국유기업의 「사유화」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에 속하는 것이며 「국유기업에 관한 1977년 제6호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제14호 법률」 및 「협동조합에 관한 1971년 제3호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제15호 법률」은 조직의 실체적 구성을 규율하는 것이다.

「국유기업에 관한 1977년 제6호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제14호 법률」(이하 “국유기업법”이라 한다)은 「회사법」 초안작성이 시작된 1987년 말에 이미 그 필요성이 인식되어 1988년 가을부터 초안작성이 개시되었고 그후 의회의 각종 위원회 및 專門諮詢委員會에서 많은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이 모색되기 시작할 당시의 시급한 과제는 「資本感賞」과 「資產(増大)에 대한 관심」을 결여한 국유기업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감각과 관심을 환기시킬 것인가였다. 종전의 지배적인 견해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관심을 갖지 아니한 기업에 「자주관리체제」(1987년 말에는 국유기업 전체의 75%까지 보급)를 구축함으로써 노동자에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기업의 주인이라는 점을 자각시키고, 그 효과로서 경영과 생산에서의 기업가정신을 배양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현실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⁴⁰⁾

이리하여 자주관리는 기업을 소모시키는 임금인상의 수단으로서, 또한 怠業을 원인으로 하는 면직을 저지하는 수단으로서, 다시 말

40) 島村博, *supra* note 12, p.75.

해서 기업의 성과 및 발전과는 무관한 노동자에 의한 무위도식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한 「자주관리체제의 전면적 해체론」이 유력한 견해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그러한 해체의 추진이 전통적인 경영관리체제로 역행함으로써 개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인가, 또한 자주관리제도가 소규모기업에서는 비교적 양호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어느 정도까지 자주관리체제를 해체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자주관리체제의 확립을 통해 제거하고자 한 각종 모순은 원천적으로 잔존하게 되었기 때문에 稟稅·財政監督廳(APEH)에 의한 영업이익세법 및 기타의 세법을 통한 강제적 방법에 의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가정신을 활기시키는 것은 어느정도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국유기업의 - 자주관리체제의 존재여지가 없는 - 회사화라는 조직변경만으로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자명하였다. 노동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자주관리체제를 청산하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그들의 생활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정을 탕진시키는 한이 있어도 임금을 인상시켜야 하며, 이 요구를 실현하는 합법적 무기가 자주관리 자체이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수년동안, 전체기업의 1할이 매년 경영부진으로 도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전환되지 아니하고는 노동자들에게 생활보호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자주관리제도를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결코 기대할 수 없었고 「資本感覺」과 「資本에 대한 관심」이 활기될 여지나 조건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많은 국유기업을 사유화하고 자주관리체제가 적용될 기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수 밖에 없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企業改造法은 파산에 직면한 국유기업에 대한 국가에 의한 개생의 요건으로서 사유화를 규정하고 있다. 국

유기업법의 개정범위 또한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회사로의 조직변경이 크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1988년 11월 대폭적인 개정,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폭개정할 것으로 예정되었다. 이와 같이 국유기업의 회사로의 조직변경 경험을 축적한 후 1991년에 1977년의 국유기업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국유기업법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국유기업법은 예정을 앞당겨 기업개조법과 같은 일자에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국유기업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행정의 감독하에 둘 필요가 있는 기업유형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완전한 자본주의체제를 정착시키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기 곤란한 공익기업 및 국방의 관점에서 민영화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의 기업을 국가가 경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기업들은 국유기업으로 존속하게 되며, 따라서 개정된 국유기업법은 특정한 기업群에 대한 관리와 감독과 관련된 규범의 유지라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91년 민법상의 사회주의적 규정을 개정하였는 바, 모든 "사회주의 소유" 형태를 폐지함으로써 국가의 모든 특권을 박탈하고 국유의 삼립과 토지가 이제는 매각될 수 있게 되었지만 매각될 수 없는 국유재산의 범위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이러한 매각불가능한 국유재산도 양허법(1991년 5월 30일 발효)에 의하여 그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게 되었다. 양허법은 양허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활동을 정하고 있는 바, 그 대부분이 그러한 국유재산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가행정관리하에 있는 기업은 국가의 소유자로서의 자격과 권력의 소유자로서의 자격의 분리에 입각하여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 다만, 경쟁법은 그 입법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국유기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체제에 주목하고 있는 바, 사유기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유기업을 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로 개조함으로써 문제의 소재 여지 그 자체를 없애고 (다시 말해서 해결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아울러 비교적 소규모인 경영에 한하여 자주관리체제를 존속시키는 것으로 귀결짓게 되었다.

(2) 恒久的인 國家所有로 남게 될 企業財產의 管理와 利用에 관
한 法案

국유기업을 관리하고 당분간 국가소유로 남게 될 재산을 보호하고 사유화된 기업에서의 국가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한 새로운 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률인 『항구적인 국가소유로 남게 될 기업재산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안』이 1992년 말 현재 헝가리 의회에서 검토 중이며, 이 법안은 국유재산(관리)주식회사의 설립을 예정하고 있다. 많은 분야에서 국유기업이 사유화될 예정이지만 통신·에너지·군수산업 등은 사유화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바, 문제는 이러한 산업에 속한 국유기업의 대부분이 효율적 경영의 미비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⁴¹⁾ 이에 따라 헝가리 정부는 국유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유기업의 사업구조개편과 조직의 효율성 제고, 경영의 위임, 국유재산 관리기구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 법안에 의하면, 이 법안이 어떠한 재산이 국가경제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국가소유로 남도록 보장하고 있는 경우 또는 어떠한 재산이 국민 일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 경우, 그러한 재산은 국가재산주식회사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택하게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업초기년도에는 위탁된 재산의 수익률이 극히 낮다는 각국의 경험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예산에 의하여 운영되

41) Robert Szakal, *supra* note 28, p.19.

지 아니하기 때문에 용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실제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 국가재산관리주식회사는 국가만이 소유권을 갖는 1인회사이며 원시정관은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며, 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재산관리주식회사는 소유자인 국가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배당금의 재원은 (유보금을 공제한) 세전이익과 면세소득의 합계이다. 배당의 규모는 연간예산으로 정하여지게 되며, 국가재산관리주식회사의 총수입이 예상에 의하여 요구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잔여 수입을 국유기업의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국가재산관리주식회사의 재정운용은 국가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된다.

한편 항구적인 국가소유로 남게 될 재산을 보유하는 경제조직의 범위에 대하여는 헝가리 정부가 명령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 국가재산관리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은 항구적 국가소유에 속하는 주식으로 화체된다. 국가는 경제조직(기업)의 개조를 통하여 설립되는 일정한 회사에 대하여는 배타적인 지분을 갖지 아니하며, 국가재산관리주식회사는 그러한 회사에 외부 기업가를 참여시켜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한 회사의 주식(또는 영업지분)은 항구적 국가소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개조후 매각된다. 이상과 같은 사유화절차는 향후 헝가리의 경제 운용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第4章 헝가리의 主要 經濟改革關聯法制

1. 競爭法

대외경제개방의 제3단계에 들어선 사회주의국가의 국내경제제도의 개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헝가리, 폴란드 및 불가리아의 경제제도를 볼 때, 지령型계획경제로부터 誘導型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의 제정·개정 작업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특히, 각종 형태의 경제조직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여 정한 법규정에 따라 소유형태의 구별(예컨대, 전인민소유(즉 국가소유), 협동조합소유, 사적 소유 등)을 보다 구체화되며, 그 소유자의 법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경제주체로서의 동등성을 보장함으로써 소유관계를 개혁하고 있다. 바꾸어 말해서, 지금까지 국유기업에 대해 보장되었던 지배적 또는 우월적 지위를 박탈하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였던 국유화정책으로부터 사유화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는 독점적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었다.

1960-70년대의 기업합동화라는 불합리한 자본효율성 제고방법으로부터 자유가격제도에 의한 시장경제제도의 확대를 통한 합리적 자본효율성 제고방법으로 전환(다시 말해서, 소비자우선의 경쟁원칙을 도입함으로써, 과거와는 달리 소비자에 대한 생산자의 독점의 완화 내지 폐지하는 것)하게 됨에 따라, 카르텔규제 및 독점금지와 같이 전통적인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제기되지 아니 하였던 시장경제의 질서유지를 위한 분야에 관한 법령이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에 의한 자본조달제도의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그 대신 새로운 자본조달시장(공·사채거래시장과 주식시장)의 설치(소비자가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생산에 참여하게 되었고, 자본가계층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자본이

동은 기업의 성과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고 국유기업의 우월성을 전제로 한 자본조달의 불합리성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면이 중요시되었다.

이상의 혁신적 개혁정책에 따라,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국가의 지위와 경제주체로서의 국가의 지위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짹트게 되었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각종 입법에도 반영되고 있다.¹⁾ 그러나 국가는 당연히 공권력의 주체로서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감독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법령에서 도 이러한 국가기능의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사업주체에 소유권이 인정되고 재산에 대한 처분의 권리도 인정되지만, 그러한 권리는 공익의 필요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제의 발전의 기능질서는 경영사업활동 및 경쟁의 자유라는 근거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 경영활동의 조직적 제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사회적 소유물의 소유자로서의 국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또한 국민 전체의 이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해서,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공농업의 전면적인 국유화라는 전통적 관념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헝가리에서는 특히 1990년 출범한 헝가리민주포럼정부의 경제체제 전환조치의 일환으로 입법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고 이러한 입법들은 고전적인 스탈린식 모델에서 더욱 이탈한 것이며, 그 대부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1991년 1월 1일 발효한 몇가지 법령들이 있다. 그 중 경쟁법은 시장경제체제의 정착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국유기업 및 일부기업의 독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반독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바, 담합판매, 영업비밀의 침해 등 부당한 경쟁의 금지와 소비자 보호, 독점적 지위와 카르텔협정의 금지, 합병과 분할의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

1) 1991년 개정 민법도 국유기업의 특권을 폐지하고 있다. *Hungarian Economic Review*, No.7(1992.4), p.25.

다. 이 법에 의하여 부당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경쟁청(Office of Economic Competition)이 설립되었다. 또한, 1989년부터 임금상한선을 철폐하는 등 임금정책을 전반적으로 완화된 바 있고, 가격자유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1990년의 농산품 및 가공식품의 가격자유화율은 90%에 달하였다. 현재, 정부에 의해 가격이 통제되는 품목은 일부 공공서비스, 요금 및 식품, 에너지 등에 한정된다.

뿐만 아니라, 1991년 1월 1일부터 국제무역에 대한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됨에 따라(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활동이 법인, 비법인 경제조직 및 자연인에 의하여 자유롭게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텁평방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규칙이 1990년 정부의 명령으로 제정된 바 있다.

2. 會社法

(1) 制定 背景과 效果

1988년 제정되어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회사법은 소유제도개혁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로서 국유기업 위주의 기업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여러 가지 소유형태의 회사가 동등한 조건하에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촉진시킨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회사 설립 및 이들 회사의 경영활동과 국가에 의한 기업활동규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회사의 설립이 가속화되고 회사경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회사간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사적 소유와 공적 소유가 혼합된 소유형태를 인정함으로써 혼합소유제에 기초한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회사법은 일반인의 금전적 재산의 자본화 인정, 자본소득

및 배당권의 인정 내지 합법화, 주식발행의 허용, 외자 도입의 원칙적인 자유화 등 자본시장발전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회사법은 사인들도 회사의 경영에 참가함이 없이 자유롭게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등 경제의 운영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다양한 형태의 회사설립을 허용하고 또한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자본의 대규모유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2) 최근의 會社法 改正內容

회사법은 그 제정이후 헝가리내 외국인투자보호에 관한 법률, 종권법, 양허법 및 개인기업법 등 몇개의 법령을 통해 부분적으로 개정된 바 있다. 특히 1991년 회사법의 49개조를 수정함으로써 약 150개조에 영향을 미치는 대폭적인 개정을 하였다.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조문들 중에는 체제상의 변경에 불과한 것, 종전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내용을 추가한 것 그리고 종전의 규정을 본질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에서 세번째의 범주에 속하는 규정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종전보다 훨씬 광범하게 감독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① 모든 주식회사, ② 사원수가 25인 이상이거나 최초의 자본금이 20,000,000포린트이상인 유한회사, ③ 연평균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는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전면적인 국가공증인제도는 폐지되고 사적인 공증인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회사 설립문서(원시정관)는 국가공증인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²⁾

회사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회사관련규칙중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회사는 헝가리 국내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다른 회사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명칭을 갖도록 한 점이다. 이에 따라 향후 그 명칭이 대단히 다양해지고 추상성을 지닌 것들이 많이 등

2) *Ibid.*, p.18.

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회사를 설립등기하기 전에 형가리에서 이미 등록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회사명칭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형가리 전국회사명칭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회사가 설립중에 있다.³⁾

회사등기부 및 부속문서상의 자료는 완전히 공개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차대조표 등 일부 문서는 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 등기법원 및 회사의 적법성감독에 관한 법률의 1989년 시행령에 신설된 제3조 제4항은 외국인 회사의 형가리내의 상업대표사무소와 그들의 정보·서비스제공사무소 명칭에는 반드시 당해 외국인회사의 명칭을 포함시키고 그 대표성(사무소 또는 지사)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시정관의 변경도 종전보다 용이해졌다. 회사의 최고기관(사원총회, 주주총회)이 그 변경을 의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원이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서명하는 절차도 폐지되었다. 다만, 그 변경사항은 상업등기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관의 내용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심각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빈번하였던 바, 의무규정과 허용규정이 뒤섞여 있었고 사원 내부관계에 관한 규정과 제3자에 영향을 주는 규정도 명확히 구별되지 아니하는 등 대단히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회사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는 바, 정관의 내용중 임의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사원 내부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국한되었다.

금전출자의 납입이 지체된 경우, 당해 사원(주주)은 경제조직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지불하도록 개정하였다. 현재, 이러한 이자율은 은행금리의 2배인 년리 44%이다. 정관에는 이러한 이자율외에 위약금의 지불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전의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해 당사자는 회사의 등록후에도(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경우외에도) 정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 활동의 안정성과 상업등기부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

3) *Ibid.*, p.20.

능한 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회사정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① 필수적인 실체적 요건의 결여, ② 최소설립자본금의 부족 또는 법정발기인의 수의 부족, ③ 회사 목적의 위법성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1인이 2이상의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어떠한 자가 수개의 회사에서 임원 또는 감독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된 제161조에 의하면 1992년 1월 1일부터 집행가능한 재산 그리고 지적 소유권 또는 가치있는 권리(valuable rights)만이 제3자의 승인없이 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현물출자로 간주된다. 개정전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요건이 추가되었다. 첫째, 집행가능성(enforceability)이다. 즉 자산은 반드시 집행가능하여야 한다. 지적소유권과 가치있는 권리의 출자의 경우 그러한 권리의 소유자의 동의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제3자의 동의없이 채권자에게 면제가능하도록 매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집행가능하지 아니한 가치있는 권리(영업권 또는 노우하우)에 대하여는 집행가능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관행이 점차 굳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지적소유권, 기술적·지적 창조물의 전형적인 예는 특허가능한(특허받은) 창안물이다(발명의 특허보호에 관한 1969년법).

(3) 會社의 形態와 特質

1) 모든 會社에 적용되는 共通規定

회사법은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聯合 및 공동기업 등 6가지 회사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다시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와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로 구분될 수 있다. 연합과 공동기업은 법인으로만 구성되는 회사형태이다. 이상의

여섯가지 형태의 회사는 정관·자본금·회사등기·주무관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회사는 회사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설립될 수 있다. 회사의 원시정관은 구성원에 의하여 작성되고 공증인이 인정한 증서이며, 이 증서가 “회사의 정관”이 되고 그 내용은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설립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회사의 자본은 구성원의 금전출자와 현물출자로 형성되고 현물출자는 지적 소유권과 제3자의 승인없이 양도 가능한 권리 등으로 이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금전이나 기타 가치있는 권리에 대해 지분이 인정되며 외국인투자가가 지분의 취득을 위하여 재화로 출자할 수도 있다. 4)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는 최소자본금의 요건이 있다.

설립등기일은 법적으로 회사설립일이 되며 회사의 정관작성일까지 그 효력이 소급된다. 법원에 대한 설립등기 신청은 정관작성일로부터 30일내에 행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지분의 전부 또는 과반수를 소유하는 회사의 설립 또는 외국인의 회사지분을 과반수 취득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이 회사에 참가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특정한 영업활동 수행에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외국인이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도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2) 有限會社

유한회사는 영국의 private company와 유사하다. 양자는 지분의 양도시의 (새로운 사원의 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先買權이 인정되고, 그 지분이 주식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증권거래소에서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헝가리의 유한회사는 1인회사의 형태로도 존속할 수 있다.⁵⁾ 유한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1,000,000포린트

4) 한가지 유의할 점은 會社檢査人이 현물출자를 평가하는 경우 과대평가 할 우려도 있다는 사실이다.

를 하회할 수 없고 금전출자액은 등기된 자본금의 30 % 또는 500,000포린트를 화회할 수 없다. 회사등기전에 현물출자는 완전히 그리고 금전출자는 반액이상 이행되어야 하며, 금전출자의 잔액은 회사등기일로부터 1년내에 전부 이행되어야 한다. 1인회사의 경우에는 등기시까지 금전출자와 현물출자의 전부가 이행되어야 한다.

사원총회는 매년 1회이상 소집되는 유한회사의 최고기관이며 총회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외에도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다.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사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원이 아닌 자도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업무집행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회사를 대표한다. 업무집행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도 있으나 그 제한은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감사위원회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임의적 기관이지만, ① 자본금이 200,000포린트를 초과하는 경우, ② 사원의 수가 25인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정규근로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원총회에서 선출된다. 회사의 정규근로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중 1인은 근로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제3자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할 수 없으나,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제기된 회사의 소송에서는 회사를 대표한다.

유한회사의 사원이 회사의 업무집행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회사법의 개정된 조문에 의하여 - 그러한 업무집행활동의 법적 관계(위임, 고용 등)를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상의 부수적 업무집행활동으로 간주될 것이다. 정관에는 그러한 협력에 대한 보수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

5) *Key Legal Facts for the Foreign Investor in Hungary*, (London:All Overy, 1992), p.2.

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완전히 준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관 작성시에 사원들이 어떠한 형태와 어느 정도의 업무집행활동이 자신에게 요구되는가 또한 그러한 업무집행활동이 어느 정도의 금전적 가치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관이 작성된 후, 이러한 문제를 확인한다 할지라도 그 때마다 정관을 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관에는 “사원의 업무집행활동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또는 위임에 의하여 요구될 수 있다. 그 보수는 사원총회에서 결정한다”라는 탄력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회사의 사원,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그 근친 및 종업원은 회계검사인에 임명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사에 의해 고용될 수 있으며 회사의 사원도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부수적 업무집행활동으로서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위원자격은 통상적으로 위임에 의하여 부여된다. 종전의 회사법 규정에 의하면 지분이 사원간에 양도되는 경우 회사의 사전동의를 요하였으나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3) 株式會社

주식회사는 영국의 public limited company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유한회사에 비해 출자자가 다수이며 더욱 구체화된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며, 1인회사의 형태로도 존속할 수 있다.⁶⁾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모집설립과 발기인이 모든 주식을 인수하는 발기설립이 있다. 자본금 총액이 40,000포린트를 하회하거나 금전출자 총액이 등기된 자본금의 30% 또는 5,000,000 포린트를 하회할 수 없다. 주식총액은 등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전부 납입되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이며,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6) *Ibid.*

정관의 개정, 자본의 증감, 주식의 전환과 주식에 부가된 권리의 변경, 회사의 합병·분할·조직변경·해산에 관하여 결정하는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되어야 하며, 주주의 과반수가 출석한 때에 의결능력을 가진다. 제1차총회가 의결능력을 가지 못한 때에는 제2차총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점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2차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수에 상관 없이 항상 의결능력을 가지게 된다. 주주총회는 3인 이상 11인 이하의 이사회의 구성원(이사)을 선출한다. 이사는 회사를 대리하여 서명할 권한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매년 1회 이상 재무제표와 영업계획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선출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정규근로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은 근로자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주식회사는 발기인의 주식인수 또는 주식의 공개모집에 의하여 설립된다.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그 발기인들이 자신들이 합의된 비율에 따라 모든 주식을 인수한다는데 합의하게 되며, 공개모집을 위한 안내서를 공개하거나 창립총회를 소집할 필요도 없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원시정관에 정한 자본금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운영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발기설립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는 기타 모든 형태의 설립은 모집설립에 의한 것으로 본다. 모집설립에 대하여는 회사법 외에도 1990년 증권법(Securities Act)의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이 공개모집되고 그 후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발행인(또는 그 피승계인)이 1년이상 활동하였을 것, 둘째, 원시정관에 대하여 국가증권감독청의 승인을 받았을 것, 세째, 원시정관이 발행인(또는 배급업자 또는 중개인)에 의하여 법에 정한 양식과 내용으로 공고되었을 것.

모집설립은 원시정관의 공고와 더불어 개시된다. 원시정관의 공

고자는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 간주된다. 발기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며, 원시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회사법 제252조 제3항과 증권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다. 발기인(또는 배급업자)은 원시정관을 증권감독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은 30일동안 유효하며 승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주식의 공모는 무효이다.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주식의 발행인(또는 배급업자)은 증권감독청의 승인번호, 일자 및 양식 등을 주식청약자에게 그 청약을 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고는 청약개시 7일 이전에 2개의 전국지와 주식거래판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위반한 경우 증권감독청은 벌금을 부과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공개모집기간중에 예비주주가 주식청약서에 서명하여 청약서에 기재된 금전의 지불 또는 기타 가치있는 권리(valuable right)의 인도에 합의한다는 청약에 의하여 확보된다.

4) 合名會社

헝가리의 합명회사는 그 사원(partner)이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그러한 활동에 필요한 자산은 partnership의 처분에 맡기는데 되는 영국의 partnership과 개념상 매우 유사하다.⁷⁾ 만약 합명회사가 자연인만으로 구성된다면 그 합명회사는 “경제적 노동공동체”라고 칭한다.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에서 임원도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합자회사와 합명회사에 관한 회사법의 규정은 이러한 회사 형태에서는 주로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장 복잡한 형태의 업무는 합명회사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회사법의 개정전의 제62조에 의하면 합명회사의 자연인 사원은 자신의 업무집행활동에 종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1992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의무는 임의적인 것이 되었다. 물론 그러한 업무집행활동은 회사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행될 수 있

7) *Ibid.*

는 것이며 이 점은 합명회사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사원이 그러한 업무집행활동을 인수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정관에 명기하여야 한다.

회사법의 개정에 의하여 그러한 업무집행협력활동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게 되었지만, 이미 효력이 발생한 정관은 이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아니한다. 회사법은 「업무집행활동은 정관에 근거한 것이며 따라서 고용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집행활동의 방법과 형태는 별도의 계약(노동계약)이 아니라 정관에 규정되어야 한다. 업무집행활동은 회사의 사원자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상의 의무(협력)의 위반은 사원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무집행활동은 자연인만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합명회사의 사원인 법인은 - 그러한 취지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 그러한 업무집행활동의 수행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회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적 협력은 사원자격의 조건이 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은 사원제명의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원은 개인적 협력의 의무외에도 별도의 위임에 의하여 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합자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회사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합자회사에서 유한책임(의명)사원은 실제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상기의 규칙이 적용되며, 따라서 유한책임사원이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원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5) 合資會社

형가리의 합자회사는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며, 그 구성은 1인이상의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과 1인이상의 무한책임을 지는 사

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영국의 limited partnership과 매우 유사하다.⁸⁾ 만약 무한책임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모든 무한책임사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회사로부터 탈퇴할 때 소멸된다.

회계법(Accountancy Act)의 규정에 의하면 합자회사는 매상액이 최근 2년간 어느 1회계년도의 매상액이 50,000,000 포린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단식부기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유한회사는 복식부기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簡易損益差減報告書에는 손익계산서 또는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편이성도 최근 헝가리에서 합자회사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일반매상세(General Turnover Tax)법의 규정에 의하면 합자회사는 현금을 실제로 회수한 후에 매상세를 납부하지만 유한회사는 송장을 송부한 날의 翌月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반환받을 수 없는 청구금(부실채무)에 대한 일반매상세는,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채무를 회수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취소될 수 있다. 1992년 3월 1일 기준으로,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의 소득(다만, 월급여가 8,000포린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의 44%에 상당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유한책임사원은 연간소득 900,000 포린트까지는 10%의 연금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수적 업무집행활동을 수행하는 사원은 그 보수의 10%에 상당하는 부수적 보험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聯合

연합은 외국인투자가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회사형태이며, 同種分野에서 활동하는 복수의 법인으로 구성되는 비영리적 성질을 가지는 회사이다. 연합은 그 구성원의 경영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8) *Ibid.*

경제활동을 조정하고 및 전문적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구성원은 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하여는 무한연대책임을 진다.

7) 共同企業

공동기업은 공동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책임을 지는 합작기업형태의 회사로서, 영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를 찾아볼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가에게는 그다지 중요시되고 있지 않다.⁹⁾

3. 會計法

회계·감사제도의 개혁도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의 하나이다. 적합한 회계제도를 통하여 기업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헝가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전환과 시장경제도입에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¹⁰⁾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회계법도 이러한 취지를 천명하고 있고,¹¹⁾ 기업의 보고서 작성시 국제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기업의 실제 재산과 재정상태가 제시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보고서는 당해 연도의 재무결산,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 기업의 자생력여부, 신용도 및 투자 가치의 유무에 대한 정보를 채권자와 투자가에게 제공하게 되므로 회계자료의 신뢰성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기업의 연간활동과 연말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보고서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이 기본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평가되고 감사의

9) *Ibid.*

10) Robert Szakal, "the Accountancy Act", *Hungarian Economic Review* No.3(1991.8), p.20.

11) 헝가리의 회계제도를 EC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도 개정된 회계법의 입법취지의 하나이다. *Conference on the New Economic Laws*, (Budapest:Ministry of Finance, 1992), p.21.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이 작성된 재무보고서는 회사의 권한있는 기관의 승인을 얻어 등기법원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감가상각비 - 그 결정방식과 상환율 -는 영업이익세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주된 관심사는 자산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이익의 증대가 아니라 자산에 투자한 금전적 가치를 조속히 상환하는데 있었고, 이에 따라 국가로서는 기업이익세로 걸어들이는 재원이 빙약할 수 밖에 없었다. 종전의 회계법은 금전중심의 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실채무와 소각된 주식에 관한 규정은 없었고 감가상각비도 西歐에서 채택되는 비율보다 상당히 낮은 고정비율로 계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계법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성되는 “실질자산” (material asset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비용으로 계산될 수 있는 실질자산의 감가상각율은 기업 자신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종전의 회계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¹²⁾

회사는 每曆年마다 2부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1부는 익년 2월 15일까지, 또 다른 1부는 회사감사에 의한 조정내용과 기타의 소규모 변동을 반영하여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등록된 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차기년도를 위한 상세한 영업보고서도 제출되어야 한다. 외국인이 지분참가하고 있는 회사도 포린트화에 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헝가리인 회계실무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사는 외국통화로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4. 勞動關聯法

12) Robert Szakal, supra note 10, p.20.

(1) 勞動法

회사의 노사관계는 헝가리의 노동법 그리고 기타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회사의 정관과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 기초하여 국민보건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현재 그 비율은 43%이다. 외국인근로자가 헝가리의 의료보호나 국민보건시설의 이용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국민의료기여금은 납부하지 아니한다.¹³⁾ 노동조합의 권리는 헝가리 노동법과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규율된다. 헝가리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의 취업허가증(work permits)에 관한 법규가 199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외국인이 참가하는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취업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며 그외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취업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1992년 헝가리의회는 새로운 노동법(1992년 7월 1일 발효)을 제정하였다. 개정 노동법의 주요 특징은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 협상창구인 직장협의회(Shop Council)를 인정함으로써 이전과는 달리 각 교섭당사자의 자율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는 것이다. 개정 노동법은 기업의 조직변경 및 노동자 훈련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직장협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원만한 노사관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개정 노동법은 모든 형태의 근로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른바, 경쟁원리가 적용되는 분야의 근로만을 규율하고 있으며, 공공관리부문의 고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령(1992년 제13호 법률)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 병원, 정부출연기관에 고용된 공무원의 노동에 대하여는 또 다른 법안이 마련중이다. 종전의 노동법의 규정이 대단히 상세한 부분까지도 정하고 있었던 데 반하여 새로운 노동법은 근로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없애고 노동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

13) *Key Legal Facts for the Foreign Investor in Hungary*, supra note 5

다. 후자는 법정최고근로시간, 초과근무, 법정휴가, 피해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등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기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간의 단체협상에 일임하고 있다. 노사분규에 대한 강제적 관할권을 행사하였던 조정위원회제도도 폐지하였으며, 노사분규는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되, 이에 실패한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개정 노동법은 노사분규에 대한 調整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와 같은 근로자의 기업참여기구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대표적”(representative) 노동조합(근로자의 10% 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노동조합)은 거부권과 같은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해고 또는 사직시에는 통상적으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명시한 것 규정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근로자 해고권을 강화한 것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편, 최근에 헝가리의 내국인의 실업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외국인의 취업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하여, 1991년 10월 17일 두가지의 법령(내부부장관의 명령과 노동부장관의 명령)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헝가리에서 직업을 얻고자 하는 외국인은 특별비자와 취업승인을 얻어야 하게 되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특별비자와 취업허가 없이도 고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가 있는 바, 대표적인 예로서, ① 정부간협정 또는 국제조약에 그러한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 ② 헝가리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과 영사관에 고용되는 경우, ③ 합작기업의 임원에 취임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실상 외국인의 취업은 봉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¹⁴⁾

14) *Hungarian Economic Review*, No.6(1992.2), p.26.

(2) 社會保障法

1992년 제IX법과 No.48/1992 (3월 13일) 정부명령에 의하여 1975년 사회보장법과 No.89/1990(3월 1일) 시행령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 개정내용은 기업가와 근로자 양자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바, 그 목적은 사회보험의 연금기금을 중액하는데 있음을 분명하다. 고용의 개념은 종전보다 훨씬 좁아져서 “법정근로시간”이라는 용어는 그다지 중요하지않게 되었다. 다만, 주당 36시간미만의 고용과 그 이상의 고용을 구분하여 후자를 주된(regular)고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중고용, 분업, 시간제 근무 및 수시적 육체노동간에는(사회보험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고용주는 모든 사적 지급금의 44%에 상당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종전의 일정한 지급금에 대해 사회보장기여금 부과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사회보장기여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봉급, 임금(시간제임금, 수당, 월급, 초파근무수당, 대기성(standby)보수, 퇴직수당) 및 보너스, 장기근속수당, 연말배당, 성과금, 병가시 지급된 평균임금, 현물급여 등이다.

(3) 從業員株式所有制度

1992년 XXV법에 의하여 민법 제 172조e와 양여법(Concession Act)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통신망에 관한 배타적 국가소유권을 폐지하였다. 그 결과 통신시설의 설립·운영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다만, 여기에는 몇가지 제한이 따른다. 1989년 우편·통신법 제1조에 의하여 전화 및 전신장비는 국가소유이거나 국유기업의 재산에 속한다. 후자의 경우 국가의 지분은 50%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우편·통신법 제3조는 통신시설의 운영은 교통·통신·수관리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1992년 7월 14일 종업원주식소유계획(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에 관한 1992년 XLIV법이 발효하게 되었다.¹⁵⁾ 동 법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회사의 종업원이 정부의 후원계획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회사의 일부주식을 공동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신용지불(또는 할부) 후 종업원은 개인소유자 또는 집단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종업원이 종업원주식소유계획에 따라 유리한 조건으로 회사에서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종업원주식소유계획은 종업원의 40%이상이 종업원주식소유계획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에 적용된다. 종업원주식소유제도는 종업원이 국가재산권리청에 요청한 국유기업 개조가 착수됨과 동시에 실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해 회사의 일정한 단위에 대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종업원주식소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종업원 25%이상이 서면으로 3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동위원회는 취득한 재산규모와 거래조건에 관하여 소유자와 협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독립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하게 된다. 관련 회사가 사업타당성조사서를 승인하게 되면, 위원회는 은행에 용자를 신청하거나 소유자에게 할부매입을 요청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총회에 종업원주식소유계획조직의 설립에 대한 승인을 구하여야 한다.

그 다음 단계로 종업원주식소유계획조직의 설립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종업원과 반수의 찬성을 얻어 설립되는 종업원주식소유계획조직은 정관을 작성하고 운영기관과 대표기관을 설치하게 된다. 종업원주식소유계획조직은 공개된 참여자 명부를 법원에 등기하여야 하는 독립된 법인격체이다.

종업원주식소유계획조직이 보유하는 주식은 용자금의 상환이 끝나게 되면 단계적으로 참여자에게 그 소유권이 양도되며 매입금이

15) 법률조문은 Act on Employees' Stock Ownership Programme (Budapest: Ministry of Finance, 1992), pp.5~19.

완불될 때까지는 매각될 수 없다. 종업원주식소유계획조직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참여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용자금 전액(모든 할부금)이 완불되면 종업원주식소유계획조직은 모든 주식의 소유권을 참여자에게 양도하게 되고 경영기관이 3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동 조직의 해산과 자산의 분배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한다. 이로써, 종업원주식소유절차는 중요하게 된다.¹⁶⁾

한편 체코에서는 이미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기업참여라는 미국식 모델로서 종업원주식소유제에 대해 논의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동구제국에서와는 달리 독일의 사유화법은 국유기업의 노동자 또는 종전의 경영인에 의한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대하여 특별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업매각시 그들에게 유리한 지불조건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산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참가방식을 통해 기업을 살려낸 많은 사례가 있으며, 그러한 노동자 경영참여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 왔다.¹⁷⁾ 또한 인민소유재산을 주민에게 평등하게 분배한다는 이념은 신탁법의 서문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는 않다. 경영권매각(Management-buy-out)방식은 독일의 구동독지역에서 상당한 정도로 실시되고 있으며, 유고의 크로아티아 등 다른 동구제국의 입법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5. 破産과 清算關聯法

1986년 형가리 정부는 파산법을 도입하여 18) 경쟁에 뒤진 기업의

16) Róbert Szakál, "the law", *Hungarian Economic Review*, No.10 (1992.10), p.20~21.

17) 예컨대, Sußmuth-Glas주식회사). 그러나, 노동자경영참가가 이와 같이 건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기업의 부실화를 더욱 부채질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Herwig Roggemann "Unternehmensumwandlung und Privatisierung in Osteuropa und Ostdeutschland", *Recht in Ost und West*, Band 36, Heft 2(1992), p.39.

파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업파산에 따른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업수당지급제도를 도입하였다. 파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이 파산대상기업을 쉽게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¹⁹⁾ 그 후, 파산절차, 청산절차 및 和議에 관한 새로운 법이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²⁰⁾ 한편 기업파산법이 발효됨에 따라 국유기업의 파산신청이 속출하고 있다. 부다페스트 지방재판소에 이미 2,000개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는데 헝가리경제연구소는 이 중 100개 기업 정도가 파산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1992년 5월 15일 현재 헝가리 상공부 관할 450개 국유기업 중 102개사가 파산신청한데다 국영건설부문 20개사와 국영상업부문 17개사의 자금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국유기업의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破産法의 관련 규정은 채무기업이 파산을 선언하였을 때, 즉 기업이 채무만기일로부터 90日內에 그 만기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 적용된다. 공식적인 절차는 파산선고가 법원에 의하여 관보에 게재된 때부터 개시된다. 지급유예는 법원의 파산선고후 90일동안 허용된다. 이 기간동안은 회사의 해산 또는 신용의 강화를 위한 어떠한 절차도 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는 임금지급이나 종업원 연금지급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지급유예기간은 채무자와 모든 채권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30일간 연장될 수 있다. 파산관재인(administrator)은 채권자의 비용부담과 청구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다. 채무자는 절차개시일로부터 60일내에 그의 조정안을 제시하게 될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만약 채권자집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청산절차를 개시한다. 채권자는 파산시 이루어진 현저하게 부당한 거래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

18) 島村博, “社會主義の國家企業の破産制度について”, 國際商事法務, Vol. 16, No.12(1988), p.1049.

19) 이에 관하여는 *Conference on the New Economic Laws*, *supra* note pp.19~22.

20) *Key Legal Facts for the Foreign Investor in Hungary*, *supra* note 5

리인의 임명을 청구할 수도 있다.

청산절차는 회사나 국유기업의 형태를 고려하여 지불불능인 기업 자신 또는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다. 채무의 만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파산시 체결된 약정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불불능에는 네가지의 기준이 있다. 법원은 채무자가 사실상 지불불능상태임을 결정하고 기업의 재산을 관리하게 될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직전년도에 기업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는 등 채무자와 채권자는 청산절차기간중에도 기업의 지불가능상태로의 회복에 대한 협력에 합의할 수 있다.²¹⁾ 청산절차의 개시후 2년내에 청산인은 기업의 최종대차 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은 법령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의한 변제를命할 수 있다. 변제는 청산비용과 청산인의 보수, 확인된 채무, 종신년금, 기타 사인의 청구, 사회보장기여금과 세금, 기타 채무와 이익의 순서로 행하여진다. 변제후의 잔여재산은 회사의 정관에 따라 분배된다. 기업의 재산이 청산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식청산절차에 의한다.

6. 租稅關聯法

(1) 租稅制度의 改革과 特徵

1988년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1989년에는 법인세를 도입하였고 동시에 자본세, 수입세, 투자세, 市發展基金 등을 철폐하였다. 1988년 1월 형가리 정부는 서방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제를 도입하여, 부분간 통일된 조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 가격 형성의 왜곡요인을 개선하였다. 부가가치세는 0%, 15%, 25%의 세가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서비스, 운송서비스, 중간재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상품에 대해서는

21) *Ibid.*, p.14.

2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기업이 수출, 투자 및 원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와 수출품, 생활후생 및 소비정책 측면에서 정부의 보조를 받는 보건, 공공교육, 스포츠 및 금융서비스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88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헝가리의 영업이익세에 관한 법률은 1988년 10월 5일 「회사법」과 함께 국회에 상정되어 법률안의 제출 철회, 초안의 제작성, 11월 국회에의 제상정등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었다. 당 - 치안기구 - 어용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국민대표의회」가 활동하던 80년대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었다. 이와 관련된 논쟁이 문언해석의 불확실성, 규정간의 충돌,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의 기술상의 결함을 표면상의 논거로 하여 전개되었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대한 지나친 「조세우대조치」 및 이 법률에 규정된 높은 「이익세」(제12조, 헝가리의 통화인 포린트貨는 엄격한 變動相場制度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구에서는 「金貨」에 가까운 취급을 받고 있었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도 논쟁을 더욱 가열시켰다고 할 수 있다. 헝가리 주변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영업이익세」율은 오스트리아에서 30 - 55%, 이탈리아에서 36%, 스위스에서 24%-38%이며, 50%에 이르는 예는 서독에서 예외적으로 인가된 외국기업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 「경제개혁」과 관련된 대담한 법률안이 이렇다할 저항도 없이 제정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 위협이 잠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헝가리의 영업이익세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은 민주적인 입법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가」, 「이윤」, 「감가상각」이라는 관념이 일반적으로 회박하고 보수적인 회계방법에 머물고 있는 다른 사회주의국가와는 달리 헝가리에서는 「손익계산서」를 중시하는 회계방법을 전제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88년의 체코의 「기업법」에서도 강조되지 않았던 「사회주의적 기업심」(제39

조)의 주체, 즉 「상인」, 「기업가」의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2) 附加價值稅

1988년 1월 1일을 기하여 헝가리는 동구권국가로서는 최초로 유럽공동체의 제6차 판매세지침에 부합되고 서구의 전형에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부가가치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조세개혁의 주요 목표는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보다 넓은 활동영역을 제공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발전을 촉진한다는 데 있었다. 결국, 세계시장에의 적용 그리고 동일한 경쟁조건의 조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쟁력의 제고가 이루어진다면 무엇보다도 헝가리의 수출이 증가하고 서방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될 것임은 틀림없다.

이러한 조세개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이다. 헝가리영역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다. 동시에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도 국내의 상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헝가리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납세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면에서 이러한 조세개혁은 투자, 기술적 발전과 수출은 장려하되 서구로부터의 수입은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종전의 개별적인 소비자물품세는 모든 판매소에 지불하게 되는 종합물품세로 대체되고 기업은 조세공제권이 부여됨으로써 부가가치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결국은 최종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²²⁾

이 법은 모든 헝가리의 기업가와 기업은 그 법적 형태와 소유관계에 상관없이 조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2) *Ausländischer Wirtschafts- und Steurrecht: Ungarn, zur Einführung der Mehrwertsteuer und der Persönlichen Einkommensteuer durch die Steurreform 1988*, (Köln:Bundesstelle für Außenhandelsinformation, 1988), p.7.

수익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일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기업가에게 적용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소규모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매상고가 250,000 포린트 - 음식점과 소매점에서는 1,000,000 포린트 -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한,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학 또는 병원 등 소정의 기관간의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교환에 대하여는 판매 세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면세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제공을 위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도 면세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세대상이 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은행, 보험기관, 보건시설, 교육기관의 서비스와 연구·개발서비스가 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① 25%의 표준세율, ② 관광과 같은 특별한 항목에 적용되는 15%, ③ 식품 등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는 0% 등 세가지가 있다. 국외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회사로 등록된 외국인 회사는 특정 상품(예를 들어 복사기, 워드프로세서)에 대하여 헝가리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세율을 25%, 15% 및 0%의 3가지로 줄인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제도의 단순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0%의 부가가치세율은 수출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공급, 우편·통신과 같은 소위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된다. 15%의 세율은 기본적인 서비스는 아니지만 공공운송수단, 여객운송 등과 같이 주민에게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 밖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일정한 사치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명령에 의하여 소비세를 인상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에 대해서 추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사전조세(Vorsteuer)로서 공제하게 된다. 공제시점은 회계상 이행시점으로 간주되는 때이며 수입판매세의 경우에는 지불시이다. 세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① 면세판매를 위해 상품 또는 서비

98 형가리의 經濟改革法制研究

스를 구입하는 경우, ② 재판매를 목적으로 개인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③ 원거리 또는 지역내의 운송에서 개인에 대한 세금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투자시의 사전조세공제에 대하여도 특별한 규칙이 적용된다. 이미 1988년부터 완전히 사전조세가 공제되는 혼합기업 이외의 기업은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사전조세를 추후에 부분적으로 공제받게 된다. 즉 조세공제부분은 1988년 20%였으나 매년 20%씩 인상하여 1992년부터 100%의 공제자격을 얻게 되었다. 수출에 의한 경화회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1988년 50%, 1989년 75%, 1990년 100% 공제자격을 얻고 있다. 외국기업도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사전조세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非루불貨로 계산되는 수입에 대하여는 형가리국내의 목적지에 상품이 도착한 날 또는 서비스가 제공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 때, 조세산정의 기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이며 수입품의 경우에는 관세처리수수료에 의하여 인상될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조세대상이 되는 판매활동의 시기와 동기 및 조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을 세무서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비루불화 수입의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또한 루불화거래의 경우에는 자진납부의 원칙에 따라 조세가 징수된다. 여기에서 자진납부의 원칙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자는 일정한 기간동안의 세금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전조세를 공제한 후 납부하게 되며, 이에 따라 납세의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의 규제를 받는 바, 허위신고시에는 결정에 의하여 조세액이 결정되고 조세누락분의 50내지 2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액결정은 법원에 의하여 심리·변경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법률은 국가행정절차의 일반규칙에 관한 1981년 제1차 법률 및 조세행정절차와 재정적 통제의 규칙에 관한 명령을 고려하고 있다. 전체적인 가격산정이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종전의 판매세와 기타 부과금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1988년의 조세개혁은 지금까지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가격체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3) 個人所得稅

1988년 1월 1일부터 헝가리에서는 개인소득세를 인상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 부담금이 그에 비례하여 적당하게 분배되고 각종 형태의 소득간의 구분이 줄어들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한편으로는 관련 소득이 어느 곳에서 또한 어떠한 유형의 기업에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최고 60%의 강력한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통일적인 조세부과정책과 사회·경제적 동기에 의한 조세감면정책이 시행되게 되었다. 개인소득세가 도입됨에 따라 종전의 급여세는 폐지되었다. 그와 동시에 고용주는 피용자가 순소득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급여를 인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므로 2 이상의 직장에 고용되었거나 2 이상의 소득원을 가진 자에 대해서만 소득상황이 변화하게 된다. 하나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공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고용주가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장기여금은 40%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소득자의 30%, 즉 사영업자, 상인, 소규모기업가 및 자유로운 창조활동을 하는 정신노동자와 예술가만이 조세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1988년 이후에는 모든 자연인은 그 연령이나 행위능력유무에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납세의무는 개인이 획득한 모든 물질적 가치의 총체(Gesamtheit)로 이해되는 소득이 창출되는 활동의 개시와 더불어 발생하게 된다. 그러한 의무는 헝가리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헝가리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발생하게 된다. 물론 소득과 관련된 자가 헝가리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거나 또는 일상적으로 거주(연간 90일이상)하고 있는 경우에만 後者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상의 기준에 의거하여 헝가리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헝가리국내의 외국기업 또는 혼합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의 55%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액은 - 가족관계에 상관없이 - 소득의 형태에 따라 개인별로 조사되어 일정한 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 즉 사용자가 지불하는 모든 급여중에서 노동조합기여금과 1,000포린트의 월간기초공제액에 대해서는 조세산정에서 제외된다. 물론 납세 의무자가 2 이상에서 고용되어 있는 경우 기초공제액은 그중 하나의 직장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발명의 이용 또는 양도에 기인한 소득은 최초에는 최고 100,000포린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그 소득이 500,000포린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의 35%내지 50%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저술가 및 과학자 등의 소득은 200,000포린트까지는 35%,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60%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소작농은 소득이 연간 500,000포린트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작물경작소득의 30%, 동물사육 및 동물제품매각으로 인한 소득의 10%에 대하여 과세된다. 다만 그러한 소득에 대한 조세가 기업에 부과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세하게 된다.

출자 또는 준비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이익 등 실제로 획득한 소득부분만이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므로 소득중 회사납입금은 면세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투하된 자본은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의 양도소득도 과세대상이 되지만 토지가 10년이상 양도자의 점유하에 있었거나 그 소득이 양도자 또는 그 가족을 위한 주택구입에 사용되는 때에는 예외이다. 동산과 유가증권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도 그 금액이 100,000포린트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여객운송(객실대여)으로 인한 소득은 공식적인 관광기구에 의하여 지불된 경우에는 최고 40%, 기타의 경우에는 최고 60%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조세는 다음의 도표에 정한 바와 같이 부과된다.

납세의무자의 소득(포린트)

세율(%)

세액(포린트)

| | | |
|-------------------|----|---------|
| 0 - 48,000 | 0 | 0 |
| 48,000 - 70,000 | 20 | 0 |
| 70,000 - 90,000 | 25 | 4,400 |
| 90,000 - 120,000 | 30 | 9,000 |
| 120,000 - 150,000 | 35 | 18,400 |
| 150,000 - 180,000 | 39 | 28,900 |
| 180,000 - 240,000 | 44 | 40,600 |
| 240,000 - 360,000 | 48 | 67,000 |
| 360,000 - 600,000 | 52 | 124,600 |
| 600,000 - 800,000 | 56 | 249,400 |
| 800,000이상 | 60 | 361,400 |

위에서 규정된 바와는 달리 예외적으로 총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헝가리의 자본재, 저축, 생명보험 유가증권으로 인한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20%의 총괄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제도는 동일한 규모로 발생하는 이자증가와 더불어 국민의 저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외국인의 소득도 이종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외국에서 지불한 조세를 공제한 후 20%의 총괄세가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이상과 같이 계산된 조세액중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받는다.

- 연간 36,000포린트을 상한으로 하여 건축예금계좌불입액의 20%
- 주택임차료에 대한 이자비용(30%이상)의 20% · 도로건설, 전화가설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기여금의 30% · 생명보험료의 20%

조세징수는 자진납부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조세액을 보고하고 이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기본적으로 즉 주민의 90%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고용주는 세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관청에 납부하게 된다. 자신의 소득이 사기업에서 발생하거나 소위

“불확실한 소득”에 해당하는 자만이 관청에 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매년 1회 기납부된 금액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비교하여 조세당국이 이에 따른 조정을 한다.

조세당국은 조세신고의무가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통제한다. 납세의무자가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고용주의 조세공제납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조세당국이 판정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허위 기재의 경우, 조세당국은 -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한 때에는 조세 누락액의 2% 내지 20%,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 내지 200%의 별금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통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즉,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당국은 매년 1회, 내각(Ministerrat)은 3년마다 1회 납세의무자에게 재산관계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과표를 명확히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산관계의 전술에 관한 조세당국의 판정에 대해 납세의무자는 어떠한 법제구제수단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그밖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다툼이 있는 조세액이 5,000포린트 이하인 때에는 행정절차상 허용되는 모든 법제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5,000포린트를 초과하는 때에는 과표와 세액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法人稅

1988년 1월 1일부터 형가리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인세가 사적 분야의 영업소득에 대해 징수되고 있다. 국유기업과 혼합기업을 제외한 사기업의 총수입에 대해 기업세가 부과되는 바, 이러한 법인세는 지금까지 각각의 기업의 종류마다 달리 적용되는 조세형태에 같음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조직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전 경제

부문에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합작투자기업을 포함하여 헝가리의 모든 기업은 법인세의 대상이 되지만, 개인기업은 법인세 대신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1991년부터 헝가리 정부는 모든 기업에게 40%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업활동분야별로 법인세를 감면하기도 한다. 기업은 법인세 납부금액 중 감면액을 원천공제 형태로 청구할 수 있으나, 기업이 청구한 감면액은 총납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금감면은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없다. 1991년부터 헝가리 정부는 법인세 감면대상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고 있으며, 현재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보조를 받는 공공서비스 및 보건서비스 부문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65%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목재업, 농업, 임업 등에서 획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35%의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둘째, 연구 및 기술개발, 민속품 및 지방토산품의 제조와 소매 등에 종사하는 기업은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셋째, 기업의 본사가 정부가 경제낙후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소재하고, 동 기업이 해당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의 개선 또는 고용증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투자액의 30%에 대해 세금감면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교통과 통신 시설의 확충, 도로, 철도, 교량, 서비스용 건물의 건축 등도 사회간접자본의 개선으로 간주되어 세금감면혜택을 받는다.

넷째, 정부가 지정한 특정지역에서 기업이 신규영업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 기존영업의 확장 등을 위해 종업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는 직업창출로 간주되어 당해년도에 법인세가 감면된다. 또한 이 지역에서 기업이 별도로 추구한 기업활동에도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첫해에는 65%,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5년차에는 10%의 법인세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다섯째, 기업활동에 의해 유발된 환경오염정화 및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20%의 조세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여섯째, 기업이 기념물의 복구를 위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10%의 조세감면혜택이 주어진다.

7. 金融關聯法

헝가리의 금융제도는 현대적 자본시장의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제정된 몇 가지 법령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1991년 10월 21일 의회에서 제정된 발권은행법(the Bank of Issue Act)은 헝가리 국립은행의 활동을 규율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 헝가리국립은행의 지위와 업무에 관하여 규율하였던 1967년 행정부령은 은행의 활동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은행은 정부의 직접 관할하에 있는 비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의회의 통제를 받음이 없이 쉽게 개정될 수 있는 행정부 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시장경제체제에는 전혀 부합되지 아니한 것이었다.²³⁾

그러나 새롭게 제정된 법률은 의회가 제정한 것으로서 원활한 국내지불제도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제거래를 보장함으로써 헝가리통화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활동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률은 헝가리국립은행이 헝가리공화국이 發券은행임을 강조하고 그 기능을 헝가리 통화의 대내외적 구매력을 보호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헝가리국립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통하여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원하고, 그 총재는 의회에 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1년 제정된 법으로는 그밖에도 투자기금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과 그

23) Janos Ursprung, "The Bank Act", *Hungarian Market Report*, Vo No.2(1992.2), p.9.

활동에 관한 법률(은행법)을 제정하였다. 은행법은 명확한 법적 근거하에 운용되는 현대화된 은행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은행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저축을 장려하며 기업의 자유, 경쟁 및 시장질서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²⁴⁾ 한편, 새로운 은행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금융기관체제는 크게 변한 것은 없으며, 다만, 금융기관이 당좌계정(current accounts)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은행법은 금융활동의 범위와 각종 형태의 은행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설립을 포함하여 금융활동의 수행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章을 두어 각종 형태의 금융기관의 운영과 고용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또한 국립은행감독위원회의 법적 지위·권한·책임, 은행에 대한 감사와 은행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상의 3가지 법률은 헝가리내의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의 활동과 관련되는 모든 법인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그 법안작성과정에서는 서방선진국의 경험을 반영하였고, 특히 은행법의 경우는 EC의 은행규칙이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²⁵⁾

헝가리 경제는 지난 2년간 이른바 '쿠파(Kupa)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과 정치안정에 힘입어 외채상환능력 제고, 외환보유고 증가, 사유화 진전, 외 자도입 증가, 인플레이션 억제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2년 재정적자가 이미 1/4분기에 금년 예상치인 690억 포린트에 육박하였기 때문에 재정적자 목표치를 당초 예상치의 2.5배인 1600~1800억 포린트로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 헝가리 정부는 재정적자 확대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재정적자를 補填하기 위해 재정지출 삭감, 세금징수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긴급법안을 마련하고 은행으로부터 세수를 중대시키기 위해 상업은행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는 부실기업에 대

24) *Ibid.*, p.10.

25) *Conference on the New Economic Laws*, *supra* note 11, p.18.

한 신용대출을 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한편, 형가리 중앙은행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기 위해 1992년 5월 26일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상업은행간의 외환거래를 7월 1일부터 허용함과 동시에 중앙은행의 외환보유 독점을 철폐하고 자국화폐의 태환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외환시장의 형성을 유도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치에 따라 상업은행들은 이전까지 일정액 이상의 경화는 중앙은행에 매각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대신 상업은행 상호간 경화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의 외환거래를 감시함으로써 포린트貨의 환율변동폭을 0.25% 내로 제한하여 급격한 가치변동을 억제하고 점차적으로 그 변동 허용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형가리 정부는 이러한 조치 이외에도 20억포린트의 설립자본을 보유한 'PLC'라는 신용보증기금과 20억 달러의 국가유보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을 조성하여 산업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사유화 수익금으로 충당된 'PLC' 기금을 중소기업에 대해 최고 1억 포린트의 대출금까지 보증할 뿐만 아니라 년 4%의 이자율로 10년간 대출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중소기업의 육성에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대출보증제의 확립은 1990년 경제개혁 이후 가장 중요한 조치 중의 하나로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8. 證券去來法

헝가리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공사채가 발행되기 시작하여 매년 그 발행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일부 우량한 국가기업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증권거래시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 없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증권거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동구에서 권위있는 (헝가리)『세계경제』(경제주간지)에 발표

된 債券市況欄을 읽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지식인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8년의 회사법과 개조법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이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주식회사의 설립과 주식발행이 급증하고 있으며, 1989년부터는 채권유통을 시작으로 유가증권의 체계적인 유통이 은행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금융시장의 개설은 1988년 가을에 제정된 회사법을 헝가리에 정착시켜 기능하도록하는데 불가결한 조치이다. 따라서 증권거래 및 증권거래소에 관한 법률의 연구는 80년대 중반에 일련의 개혁입법과 함께 구상되기 시작하였다.²⁶⁾

1990년 3월 공포된 증권거래법은 동구에서 최초로 성립된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유통시장인 증권거래소가 증권회사의 회원조직으로 설립되고 그 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은(제5부 이하) 우리나라의 제도와 다르지 않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자기매매업은 단순히 매매업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유가증권보고서」에 해당하는 것은 「정기안내서」 및 「임시안내서」로 표기되어 있지만 그것이 투자가의 보호를 위한 기업내용의 開示의 기능을 하는 것임은 제33조 이하에서 명백히 드러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본격적인 조성과정에 있기 때문에 증권업을 운영함에 필요한 전문가의 고용이나 발행주권의 전환(기명주권으로의 전환, 회사법에서는 외국인은 기명주권만을 취득할 수 있다) 등에 대해서는 1992년 말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고 있다(제8부). 증권거래에 대한 규제의 목적은 유통시장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투자가를 보호함에 있다(제6부, 제7부).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부다페스트에 증권거래

26) 그 일환으로 동경증권거래소에의 견학도 여러차례 있었으며 시스템매매 실이나 입회장에서의 견문도 쌓았다. 동시에 리쿠르트 스캔들에 얹힌 거래의 규제필요성도 통감하였으며 경제체제의 대전환의 진행 중에 예상되는 불공정한 거래의 방지와 제재조항(제6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러나 서구에서 상식화되어 있는 금융·증권업무의 일체화된 거래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단계에 머물고 있다.

소가 재개설되어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증권거래소의 개설은 외형적으로나마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의미하며, 신규기업의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기존 국유기업의 사유화 및 주식회사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²⁷⁾

1990年 6월 개장된 부다페스트의 증권거래소는 이미 그 활동을 개시하였고, 주식거래에 관한 내부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증권거래위원회의 기능과 증권발행의 조건, 그리고 증권거래소의 구조와 기능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1991年에는 내부자 거래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 회사들의 주식이 외국의 증권거래소 특히 비엔나증권거래소에서 이미呼價되고 있다. 부다페스트 증권거래소의 상장회사는 현재 약 20개에 불과하지만, 그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거래가 그다지 활발하다고 할 수는 없는 바, 投資資本의 不足에서 부분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先物去來所인 부다페스트 상품거래소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1991年 가을에 발표되었으며, 2개의 미국 증권거래소가 경제적·기술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²⁸⁾

9. 土地關聯法

민주포름정권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새로운 농업정책의 수립도 그러한 경제정책의 일환이다. 민주포름정권은 농업에 관한 소유관계의 근본적이고 신속한 개조를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농업생산이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소유개혁을 2단계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제1단계는 생산협동조합의 전재산을 조합원의 소유로, 국유기업 재산의 일정 부분을 종업원의 소유로 이전함으로써 - 이 과정이 국

27) 島村博 “ハンガリーの證券取引法”, 國際商事法務, Vol.18, No.12(1990), p.1349.

28) *Key Legal Facts for the Foreign Investor in Hungary*, supra note 5

가의 경제조직의 청산을 수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생산협동조합 및 국가의 각종 경제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사업자의 지위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기존의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공동체와 더불어 경쟁력있는 개인의 경영사업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토지법의 개정내용은 개인의 토지소유에 대한 규제의 철폐, 구여권법상 해외불법체류자의 토지소유권 박탈에 관한 규정의 삭제, 토지의 용도에 따른 이용의 보호, 국유지 또는 국영농장이 소유하는 토지의 사유화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경제적 약자의 보호, 토지투기의 방지뿐만 아니라 농업생산 및 그 실현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구조의 확립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소유자의 사회에 대한 의무는 환경보전조항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휴경지의 효율적 이용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보호기금」으로부터의 무상지원금지급조건의 하나로 용도전환금지를 규정하고 있다.²⁹⁾

한편, 제2차세계대전 직후 단행된 토지개혁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독립소농당이 제3당이 되었다는 사실은 1947년의 토지개혁시에 무시되었던 보상청구문제와 관련하여 농촌에서의 소유관계의 근본적 변화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토지개혁에 따른 보상문제에 대한 원성은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독립소농당의 부상을 一過的인 현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³⁰⁾

지난 1992년 5월 말 헝가리 정부가 항후 국유기업의 사유화추진에 있어서 외국인보다는 국내투자자를 우선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29) 島村博, “ハンガリ-土地法”, 國際商事法務, Vol.18. No.7(1990), p.747.

30) 법률본문에 등장하는 「黃金 corona」라고 함은 농업 및 임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의 토지대장상의 순수익을 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1875년 제7호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를 2경작부분 및 8등급으로 나누어 1 Katastrajoch(5,7555 헥타)당 10년간의 평균 순수익을 황금 corona라 한다. 토지의 질을 황금 corona로 정하는 방식은 그 동안의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다. *Ibid.*, p.748.

그 후 제정된 농지법도 경작가능한 토지에 대한 외국인 소유금지를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농업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외국자본의 도입여부를 놓고 의회내에서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구공산체제에서 농지는 특별자산으로 취급되어 장부가격이 없었기 때문에 농자의 매매와 양도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도 큰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 外國人投資 關聯法制

(1) 外國人投資法의 變遷

동구에서, 외국 특히 서방의 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첫번째 진전은 동구에서는 이미 60년대 후반 유고를 필두로 하여 시작된 합작기업 및 외국인투자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자도입관련법들은 자본주의와의 접촉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주의 국가경제의 유지를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원천적으로 제한적인 입법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동구권국가에서 1990년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를 근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헝가리합작투자법은 1972년 제정되어, 1982년 개정되었으며, 개정되기 전까지는 헝가리의 모든 합작투자기업은 포린트화 자금계정을 가져야 하였지만, 1982년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자유무역지역에서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硬貨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1986년에는 합작기업은 자신의 상품에 대한 대외무역권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수입면허발급과정도 간소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세상의 특혜제도가 실시되고 회사의 등록절차가 간소화되어 합작기업의 설립이 크게 증가하였다. 1987년에는 합작투자기업의 부동산소유가 허용되었다.

1988년에는 조세우대조치, 투자우선대상지역의 선정, 등록절차 및

세무보고절차의 간소화, 100% 외국인투자기업의 인정, 과실의 해외 송금허용 등을 포함하는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되었다. 1988년 외국인투자법은 1990년 12월 개정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31) 합작기업의 설립시 요구되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완화 또는 삭제되었다.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포인트화의 불환성(inconvertibility)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의 장애요소로 남아있다.

(2) 會社의 設立과 出資

외국인투자법외에도 외국인투자관련법규로서 대표적인 법령은 회사법, 법인세법, 기업개조법 등이 있으며, 기업은 이들 법령에 의거하여 기업활동을 하게 된다. 외국인투자법 제7조에 의하면, 외국의 법인 또는 자연인은 헝가리내에서 헝가리법이 허용하는 어떠한 형태의 회사도 설립하거나 참가할 수 있다. 헝가리내의 합작투자기업은 대부분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등록되어 있으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의 형태도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이 참가한 회사가 다시 다른 회사에 참가할 수도 있다.³²⁾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조문에 합작기업의 설립에는 재무부와 대외경제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투자에 의하여 국유기업 자산에 대한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유

31) 1990년 외국인투자법의 일부조항이 개정되었으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외국인의 비금전적 출자에 대한 외화의 자유로운 송금을 인정하고 세제상의 우대조치에 대해 약간의 제한을 가하고 몇 가지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예컨대, 자본“출자”를 위장한 자동차의 면세수입 등). *Ausländischer Wirtschafts- und Steurrecht:Ungarn, Gesetz über ausländische Investitionen Gesetz über Wirtschaftsgesellschaften von 1988*, (Köln: Bundesstelle für Außenhandelsinformation, 1989), pp.5~10.

32) 외국인은 헝가리에 대표사무소(비록 그 대표사무소가 법인이 아닐지라도)를 설치하여 헝가리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외국회사는 정보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 대표사무소와 정보사무소는 대외무역부와 동기법원에 등록되어야 한다.

재산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합작기업은 기업설립 후 30일이내에 합작투자기업의 정관을 기업소재지의 등기사무소에 제출하되, 합작기업 자본금의 2%를 등록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상호와 소재지, 합작당사자의 商號와 소재지, 회사의 활동범위, 기타 회사법에서 정한 사항이다.

외국인지분에 대하여는 허가 등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도 합작투자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다만, 형가리내에서의 외국인의 회사참가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수반된다. 즉, ① 외국인참가자는 無記名株券을 소지할 수 없고 記名主券만을 소지할 수 있다. ② 외국인참가자는 株金額을 반드시 硬貨(hard currency)로 금전납입하여야 한다. ③ 형가리의 금융기관 자본금의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형가리정부의 인가와 형가리 국립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外國換法規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은 외국인투자법의 적용시에도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⑤ 형가리는 국유기업의 인수를 허용한 최초의 동구국가이다. 즉, 1988년 기업개조법이 제정됨으로써 자발적 사유화형태로 일부 국유기업의 사유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이 10%이상인 합작기업은 기업 인수로 간주되어 국유재산관리청의 승인을 요한다. ⑥ 합작기업이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의 최소납입자본금은 100만 포린트이며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에는 1,000만 포린트이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30% 이상 또는 500만 포린트 이상을 금전 출자하여야 하며 주식의 액면가는 10,000포린트 이상이어야 한다.

합작기업의 자본금은 금전출자 또는 노우 하우·건물·설비 등 현물출자로 납입할 수 있으며, 금전출자는 硬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외국의 합작당사자가 납입자본금으로 수입하는 물품과 설비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중에서 현물출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제한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형가리의 합작당사자는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헝가리에 기업을 설립한 자 또는 사원으로서 헝가리 국적을 보유한 자, 법인, 법인격없는 기업 및 자연인이다. 이러한 점은 중국의 합작당사자로서 자연인을 제외한 점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외국인 투자우대조치

1) 제한없는 해외송금

합작기업의 외국측 당사자의 硬貨收入의 해외송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이익배당금 등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헝가리에서는 원천파세되지 아니한다. 송금액과 동등한 액수의 포인트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투자한 금전은 투자당시의 통화형태로 자유로이 본국송금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역시 세금공제후의 잔여수입의 50%를 본국에 송금할 수 있다. 환전은 투자된 경화로 이루어지며, 헝가리국립은행이 고시한 공정환율에 의한다.

2) 조세감면

① 영업이익세의 감면

합작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부여한다. 지금까지 합작기업의 설립자본금 중 외국인의 출자액이 5,000,000포린트 이상 이거나 총자본금의 지분이 20%이상인 경우, 종전에는 무기한으로 영업이익세를 20% 감면하였으나, 1992년부터 이러한 감면제도가 폐지되어 세율이 40%가 되었다.³³⁾

합작기업의 설립자본금이 50,000,000포린트 이상이고, 외국인투자

33) 1991년 법인세법·외국인투자법·개인소득세법 등은 개정되어 종전의 조세제도를 대폭적으로 수정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개정된 규정들의 기본적 취지는 일관성있는 세율체계를 확립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사용하도록 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데 있다.

가의 지분이 30% 이상이고, 매출액의 50% 이상이 투자에 의한 상품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전략산업투자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세가 최초의 5년동안 100%, 그후 5년동안 60% 감면된다. 이러한 전략산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통신전자·유전자工學·차량·부품·공작기계·농기계·식품가공·포장·의약품·농약·가축사료·목축·호텔 및 관광·옥수수 및 밀생산이다. 이러한 전략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반산업부문의 투자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세가 최초 5년 동안 60%감면, 그후 5년동안 40% 감면된다. 이러한 요건을 구비한 회사에 참가한 외국인이 그의 이익배당금이나 주식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감면조치는 재투자가 조세감면의 요건을 구비한 회사에 참가한 외국인이 당해 회사에 재투자하는 경우와 조세감면의 요건을 구비한 새로운 회사에 재투자하는 경우 모두에 적용된다.

다만, 영업이익세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투자 전략면에서 우선 유의하여야 할 부분은 「외국인투자법」 제6조 규정 즉, 「외국인투자가가 참가하여 활동하는 회사는 형가리의 경제조직으로 한다」는 규정을 전제로 한 회사의 「영업이익」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이다. 「외국인투자법」 제42조는 자유무역지역내의 회사와 동일하게 자유무역지역밖의 외자기업에 대하여도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내국인 법인기업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조세면제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대략 5년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즉 5년을 주기로 「조세우대조치」의 수준을 조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자세한 것은 제14조). 그러나 제8호 부록에 열거된 분야의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기간의 연장과 더욱 높은 우대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외자비율 20%이상의 기업에 대하여는 형가리의 임금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외국인투자법」 제20조) 이것도 역시 「우대조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유의하여야 할 점은 「파세근거」(형가리에서 말하는 파

세소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원칙」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헝가리도 「세무회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과세근거」를 도출한다. 즉 「확정결산」에 의해 얻어진 이익(제4조)에 「益金算入」(제10조), 「損金算入」(제9조 및 제11조)하여 「근거」를 구한다. 문제는 「확정결산」을 하기 위한 「등기규칙」의 내용에 있는 바, 이 법률은 「영업의 수익」(제18조) 및 「영업의 비용」(제20조)은 「경상이익·손실」계산과목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영업이익세법이기 때문이다.

감가상각비용의 계상방법은 내구년한, 상각가능한도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예컨대 제1/4분기 기말에 제1/4분기초의 해당 被償却固定資產純價額(제1호 부록 I 14a)에 「감가상각율」을 곱하여 구하는 방식이다. 채광업 및 과수원경영에는 「生産量比例法」의 償却方法이 적용된다. 加速償却율 정하는 것은 제7조 제1항 1호에 규율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각료평의회의 권한이다. 전술한 제1호의 9a에는 협정에 의거하여 3개월로 전액 상각하는 것도 인정되어 있다.

② 부가가치세의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첫째, 외국합작선이 현물출자를 위해 구입한 제품과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둘째, 외국합작선이 출자한 자본재 중 경화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작투자기업의 현금구좌에서 인출하여 구매한 경우와 현물출자로 반입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셋째, 외국인합작투자기업은 기업의 투자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제품구매시 지불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금지한 제품(승용차 등)의 구입 또는 세금면제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활동 등을 위해 기업이 지불한 세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③ 소득세의 감면

1992년 1월1일부터 500,000포린트 이상의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저소득자에 대하여는 할인된 세율이 적용되는데 100,000포린트까지의 개인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이 징수되지 않고 100,000포린트와 500,000포린트 사이의 소득에 대하여는 25~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이 헝가리내의 財源으로 부터 획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지만, 외국인 소유의 회사 또는 국외에 본점이 있고 헝가리에서 활동하는 회사에 고용된 비상주외국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70%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헝가리상주인의 외국으로부터 소득에 대하여는 20%로 정해진 세율이 부과된다. 현물급여로서 보조금적 성격의 주택의 임차 또는 제공도 과세대상이 된다.

④ 기타 조세상의 우대조치

외국인투자가의 금전출자는 硬貨計定으로 납입된다. 만약 회사가 이 계정의 금액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수입세가 면제된다. 동일한 원리로 외국인투자가가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회사에 제공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수입세가 면제된다. 자유태환되는 통화, 즉 硬貨로 이행된 금전출자는 출자당시의 통화로 당좌계정에 납입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납입된 통화는 생산을 위한 물품의 구입과 회사의 영업활동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구입하는데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계정으로 지불되는 상품은 면세로 수입될 수 있다. 합작기업의 차량수입에 대하여는 수입관세는 면제하지만 부가가치세 25%가 부과된다.

외국인이 참가한 회사에 대한 세계상의 우대조치 외에도 참가자의 본점소재지(본국)와의 이종과세방지협정의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회사가 헝가리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활동, 예컨대 국민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각 80%와 65%의 조세감면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조세상의 우대조치는 수년내에 단계적으로 폐지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투자촉진기금

자본금이 5,000만포린트 이상이고 외국인의 지분이 30%이상이고硬貨에 의한 금전출자가 50%이상인 기업(첨단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또는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금전출자의 비율과 무관한다)은 투자촉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투자촉진기금은 생산시설의 건설이나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융자액은 투자총액의 20%이내로 제한되며 1억포린트를 초과할 수 없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7년 상환의 저리이다.³⁴⁾

4) 투자의 보호와 국유화·수용시의 보상

외국인투자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序文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국제경제협력을 증대시키고 헝가리경제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헝가리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며, 헝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외국인투자법 제1조는 국유화, 수용 또는 이에準하는 조치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전액을 투자당시의 통화로 지체없이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자유무역지역

헝가리의 자유무역지역은 완제품 또는 중간재의 서구로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역이며, 헝가리의 기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세법, 외환법, 대외무역법, 노동법 및 조세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크게 수정되어 적용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설립된 기업은 소위 "역외기업"(offshore enterprise)으로서 외국회사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관세규칙이 적용되며, 상품에 대한 간접세도

34) 보다 구체적인 것은 Robert Szakal, "Investment Trusts", *Hungarian Economic Review*, No.6(1992.2), pp.23~24.

면제되고 외환통제, 가격통제 기타 국가적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35) 직접세(영업이익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도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우대조치를 받는다. 즉, 기업이 자신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원자재·부품·장비에 대하여는 수입관세가 면제되며, 저장·가공·생산기간중에 조세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상품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는 관세와 매상세를 납부하지 하지 않고 형가리의 다른 지역 또는 외국에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이 형가리의 내수시장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된다.

자유무역지역에 설립되는 합작기업은 주로 제품수출을 목적으로 하며, 설립에는 특별한 법령이 적용되고 연합(union)외에는 회사법상의 어떠한 형태도 허용된다. 자유무역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대외무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재무부와 대외무역부의 허가를 요하며, 외국인의 지분이 49%이하인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유무역지역내의 회사와 형가리회사간의 거래는 외국인과의 거래로 취급되므로 형가리정부의 허가를 요한다. 회사의 정관상의 등기자본은 외화로 표시되어야 하며, 따라서 외국측당사자는 물론이고 형가리측 당사자도 외화로 설립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³⁶⁾ 역외기업은 거래에서 경화를 사용하고 설립정관에 표시된 외화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게 된다. 다만, 재무부 장관은 포린트화로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명할 수 있다. 세금, 임금, 임차료, 구입비등 조직상의 비용도 포린트화로 지불되어야 한다.

자유무역지역내의 외국인 합작투자기업이 경화로 형가리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국내기업에 의한 수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내의 외국인 합작투자기업이 사용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수입한 원료, 부품, 설비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1989년 1

35) 구체적인 것은 Robert Szakal, "Customs-free Zones - Offshore Companies", *Hungarian Economic Review*, No.3(1991), p.18.

36) *Ibid.*, p.19.

월 22일 각료회의의 포고령 141호에 의하여, 기업이 포린트화로 구매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세금감면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4)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최근, 헝가리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중의 하나가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이다. 많은 헝가리 국민중 상당수는 외국인이 헝가리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매국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헝가리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전혀 불합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헝가리 정부는 외국인토지소유문제에 관하여 이러한 상반되는 두개의 입장을 절충한 정책을 취해 왔으며,³⁷⁾ 의회의 법률이 아닌 헝가리 각료회의 1991년 12월 27일 「헝가리에서의 외국인 부동산취득에 관한 명령」으로 정하고 있다.³⁸⁾

「헝가리에서의 외국인 부동산취득에 관한 명령」에 따르면 외국의 법인과 자연인뿐만 아니라 외국에 주소를 둔 헝가리국민도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동 명령에 따르면 관계 외국과의 상호주의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또는 취득자가 입국사증을 받았거나, 외국인이 헝가리에서 수용을 당했을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은 매매, 교환 또는 중여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헝가리 국민은 부동산을 오로지 자기와 자신의 가족이 헝가리에 체류하는 동안 거주목적으로만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매매대금은 외국의 통화로 지불할 수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소유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요하며, 재무부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을 위한 거래가 헝가리의 국가기관, 경제, 관광, 보건·복지, 교육 또는 헝가리의 사회적 이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

37) Ràcz, József, "The Legislation Concerning the Employment Situation of Foreigners in Hungary," *Hungarian Market Report*, Vol.3, No. 2(1992.2), p.6.

38) 보다 구체적인 것은 *Hungarian Economic Review*, No.7(1992.4), p.24.

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제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러한 허가를 부여한다고 한다.

그러나, 헝가리에 설립된 회사는 비록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헝가리법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업무수행(예컨대, 사무소나 상점구내)의 목적을 위한 때에는 허가없이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가 가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합작기업의 부동산 취득은 헝가리합작당사사의 부동산에 의한 현물투자 또는 기업설립후의 부동산 매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당연히 헝가리의 부동산 관계법이 적용되며 합작기업은 자신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만을 취득할 수 있고, 부동산 매입시에는 매입가격의 5%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국유재산보호법은 국유기업이 관리하는 토지의 매각을 위한 일정한 합의에 대하여는 국유재산관리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유기업이 토지를 직접 처분한 경우 또는 국유기업이 토지를 출자하여 외국인투자가와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의 합의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토지매매에 관한 모든 계약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 토지가 출자의 형식으로 양도되지 않는 한, 소유권양도에 관한 계약에서는 당해 토지의 시장가격의 5%에 상당하는 조세가 부과된다.

토지등기부는 헝가리내의 모든 토지를 등재하고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 권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분리된다. 첫번째는 토지를 구획하는 부분이고 두번째는 소유권의 소재를 기록하는 부분이며 세번째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나 기타 권리를 기록하는 부분이다. 토지의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매각, 임대 또는 질권설정 등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법은 부동산취득외에도 부동산임대의 권리와 인정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은 토지소유권과는 무관하므로 등기부에 기록하지 아니한다.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와

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권리는 분할되지 않는다.

第5章 結 論

1. 헝가리는 1980년대 중반이후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과 대서방 접근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각 경제주체가 혼합소유제의 기반 위에서 동일한 조건하에 경쟁하는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헝가리의 경제개혁은 「스탈린헌법으로부터의 최종적 결별」을 선언한 1989년의 개정헌법에 의하여 그 합법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2년 헌법 제2조 「사회주의 국가」규정이 「민주적 법치 국가」의 규정(제2조)으로 대체됨으로써 「사회주의적 법치국가」개념은 완전히 배제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제도는 「정치의 독점」과 「당의 국가화」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실은 다름 아닌 「시민적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의 제가치」의 종합적 실현이다. 이러한 민주적 법치국가 수립은 기업의 사유제를 전제로 한 시장경제체제로의 경제적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경제적 측면에만 한정된 종전의 개혁이 모두 실패하였음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정치적 기본구조부터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국가 및 정치」와 「경제」와의 분리가 전제조건이다.

헝가리는 공산당정권 하에서도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1988년), 새로운 영업이익세(1989년) 등 조세개혁, 중앙은행기능의 재정립, 은행기능의 활성화, 제도개선 등 금융제도의 개혁, 회사법, 기업개조법 등 기업관련법규의 개정 및 제정, 임금·가격자유화와 무역자유화조치의 시행,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제정을 통한 외국인의 對헝가리 투자장려 등의 개혁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1990년 헝가리민주포럼정권은 가격자유화, 임금규제, 정부보조금의 삭감, 만성적 적자기업의 정리, 국영기업의 재구성과 사유화, 시장경제체제의 조속한 구축, 긴축재정 등을 포함한 더욱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하여 이를 위한 수많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있다. 1991년 3월 시장경제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 형가리경제의 전환·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목표는 독일경제체제와 유사한 사회적 시장경제제도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형가리는 경쟁력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유럽사회 더 나아가 국제사회로의 복귀라는 기본적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2. 형가리는 동구에서는 처음으로 1989년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위하여 기업개조법을 제정하였으며, 폴란드와 더불어 거의 무제한의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어떠한 국가보다도 자본주의체제에 접근해가고 있다. 형가리는 독일과는 달리, 사회적 궁핍을 초래하여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재사유화(Reprivatisierung)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포괄적인 재사유화는 그 실현이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동독지역의 새로운 경제질서확립에 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949년 6월 8일 이후 정부에 의해 몰수된 토지의 보상을 위한 補償法(1991년 9월 발효)은 재사유화의 원칙대신에 원소유자에게 국유재산의 사유화시에 자신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보상증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개조·사유화의 제1차적 목적은 가능한 한 신속하고 마찰없이 또한 사회적인 조화 속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써 국제경제교류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유럽공동체라는 정치·경제조직에 가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기업개조법의 제정과 더불어 소유권 구조를 국가소유에서 혼합소유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법적 체제가 일단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사유화시 그 경영인들이 자신의 지위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짐으로 인하여, 특히 국유재산이 싼 가격으로 매각되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청을 설치, 국유기업의 개조와

사유화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형가리에서는 기업이 사유화와의 직접적 관련하에 개별적으로 개조되고 있으며, 독일의 획일적인 개조와는 달리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형가리의 국유기업의 사유화의 방법은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988년 이래 형가리 사유화는 그 대부분이 자발적 사유화절차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으며 1990년상반기까지 100개 이상의 국유기업이 이 절차에 따라 사유화되었다. 사유화방법중 기업이 투자자와 협력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가장 관심을 끄는 사유화 형태이다. 국유기업의 기업협의회가 수익성과 사유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업을 분할하거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개조하여 사유화를 추진하게 되며, 국유재산관리청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매각을 승인하거나 인수신청을 기각 또는 그 대안을 제시한다. 사유화방법의 두번째는 국유재산관리청이 직권으로 사유화대상기업을 선정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사유화방법에서 국유재산관리청은 사유화계획에 따라 20-30개의 대상기업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기업군의 사유화방법 예컨대, 공채발행, 경매, 근로자지분배당, 외국인의 지분제한 등을 결정한다. 세번째는 국유기업의 사유화과정에서 경영자와 근로자에게 기업지분의 일부(15%이하)를 매각하여 그들에게 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국유재산관리청의 권한확대로 인하여 국유기업의 재산의 신속한 이용·매각이 오히려 지장을 받게 되자 「 잠정적 국가재산의 매각·이용·보호에 관한 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 법은 개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그러한 개조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첫째, 국유기업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개조계획을 국가재산관리청이 수리한 경우 또는 개조의 실행에 관하여 자문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재산관리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더욱 광범한 활동범위를 갖는다. 둘째, 개조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되지 아니한 경

우, 국가재산관리청은 보다 간소하고 신속한 절차에 따라 개조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국유기업의 채무문제 및 외국인의 토지소유 문제 등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장애가 가로 막고 있다. 또한, 국유재산관리청은 형가리측의 지분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을 과대평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등 서방기업에 의한 국유기업 인수에 대한 통제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회계방법의 차이, 주식시장의 원시성, 시장조건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국유기업의 자산을 정확히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사유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국유기업의 자산평가, 인수기간, 관련법 규 및 시장확보와 경제성 등을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획경제체제에서의 결산방식은 현실과 괴리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으로 토지, 건물,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개조와 사유화를 위해서는 매매와 투자의 이해관계자에게 실제의 가격·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형가리 정부는 1992년 5월 28일 국유기업의 매각시 입찰가격이 비슷할 경우에는 국내투자자에 매입우선권을 부여하고 매입능력이 없는 국내투자자에 특혜임대 내지 선택매매권 부여 등으로 지원하며 1992년중의 예상되는 사유화가액 570억 포린트 중 160억 포린트를 국내투자자에게 재정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형가리 사유화는 국유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주식으로 국민들에게 분배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쿠헨제 사유화' 계획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92년 7월 14일 발효한 종업원주식소유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사의 종업원은 정부의 후원계획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회사의 일부주식을 공동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1991년에는 민법을 개정, "사회주의 소유" 형태가 폐지됨으로써 국유의 삼립과 토지가 매각될 수 있게 되었다. 1992년 말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항구적인 국가소유로 남게 될 기업체의 관리

와 이 용에 관한 법안은 당분간 국가소유로 남게 될 재산을 보호하고 사유화된 기업에서 국가의 주식을 보유하게 될 국유재산관리주식회사의 설립을 예정하고 있다. 통신·에너지·군수산업 등은 사유화대상이 되지 아니한 바, 이러한 산업에 속한 국유기업의 대부분이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유기업의 사업구조개편과 조직의 효율성제고, 경영의 위임, 국유재산의 관리기구의 설립을 추진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회사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업초기년도에는 위탁된 재산의 수익률이 극히 낮다는 각국의 경험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예산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응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실체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국가는 경제조직(기업)의 개조를 통하여 설립되는 일정한 회사에 대하여는 배타적인 지분을 갖지 아니하며, 국유재산관리주식회사는 그러한 회사에 외부 기업가를 참여시켜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한 회사의 주식(또는 영업지분)은 항구적 국가소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개조후 매각된다. 이상과 같은 사유화절차는 향후 형가리의 경제 운용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된다.

3. 회사법은 소유제도개혁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로서 국유기업 위주의 기업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여러 가지 소유형태의 회사가 동등한 조건하에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촉진 시킨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聯合, 공동기업 등의 회사설립 및 이들 회사의 경영 활동과 국가에 의한 기업활동규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 가속화되고 회사경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회사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자본의 대규모유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회사법은 그 제정이후 형가리내 외국인투자보호에 관한

법률, 증권법, 양허법 및 개인기업법 등 몇개의 법령을 통해 부분적으로 개정된 바 있으며, 1991년 회사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광범하게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적 공증인제도를 인정하고, 회사가 헝가리 국내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다른 회사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명칭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사등기부 및 부속문서상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되도록 하고, 원시정관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사의 자본은 구성원의 금전출자와 현물출자로 형성되고 현물출자는 지적 소유권과 제3자의 송인없이 양도가능한 권리 등으로 이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금전이나 기타 가치있는 권리에 대해 지분이 인정되며 외국인투자자가 지분의 취득을 위하여 재화로 출자할 수도 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는 최소자본금의 요건이 있다. 설립등기일은 법적으로 회사설립일이 되며 회사의 정관작성일까지 그 효력이 소급된다. 외국인이 지분의 전부 또는 과반수를 소유하는 회사의 설립 또는 외국인의 회사지분을 과반수 취득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이 회사에 참가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특정한 영업활동 수행에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외국인이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도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유한회사는 1인회사의 형태로도 존속할 수 있으며, 자본금 총액이 1,000,000포린트를 하회하거나 금전출자액이 등기된 자본금의 30% 또는 500,000포린트를 화회할 수 없다. 회사등기전에 현물출자는 완전히 그리고 금전출자는 반액이상 이행되어야 하며, 금전출자의 잔액은 회사등기일로부터 1년내에 전부 이행되어야 한다. 1인회사의 경우에는 등기시까지 금전출자와 현물출자의 전부가 이행되어야 한다. 사원총회는 매년 1회이상 소집되는 유한회사의 최고기관이며 총회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외에도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다. 업무집행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회사를 대표하며,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도 있으나 다만 그 제한은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유한회사에 비해 출자자가 다수이며 더욱 구체화된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며, 1인회사의 형태로도 존속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모집설립과 발기인이 모든 주식을 인수하는 발기설립이 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이며,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개정, 자본의 증감, 주식의 전환과 주식에 부가된 권리의 변경, 회사의 합병·분할·조직변경·해산에 관하여 결정하는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이사는 회사를 대리하여 서명할 권한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합자회사와 합명회사에 관한 회사법의 규정은 주로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장 복잡한 형태의 업무는 합명회사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회사법의 개정전의 제62조에 의하면 합명회사의 자연인 사원은 자신의 업무집행활동에 종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1992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의무는 임의적인 것이 되었다. 물론 그러한 업무집행활동은 회사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행될 수 있는 것이며 이 점은 합명회사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합자회사는 회계법(Accountancy Act)의 규정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어느 1회계년도의 매상액이 50,000,000 포린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단식부기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유한회사는 복식부기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簡易損益差減報告書외에는 손익계산서 또는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편이성도 최근 형가리에서 합자회사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일반매상세(General Turnover Tax)법의 규정

에 의하면 합자회사는 현금을 실제로 회수한 후에 매상세를 납부하지만 유한회사는 송장을 송부한 날의翌月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반환받을 수 없는 청구금(부실채무)에 대한 일반매상세는,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채무를 회수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취소될 수 있다.

4. 회사의 회계·감사제도의 개혁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의 하나이다.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회계법도 이러한 취지를 천명하고 있으며, 기업의 보고서 작성시 국제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기업의 실제 재산과 재정상태가 제시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보고서는 당해 연도의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 기업의 자생력여부, 신용도 및 투자 가치의 유무에 대한 정보를 채권자와 투자자에게 제공하게 되므로 회계자료의 신뢰성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기업의 연말결산보고서의 모든 항목은 기본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어 감사의 점검을 받은 후, 등기법원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회계법은 금전중심의 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실채무와 소각된 주식에 관한 규정은 없었고 감가상각비도 西歐에서 채택되는 비율보다 상당히 낮은 고정비율로 계상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계법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성되는 "실질자산"(material asset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비용으로 계산될 수 있는 실질자산의 감가상각율은 기업 자신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의 노사관계는 형가리의 노동법 그리고 기타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회사의 정관과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1992년 형가리의회는 새로운 노동법(1992년 7월 1일 발효)을 제정하였다. 개정노동법의 주요 특징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 협상창구인 직장협의회(Shop Council)를 마련함으로써 종전과는 달리 각 교섭당사자의 자율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는 것이다. 개정노

동법은 기업재편 및 근로자 훈련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직장협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원만한 노사관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개정 노동법은 경쟁원리가 적용되는 분야의 노동만을 규율하고 있으며, 공공관리부문의 고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령(1992년 제13호 법률)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 병원, 정부출연기관에 고용된 공무원의 노동에 대하여는 또 다른 법안이 마련중이다. 개정 노동법은 노동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없애고, 법정최고노동시간, 초과근무, 법정휴가, 손해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등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기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간의 단체협상에 일임하고 있다.

1986년 파산법의 제정에 의하여 경쟁에 뒤진 기업의 파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업파산에 따른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업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 1992년 1월 1일부터는 파산, 청산절차 및 和議에 관한 새로운 법이 시행되고 있다. 1992년 5월 15일 현재 협가리 상공부 관할 450개 국유기업 중 102개사가 파산신청한데다 국영건설업 20개사와 국영상업부문 17개사의 자금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국유기업의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992년에는 1975년 사회보장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로써, 고용의 개념은 종전보다 훨씬 좁아져서 “법정근로시간”이라는 용어는 그다지 중요하지않게 되었다. 다만, 주당 36시간미만의 고용과 그 이상의 고용을 주문하여 후자를 주된(regular) 고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중고용, 분업, 시간제 근무 및 수시적 육체노동간에 (사회보험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고용주는 봉급, 임금(시간제임금, 수당, 월급, 초과근무수당, 대기성(standby)보수, 퇴직수당) 및 보너스, 장기근속수당, 연말배당, 성과금, 병가시지급된 평균임금 현물급여 등의 지급금에 대하여 44%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협가리 중앙은행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기 위해 1992년 5

월 26일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상업은행간의 외환거래를 7월 1일부터 허용함과 동시에 중앙은행의 외환보유 독점을 철폐하고 자국화폐의 태환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외환시장의 형성을 유도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치에 따라 상업은행들은 이전까지 일정액 이상의 경화는 중앙은행에 매각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대신 상업은행 상호간 경화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의 외환거래를 감시함으로써 포린트貨의 환율변동폭을 0.25% 내로 제한하여 급격한 가치변동을 억제하고 점차적으로 그 변동 허용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1990년 3월 동구에서 최초로 성립된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법률인 증권거래법은 증권거래위원회의 기능과 증권발행의 조건, 그리고 증권거래소의 구조와 기능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1991年에는 내부자거래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개설은 외형적으로나마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의미하며, 신설기업의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기존 국유기업의 사유화 및 주식회사 전환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5. 1988년 조세우대조치, 투자우선대상지역의 선정, 등록절차 및 세무보고절차의 간소화, 100% 외국인투자기업의 인정, 과실의 해외 송금허용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되었으며, 199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조문에 의하여 합작기업의 설립 시 요구되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완화 또는 삭제되었다.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포인트화의 不換性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의 장애 요소로 남아있다. 외국인투자법외에도 외국인투자관련법규로서 대표적인 법령은 회사법, 법인세법, 기업개조법 등이 있으며, 기업은 이들 법령에 의거하여 기업활동을 하게 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대부분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있으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의 형태도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이 참가한 회사가 다시 다른 회사에 참가할 수도 있다. 개정된 조문에 의하여 합작기업

의 설립에는 재무부와 대외경제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외국인지분은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도 합작투자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다만, 형가리내에서의 외국인의 회사참가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른다. 즉, ① 외국인참가자는 記名株券만을 소지할 수 있고, 株金額을 반드시 硬貨(hard currency)로써 금전납입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이 10%이상인 합작기업은 기업인수로 간주되어 국유재산관리청의 승인을 요한다. 합작기업의 자본금은 금전출자 또는 노우 하우·건물·설비 등 현물출자로 납입할 수 있으며, 금전출자는 硬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외국의 합작당사자가 납입자본금으로 수입하는 물품과 설비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중에서 현물출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제한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형가리의 합작당사자는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형가리에 기업을 설립한 자 또는 사원으로서 형가리 국적을 보유한 자, 법인, 법인격없는 기업 및 자연인이다. 이러한 점은 중국이 합작당사자로서 자연인을 제외한 점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측 당사자의 硬貨收入의 해외송금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이익배당금 등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원천파세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도, 기업이익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감면받으며,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회사에 제공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수입세가 면제된다.

형가리의 자유무역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세법, 외환법, 대외무역법, 노동법 및 조세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크게 수정되어 적용된다. 이 지역에 설립된 기업은 소위 “域外企業”(offshore enterprise)으로서 별도의 관세규칙이 적용되며, 상품에 대한 간접세도 면제되고 외환·가격통제를 받지 아니하며, 직접세(영업이익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도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우대조치를 받는다. 즉, 기업은 자신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원자재·부품·장비에 대하여는 수입관세가 면제되며, 저장·가공·생

134 헝가리의 經濟改革法制研究

산기간중에 조세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상품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는 관세와 매상세를 납부하지 하지 않고 헝가리의 다른 지역 또는 외국에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이 헝가리의 내수시장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된다.

参考文献

『東歐3國의 交易 및 投資案内:헝가리·체코·폴란드』(韓國貿易協會, 1991).

『헝가리 便覽 - 1992』(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附設 地域情報센터, 1992).

早川弘道, “ハンガリーの 憲法改正(1989年), 法律時報 第62卷 3號 (1990).

島村博, “社會主義の國家企業の破産制度について”, 國際商事法務, Vol.16, No.12(1988), Vol.17, No.1(1989).

-----, “ハンガリーの經濟的社團に開する法律 (會社法, “ 國際商事法務, Vol.2(1989).

-----, “ハンガリーの國家企業の「民營化」法”, 國際商事法務, Vol.19. No.11 (1989).

-----, “ハンガリーの當業利益税に開する法律”, 國際商事法務, Vol. 19, No.6 (1989).

-----, “ハンガリーの證券取引ハンガリーのハンガリーのハンガリーのハンガリーの法”, 國際商事法務, Vol.18, No.12(1990).

-----, “外國人によるハンガリーの投資に開する法律,” 國際商事法務, Vol.19, No.9(1989).

Act on Employees' Stock Ownership Programme, (Budapest: Ministry of Finance, 1992).

Act on the Investments Funds, (Budapest: Ministry of Finance, 1991).

Conference on the New Economic Laws, (Budapest: Ministry of Finance, 1992).

Key Legal Facts for the Foreign Investor in Hungary, (London: Allen & Overy, 1992).

New Labour Code in Hungary, (Budapest: Ministry of Finance, 1992).

Privitisa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a, (London: Allen & Overy, 1992).

Ausländischer Wirtschafts- und Steuerrecht: Ungarn, Gesetz über ausländische Investitionen Gesetz über Wirtschaftsgesellschaften von 1988, (Köln: Bundesstelle für Außenhandelsinformation, 1989).

Ausländisches Wirtschafts- und Steuerrecht: Ungarn, zur Einführung der Mehrwertsteuer und der Persönlichen Einkommensteuer durch die Steuerreform 1988, (Köln: Bundesstelle für Außenhandelsinformation, 1988).

Gabriella Izik-Hedri, "Ungarn on Wandel: Voraussetzungen und Perspektiven," *Osteuropa Recht*, Band 40, Heft 5(1990.5).

Halmi, Gabor, "Von der gelebten Verfassung bis zur Verfassungsstaatlichkeit in Ungarn," *Osteuropa Recht*, Band 36, Heft 1 (1990).

Izdebski, "A Revival of commercial Law in the Soviet Union and Other European Socialist Countries", *Review of Socialist Law*, Vol.15 (1989).

Kadar, Bela, "The EC: A Hungarian View Toward 1992", *Case Western Reserv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2 (1966).

Kwasny, Kurt, "Zwischen Wirtschaftsaufschwung und Armut-Demokratie: Zur Lage in Ungarn ein Jahr nach den Wahlen," *Osteuropa Recht*, Band 37, Heft 4(1991),pp. 581~582.

Majoros, Ferenc, "Ungarns neue Verfassungsordnung: Die Genese einer neuen demokratischen Republik nach westlichen Maßstäben," *Osteuropa Recht*, Band 36, Heft 3(1990).

Roggemann, Herwig, "Unternehmensumwandlung und Privatisierung in Osteuropa und Ostdeutschland," *Recht in Ost und West*, Band 36, Heft 2(1992).

Racz, Jozesf, "The Legislation Concerning the Employment Situation of Foreigners in Hungary," *Hungarian Market Report*, Vol.3. No.2 (1992).

Hungarian Economic Review, No.2 (1991. 6)~No.10 (1992. 10).

Recht in Ost und West, Band 40. (1990)~Band 42. (1992).

資 料

憲 法

(1989년 10월 18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헝가리는 공화국이다.

제2조 ① 헝가리공화국은 독립된 민주적 법치국가이며 시민적 민주주의와 시민적 사회주의의 모든 가치를 균등하게 실현한다.

② 헝가리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은 선출된 의원을 통하여 또는 직접 주권을 행사한다.

③ 모든 사회단체·국가기관·국민은 폭력으로 권력을 획득하거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하여 활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 수단을 통하여 대항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조 ① 헝가리공화국에서는 헌법과 합헌적인 법규의 준수를 전제로 정당의 자유로운 결성과 활동이 보장된다.

② 정당은 민의의 형성과 표명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정당은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며 어떠한 정당도 국가기관을 지도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정당과 공권력을 분리하기 위하여 정당의 구성원이나 임원이 취임할 수 없는 공적 직무와 직책을 법률로 정한다.

제4조 노동조합 및 기타 다른 이익대표단체는 피고용자, 협동조합원 및 사업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표한다.

제5조 헝가리공화국은 국민의 자유 및 권리와 국가의 독립 및 영토 즉, 조약으로 정한 국경을 방위한다.

제6조 ① 헝가리공화국은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쟁을 부인하며 타국의 독립이나 영토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거나 무력에 의한 위협을 하지 아니한다.

② 헝가리공화국은 세계의 모든 국민 및 국가와 협력한다.

헝가리공화국은 국외에 거주하는 헝가리인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그들과 헝가리와의 관계유지를 노력한다.

제7조 ① 헝가리공화국의 법질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수용하고 헝가리공화국이 승인한 국제법적 의무와 국내법의 조화를 도모한다.

② 입법질서에 대하여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법률로 정한다.

제8조 ① 헝가리공화국은 인간의 신성불가침한 모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 이를 권리의 존중과 보호는 국가의 제일의적인 책무이다.

②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모든 법규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를 정할 수 있다.

③ 기본적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법률에 의하여서만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은 국가의 안전, 국내질서, 공공의 안전, 공중위생, 사회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54조 내지 제56조, 제57조 2항 내지 4항, 제60조, 제66조 내지 제69조, 제70조의 E조에 규정된 기본적 권리인 비상사태, 긴급사태, 위협 상태하에서도 이를 제한하거나 정지시킬수 없다.

제9조 ① 형가리의 경제는 계획화의 장점을 이용한 시장경제이며 여기에는 사회적 소유와 사적 소유가 평등한 보호를 받는다.

② 형가리공화국은 경쟁중립원칙의 입장에서 사업활동의 권리와 경쟁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지한다. 이의 제한은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법률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제10조 ① 형가리공화국의 재산은 국민의 재산이다.

② 국가의 독점적 재산 및 독점적 경제활동의 범위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국유기업 및 경영조직은 법률에 규정된 방법과 책임으로 자립적으로 운용된다.

제12조 ① 국가는 자발적인 연합에 의한 협동조합운동을 지지하고 협동조합의 자립성을 보장한다.

② 국가는 생산자자주관리와 자치조직에 의한 소유의 창출 및 운용을 보장한다.

제13조 재산에 대한 수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경우와 방법으로 완전하고 조건없는 卽時補償을 전제로 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 헌법은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15조 형가리공화국은 혼인제도 및 가족제도를 보호한다.

제16조 형가리공화국은 청소년의 생활을 보장하고 교육 및 육성에 특별한 배려를 하며 그들의 이익을 옹호한다.

제17조 형가리공화국은 광범위한 사회보장조치를 통하여 困窮한 자가 보호를 받도록 노력한다.

제18조 형가리공화국은 건강한 환경을 위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승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2 장 국 회

제19조 ① 형가리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 및 국민대표기관은 국회이다.

② 국회는 국민주권에서 연유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사회의 헌법질서를 유지하며 정부의 조직, 활동방향, 기타 조건을 규정한다.

③ 국회는 다음 법적 권한을 가진다.

1. 형가리공화국헌법의 제정

2.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법률 제정

3. 국가의 사회·경제계획의 수립

4. 국가재정을 확정하고 국가예산 및 그 집행의 승인

5. 정부의 계획의 승인

6. 형가리공화국의 외교에 특히 중요한 국제조약의 체결

7. 전쟁상태의 선언 및 강화에 관한 결정

8. 전쟁상태 또는 외부권력에 의한 무력공격의 직접적 위협(전쟁의 위

- 기)에 즈음하여 비상사태의 선언 및 국방평의회의 설치
9. 헌법질서의 파괴 또는 권력의 독점적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무력에 의한 중대한 폭력행위, 자연재해 또는 산업사고(이하 긴급상황이라 한다)에 즈음하여 긴급사태의 선언
10. 국외 또는 국내에서의 무력발동의 결정
11. 공화국 대통령, 각료평의회, 헌법재판소 구성원,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회위임관, 국가회계감사원장 및 부원장, 형가리국립은행총재, 대법원장, 검찰총장의 선출
12. 각료평의회의 제안에 의하여 헌법에 저촉하는 활동을 한 지방평의회의 해산
13. 사면
- ④ 제3항의 7, 8, 9, 10호에 규정된 결정을 하는 데에는 재적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⑤ 국민투표는 국회가 포고한다. 국민투표에 관한 모든 법규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법률로 정한다.
- 제19의1조 ① 국회가 전쟁상태의 선언, 비상사태의 선언, 국방평의회의 설치, 긴급사태의 선언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화국 대통령이 이를 할 수 있다.
- ② 국회가 1항의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함은 국회가 개회중이 아니면서 소집할 시간이 없거나 전쟁상태, 비상상태 또는 긴급사태를 발생하게 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인 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③ 국회의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및 전쟁상태, 비상상태 또는 긴급사태 등 선언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국회의장, 憲法裁判所長 및 각료평의회의장이 공동으로 판정한다.
- ④ 국회는 전쟁상태, 비상상태 또는 긴급사태 등 선언의 타당성을 국회의 결정불능사유가 소멸된 후 소집된 최초의 회의에서 심사하고, 적용된 모든 조치의 적법성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는 재적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19의2조 ① 비상사태시의 국외 또는 국내에서의 무력발동, 특별법에 규정된 비상조치의 실시에 관한 결정은 국방평의회가 한다.
- ② 국방평의회는 국회의장,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의원단장, 소속 정당이 없는 국회의원의 대표자, 각료평의회의 의장 및 구성원, 형가리군종사령관으로 구성되며 그 의장은 공화국 대통령이 된다.
- ③ 국방평의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 1 국회가 국방평의회에 부여한 모든 권한
 - 2 공화국 대통령의 모든 권한
 - 3 각료평의회의 모든 권한
- ④ 국방평의회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명령에 의하여 법률의 적용을 정지시키거나 법률의 규정과 다른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의 적용은 정지시킬 수 없다.
- ⑤ 국방평의회의 명령은 비상사태의 소멸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회가 명령의 효력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헌법재판소의 활동은 비상사태시에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 제19의3조 ① 긴급사태의 선언시에 국회가 무력발동을 결정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공화국 대통령이 이를 결정한다.

② 긴급사태의 선언시에는 공화국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특별법에 규정된 비상조치를 실시한다.

③ 공화국 대통령은 실시되는 비상조치를 즉시 국회의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긴급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국회는 (국회가 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계속하여 개회되어야 한다. 국회 또는 국회 국방위원회는 공화국 대통령이 실시한 비상조치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실시되는 비상조치는 30일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국회가(국회가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회국방위원회가) 그 효력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긴급사태에 대하여는 비상사태에 관한 모든 법규를 준용한다.

제19의4조 비상사태 및 긴급사태에 적용할 상세한 법규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법률로 정한다.

제20조 ① 국회의원은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② 국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다.

③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승인없이 체포 또는 소추할 수 없다.

④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수, 소정의 특전, 경비보전을 위한 경제보상을 한다. 보수와 경비보상의 금액, 특전의 범위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에는 보수의 완전급부에 관하여 조건을 불일 수 있다.

⑤ 국회의원은 공화국 대통령, 헌법재판소구성원,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회임관, 국가회계감사원장관 및 차관, 회계감사관, 재판관, 검사, 행정기관의 직업적 구성원이 될 수 없다.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법률은 기타의 겸직금지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⑥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법률로 정한다.

제20의1조 ① 국회의원의 직위는 다음의 경우에 소멸한다.

1. 국회의 임기가 종료한 때

2. 국회의원이 사망한 때

3. 겸직금지가 선언된 때

4. 사임한 때

5. 선거권을 상실한 때

② 국회의원에게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겸직금지원인(제20조5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제안에 의하여 국회는 겸직금지선언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은 국회에 대한 의사표명으로 사임할 수 있다. 사임의 유효성에 대하여 국회가 수락표명을 할 필요가 없다.

제21조 ① 국회는 국회의원중에서 의장, 부의장, 서기를 선출한다.

②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도 이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국회의 위원회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

제22조 ① 국회는 매년 2회의 회기로 개회하여야 한다. 그 회기는 매년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및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한다.

② 국회의 개회총회는 공화국 대통령이 총선거후 1년 이내에 소집한다.

국회의 각회기 및 그 회기내의 회의소집은 국회의장이 한다.

③ 공화국 대통령, 각료평의회 또는 재적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이 문서로 요구한 경우에는 감시회기 또는 감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요구서에는 소집의 이유, 제안의 일시 및 의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공화국 대통령은 1회기에 1회를 한도로 30일의 범위내에서 회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⑤ 중지기간중에 재적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이 문서로 요구한 경우에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8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공화국 대통령 또는 각료평의회가 요구하거나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재적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는 비공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 ① 국회는 재적의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국회는 출석의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헌법개정, 헌법에 규정된 일정한 의사결정,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법률의 제정에는 재적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국회는 운영규칙으로 국회의 활동규칙과 심의절차를 정한다.

제25조 ① 법률은 공화국 대통령, 각료평의회, 국회위원회, 국회의원이 발의한다.

②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국회의장이 서명하여 공화국 대통령에게 이송한다.

제26조 ① 공화국 대통령은 법률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국회의장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이에 서명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법률은 관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② 공화국 대통령이 법률안 또는 그 일부 조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1항의 기간내에 그의 견해를 제시하여 재의하도록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할 수 있다.

③ 국회는 법률안을 재심의하여 이를 재의결하여야 한다. 그후 국회의장으로부터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는 공화국 대통령은 거기에 서명하고 5일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④ 공화국 대통령은 법률안에 서명하기 전에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이 법률안을 의견청취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이송한다.

⑤ 헌법재판소가 그 임시심사에서 위헌이라고 인정한 경우에 공화국 대통령은 이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률안에 서명하고 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27조 국회의 구성원은 그의 직무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화국 대통령,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회의장관, 국가회계감사원장관, 형가리국립은행총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또 각료평의회, 각료평의회의 구성원, 검찰총장에 대하여 질문서를 제출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제28조 ① 국회의 직무는 개회총회로 개시된다.

② 국회는 임기종료전에도 해산을 선언할 수 있다.

③ 공화국 대통령은 국회가 동일임기중으로서 12월 이내에 4회이상

1. 각료평의회의 신임을 취소하거나

2. 새 각료평의회에 신임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총선거를 고하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④ 공화국 대통령은 제3항에 규정된 권리를 대통령임기중에서 2회에 한
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⑤ 국회해산에 앞서 공화국 대통령은 각료평의회의장, 국회의장,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의원단장, 소속정당이 없는 국회의원의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새 국회는 국회의 임기종료 또는 해산후 3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
다. 국회의 활동은 새 국회의 개회총회까지 계속된다.

제28의1조 ① 비상사태 또는 긴급사태중에는 국회는 해산을 선언할 수 없
으며 해산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임기가 비상사태 또는 긴급사태중에 종료되는 경우에 그 국회의
임기는 비상사태 또는 긴급사태가 소멸하기까지 연장된다.

③ 공화국 대통령은 전쟁상태, 전쟁의 위험상태 또는 긴급상황이 발생
한 때에는 해산하거나 해산된 국회를 다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국회의 임기연장에 대하여는 국회가 결정한다.

제 3 장 공화국 대통령

제29조 ① 공화국 대통령은 평가리국가의 원수이며 국가의 통일을 상징하
는 자로서 국가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화국 대통령은 군대의 최고사령관이다.

제29의1조 ① 공화국 대통령은 국회가 4년의 임기로 선출한다.

② 공화국 대통령은 선출당일 현재 35세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중에
서 선출한다.

제29의2조 ① 공화국 대통령의 선출에는 우선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후보자의 추천은 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문서로 하여야 한다. 후보자
추천서는 투표명령 이전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1인의 후보자만을 추천할 수 있다. 복수후보자를 추천한 자의 추천은
무효이다.

② 국회는 공화국 대통령을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투표회수는
필요에 따라 수차할 수 있다. 제1차 투표에서 선출되는 공화국 대통령
에는 재적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취임한다.

③ 제1차 투표에서 어느 후보자도 제1항의 투표비율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하여 재투표를 하여야 한
다. 제2차 투표에서도 재적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④ 제2차 투표에서 필요한 다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3
차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차투표는 제2차투표의 상위 2인의 후보
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차투표에서 선출되는 공화국 대통령에
는 (투표자수에 불구하고) 상대다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취임한다.

⑤ 투표는 연속되는 3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제29의3조 ① 공화국 대통령은 전임대통령의 임기종료 3일 이전에, 전임대
통령의 직위가 임기종료전에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후 3일 이내에 선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의 선출은 국회의장이 공고한다.

제29의4조 선출된 공화국 대통령은 전임대통령의 임기가 종료한 때에, 또 는 임기가 종료하기전에 직위가 소멸한 경우에는 선거결과가 공고된 후 8일이 되는 날에 취임한다. 취임에 앞서 국회에 대하여 선서한다.

제29의5조 ① 공화국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공화국 대통령의 직위가 임기종료전에 소멸한 경우에는 신임 공화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공화국 대통령의 법적 권한은 국회의장이 행사한다. 다만, 이 경우에 국회의장은 법안을 제의하도록 국회에 환부하는 권한과 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송부하는 권한 및 국회를 해산하는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사면권의 행사는 형의 확정자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

② 공화국 대통령을 대행하는 동안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의장의 직무는 국회의장에 대신하여 국회가 선출한 국 회부의장이 수행한다.

제30조 ① 공화국 대통령의 직책은 다른 국가적·사회적·정치적 직책이나 직위와 양립할 수 없다. 공화국 대통령은 다른 보수있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기타의 활동에 대하여 저작권보호에 속하는 활동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② 공화국 대통령의 보수, 특전 및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경비보상액에 대하여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법률로 정한다.

제30의1조 ① 공화국 대통령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협정국가를 대표한다.

2. 협정국의 이름으로 조약을 체결한다. 조약의 대상이 입법권에 속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한다.

3. 대사 및 공사를 임명하고 또 이를 접수한다.

4. 국회의 총선거 및 지방평의회의 선거를 공고한다.

5. 국회 및 국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국회에 대하여 조치의 실시를 요구하고 이를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

7. 국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8. 각료평의회의 의장을 통한 소관장관의 제청에 따라 국가서기를 임명·해임한다.

9. 특별법으로 규정된 각 기관의 제청에 따라 협정국립은행부총재, 대학교수를 임명·해임하고 대학학장을 임명·해임하며 사령관을 임명·승진시키고 협정국과학아카데미총재를 임명한다.

10. 법률에 규정된 공훈표창, 표창 및 칭호를 부여하고 이의 휴대를 허가한다.

11. 개인적 사면권을 행사한다.

12. 국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3. 특별법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② 공화국 대통령의 제1항에 규정된 모든 조치와 결정에 대하여는 1, 4, 5, 6, 7를 제외하고 각료평의회의 의장 또는 소관장관의 부처가 있어야 한다.

제31조 ① 대통령의 직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소멸한다.

1. 임기의 종료

2. 사망

3. 직무수행이 90일 이상 불가능한 상태

4. 겸직금지선언

5. 사임

6. 대통령직의 박탈

② 공화국 대통령에게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겸직금지원인(제30조 1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제안에 따라 국회는 겸직금지선언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의결은 재적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투표는 비밀투표에 의한다.

③ 공화국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의사표명으로 그 직위를 사임할 수 있다. 사임은 국회의 수락표명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국회는 15일 이내에 공화국 대통령에 대하여 그 결의를 재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화국 대통령이 그 결의를 변경하지 아니할 경우에 국회는 사임수락을 거절할 수 없다.

④ 공화국 대통령이 직무수행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의도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 이 의결은 재적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1의1조 ① 공화국 대통령은 불가침이다. 형법상의 보호는 특별법으로 보장한다.

② 직무수행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침해한 공화국 대통령에 대하여는 재적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그 책임追溯을 제기할 수 있다.

③ 責任追溯節次의 발동에는 재적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투표는 비밀투표에 의한다.

④ 국회의 의결후 責任追溯節次가 종료하기까지 대통령은 그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⑤ 행위의 판정은 국회에 의하여 국회의원중에서 선출된 12人으로 구성되는 심판평의회가 그 권한을 가진다.

⑥ 심판평의회는 심의결과 법률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회에 대하여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도록 제안한다.

제32조 ① 공화국 대통령에 대한 責任追溯節次가 재임기간중에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써 형법으로 追究할 수 있는 행위를 이유로 발동된 경우의 責任追溯節次는 형사절차의 기본적 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는 검찰총장이 대표한다.

② 공화국 대통령에 대한 기타의 행위에 의한 소추절차는 대통령의 직위가 소멸한 이후에 할 수 있다.

③ 공화국 대통령에게는 해당행위에 대하여 형법이 규정한 형벌과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공화국 대통령의 범죄가 고의적 범죄행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심판평의회는 형벌과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국회에 대하여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 제32의1조 ① 헌법재판소는 법규의 합헌성을 심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위헌판정을 할 경우에 법률 기타 법규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누구든지 이를 발의할 수 있다.
④ 15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국회가 선출한다.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선출에는 재적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 구성원은 정당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따른 직무이외의 정치활동은 할 수 없다.
⑥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법률로 정한다.

제 5 장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회위임관

- 제 32의2조 ①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회위임관의 직무는 헌법상의 모든 권리와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 인정된 비정상사태를 조사하거나 조사하게 하고 이의 개선을 위하여 일반적 또는 개별적인 조치를 발의하는 것이다.
② 국회위임관에 의한 절차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누구든지 이를 발의할 수 있다.
③ 국회위임관은 공화국 대통령의 제청에 의하여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헌법상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의 위임관을 선출할 수 있다.
④ 국회위임관에 관한 상세한 법규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법률로 정한다.

제 6 장 국가회계감사원

- 제32의3조 ① 국가회계감사원은 국회의 재무·경제감사기관이다. 그 직무에 의하여 국가의 재정운영 특히 국가예산안을 보장하며 세출의 필요성과 합법성을 점검하고 국고차입에 관한 모든 계약에 부서하며 세출의 적법성을 사전심사하고 국가예산의 집행에 관한 결정서를 점검하며 국가 자산의 운용과 국유기업·사업에 의한 자산가치의 유지·증식활동을 점검하고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으로 된 기타의 의무를 수행한다.
② 국가회계감사원은 그 감사활동을 적법성, 합법성, 효율성의 관점에서 실시한다. 국가회계감사원은 그가 행한 감사활동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국가회계감사원장관은 결산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회계감사원장관 및 차관은 국회가 선출한다. 회계감사관은 국가회계감사원장관이 임용한다.
④ 국가회계감사원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법률로 정한다.

제 7 장 각료평의회

제33조 ① 각료평의회(정부)는

1. 각료평의회의장
2. 국무장관
3. 장관으로 구성된다.

② 각료평의회의장은 각료평의회에 의하여 지명된 국무장관이 대행한다.
③ 조각에 대하여는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의원단장 및 소속정당
이 없는 국회의원의 대표자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공화국 대통령이 이를 위탁한다. 각료평의회의 선출과 각료평의회의 시정계획에 대하여는 국회가 이를 동시에 결정한다. 각료평의회의 직무는 국회에 의하여 선출된 새 각료평의회가 취임하기까지 계속된다.

④ 각료평의회의 구성원은 각료평의회의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회가 선출하고 해임한다.

⑤ 각료평의회의 구성원은 그 선출후 국회에 대하여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헝가리공화국의 부처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법률로 정한다.

제35조 ① 각료평의회는

1.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며 보장한다.
2. 법률의 집행을 담당한다.
3. 부처 및 각료평의회에 직속하는 모든 기관의 활동을 지휘하고 조정한다.
4. 지방평의회에 대하여 적법성에 관한 감독을 한다.
5. 사회·경제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6. 과학·문화의 발전에 관한 국가적 과제를 결정하고 그 실현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확보한다.
7. 사회보장·위생사업의 국가적 제도를 결정하고 그 물질적 지원을 보장한다.
8. 군대, 경찰 및 치안기관의 활동을 지휘한다.
9. 국민의 생명·재산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와 그 피해(이하 위험상태라 한다)를 제거하고 사회질서와 지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0. 대외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헝가리공화국정부의 명의로 조약을 체결한다.
11.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② 각료평의회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고 결정을 채택한다. 이에 대하여는 각료평의회의장이 서명한다. 각료평의회의 명령 및 결정은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각료평의회명령은 이를 관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위험상태에 즈음하여 각료평의회는 국회가 부여한 권한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과 다른 명령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위험상태에 적용할 모든 법규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법률로 정한다.

④ 각료평의회는 그에 종속하는 기관의 법률에 저촉되는 결정 또는 조치를 무효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 각료평의회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단체와 협력한다.

제37조 ① 각료평의회의장은 각의를 주재하고 각료평의회의 명령 및 결정

의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법규와 각료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그 직무에 속하는 행정분야를 지도하고 직속기관을 지휘한다.

③ 각료평의회의장 및 구성원은 그 임무수행의 범위내에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다만, 이 명령은 법률 또는 각료평의회의 명령 및 결정에 저촉하여서는 아니된다. 명령은 이를 관보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38조 전국적 권한을 가진 기관에 대한 지도를 위탁받은 국가서기는 각료평의회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영역내에서 국민, 국민기관 및 경제조직에 대하여 의무적 조치를 발할 수 있다. 이는 관보에 공포하여야 한다. 이 조치는 국회 및 각료평의회가 제정한 모든 법규 및 장관명령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9조 ① 각료평의회는 그 활동에 대하여 국회에 책임을 지고 국회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할 의무를 진다.

② 각료평의회의 구성원은 각료평의회 및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활동에 대하여 각료평의회 및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각료평의회의 구성원 및 국가서기의 법적 지위, 보수, 책임추궁의 방법은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법률로 정한다.

③ 각료평의회의 구성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9의1조 ①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각료평의회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문서로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각료평의회의 의장에 대하여 제출된 불신임안은 각료평의회에 대한 불신임안으로 본다.

② 불신임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제안 3일후부터 제안 8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각료평의회는 의장을 통하여 제2항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신임투표를 제안할 수 있다.

④ 각료평의회는 의장을 통하여 그가 제출한 의안에 대한 투표가 동시에 신임투표임을 제안할 수 있다.

제39의2조 ① 신임을 얻지 못한 때에는 각료평의회는 새 각료평의회가 선출되기까지 그 직무를 담당하며 각료평의회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조약은 체결할 수는 없으며 명령은 법률에 규정된 권한부여에 의하여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발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신임취소후 40일이내에 새 각료평의회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40조 ① 각료평의회는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료평의회는 행정분야에 속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직접 또는 그 구성원을 통하여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각료평의회는 행정의 어느 부문에 대하여 직접 감독하에 두고 거기에 별개의 조직을 설치할 권한을 가진다.

제 8 장 군대와 경찰

제40의1조 ① 군대(헝가리 국경방위군)의 기본임무는 조국의 군사적 방위이다. 군대의 의무 및 이에 관한 상세한 법규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법률로 정한다.

② 경찰의 기본임무는 치안 및 국내질서의 유지이다. 경찰 및 국가안전에 관한 상세한 모든 법규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법률로 정한다.

제40의2조 ① 군대는 조약에 의한 군사행동 또는 국제연합의 요청에 의한 평화유지활동을 제외하고 국회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국경을 넘을 수 있다.

② 군대은 헌법질서의 파괴 또는 권력의 독점적 획득을 목적으로 한 무력행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대규모로 위협하는 무력에 의한 중대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헌법의 규정에 따라 선포된 긴급상태하에서 경찰의 대응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군대의 지위는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헌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 공화국 대통령, 국방평의회, 각료평의회 및 소관장관이 담당한다.

④ 군대 및 경찰 혈역구성원의 정당활동에 대하여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제40의3조 ①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외국군대는 국회의 사전승인 없이 영토를 통과하거나 이를 사용 또는 주둔할 수 없다.

② 국방에 관한 조약은 법률로 이를 확인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제 9 장 지방평의회

제41조 ① 헝가리공화국의 영토는 수도·도·시·면으로 구분한다.

제42조 ① 지방평의회는 수도·도·수도의 지구·시·면에 설치된다. 지방평의회는 시와 면, 복수의 면이 공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평의회의 의원은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③ 지방평의회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이 활발히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활동에 있어서는 사회단체에 직접 의거하거나 지방평의회 이외의 모든 기관과 협력한다.

④ 지방평의회의원은 지방평의회의 활동과 자기의 활동에 대하여 선거민에게 수시로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제43조 ① 지방평의회는

1. 주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활동구역주민의 자치기관이다.

2. 국가 및 지역적 목표의 실현, 직무권한에 속하는 주무의 자주적 수행, 법규의 집행에 노력한다.

3. (사회·경제 국가계획 및 국가예산을 고려하면서) 계획과 예산을 결정하고 계획의 수행, 예산의 사용을 관리·점검하며, 자주적으로 물질적인 모든 수반을 운용한다.

4. 지역·거주지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5. 헌법질서의 수호에 협력한다.

② 지방평의회는 활동분야의 범위내에서 명령과 결정을 발할 수 있다.

다만, 이 명령은 법률, 각료평의회의 명령과 결정, 장관명령, 국가서기의 조치 또는 상급평의회의 명령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자방평의회의 명령은 관행에 따라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44조 ① 지방평의회는 집행위원회를 선출하고 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문통치기관을 설립한다. 또 기업, 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평의회에 관한 상세한 법규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법률로 정한다.

제 10 장 재판조직

제45조 ① 형가리공화국에서는 형가리공화국 대법원, 수도법원, 도법원, 지역법원가 재판을 한다.

② 특정한 문제영역을 대상으로 특별재판소의 설치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 법원은 직업재판관 및 시민배심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재판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 형가리공화국 대법원은 모든 법원의 재판활동 및 판결에 대하여 원칙적 지시를 한다. 대법원의 지침과 원칙적 결정은 법원을 구속한다.

제48조 ① 대법원장관은 공화국 대통령의 제청에 의하여 국회가 선출하고 차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공화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직업재판관은 법률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공화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재판관은 법률에 규정된 이유와 절차에 의하여서만 그를 직위에서 해임할 수 있다.

제49조 (1989년 제31호 법률에 의하여 실효)

제50조 ① 형가리공화국의 법원은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 및 법률상의 이익을 보호 또는 보장하고, 범죄자를 처벌한다.

② 법원은 모든 행정적 결정의 적법성을 심사한다.

③ 재판관은 독립적이며 법률에만 따른다. 재판관은 정당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

④ 법원에 관한 법규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법률로 정한다.

제 11 장 검찰청

제51조 ① 형가리공화국 검찰총장과 검찰청은 국민의 권리보호에 노력하며 헌법질서와 국가의 안전 및 독립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추궁할 수 있다.

② 검찰청은 법률에 규정된 모든 사건을 수사하고 수사의 적법성을 감독하며 재판절차에 있어서 원고가 되고 형벌집행의 적법성을 감독한다.

③ 검찰청은 모든 사회단체, 국가기관, 국민이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와 방법으로 적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제52조 ① 형가리공화국 검찰총장은 공화국 대통령의 제청에 의하여 국회가 선출하고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공화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검찰총장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활동을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제53조 ① 검사는 형가리공화국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② 검사는 정당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

③ 검찰조직은 검찰총장이 지도하고 지휘한다.

④ 검찰청에 관한 법규는 헌법에 준한는 효력을 가진 법률로 정한다.

제 12 장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54조 ① 형가리공화국의 모든 사람은 생명과 인간적 존엄에 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이를 자의적으로 박탈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사람을 고문하거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본인의 승낙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55조 ① 형가리공화국에서는 누구든지 자유와 개인적 안정의 권리를 가진다. 법률에 규정된 이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② 불법한 체포 또는 구속을 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6조 형가리공화국의 모든 사람은 권리능력을 가진다.

제57조 ① 형가리공화국에서는 누구든지 법원 앞에 평등하며 그에 대하여 제기된 모든 죄상 또는 재판에 있어서 그의 권리와 의무가 법률에 의하여 독립되고 공평한 법원에서 공정하고 공개된 심리를 통하여 판정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형가리공화국에서는 법원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으로 형사책임을 확정하기까지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③ 형사절차에 있는 자는 절차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변호권을 가진다. 변호인은 변호과정에서 발생한 그의 견해로 인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누구든지 형가리법률이 범죄행위로 규정한 이전에 범한 행위로 인하여 범죄인으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⑤ 형가리공화국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재판관, 행정기관, 기타 공직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법적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8조 ① 형가리공화국의 영토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자는 누구든지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체재장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거주지 또는 국가를 떠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② 형가리공화국의 영토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외국인은 법률에 의한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추방당하지 아니한다.

제59조 형가리공화국에서는 누구든지 명예, 사적 주거불가침, 사적 비밀 및 개인적 정보를 지킬 권리를 가진다.

제60조 ① 형가리공화국에서는 누구든지 사상, 양심,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권리은 신앙 기타 양심에 의한 신조의 자유로운 선택과 수용을 포함한다. 이 권리에는 신앙과 신조를 종교행위나 의식을 통하여 개인적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공개장소 또는 사적 장소에서 표명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를 하지 아니할 권리와 이를 실행하는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가 포함된다.

③ 형가리공화국에서 교회는 국가로부터 분리되어 활동한다.

제61조 ① 형가리공화국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속하는 정보를 알거나 보급할 권리가 있다.

② 헝가리공화국은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한다.

제62조 헝가리공화국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한다.

제63조 ① 헝가리공화국에서는 결사의 권리에 의하여 법률로 금지되지 아니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을 설립하거나 이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② 정치적 목적에 봉사하는 무장조직을 결사의 권리에 의하여 설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64조 헝가리공화국에서는 누구든지 단독 또는 타인과 함께 문서로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 또는 苦情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65조 ① 헝가리공화국은 그의 조국 또는 그가 帶在하는 장소에서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언어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은 외국국적자 또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비호권을 가진다.

② 비호권을 누리는 자를 타국에 인도할 수 없다.

제66조 ① 헝가리공화국은 모든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권리에 대하여 남녀평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② 헝가리공화국은 산모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에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보조와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③ 노동의 과정에서 여성 및 청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한 법규에 의하여 보호한다.

제67조 ① 헝가리공화국에서 모든 아동은 건전한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성장에 필요한 보호를 가정, 국가, 사회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부모는 그親子에게 실시될 양육에 대해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③ 가족 및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국가적 과제는 특별법규로 정한다.

제68조 ① 헝가리공화국에서 생활하는 민족적 및 언어적 소수자는 국민권력의 참가자이며 국가의 구성요소이다.

② 헝가리공화국은 민족적 및 언어적 소수자를 보호한다. 공적 생활에 의 집단적 참가, 자기문화의 계승, 모국어의 사용, 모국어에 의한 교육, 모국의 언어에 의한 성명사용의 권리는 보장된다.

제69조 ① 헝가리공화국에서는 누구든지 헝가리국적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헝가리공화국의 영토로부터 추방되지 아니한다.

② 헝가리의 국민은 언제나 외국에서 귀국할 수 있다.

③ 모든 헝가리국민은 합법적인 외국체재기간중에 헝가리공화국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70조 ① 모든 성인인 헝가리국민은 정주지가 헝가리국내에 있는 동안 국회 및 지방평의회의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행위능력이 제한 또는 배제되는 보호감독을 받고 있는 자, 공적행위가 금지되는 법적 효력이 있는 판정을 받은 자, 법적 효력이 있는 자유 박탈처분을 받고 있는 자, 형사절차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명령으로 시설강제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③ 지역평의회의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헝가리공화국에 장기간 재유하는 헝가리국민이 아닌 자도 선거권을 가진다.

④ 모든 헝가리국민은 공적생활에 참가 하여 그 소질, 교육, 전문지식에 적합한 공적 직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제70의1조 ① 형가리공화국은 그 영토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모든 차별 특히 인종, 체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사유로 인한 차별없이 인간적이고 시민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②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열거한 모든 불이익한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법률로 엄하게 처벌한다.

③ 형가리공화국은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하여 법적 평등의 실현을 촉진한다.

제70의2조 ① 형가리공화국에서는 누구든지 노동의 권리와 노동과 직업자유선택권을 가진다.

② 누구든지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차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요구할 권리와 가진다.

③ 모든 근로자는 수행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소득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누구든지 휴양, 자유시간, 유급휴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0의3조 ① 형가리공화국의 영역내에서 생활하는 자는 가능한 높은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형가리공화국은 제1항의 권리를 노동보호, 위생시설, 의료봉사조직을 통하여 또 인공 및 자연의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실현한다.

제70의4조 ① 형가리공화국의 국민은 사회적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고령화, 질병, 상병, 독신녀, 고아, 자기의 책임이 아닌 실업의 경우에 생존에 필요한 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형가리공화국은 제1항의 급부권을 사회보장을 통하여 사회시설체계로서 실현한다.

제70의5조 ① 형가리공화국은 국민에 대하여 교육의 권리를 보장한다.

② 형가리공화국은 제1항의 권리를 공적 교육의 확대, 무상의 의무적 보통학교, 능력에 따라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중등 및 고등교육, 교육 대상자에 대한 물질적 원조를 통하여 실현한다.

제70의6조 ① 형가리공화국은 과학 · 예술생활의 자유, 교육내용의 자유, 교육활동의 자유를 존중한다.

② 과학적 진리에 관한 모든 문제의 판정, 연구의 과학적 가치의 확정은 과학에 참여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제70의7조 ① 조국의 방위는 모든 형가리공화국 국민의 의무이다.

② 국민은 일반적 국방의무에 따라 무장 또는 비무장의 병역이나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시민봉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0의8조 형가리공화국의 모든 국민은 소득과 재산상태에 따라 공적 부담을 담당할 의무를 진다.

제70의9조 형가리공화국에서 부모 및 양육자는 아동의 교육에 배려할 의무를 진다.

제70의10조 기본적 권리의 침해로 인한 요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한 모든 국가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원에서 처리한다.

제71조 ① 국회의원, 면평의원, 시평의회, 수도의 지구평의회의 구성원(지역 평의회의원)은 선거민이 보통·평등 선거권에 의하여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보통평의회의원은 수도의 지구평의회가, 도평의회의원은 시 및 면의 평의회가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③ 국회의원 및 지방평의회의원의 선출에 대하여는 특별법으로 정한다.

제72조 (1989년 제31호 법률에 의하여 실효)

제73조 (1989년 제31호 법률에 의하여 실효)

제 14 장 형가리공화국의 수도 및 상장

제74조 형가리공화국의 수도는 부다페스트이다.

제75조 형가리공화국의 국가는 고르치·페렌스가 작사하고 에르겔·페렌스 가 작곡한 것이다.

제76조 형가리공화국의 국장, 국기 및 그 사용에 대하여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법률로 정한다.

제 15 장 부 칙

제77조 ① 헌법은 형가리공화국의 기본법이다.

② 헌법 및 합법적인 모든 법규는 모든 사회단체, 국가기관 및 국민을 평등하게 구속한다.

제78조 ① 형가리공화국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시행에 대하여는 국가평의회가 책임을 진다.

② 국가평의회는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를 진다.

經營事業組織과 會社의 改造에 관한 法律

(1989년 5월 30일 제정)

제 1 부 총 칙

제 1 장 법률의 목적과 효력

제1조 이 법률은 이 법률이 적용되는 경영사업조직의 회사로의 개조, 회사의 합병과 분할 등 회사 상호간의 개조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률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號에 게기한 바와 같다.

1. 국유기업
2. 국가의 기타 경영사업기관
3. 일정한 법인으로 설립된 기업
4. 상기 기업의 자기업(이하 "자기업"이라 한다)
5. 협동조합
6. 제3항에 열거된 제한에 따라, 회사
② 이 법률은 다음 각號에 게기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수리조합
 2. 법인격있는 노동공동체
③ 합병(회사법 제4장)에 대하여는 이 법률 제2장, 제5장, 제9장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제3조 수공업자 및 사적거래자는 영업이익세에 관한 1988년 법률 제9호가 적용되는 납세자임을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분리구별되는 재산에 의하여 1人 유한회사로 개조할 수 있다.

제4조 이 법률의 규정은 청산 또는 최종결산이 진행중인 조직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장 통 칙

제5조 ① 개조되는 조직은,

1. 개조계획 또는 합병계약(제61조)을 작성하고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는 감사위원회(감독위원회)가 감사하고 모든 경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이 감사하여야 한다. 당해 회사의 상임회계감사인은 이 감사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개조되는 조직이 자산을 구성하는 각종 목적물(고정자산, 비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각종 권리, 각종 유가증권 등)의 가액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帳簿計定上의 가액과 자산의 대차대조표上의 가액간의 차액을 축적된 재산(자본준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인에 의하여 확정된 가액을 초과하여 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개조된 회사의 대차대조표에는 그 기본자금(자본금)과 기타의 재산, 또는 설립자의 재산(자본금), 축적된 재산(자본준비금), 유보재산(잉여

금)의 항목을 두어야 한다. 개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유보재산(잉여금)을 증액할 수 없다.

제6조 개조계획에는 다음 각號에 게기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조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2. 신입사원의 목표
3. 신설 회사의 原始宗款
4. 일정한 회사의 형태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

제7조 개조에 관한 결정은, 그러한 결정권을 가진 기관이(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관리부)(제36조 제1항) 공보에 - 15일 이상의 시차를 두고 2회 - 공시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그러한 결정을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공보에는 개조계획 및 자산대차대조표상의 특히 중요한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① 개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개조되는(합병되는) 모든 조직의 포괄적 권리승계자가 된다.

② 개조전에 교부된 행정청의 각종 허가증의 정당한 보유자는 신설 회사가 된다. 다만, 허가교부업무가 진행중인 경우, 신설 회사(의 명칭)를 각종 허가증의 정당한 보유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설 회사는 각종 허가증을 교부하는 행정청에 개조를 지체없이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제9조 ① 개조된 조직에 대한 기존의 각종 청구권은 개조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로 개조되는 경우, 개조되는 조직에 대한 만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 발생한 개조 결정에 관한 제1차 공시전에 채권자는 개조될 조직에 대하여 당해 결정의 제2차 공시 후 30일 내에 청구한도액까지 민법의 규정에 의거한 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보전의 요구에 대한 권리가 상실된다.

제10조 이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조(합병)가 진행되는 동안 일정한 회사의 설립에 관한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① 이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개조(합병)와 관련하여서는 납세 의무 또는 - 절차와 관련된 수수료 외에는 - 수수료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개조된 회사의 설립재산중에서 자연인의 지분총액이 개조전의 총액 보다도 많은 경우, 그 차액 중에서 축적된 재산(자본준비금)으로부터 지불된 부분에 대하여 (그 자연인은) 다음 각號에 게기한 조건에 따라 회사으로부터 당해 재산부분을 회수하는 때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개조될 회사가 이 재산부분을 분리하였다는 취지를 등기하였을 것
2. 당해 재산출자에 대하여 무기명의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 2 부 일정한 경영사업조직의 회사로의 개조

제12조 ① 국유기업, 국가의 기타 경영사업기관, 일정한 법인격을 가진 기업, 자기업 및 협동조합은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개조될 수 있다.

② 금융기관 또는 저축협동조합은 주식회사로만 개조될 수 있다.

제 3 장 국유기업의 회사로의 개조

제13조 국유기업의 개조에 적용되는 제규정은 - 저축협동조합 및 금융기관의 지점을 제외한 - 비사단적 형태로 활동하는 금융기관 등 국가의 기타 경영사업조직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이 장에 열거된 특별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법인격을 가지는 기업과 자기업의 개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 1 절 조직 · 권한 · 절차의 제규정

국가의 재산관리조직

제14조 국가의 재산관리조직은 회사로 개조된 국유기업의 재산을 구성하는 영업지분(주식)중 이 법률에서 규정된 부분에 대하여 각종 사원(주주)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15조 국가의 재산관리조직의 설립, 비국가법인에 대한 국가의 재산관리조직으로의 승인 및 이러한 조직의 활동에 대하여는 법령으로 이를 정한다.

권한에 관한 규정

제16조 ① 국가행정감독하에 있는 국유기업의 회사로의 개조에 대하여는 -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트러스트의 경우에는 각료평의회의 승인을 얻어) - 설립기관이 결정한다. 기업은 그 개조를 설립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트러스트기업의 개조에 대하여는 설립기관이 당해 트러스트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③ 제1항에 게기된 제규정은, 설립기관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법인격을 가지는 기업의 개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7조 ① 기업의 평의회, 기업의 노동자총회(대의원회의)가 일반관리하는 국유기업을 회사로 개조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업의 평의회(총회 또는 대의원회의)가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② 기업의 평의회(총회 또는 대의원회의)가 개조에 합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기업의 평의회는 개조계획서를 국가의 재산관리조직에 제출 할 의무가 있다. 당해 기업 및 국가의 재정관리조직은 그 개조의 촉진 을 위하여 개조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

③ 기업 및 국가의 재산관리조직은 개조의 조건과 방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조계획서 도달일로부터 기산하여 60일내에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쌍방 당사자가 합의하여 이 기한을 연장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개조의 조건과 방법에 대하여 제19조 1항 및 제2항, 제23 조 및 제24조에 열거된 제규정이 적용된다.

제18조 자기업의 회사로의 개조에 대하여는 모기업의 지배인(지배인평의회), 협동조합의 자기업의 (개조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총회, 예산기관의 자기업 및 금융기관 지점의 (개조의) 경우에는 설립기관이 각각 결정권을 가진다.

개조의 조건과 방법

제19조 ① 기업의 평의회 및 기업의 노동자총회(대의원회의)가 일반관리하는 국유기업의 개조조건은, (개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기본자본(자본금)총액이 자산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기업의 순재산총액보다 20% 또는 1억포린트 이상이어야 하며, 외부의 사업자는 그 차액을 한도로 회사에의 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그 차액은 기본자본금에 합산된다.

② 국유기업으로부터 설립된 회사의 영업지분(주식)은 기본자본(자본금)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제1항의 외부사업자의 소유가 된다.

③ 국가행정감독하에 있는 국유기업, 국가의 기타 경영사업기관, 일정한 범인격을 가지는 기업 및 자기업의 개조는 외부사업자에 의한 당해 회사에의 출자인수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기업의 평의회 및 기업의 근로자총회(대의원회의)가 일반관리하는 국유기업의 개조의 경우, 회사의 계획기본자본금이 기업의 帳簿計定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자본금의 총액의 80%를 하회하는 때에는 국가의 재산관리조직 제17조 제3항에 열거된 협정의 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가의 재산관리조직은 순재산감소의 상한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21조 ① 기업의 평의회 및 기업의 노동자총회(대의원회의)가 일반관리하는 국유기업으로부터 개조되는 경제적 회사의 기본자본(자본금)중에서 자산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상업지구의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영업지분(주식)은 그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평의회(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그러한 토지와 관련하여 제17조 제3항에 게기된 협정으로 이 규정에 반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

② 국가행정의 감독하에 있는 기업 및 국가의 기타 경영사업기관을 개조하는 경우, - 외부의 사업자가 출자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한 - 모든 영업지분(주식)은 국가의 재산관리조직에 귀속된다. 트러스트기업의 개조의 경우, 영업지분(주식)은 당해 트러스트에 귀속된다.

③ 일정한 범인격을 가지는 기업 및 자기업의 개조의 경우, -외부사업자가 출자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한 - 모든 영업지분(주식)은 설립기관에 귀속된다.

제22조 ① 제21조 제1항에 게기된 기업은 同條의 규정에 따라 감소한 기업의 순재산에 해당하는 영업지분(주식)을 임의로 환가할 수 있다. 환가에 의하여 취득된 대가의 80%는 국가의 재산관리기관, 20%는 개조되는 기업 또는 회사에 각각 귀속되며 기본자본을 초과하여 재산이 증가하게 된다.

②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1항에 게기된 재산부분의 한도액까지 그 청구권에 걸음하여 회사에의 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가의 분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각종 기업의 경우, 환가의 권한은 국가의 재산관리조직, 트러스트 또는 설립기관에 속한다. 제2항에 규정된 절차는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3조 ① 기업의 평의회 및 기업의 근로자총회(대의원회의)가 일반관리하는 국유기업으로부터 개조되는 회사는 이 條에 선행하는 제규정에 따라 외부의 사업자, 국가의 재산관리조직 또는 지역의 평의회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재산부분에 상당하는 영업지분(주식)을 최고 3년동안 유보할 수 있다. 환가되지 아니한 영업지분(주식)은 3년이 경과하면 국가의 재

산관리조직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에 의하여 환가된 영업지분(주식)의 대가의 80%는 국가의 재산관리 조직, 20%는 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회사에 귀속되는 부분은 기본자본(자본금)을 초과하여 재산이 증가하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증가된 재산에 기초하여 회사법 제244조 규정에 따라 노동자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24조 ① 기업의 평의회 및 기업의 근로자총회(대의원회의), 일반관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지배인, 국가행정감독하에 있는 기업·일정한 법인격을 갖는 기업·자기업의 경우에는 설립기관은 기업의 회사화를 목적으로 회사법에 따른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② 설립기관은 일정한 법인격을 가지는 기업, 자기업(금융기관의 지점)에 대하여 개조에 관한 결정의 제1차 공시이전에 발생한 채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어떠한 청구에 대하여 5년미만인 단기의 만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5년간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제25조 ① 기업의 평의회 또는 기업의 근로자총회가 일반관리하는 국유기업의 장부계정상 순재산의 50%이상이 회사의 출자(자본참가)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우, 당해 기업은 출자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내에 기업을 회사로 개조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② 기업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립기관은 당해 기업을 -국가행정감독하에 있는 기업에 적용되는 제규정에 따라 - 회사로 개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부의 사업자가 회사에의 출자를 인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기업의 평의회 또는 기업의 근로자총회(대의원회의)가 일반관리하는 국유기업의 장부계정상의 순재산이 직전 2曆年 중 어느 1역년의 장부계정의 순재산과 비교하여 20%감소한 경우, 설립기관은 당해 기업을 -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 회사로 개조할 수 있다.

제 2 절 개조에 관한 특별규정

유한책임회사로의 개조

제26조 ① 현물출자는 회사등기전에 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법 제161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전출자의 20%는 회사 등기시까지, 30%는 회사등기후 1년 이내에, 나머지 50%는 회사등기후 2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회사법 제16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7조 기본출자가 완전히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원에게 양도 될 수 없다.

제28조 제13조에 계기한 경영사업조직으로부터 형성된 유한책임회사에는 감사위원회 회계감사인을 두어야 한다.

주식회사로의 개조

제29조 주식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청구를 주식으로 전환할 신용공여자는 금전지불없이 주식신청을 할 권리를 가지며, 주식의 신청에 대하여 회사법의 제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 ① 信用附暫定株式(meghitelezett ideiglenes resgreng)은 다음 各號에 게기한 者에 의하여 신청될 수 있다.

1. 신청을 한 주식의 액면가의 30%를 납입한 금융기관
2. 신청을 한 주식의 액면가의 10%를 납입한 경영사업자조직(민법 제685조 c)

② 사회보험평의회, 경영사업조직이 설치한 보험과 自助의 제조직 및 수도·도·시·군·수도의 區 평의회는 제1항에 게기된 비율의 납입을 아니한 경우에도 신용부잠정주식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게기된 제조직이 신청할 수 있는 잠정주식의 가액은 - 제4항에 규정된 경우외에는 - 계획된 자본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농업생산을 수행하는 경영사업조직은 식품가공부문에 속하는 주식회사화된 기업의 계획자본금의 50%를 한도로 - 납입함이 없이 - 신용부잠정주식을 청구할 수 있다. 주식회사화된 기업은 직전 5년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거래주식비율로 당해 경영사업자 제조직에 그 주식의 공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 ① 주식회사는 신용부잠정주식회사에 귀속되는 배당을 당해 주주에 의한 분할지불로서 貸邊에 기록하며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② 신용부잠정주식이 자산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기업의 순재산에서 발행된 경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은 국가행정감독하에 있는 기업은 그 전액을, 기업의 평의회 및 근로자총회(대의원회의)가 일반관리하는 국유기업은 그 80%를 재산관리조직에 납입하여야 한다. 일정한 범인격을 가지는 기업, 자기업 및 금융기관의 지점의 경우에는 전액이 그 설립기관에 귀속된다.

③ 신용부잠정주식이 자산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기업의 순재산을 상회하는 자본금부담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제1항의 유보된 배당은 자본금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④ 배당을 담보로 한 분할지분이 주식의 액면금액에 달한 때부터 배당에 관한 일반규정에 따라 배당이 행하여지고 당해 잠정주식을 주식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제32조 신용부잠정주식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유통시킬 수 있다. 前소유자에 의하여 이행된 분할지불은 그 권리승계인에 승계된다.

제33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법상의 다음 各號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신용부잠정주식과 관련하여서는 제238조 제2항
2. 금전출자는 자본금의 30%를 하회할 수 없도록 한 제251조 제2항의 규정
3. 신용부잠정주식과 관련하여서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납입의 시기에 관한 규정(제254조 제2항, 제257조 제3항, 제262조 제2항 c)
4. 신용부잠정주식과 관련하여서는 제264조 제1항의 납입제한에 관한 규정
5. 제298조 제1항
6. 종자에 앞서 발행되어야 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이 완전히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종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301조 제1항

제34조 설립되지 못한 (회사법 제256조 제1항) 경영사업조직은 종전의 형태로 그 활동을 계속한다.

제 4 장 협동조합의 회사로 개조

제 1 절 권한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5조 협동조합의 회사화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은 협동조합총회의 배타적 권한에 속한다.

제36조 ① 조합원의 10%가 개조를 문서로 제안한 때에는 관리부(이사회) 또는 (조합원수가 30% 이하의 소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장(이하 “관리부”라 한다)이 협동조합의 회사화를 위한 준비총회(이하 “준비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가 개조의 제안에 동의하거나 또는 관리부가 개조를 제안한 때는 개조총회만이 개최된다.

제37조 ① 관리부는 준비총회에서,

1. 각종 급부(사회적 또는 일반적 급부 등)에 관한 사항, 회사의 사원(주주)의 사무를 포함하여 개조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 목적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수단과 조합원의 장래의 지위에 관한 안내를 하고
2. 선택된 회사의 형태와 조합의 재산의 분할에 관한 제안을 포함하여
3. 제안자(제36조 제1항)와 관리부의 입장을 소개하는 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준비총회는 비밀투표로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 주택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만장일치(全會一致)로 - 제안에 포함된 제문제를 결정한다.

③ 준비총회 또는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된 경우에는 관리부는 개조의 준비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다.

제38조 관리부(위원회)는 준비총회의 각종의 결정에 의거하여 개조계획과 자산의 대차대조표 외에 신설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적, 잠정적 또는 기타의 급부에 관한 각서를 작성할 의무를 지며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9조 ① 준비총회가 개조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 관리부는 준비총회후 30일 이내에 개조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제안이 제출될 날 또는 관리부가 발의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개조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② 개조총회에서는 총회의 소집장에 제38조에 열거된 각종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준비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37조 제1항에 열거된 각종 문서를 추가적으로 첨부하여 당해 협동조합의 조합원 전원

- 연금생활자인 조합원을 포함하여 - 을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개조총회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조합원 전부 - 연금생활자인 자를 포함하여 - 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전원일치로) 협동조합의 회사화에 대하여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후 총회는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제1차 사원총회로서 또 는 주식회사의 창립총회로서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 2 절 개조의 조건과 방법

제40조 협동조합의 재산을 사원들에게 - 협동조합의 법규에 게기한 유가증권

으로 전환하여 부분적 또는 완전히 - 배분하는 것을 개조의 조건으로 한다.

제41조 ① 신설 회사의 기본자본(자본금)은 다음 각號에 게기한 바와 같이 구성된다.

1.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지분증서, 재산증서 또는 영업지분의 총액
2. 신설 회사의 사원의 출자
3. 협동조합의 조합원간에 유가증권의 형태로 배분되지 아니한 재산
- ② 회사의 각 사원의 기본출자(주식)는 제1항의 a 및 b호에 게기된 자산 중 당해 사원에게 귀속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기본출자의 최소한도액은 -회사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과는 달리 - 개조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 10,000 포린트를 하회할 수 없다.
- ③ 개조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의한 주식신청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2조 ①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사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영업지분(주식)의 20%이상은 개조총회에서 지명한 협동조합의 재산관리조직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잔여부분은 신설 회사에 자신의 영업지분(주식)으로 귀속된다. 후자의 재산부분은 신설 회사가 3년 이내에 환가하여야 한다. 환가되지 아니한 영업지분(주식)은 3년을 경과하면 개조총회에서 지명된 협동조합의 재산관리조직의 소유로 이전된다.

- ② 자신의 영업지분(주식)의 환가에 의하여 취득된 대가의 20%는 협동조합의 재산관리조직에 귀속되며 그 80%는 신설 회사의 재산을 증가시킨다.

제43조 ① 협동조합이 회사화되는 경우, 협동조합의 조직에서 활동하는 전문집단은 해산하거나 또는 그 선택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서 회사로 또는 다른 협동조합의 조직에서 승계된 전문집단으로 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 개조되는 협동조합과 - 전문집단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 청산되어야 한다.

- ② 전문집단이 협동조합으로서, 회사로서 또는 다른 협동조합의 조직에 승계된 전문집단으로서 그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청산후 당해 조합원에 귀속되어 협동조합(회사)에 출자된 재산부분에 대하여는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을 면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협동조합의 조직 밖에서 활동하는 전문집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44조 협동조합이,

1. 유한책임회사로 개조되는 경우에는 이 법률 제26조 및 제27조
2. 주식회사로 개조되는 경우에는 이 법률 제33조 b, e, f가 적용된다.

제45조 협동조합에 의하여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그 사원(설립자)의 과반수가 개조된 협동조합의 구조합원일 경우는 商號에 「협동조합」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 3 부 회사 상호간의 개조

제 5 장 공통규정

제46조 ① 개조되는 회사의 사원이 신설 회사에의 참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원은 자신이 제공한 재산출자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거나 다른 사원, 회사, 또는 회사에 의하여 지명된 구매자가 그 영업지분(주식)을 유통가액으로 구입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반환(상환)의 경우, 회사에서 탈퇴하는 사원간에 이루어지는 청산에 대하여는 회사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청산기간 중에는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지불 및 회사에 의한 영업지분과 주식의 구입을 제한하는 회사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7조 개조의 결정, 개조계획 및 자산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승인은, 4분의 3 이상의 다수결로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전원일치로) 결정하는 회사의 최고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제48조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를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개조하는 경우, 개조되는 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개조결정전에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법령에 어떠한 청구에 대하여 5년 미만의 기간을 만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5년간 무한책임을 진다.

제 6 장 유한책임회사로의 개조

제49조 개조계획은 - 제6조에 게기된 사항외에-

1. 기본자본의 총액 및 각 사원에게 귀속되는 기본출자액의 결정
2. 최초의 업무집행사원의 성명에 관한 제안
3. 개조기간중에 각사원이 행하여야 할 조치(예컨대,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추가납입에 대하여 계기하여야 한다.)

제50조 개조기간에는 회사법 제 160조의 금전출자의 비율과 금액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1조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개조의 경우에는

1. 그 개조의 결정전에 무기명증권을 기명증권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2. 신설 회사의 기본자본은 개조 전의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하회할 수 없으며,
3. 신설 회사의 회사등기와 동시에 각종 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 7 장 주식회사로의 개조

제52조 개조계획에는 - 제6조에 열거된 사항외에 - 다음 각號에 게기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개조되는 회사의 재산중에서 각 사원에 귀속되는 지분과 주식의 대가
2. 발행주식의 수와 액면가 및 주식을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기명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
3. 주식종류의 표시
4. 자본금 총액의 결정
5. 발기설립이 아닌 경우, 설립계획의 공표기한
6. 개조기간 동안 각사원이 행하여야 할 조치

제53조 개조기간중에는 회사법 제251조 제2항의 금전출자의 비율과 금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4조 ① 설립계획이 발표된 경우에는 회사법의 주금액의 납입시기에 관

한 제규정(제254조 제2항, 제2576조 제3항, 제262조 2항 c호)은

1. 외부사업자가 신청을 하고
2. 개조되는 회사사원이 개조되는 회사의 재산중 자신에게 귀속되는 재산지분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신청한 주식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 ② 개조되는 회사사원의 주식신청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55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식회사로의) 개조의 경우 주식회사에의 참여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원의 영업지분은 회사가 기본자본을 초과하는 재산으로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기본자본을 초과하는 재산이 이러한 매입을 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기본자본을 減資하여야 한다.

제 8 장 합명회사 또는 및 합자회사로의 개조

제56조 개조계획에는 - 제6조에 기기한 사항외에 - 사원의 주식출자의 형태, 그 가액 및 개인적 협력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57조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로의) 개조의 경우, 개조되는 회사의 사원(주주)은 - 개조기간중 회사에서 탈퇴하는 사원을 포함하여 - 법규에서 어떠한 청구에 대하여 5년미만의 만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개조의 결정전에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원래의 기본출자(주식)액을 한도로 5년동안 책임을 진다.

제58조 주식회사의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로의) 개조의 경우,

1. 개조의 결정전에 무기명주권을 기명주권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2. 신설 회사의 회사등기와 동시에 각종 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 9 장 회사의 합병 및 분리

제59조 ① 이 법률에 의거하여,

1. 동일한 형태의 회사,
2. 합자회사와 합명회사,
3.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합병할 수 있다.

②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여 활동하는 경제적 노동공동체는 동일한 형태의 노동공동체와만 합병할 수 있다. 이러한 합병에는 당해 법인에 의한 사전의 승인을 요한다.

제60조 ① 합병은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으로 구분된다.

② 흡수합병(beolvadas)의 경우에는 일방의 회사(흡수되는 회사)의 해산에 의하여 그 회사의 재산 전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타방의 회사(인수하는 회사)로 이전된다.

③ 신설합병(osszeolvadas)의 경우에는 합병하는 회사들이 해산되고 이들 회사의 재산 전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신설 회사로 이전된다.

제61조 ① 합병을 위하여는 합병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② 합병계약에는 다음 각號에 게기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합병하는 각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2. 사명(社名)을 표기하여 자산의 대차대조표에 기초한 합병할 (합병한) 각 회사의 재산

3. 신설 회사의 재산(기본출자, 자본금)금액
4. 합병방식과 일자
5.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회사의 사원에게 귀속되는 권리 및 인수하는 회사 또는 신설 회사에서 귀속되는 사원의 권리
6. 합병후 인수하는 회사 또는 신설 회사의 임원의 성명, 필요한 경우에 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및 회계감사인의 성명
7. 신설 회사의 정관 또는 인수하는 회사의 정관에 필요한 개정내용
- ③ 합병전 사원에게 보장된 특별한 권리 또는 특권은 인수하는(합병하는) 회사의 정관에서 동일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원이 그 특별 권리 또는 특권을 문서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열거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합병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62조 ① 합병계약은 합병하는 각회사의 사원회의(총회,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합병계약의 승인에 관한 결의와 관련하여 합병회사 및 합자회사에서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제규정이 적용되며, 회사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② 당해 계약에 반대를 한 사원은,

1. 그 영업지분을 유한책임회사 또는 다른 사원이 매입하거나 또는 회사가 기본자본의 减資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회수하도록 청구하거나
2. 그 주식을 주식회사가 매입 또는 회수하도록 청구하고
3. 회사에서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

제63조 합병에 관련된 회사의 사원은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결정채택 30일 전에 다른 회사의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도 그 회사의 사원에 관한 제규정에 의거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당해 회사의 임원은 이러한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64조 합병에 관련된 결정의 공표에 대하여는 제7조가 적용된다. 결정에 관한 공고에는 합병의 방식과 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5조 신용공여자는 합병이 자신의 청구의 이행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 합병하는 각 회사에게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 합병후 흡수되는 회사의 사원은 인수하는 회사의 사원이 되며, 신설 합병하는 각 회사의 사원은 신설 회사의 사원이 된다.

제67조 ①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기본출자의 전액(주식의 가액전부)이 납입되는 경우에 합병할 수 있다.

② 흡수합병에 의하여 인수하는 회사의 기본자본 또는 자본금의 증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자에 관한 회사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회사법 제219조 제2단, 제303조 및 제30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8조 ① 흡수합병되는(신설합병되는) 주식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인수하는 주식회사(신설 주식회사)는 해산된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합병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주에게 귀속되는 주식을 인계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주식교환을 목적으로 주식을 인계하는 (신설)주식회사는 조건부 증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법 제307조가 준용된다.

제69조 ① 흡수합병의 경우, 인수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가 1. 흡수되는 회사의 영업지분(주식)으로서 인수하는 회사의 소유가 되

는 부분,

2. 흡수되는 회사의 재산부분으로서 인수하는 회사의 영업지분(주식)이 구성하고 있는 부분 또는
 3. 흡수되는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영업지분(주식)의 금액으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은 금지된다.
- ② 신설합병의 경우, 각 회사의 자기영업지분(주식)의 금액 및 각 회사의 상호 출자액은 신설 회사의 기본자본(자본금)을 확정하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다.

제70조 회사의 분리의 경우에는 이 章 규정이 준용된다. 분리되는 각회사는 그 분리전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 4 부 기타 규정과 종결規定

등기법원의 절차에 관한 규정

제71조 경영사업조직과 회사의 개조와 관련하여 등기법원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원의 회사등기에 관한 법률 및 이 法 제72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2조 ① 신설 회사(인수하는 회사)는 개조(합병)결정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에 등기와 공시를 위하여 관할등기법원에 당해 개조를 신청하고 등기말소를 청구할 의무가 있다.

② 신청시에는 법원에 의한 회사등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각종 증서 외에 다음 各號에 게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조계획
2. 자산의 대차대조표
3. 개조계획과 자산의 대차대조표의 승인에 관한 의사록
4. 자산의 대차대조표에 관한 회계감사원의 보고
5.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

③ 등기법원은 회사의사록 B부에 포괄적으로 권리승계를 등기한다.

제73조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인수하는 회사의 또한 개조 및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신설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법원이 신설 회사를 회사등록부에 등기한다. 등기후, 당해 등기법원은 흡수합병되거나 또는 신설합병되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법원에 그 등기를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법원은 상기의 회사의 해산을 회사등록부에 등기한다.

제74조 ① 개조의 경우, 회사의 설립일 및 舊조직의 해산일은 회사등록부에의 등기일로 한다.

② 합병의 경우, 흡수합병되는 회사의 해산일과 신설(합병한) 회사의 설립일은 합병계약에서 정한 날로 한다.

제75조 법원이 개조(합병)의 회사등기를 거부한 경우, 개조를 원하는 경영사업조직(회사)은 종전의 형태로 활동한다.

기타 규정

제76조 ① 국유기업을 협동조합으로 개조하는 경우, 이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업평의회 및 기업의 근로자총회가 일반관리하는 국유기업은 제17

조 제3항에 규정된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협동조합으로 개조할 수 있다.

제77조 ① 회사를 협동조합으로 개조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회사의 최고 기관이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당해 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원관계는 소멸한다.

② 개조를 결정한 경우, 최종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의거하여 법인에 귀속되는 재산부분을 - 회사의 사원이 자신을 위하여 그 것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인계하여야 한다.

제78조 법인의 책임하에 활동하는 경제적 노동공동체의 개조에 대하여는 - 합병(제59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 회사법 제93조 제2항이 적용된다.

제79조 ① 국가의 재산관리조직에 관한 법률이 실시되기 전에는 국가의 재산관리 조직의 권리는, 국유기업과 관련하여서는 설립기관 또는 각료평의회로부터 그러한 임무를 위임받은 조직이 이를 행사한다.

② 협동조합의 지역적 또는 전국적인 이의대표기관은 협동조합의 재산관리조직을 설치하거나 기금, 금융기관, 사회적 제조직, 재단법인 기타의 법인을 협동조합의 재산관리조직으로하는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다.

시행

제80조 이 법률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經濟的 社團에 관한 法律(會社法)

(1988년 10월 5일 제정)

제 1 부 도입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① 이 법률은 회사의 설립 및 조직, 각 기관의 활동, 사원의 권리·의무·책임 및 회사의 해산 등을 규율한다.

② 회사는 자기의 상호로서 권리와 책임을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며, 특히 재산을 취득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2조 ① 회사는 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 및 형식에 의하여 설립되어야 한다.

② 법인격 없는 회사라 함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를 말한다. 법인격 있는 회사라 함은 연합, 공동기업,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를 말한다.

제3조 협동조합, 전문집단, 수리사업조합, 법인격 있는 노동공동체,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활동하는 단체, 기타 경제활동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연합은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민법상의 조합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① 이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법인·법인격 없는 회사 및 자연인인 내국인과 외국인은 영리적 성질의 공동경제활동의 계속 또는 촉진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활동중인 회사에 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법률, 법률적 효력이 있는 명령 또는 각료령의 회의 명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경영사업조직을 위하여 어떠한 활동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1인이상 그러한 활동을 행할 권한을 가진 사원인 때에만 회사가 당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로만 은행·보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인이라 함은 그 국적에 관계없이 사람을 가리키며, 외국인이란 외환법상 외국인인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5조 이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을 요한다.

제6조 ① 자연인은 동시에 2 이상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② 민법상의 조합은 회사의 사원이 되거나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③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④ 연합 및 공동기업의 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법인에 한한다.

제7조 ① 외국인은 그 본국의 법률에 의하여 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회사등기부에 회사를 등기한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에 또는 회사에 사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외국의 자연인과 법인은 누구든지 주주가 될 수 있다.

② 국제협정으로 외국인의 참가에 관하여 이 법률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제8조 ① 외자비율이 50% 이상인 회사의 설립 또는 이러한 회사로의 개편 및 외국인에 의한 50% 이상의 지분취득에는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요한다. 여기에서 허가라함은 외환관리당국의 허가를 포함한다. 허가신청이 그 제출일로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에 각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② 외국인의 지분이 제1항에 개기한 비율을 넘지 아니한 경우, 회사의 설립 및 회사의 참가에는 외환관리당국 및 기타 기관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9조 ① 회사내의 외국인 지분은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한다.

② 회사의 이익 중 외국인에 귀속되는 부분, 또는 회사의 해산이나 외국인 소유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처분시 외국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그러한 용도의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한도내에서, 외국인의 위탁에 의거하여 투자당지의 통화로 외환관리당국의 허가없이 자유로이 국외로 송금될 수 있다.

③ 외국인의 각종 특전 및 경제활동조건은 법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10조 ① 회사가 자연인만을 사원으로 하는 경우, 회사의 근로자의 수는 5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외자비율이 50% 이상인 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① 회사등기부를 관리하는 법원(이하 "등기법원"이라 한다)은 회사에 대하여 그 합법성을 감독한다.

② 등기법원은 합법성감독의 범위내에서 정관이외에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기타 문서가 적법한지의 여부 및 회사의 어떠한 기관의 결정이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법규 및 정관 기타 문서에 열거된 조항을 위반하는가의 여부를 심사한다.

③ 합법성감독은 다른 법원 또는 국가행정절차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④ 등기법원은 회사관련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률의 규정외에 법원의 회사등기법규를 적용한다.

제12조 회사의 노동조합의 권리는 노동법 또는 노동법에 근거하여 공포된 법령에 의한다.

제13조 ① 정식근로자의 수가 연평균 200인 이상인 모든 공동기업,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의 근로자는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회사활동에 대한 감독에 참여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의 3분의 1은 근로자에 의하여 호선된다. 선거는 관리평의회 회의, 구성원 회의 또는 총회에서 실시한다. 이項의 규정은 정식근로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주식회사의 경우외에는 사원자격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반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은 무효이며, 발행자는 그러한 발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15조 회사에 관한 정보 및 자료는 이 법률 및 법원의 회사등기규정에 따

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① 이 법률에 규정된 의사표시 및 통지는 문서 기타 증명 가능한 방법으로 수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지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수령서에 기재가 된 날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달리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발송한 날로부터 가산하여 5일후에 국내의 수취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률에서 어떠한 의사표시의 수행 또는 행위에 대하여 그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의사표시 또는 행위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이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회사 및 사원의 재산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정관에 관한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관에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형가리경제회의소 부설 상설중재법원이 그러한 분쟁을 처리한다.

제 2 장 회사의 일반규정

제 1 절 회사의 설립

제19조 ①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모든사원이 정관에 서명하되 변호사 또는 법률고문이 증명하는 증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정관 변경시에도 적용된다.

③ 제2항의 증명의무는 주식회사의 정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0조 사원은 이 법률 기타 법규의 범위내에서 정관의 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정관에 관하여 별단의 금지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일치에 의하여 이 법률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1조 ① 정관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2. 회사명과 주소를 표시하여, 社員
3. 회사의 활동범위
4. 회사의 재산, 출자방법 및 기일

5. 이 법률이 특정한 회사에 대하여 의무로 정한 기타 모든 사항

② 제1항에 게기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정관은 무효로 한다.

③ 정관에 회사의 활동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무기한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 ① 회사의 재산은, 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익 또는 재산증가(이하 "이익"이라 한다)의 분배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손실 또는 재산감소(이하 "손실"이라 한다)에 공동책임을 지는 사원이 이를 출자한다.

② 회사의 재산은 설립시에 사원이 행한 금전출자 및 현물출자로 구성된다. 현물출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어떠한 양도가능한 물건, 정신적 창조물 및 재산적 가치를 갖는 권리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

③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그 출자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동안 출자물의 가치가 출자시에 정관에 표시한 가치에 상당하도록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3조 ① 회사의 설립은 정관의 작성 또는 정관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내에 등기 및 공고를 위하여 등기법원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에 대한 신고는 법원의 회사등기법규가 등기하도록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고에는 상기 법규에 규정된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내에 등기법원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① 회사는 회사등기부에의 등기에 의하여, 정관의 작성일에 소급하여 또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의 승인일에 소급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등기는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회사등기의 완료와 등기된 모든 사항 및 그 변경은 이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법원이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① 회사등기가 완료되기전에 회사명의로 행동한 자들은 공동명의로 인수한 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 회사등기에 선행하여 회사명의로 인수한 의무에 대한 제1항의 책임은 회사의 권한 있는 기관이 당해 계약을 사후에 승인한 때에는 해제된다.

③ 회사가 그 활동을 회사등기가 완료되기전에 개시한 경우에도 회사등기가 행하여 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제26조 등기법원이 회사등기를 기각한 경우, 회사는 그에 관한 법적효력을 결정을 수령한 때부터 그 활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정관작성일로부터 활동종료시까지의 기간동안에 형성된 당사자 쌍방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관계의 제조건이 충족되고 또 당사자 쌍방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의 조합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회사등기의 완료후에는 누구든지 정관작성시에 발생한 쟁오, 사기 및 강박(민법 제210조)을 이유로 그후 회사가 체결한 계약 또는 계약변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계약의 변경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 2 절 이사, 감사위원회, 회계검사인

제28조 이사라 함은 연합 및 공동기업의 경우 이사장,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사원,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을 말한다.

제29조 ① 범죄와 관련하여 확정판결로 집행력있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② 판결에 의하여 어떠한 직무에 취임이 금지된 자는 판결이 유효한 기간동안에는 판결에 제시된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이사가 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감사위원회 위원 및 회계검사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0조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및 회계검사인은 5년 임기로 선출할 수 있

고,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제31조 ① 1인이 동시에 2이상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

② 회사의 이사 및 친족(민법 제685조 제2호)은 이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③ 1인이 동시에 최고 5개 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거나 지명될 수 있다. 위원은 관련 회사에 겸직(임명)의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32조 ①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및 회계검사인은 그러한 직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를 기울여 직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와 노사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민법의 일반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및 회계검사인에 대하여 그 직무에 속하는 활동범위내에 대하여는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는 연대하여 제1항에 게기한 책임을 진다. 다만, 결정 또는 조치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사원총회에 이의를 제출한 이사에 대하여는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제33조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및 회계검사인은 회사의 영업관련 사항에 관하여 취득한 정보를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 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및 회계검사인의 성명과 주소, 기타 당해 자에게 발생된 변동에 대하여 등기 및 공고를 위하여 등기법원에 신고할 의무를 진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집행규정을 직접 제정하되, 당해 규정은 회사의 최고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수가 3인에 달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최고기관을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인의 위원은 언제든지 그 이유 및 목적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감사위원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감사위원회 회의를 8일내에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인의 위원은 소집권한을 가진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위원의 3분의 2 및 3인이상이 출석한 때에 의결능력을 가지며, 단순과반수로 결정을 채택한다.

제36조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감사위원회는 그 감독범위내에서 이사 및 회사의 관리직 근로자에게 보고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장부 및 서류를 감사하거나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최고기관에 제출된 모든 중요한 보고서외에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감사할 의무를 진다.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위원장에 의한 공표가 행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 대차대조표 및 이의배당에 관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제37조 회사의 이사는 이 법률이 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38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에의 직무위임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자격은 종료된다.

1. 직무위임기간의 경과

2. 소환

3. 파면

4. 사망

5. 이 법률에 정한 기타 결격사유

② 제1항의 규정은, 회계검사인에 대하여는 소환 및 파면에 갈음하여 고지에 의하여 직무위임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별단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자격은 근로자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때에 종료한다.

제39조 ① 업무감독을 감사위원회에 갈음하여 또는 감사위원회와 더불어 회계검사인이 한다는 취지를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 1인회사 및 설립자본이 5천만 포린트를 초과하는 유한책임회사는 감사위원회 외에 회계검사인을 선출할 의무를 진다.

제40조 ① 회계검사인은 회계사로 등록된 者중에서 선출한다.

② 회사의 설립자, 사원, 주주,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및 이들의 친족(제685조 제2호) 또는 회사근로자는 그 지위의 소멸일로부터 3년 동안 회계검사인이 될 수 없다.

제41조 ① 회계검사인은 회사의 장부를 열람하고, 이사 및 회사근로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의 보유금, 유가증권, 상품재고, 계약 및 은행예금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회계검사인은 회사의 최고기관 및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총회에 출석할 의무를 진다.

② 회계검사인은 회사의 최고기관에 제출된 모든 보고, 특히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의 진위여부를 검사하고 그에 관한 견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공표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고에 관하여 유효한 결정을 할 수 없다.

제42조 ① 회계검사인이 회사재산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거나 또는 이사나 감사위원회 위원이 이 법률에 규정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위원회에 또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고 또 회사의 최고기관을 소집할 의무를 진다.

② 회사의 최고기관이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회계검사인은 소집권한을 가진다. 회사의 최고기관이 필요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회계검사인은 이를 등기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회사의 서명

제43조 ① 회사의 서명은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는 자가 회사상호에 자기명의의 서명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이사는 법률이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단독으로 서명을 하며, 근로자의 대표권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2인의 대표권을 부여받은 2인 근로자의 공동서명을 요한다.

③ 대표권을 가지는 자는 그 서명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등기법원에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법원에서 회사를 위하여 자필로 서명할 의무를 진다.

제 4 절 법원에 의한 회사결정의 심사

- 제44조 ① 모든 사원은 회사 또는 그 기관이 채택한 결정으로서 이 법률의 규정, 다른 법규, 정관 또는 정관에 저촉되는 결정(법위반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특정한 형태의 회사에서는 일정한 자들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리자는 착오·사기 또는 강박의 경우(민법 제210조)외에는 결정에 찬성한 자는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무효이다.

- 제45조 ① 위법한 결정에 대한 심사를 구하는 소송은 결정이 행해진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내에 회사를 상대방으로하여 - 권리상실을 조건으로 - 제기하여야 한다. 소의 제기는 유예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되, 법원이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는 있다.
 ② 법원은 위법한 결정을 무효로 판결한다.

제 5 절 회사의 해산 및 청산

1. 회사의 해산

- 제46조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한다.
 1. 정관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거나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가 법적승계인 없이 해산할 것을 결정한 경우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분할 또는 다른 회사형태로 조직변경된 경우
 4. 사원의 수가 1인으로 감소하고 6개월 이내에 등기법원에 새로운 사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제외)
 5. 등기법원이 해산을 선고한 경우
 6. 법원의 청산절차에 의하여 해산되는 경우
 7. 특정 형태의 회사에 대하여 이 법률규정이 해산을 정하고 있는 경우
 ② 회사는 회사등기부에서의 말소에 의하여 해산한다. 등기법원은 공보로 말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청산

- 제47조 회사가 법적 승계인 없이 해산하는 때에는 계속적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개시된 청산절차의 경우외에는 청산이 행하여진다. 청산은 이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절차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 제48조 ① 청산은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경우외에는 회사의 이사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② 의결권자 10분의 1이상을 대표하는 사원은 청산인의 선임을 등기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사의 해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④ 회사는 이 條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청산의 개시 및 청산인의 성명을 등기 및 공고를 위하여 등기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 등기법원은 이 법률에 정한 이사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한 자연인만을 청산인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사원의 다수가 이의를 제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50조 청산인의 임명에 의하여, 회사의 이사, 대표자 및 근로자의 지배권은 소멸하며, 당해 권리 및 의무는 청산인이 행사한다.

제51조 ① 청산인은 회사의 재산상태를 평가하고, 회사채권자의 목록을 준비하며, 회사의 청산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이를 회사의 최고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회사재산이 확인된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변제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산절차개시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③ 회사의 계속적 지불불능을 원인으로 신청된 청산절차에 있어서, 회사채권자는 회사재산에 관하여 사원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제52조 ① 청산인은,

1.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회사의 최고기관에 제출하며,

2. 절차종료를 등기법원에 신고하여 회사등기부에서의 회사말소를 청구한다.

② 회사에서 감사위원회 또는 회계검사인이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산대차대조표를 이들 기관의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청산인과 사원간의 분쟁은 법원이 이를 판결한다.

제54조 회사 또는 그 사원에 대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에 근거하여 주장할 수 있는 청구는, 법령에 그 청구에 대하여 보다 단기의 시효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의 해산 또는 사원관계 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제 2 부 특정회사

제 1 장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제 1 절 합명회사

제55조 ① 합명회사(이하 "회사"로 표기)의 설립정관에 의하여 사원은 연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동의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회사에 출자할 의무를 진다.

② 합명회사는 그 명칭을 (또는 "kkt"라는 약호를) 회사의 상호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설립

제56조 정관에는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원에 의한 재산출자형태, 그 평가액 및 개인적 협력활동방법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 ① 국가예산기관은 감독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② 사원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회사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다른 회사의 사원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고용관계(노동수행의무와 관련되는 사원관계)에 있는 자와 회사를 설립하는 법인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 ① 법령에 의하여 활동수행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허가를 받은 한도내에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자격과 결부되는 활동은 사원 또는 피용자 중 법규에 정해진 자격요건에 합치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자격과 결부된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원은 소정 자격을 보유하여야 함을 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는 모든 사원은 공동으로 회사의 설립에 관한 등기법원에의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사원은 신고후 회사활동을 개시할 수 있고, 활동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2. 회사내부의 법률관계

제60조 ① 사원이 금전 및 사용가능하거나 대체성있는 물건으로 이행한 재산출자는 회사소유가 되며, 기타의 재산출자는 정관규정에 따라 회사의 소유 또는 이용을 위하여 이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불확실한 경우에는 사원이 출자한 재산은 회사소유로 본다.

② 재산출자 후 그 이자나 대가의 지불에 대하여 정할 수 없다.

③ 금전출자의 납입이 지체되는 경우, 사원은 연이율 20%의 이자를 지불할 의무를 진다. 현물출자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정관에 위약금의 지불의무를 정할 수 있다. 이행을 지체한 사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초래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회사가 활동하는 동안에 취득한 재산은 회사소유로 한다.

제61조 ① 사원은 정관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재산출자를 종액하거나 또는 발생된 손실을 보충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② 사원은 사원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회사의 이용에 제공된 재산출자를 모든 사원의 동의없이 회사재산으로부터 회수 또는 양도하거나 저당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출자재산 또는 그 평가액의 반환은 회사의 해산 또는 사원관계의 종료시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 ① 회사의 自然인인 사원은 회사활동에 개인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② 어느 사원에 대하여도 개인적 협력을 면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은 무효이다.

제63조 ① 모든 사원은 범죄와 관련하여 확정판결로 금고형을 선고받고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외에는 회사의 업무집행권한을 가진다.

② 판결에 의하여 일부직업에의 취직이 금지된 자는 판결의 효과가 미치는 동안 판결에 제시된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당해 업무집행을 담당할 수 없다.

제64조 ① 정관에 의하여 1인 이상의 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사원은 업무집행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업무집행권한을 가지는 사원은 각기 업무집행을 한다.

② 업무집행권한을 가지는 사원은 업무집행을 위임받은 다른 사원이 계획한 업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이 행하여질 때까지는, 그 자연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외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③ 정관에 따라 업무집행권한을 가지는 사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공동으로 업무집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다만, 그 자연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회사를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집행인 경우에는 업무집행권한을 가지는 사원은 누구든지 독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원은 이러한 집행에 대하여 업무집행권한을 가지는 다른 사원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의무를 진다.

④ 회사의 통상적 업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정관에 의하여 업무집행이 일부 사원에 위임된 경우에도, 모든 사원이 참가하여 결정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65조 ① 업무집행을 위임받은 사원은 통상의 고지에 관한 규정(제80조)에 따라 시임할 수 있다.

② 회사의 다른 사원은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업무집행을 위임받은 사원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특히 업무집행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진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업무집행과 관련한 부적격성이 그 중대한 사유가 된다.

제66조 ① 회사의 각종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개기한 경우외에는 원사이 다수결로 결정한다. 모든 사원은 1표를 가진다.

② 전원일치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에 개기한 바와 같다.

1.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경우외의 정관 변경

2. 회사의 통상적 업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정관에 규정된 기타사항

③ 3분의 2이상의 다수결로 결정을 채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에 개기한 바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해진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업무집행위임의 철회 및 다른 사원에의 업무집행위임

2. 대표권의 철회 및 새로운 대표자의 지명

3. 사원의 제명

4. 정관에 정한 기타 경우

④ 정관으로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없다.

제67조 ① 사원은 업무집행 및 대표권행사를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이 범위 내에서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회사장부 및 문서를 열람할 권리 를 가진다.

②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 사원은 다른

사원에게 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진다.

③ 정관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없다.

제68조 회사는 피용자, 가내근로자, 보조노동을 하는 가족구성원 및 전문 기능 견습공을 고용할 수 있다. 사용자의 권한은 회사명의로 업무집행 권한을 행사하는 사원 중에서 사용자가 지명한 사원이 이를 가진다.

제69조 사원에게 개인적 협력활동에 대한 보수가 지불된다. 보수는 대차대 조표에서 회사의 부채항목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0조 ① 회사는 연말 재산상태 및 그 변화, 이익과 손실을 명백히 확정 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공동으로 이익을 분배받고 손실을 부담한다. 특정한 사원에 게 이익을 분배하지 아니하거나 손실부담을 면제하는 결정은 무효이다.

③ 이익 및 손실은 재산출자비율에 따라 각 사원에게 이를 분배한다.

3. 회사의 대외적 법률관계

제71조 사원은 제63조에 규정된 일정한 缺格원인이 존재하는 자가 아닌 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

제72조 ① 사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1인 또는 數人の 사원을 회사대표로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사원은 대표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수인의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각 대표는 독립하여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정관으로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③ 회사대표는 그 대표권이 단독대표인가 또는 공동대표인가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회사를 위하여 서명한다.

④ 대표자의 대표권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3조 ① 지명된 대표자는 통상적인 고지에 관한 규정(제80조)에 의하여 파면될 수 있다.

② 지명된 대표자의 대표권은 다른 사원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박탈 할 수 있다. 특히 대표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대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의 부적격성이 그 중대한 사유가 된다.

③ 대표권소멸은 회사등기부에 등기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74조 ①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는 사원 및 업무집행권한을 가지는 사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이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제32조)을 준용한다.

② 회사는 대표자가 대표의 지위로서 제3자에게 초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5조 ① 회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회사재산이 청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도내에서 사원은 자신의 재산으로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원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회사재산에 대하여는 사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원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는 사원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만 물수관결을 내리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사원은 그의 2차적 책임부담과 관계없이 회사와 함께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회사에 가입하는 사원은 그 가입전에 발생한 채무와 관련하여서도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 규정과 달리 정한 경우에 그 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76조 ① 사원의 채권자는 사원이 회사의 소유 또는 이용에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는 담보 또는 변제의 목적으로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해산 또는 사원관계 종료의 경우에는 사원에게 분배되는 지분을 한도로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채권자가 이 재산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구하는 경우, 사원의 통상의 고지에 관한 권리(제80조)는 행사할 수 있으나, 사원에게 귀속되는 지분의 원物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② 「회사와 제3자간의 채권」과 「사원과 제3자간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4. 사원관계 및 회사의 해산

제77조 사원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한다.

1. 사원의 공동합의
2. 제명
3. 즉시적 효과를 가지는 해약
4. 통상의 고지
5. 사원의 사망 또는 활동정지
6. 사원관계의 유지가 법규에 저촉

제78조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이 제시한 중대한 사유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중대한 사유라 함은 사원이 문서에 의한催告에 반하여 법규로 정한 의무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기타행위에 의하여 회사의 목적달성을 극히 위태롭게 하는 경우, 또는 계속적으로 지급불능인 경우 등을 말한다. 제명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해 사원은 제명의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사원은 제명을 선언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통지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의 제기는 제명결정에 대한 유예효과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79조 모든 사원은 정관에 심히 위반하거나 또는 다른 사원과의 계속적 협력활동 또는 회사의 목적달성을 심히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한 사원에 대하여 사원관계를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제80조 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설립된 회사의 사원은 그 사원관계의 종료를 3개월전에 고지할 수 있다(통상의 고지). 이러한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무효이다.

② 고지가 지연되어 부적당한 기간에 행하여진 경우, 사원은 고지시기를 최고 3개월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제81조 ① 공동의 합의, 제명, 고지에 의하여 또는 활동정지나 법규위반을 원인으로 회사로부터 탈퇴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그의 사원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있어서의 지위에 따라 청산이 행해져야 한다. 당해 사원의 청구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지불되어야 하며, 이 경우 현물출자는 - 반

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정관에 정한 평가액으로, 정관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출자시의 매매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게기한 탈퇴를 하는 사원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에 제공한 현존의 물건은 현물로 인도하여야 한다. 회사와 당해 사원은 이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③ 별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로부터 탈퇴하는 사원에게 귀속되는 재산지분의 인도기간은 사원관계 종료시부터 기산하여 3개월로 한다.

제82조 사망한 사원의 상속자, 활동을 종료한 사원의 법적 승계인은 사원과의 합의에 근거하여 회사에 사원으로서 가입할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83조 ① 회사로부터 탈퇴하는 사원은 사원관계 종료시부터 기산하여 5년 동안 다른 사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원관계 종료시까지 발생된 제3자에 대한 회사채무를 부담한다.

② 사망한 사원의 상속자가 회사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유언자의 사망전까지 발생한 회사채무에 대하여 유언자의 채무책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이 규정은 활동을 종료한 사원의 법적승계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4조 회사가 해산된 경우, 청산에 관한 규정은 제85조 및 제86조의 규정과 함께 이를 적용한다.

제85조 청산업무는 사원에 의하여 청산인으로 지명된 자가 이를 수행한다.

제86조 ① 정관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채무를 청산한 후 우선 사원의 재산출자 평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자된 현물로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관에 정한 평가액으로 반환하되, 정관에 평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자시의 매매가격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이용에 제공된 물건으로 현존하는 물건은 현물로 인도하여야 한다. 회사소유가 된 물건으로 현존하는 현물출자는 사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인도할 수 있다.

③ 출자재산을 인도한 후 잔존하는 재산은 재산출자비율로 사원간에 분배하여야 한다.

5. 경제적 노동공동체

제87조 ① 경제적 노동공동체라 함은 자연인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를 말한다.

② 경제적 노동공동체는 그 명칭 또는 "gmk"라는 약호를 회사의 상호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경제적 노동공동체에 대하여는 합명회사의 규정 및 이 법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8조 경제적 노동공동체는 법률 및 법적 효력이 있는 명령 또는 각료평의회의 명령에 의하여 자연인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활동은 수행할 수 없다.

제89조 경제적 노동공동체의 사원 및 피용자 또는 기타 근로자의 수는 총 5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사원의 피용자의 수도 산입한다.

6. 법인의 책임하에 활동하는 경제적 노동공동체

제90조 ① 어떠한 법인의 근로자 및 연금생활자로만 구성되고 그 활동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제적 노동공동체(이하 “법인의 책임하에 활동하는 경제적 노동공동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경제적 노동공동체에 관한 규정 및 이 법 제91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이러한 경제적 노동공동체는 상호에 그 법인을 표시하고, 법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를 회사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1조 ① 법인의 책임하에 활동하는 경제적 노동공동체는 사원이 재산출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설립될 수 있다.

② 법인의 책임하에 활동하는 경제적 노동공동체의 설립에는 법인에 의한 사전 책임부담을 요한다. 이 경우, 책임부담 및 법인의 자산의 이용을 위한 양도에 대하여 정판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노동공동체가 그 경제활동범위내에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약정을 할 수 없다.

③ 법인의 책임하에 활동하는 경제적 노동공동체의 사원은 사원이 행한 재산출자 및 채무가 발생한 연도에 노동공동체가 취득한 소득의 전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노동공동체의 채무에 대하여는 법인이 책임을 진다.

제92조 법인의 책임하에 활동하는 경제적 노동공동체는 피용자, 가내노동자, 보조노동을 행하는 가족구성원 및 전문기능겸습공을 고용할 수 없다.

제93조 ① 책임부담에 관한 의사표시는 법인이 언제든지 그 사유를 설명함이 없이 30일의 기한으로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등기 및 공고를 위하여 등기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책임하에 활동하는 경제적 노동공동체는 철회의 등기에 의하여 해산한다. 다만, 사원은 경제적 노동공동체의 규정(제87조 내지 제89조)에 따라 회사의 계속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철회의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내에 등기 및 공고를 위하여 등기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한의 경과로 권리는 상실된다.

제 2 절 합자회사

제94조 ① 합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설립정관에 의하여 사원은 공동의 경제활동수행을 위한 채무를 부담하고, 1인이상의 사원(무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을 지며,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연대하여 회사의 의무에 책임을 진다. 다만, 1인이상의 사원(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은 출자납입액으로 한정된다.

② 이 법률이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합자회사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합자회사는 그 명칭 또는 “bt”라는 약호를 상호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설립

제95조 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모두 자연인인 경우에는 사원에 대하여 경제적 노동공동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예산기관은 감독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③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의 재산출자는 합명회사의 사원에 의한 재산출자에 대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96조 등기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회사의 회사등기공고에서는 소정자료외에 유한책임사원의 수 및 그 납입총액에 관한 사항만을 게기하여야 한다. 유한책임사원의 동의없이 유한책임사원의 명의(회사)를 게기할 수 없다.

2. 회사내부의 법률관계

제97조 ① 회사의 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개인적 협력활동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만이 책임을 지되, 정관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에 대하여도 협력활동을 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개인적 협력활동에 대하여는 유한책임사원에게도 보수가 지불된다.

②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결정한다.

1.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사원이 계획한 조치에 대한 이의사항

2. 회사의 통상적 업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기재된 규정에 반하는 계약의 체결은 무효이다.

3. 회사의 대외적 법률관계

제98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반하는 계약의 체결은 무효이다.

제99조 회사채권자는 유한책임사원에 대하여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유한책임사원이 회사등기부에 표시된 재산납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만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등기부에 따라 재산납입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제100조 ① 유한책임사원의 명의가 상호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②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사원과 행한 약정에 근거하여 납입액을 감액하는 경우, 회사등기부에 새로운 납입액이 등기될 때까지는 제3자에 대하여 이전의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제101조 유한책임사원은 그가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도 다른 유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이 규정에 반하는 약정은 제3자에 대하여 무효이다.

4. 회사의 해산

제102조 ① 모든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로부터 탈퇴한 경우, 회사는 해산한다.

② 모든 유한책임사원의 탈퇴로 인하여 무한책임사원만이 남게 되는 경우, 회사는 합명회사로서 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회사의 합명회사로서의 존속은 최후의 유한책임사원의 탈퇴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내에 등기 및 공고를 위하여 등기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이 경과한 경우, 회사는 해산한다.

제 2 장 연 합

제103조 ① 연합이란 복수의 법인이 자기 경영사업의 효율성 촉진과 경제 활동의 조정 및 직업상의 이익대표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를 말한다. 연합은 그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그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사원이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② 연합은 조정의 임무를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 및 공동임무의 이행에 조력하는 기타 경영사업활동(이하 "서비스 및 경영사업활동"이라 한다)을 아울러 수행할 수 있다.

③ 연합은 그 명칭을 상호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연합의 설립

제104조 ①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정관에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1. 그 활동범위내에서 사원의 경영사업 촉진 또는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직업상의 이익대표의 업무
2. 사원간의 활동경비부담배분 및 그 계산방법
3. 사원탈퇴의 경우, 탈퇴하는 사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반환조건
4. 연합의 해산 후 잔여 재산의 분배규정

② 필요한 경우, 정관에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서비스 및 경영사업활동
2. 서비스 및 경영사업활동에 필요한 회사의 재산액
3. 서비스 및 경영사업활동의 범위내에서 일정 사원에게 귀속되는 의결권의 범위, 그 행사방법 및 가부동수인 경우의 처리방식
4. 서비스 및 경영사업활동에 의한 이익에 대한 지분
5. 일정사원이 부담하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기타 서비스(부수적 서비스)와 그 조건 및 부수적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불되는 위약금
6. 감사위원회의 설치

제105조 이사장은 연합설립의 등기 및 공고를 위하여 등기법원에 신고할 의무를 진다.

2. 사원의 권리 및 의무

제106 ① 연합의 활동경비는 사원이 부담하며 사원은 서비스 및 경영사업 활동에 필요한 재산을 출자한다.

② 연합의 사원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타 서비스(부수적서비스)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부수적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원에게 별도로 보수가 지급된다. 보수는 연합의 대차대조표에서 부채항목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7조 ① 사원은 특별한 반대급부없이 연합에 의하여 제공되는 부수적 서비스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원은 사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행하여진 서비스 및 경영사업활동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는다.

② 서비스 및 경영사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의 배당은 재산출자비율에 따라 행하여진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이익은 사원간에 동일한 비율로 배당된다.

3. 연합의 조직

(1) 이사회

제108조 ① 연합의 지도기관은 이사회로 한다. 각 사원은 이사회에 1인의 대표를 파견한다.

②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다.

1. 연합의 내부조직 및 지도와 감독체계의 편성

2. 이의대표 및 서비스와 경영사업활동의 전략 확정

3. 연합의 대차대조표 작성

4. 서비스 및 경영사업활동에 의한 이익의 배당

5. 사원 자신의 경영사업에 의하여 집행되는 과제에 대한 결정의 채택

6. 회사등기전에 연합의 명의로 체결된 계약의 승인

7. 연합의 해산, 조직변경, 다른 회사와의 연합, 합병 또는 분할의 결정

8. 제휴의 수락

9. 대표이사의 선출과 해임 및 대표이사와 관련된 사용자의 권리 행사

10. 연합에서 감사위원회가 활동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구성, 회계검사인의 선임 및 보수 확정

11. 연합에서 회계검사인이 활동할 경우 회계검사인의 지명, 위임의 철회 및 보수 확정

12. 정관의 변경

13. 사원의 제명

14. 정관이 이사회 권한으로 지정한 모든 사항에 대한 결의

제109조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되며, 매년 1회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을 대표하는 사원대표는 언제든지 이유 및 목적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30일내에 청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청구자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0조 ① 이사회는 회의를 위하여 송달된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모든 이사가 회의에 출석하고 소집통지서에 기

재되지 아니한 의사일정 문제의 토의에 전원일치로 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사회는 회의에 의결권자의 4분의 3이상을 대표하는 이사가 출석한
경우 의결능력을 가진다. 정관에는 이 규정에 반하는 규정을 둘 수 없
다.

제111조 ① 이의대표의 활동범위 내에서 모든 이사는 각각 1표를 가진다.
서비스 및 경영사업활동의 범위와 제112조 제1항의 제2단에 열거된 경
우에는 의결권의 수는 재산출자비율에 따라 확정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등한 비율로 확정된다.

② 결정의 채택에 있어서, 당해 결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당사자가 되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12조 ①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의 단순과반수로 결의한다. 4분의 3이상
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은 연합의 해산, 조직변경, 다른 회사와의 연합,
합병 또는 분할의 결정, 새로운 사원과의 제휴 수락 및 사원의 제명, 그
리고 정관의 변경 등이다.

② 정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제113조 ① 이사회에서 사원이 자신의 경영사업상 부담하게 될 의무를 확
정하는 결의는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정관에는 이 규정에 반하
는 규정을 둘 수 없다.

② 이사회가 정한 의무의 이행으로 초래되는 손실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사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114조 ① 이사회는 회의 소집없이도 결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의 소집없이 제안된 결의의 계획을 15일의 기한을 정하
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결의의 결
과에 대하여는 의결권이 행사되는 최종서면 도착 후 8일내에 대표이사
가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구성원이 청구한 때에는 결의계획의 심의를 목적으로 회의
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5조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그 위임대리인은 연합의 장부 기타 문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에게 연합 사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6조 ① 연합의 사원외에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가
채택한 위법한 결의에 대하여 법원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가 법원에 의한 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감사위원회가 지명한
감사위원이 그 소송에서 연합을 대표한다.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또
는 대표이사 및 모든 감사위원회 위원이 함께 청구를 제기한 경우, 법
원은 연합을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위법한 결의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외에 제2장
제4절에 열거된 규정을 준용한다.

(2) 대표이사

제117조 ① 일정한 임기로 선출된 대표이사는 정관 및 이사회 결의의 범위
내에서 개인책임으로 연합을 관리하고 제3자에 대하여 또는 법원 및 행

정청에 대하여 연합을 대표한다. 대표이사는 그 대표권한을 확정된 개별적인 사무에 대하여 연합의 근로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연합의 사용자로서의 권한은 대표이사가 행사한다. 이사회는 연합의 관리적 근무자와 관련된 일정한 사용자로서의 권한의 행사를 자기의 동의에 기록시킬 수 있다.

③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및 일신상의 변동은 등기와 공고를 위하여 등기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

제118조 ① 연합의 사원수, 그 활동의 성격 또는 특질을 고려하여 정관은 최소 3인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가 선출한다.

②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연합의 이익상 요구되는 때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제휴

제119조 ① 다른 법인도 정관에 열거된 조건에 따라 연합에 가입하도록(제휴)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휴의 수락에 관하여 결의하고, 제휴의 일자, 제휴에 따른 의무의 만료 및 서비스와 경영사업활동의 범위내에서의 제휴사원의 의결권 정도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제휴하는 사원은 제휴전에 발생한 연합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탈퇴

제120조 ① 사원은 연말에 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의사는 적어도 6개월전에 이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탈퇴하는 사원은 탈퇴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탈퇴이전에 발생한 연합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1조 ① 이사회는 정관의 범위내에서 탈퇴사원의 재산출자 및 탈퇴시까지 취득한 재산으로서 당해 사원에 귀속되는 지분의 반환시기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② 반환은 연합의 대차대조표에 근거하여 연합의 계속적 활동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고 반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반환이 탈퇴시에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탈퇴한 사원에게는 미반환된 재산지분에 따른 비율의 이익이 귀속된다.

6. 제명

제122조 ① 이사회는 서면에 의한催告에 반하여 이 법률 또는 정관에 정

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는 참가가 연합의 이익을 심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제명은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당해 사원은 제명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당해 사원은 제명을 선언하는 결의에 대하여 결의통지일로부터 기산 하여 30일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러 한 권리는 소멸한다. 소의 제기는 제명에 대하여 유예효과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123조 ① 제명된 사원의 재산청구 및 반환에 대하여는 탈퇴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된다.

- ② 제명된 사원은 제명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제명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연합의 해산

제124조 연합이 법적승계인없이 해산되는 경우, 청산에 관한 규정 및 이 법 제125조와 제1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5조 이사회는 최종대차대조표의 승인과 동시에 청산인(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해임을 결의한다.

제126조 채무청산후의 잔여 재산은 사원에게 평등한 비율로 분배하되, 재산출자가 이행된 경우에는 출자비율로 분배하여야 한다.

제 3 장 공동기업

제127조 ① 공동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인에 의하여 설립되고 사원에 의하여 출자된 자본금 및 기타 재산으로 그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기업재산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사원은 기업채무에 대하여 재산출자비율에 따라 보증인으로서 대책임을 진다. 정관으로 이 규정보다 유리하게 사원의 책임을 규정할 수 없다.

- ② 공동기업은 그 명칭 또는 "kv"라는 약호를 기업의 상호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28조 ① 정관에는 제21조 제1항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기업의 기관
2. 의결권의 범위, 행사방법 및 가부동수인 경우의 처리
3. 이익에 대한 지분 및 손실분담의 방식
4. 사원탈퇴의 경우 탈퇴사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반환방식
5. 기업의 해산후 잔여 재산의 분배

- ② 정관은 필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각 사원의 현물출자 및 그 평가액
2. 사원이 부담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타 서비스(부수적 서비스), 그 조건 및 부수적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불되는 위약금

3. 일정 금액이상의 계약체결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한다는 취지
 제129조 기업의 사원은 그 재산출자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타 서비스
 (부수적 서비스)의 이행의무도 부담할 수 있다. 부수적 서비스에 대하여
 여는 사원에게 별도로 보수가 지급된다. 보수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의
 부채항목에 기재한다.

제130조 기업의 설립은 등기 및 공고를 위하여 등기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원의 권리 및 의무

제131조 기업의 사원은 금전출자분을 납입하고 현물출자를 하며 부담하는
 부수적 서비스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132조 ① 각 사원은 기업이익을 배당받고 공동으로 손실을 부담한다. 사
 원을 이익배당으로부터 배제하거나 손실부담으로부터 면제할 수 없다.
 정관은 이 규정에 반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② 이익과 손실은 사원간에 재산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3. 기업의 조직

(1) 이사회

제133조 ① 기업의 지도기관은 이사회로 한다. 이사회에는 각 사원이 1인
 의 대표를 파견한다.

②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 각호에 개기한 바와 같다.

1. 기업내의 조직, 지도 및 감독체제의 편성
2. 기업의 계획 및 경제전략의 승인
3. 기업의 대차대조표작성 및 이익의 배당
4. 기업의 해산, 조직변경, 다른 회사와의 연합, 합병 및 분할의 결정
5. 새로운 사원과의 제휴 수락
6. 대표이사의 선출과 해임 및 대표이사와 관련된 사용자의 권리행사
7. 기업에서 이사회가 활동하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의 선출, 그 해임 및 그 짐무규정의 승인
8. 기업에서 감사위원회가 활동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선출, 그 구성원의 해임(제143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외에) 및 그 짐무규정의 승인과 위원보수의 확정
9. 기업에서 회계검사인이 활동하는 경우 그 지명, 위임의 철회 및 보수 확정
10. 정관에 규정된 한도를 넘는 금액의 계약체결 또는 변경 및 기업이 자기 사원과 체결하는 계약체결 또는 변경에 대한 결정. 후자의 규정은 이러한 계약체결이 기업의 통상적 활동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회사등기전에 기업 명의로 체결된 계약의 승인
12. 정관의 변경
13. 사원의 제명

14. 정관이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규정한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

제134조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되며,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의사일정을 통지하여 소집한다. 의결권자의 10분의 1 이상을 대표하는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와 목적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가 있은 후 30일내에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가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5조 ① 이사회는 회의를 위하여 송달된 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회의에 모든 이사가 출석하고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의사일정문제의 토의에 전원일치로 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사회는 회의에 의결권자의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이사가 출석하는 경우, 의결능력을 가진다. 정관은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없다.

③ 의결권은 재산출자비율에 따라 이사에게 귀속된다.

④ 결의의 채택에 있어서 당해 결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상대방이 되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36조 ①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의 단순과반수로 결의한다.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기업의 해산, 조직변경, 다른 회사와의 연합, 합병 또는 분할의 결정, 새로운 사원과의 제휴수락, 사원의 제명 및 정관의 개정 등이다.

② 정관은 제1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없다.

제137조 ① 이사회는 회의 소집 없이도 결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의 소집 없이 제안된 결의의 계획을 15일의 기한을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결의 결과에 대하여는 의결권이 행사되는 최종서면 도착 후 8일내에 대표이사가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구성원이 결의계획의 심의를 목적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8조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그 위임대리인은 기업의 장부 기타 문서를 열람할 수 있고, 대표이사에게 기업사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9조 ① 기업의 사원외에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가 채택한 위법한 결의에 대하여 법원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가 법원의 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감사위원회가 지명한 위원이 소송에서 기업을 대표한다.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또는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함께 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법원은 기업을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위법한 결의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 있어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제2장 제4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근이사회

제140조 ① 기업의 사원수를 고려하여 정관으로 常勤理事會를 설치할 수 있다. 常勤理事會 구성원은 이사회가 일정임기로 이사회 구성원중에서

선출하며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② 常勤理事會의 권한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 제22항 제4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2호 및 제13호에서 제시된 권한은 常勤理事會에 위임할 수 없다. 정관은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없다.

제141조 ① 常勤理事會는 정관 및 이사회 결의 범위내에서 독립하여 활동 한다. 집무규정은 常勤理事會가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常勤理事會는 그 활동에 대하여 매년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常勤理事會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常勤理事會가 위법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를 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3) 대표이사

제142조 ① 일정한 임기로 선출된 대표이사는 정관 및 이사회 결의범위내에서 그의 책임하에 기업을 관리하고, 제3자 또는 법원과 행정청에 대하여 기업을 대표한다. 대표이사는 그 대표권한을 개별적으로 확정된 사무에 한하여 기업근로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업사용자로서의 권한은 대표이사가 이를 행사한다. 이사회는 기업의 관리직근무자에 관한 사용자의 일정한 권리행사를 자기 또는 이사회 의 동의에 기속시킬 수 있다.

③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및 신상의 변동은 등기와 공고를 위하여 이를 등기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감사위원회

제143조 ① 기업의 사원수, 그 활동의 성격 또는 특징을 감안하여 정관으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가 선출한다. 기업근로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할 수는 없다.

③ 기업의 정식근로자수가 연평균 200인을 상회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144조 ①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또는 常勤理事會의 소집을 해태하거나 또는 기업이익상 소집이 요구된 경우 이사회 또는 常勤理事會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에서의 근로자대표 의견이 감사위원회 의견과 다른 경우 이사회나 常勤理事會에서 소수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4. 제휴

제145조 ① 다른 법인도 정관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기업에 가입하도록 (제휴)할 수 있다.

② 이사회(常勤理事會)는 제휴수탁에 관하여 결의하고 제휴의 일자, 제휴에 따르는 의무의 만료 및 제휴사원의 의결권의 정도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46조 ① 제휴사원은 제휴 전에 발생한 기업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휴사원의 책임은 제휴시에 이사회(常勤理事會)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휴사원은 제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재산출자를 한도로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책임제한은 회사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후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 탈퇴

제147조 ① 사원은 연말에 기업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의사는 적어도 6개월 이전에 이사회(常勤理事會)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탈퇴사원은 탈퇴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탈퇴전에 발생한 기업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8조 ① 이사회(常勤理事會)는 정관범위내에서 탈퇴사원의 재산출자 및 탈퇴시까지 취득한 재산으로 당해 사원에게 귀속되는 지분의 반환비율과 반환방법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반환은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근거하여 기업의 계속적 활동을 위협하게 하지 아니하고 반확인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반환이 탈퇴시에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탈퇴한 사원에게는 미반환된 재산지분에 따른 이익이 귀속된다.

제149조 사원은 사원의 권리를 다른 사원에게 양도함으로써 기업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탈퇴사원은 탈퇴전에 발생한 기업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제명

제150조 ① 이사회는 서면에 의한催告에 반하여 이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동기업에의 계속적 참가가 공동기업의 이익을 심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제명은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해 사원은 제명의 사안에 대하여는 의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당해 사원은 제명을 선언하는 결의에 대하여 결의통지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러한 권리는 소멸된다. 소의 제기는 제명에 대하여 유예효과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151조 ① 제명된 사원의 재산청구 및 반환에 대하여는 탈퇴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② 제명된 사원은 제명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제명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7. 기업의 해산

제152조 기업이 법적승계인없이 해산되는 경우, 청산에 관한 규정 및 이 법 제153조와 제15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3조 이사회는 최종대차대조표의 승인과 동시에 청산인(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해임을 결의한다.

제154조 채무청산후의 잔여재산은 사원에게 재산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제 4 장 유한책임회사

제155조 ① 유한책임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함은 총액이 사전에 정하여진 자본금에 의하여 형성되고 회사에 대한 사원의 책임이 설립지분과 정관에 의하여 규정된 출자재산에 미치는 회사를 말한다.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그 명칭 또는 "kft"라는 약호를 상호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설립

제156조 ① 회사는 사원이 1인인 경우에도 설립할 수 있다(일인회사).

② 사원의 공모는 금지된다.

제157조 ①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정관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자본금 및 각 사원의 자본납입금
 2.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한 금전출자의 납입방법 및 그 기일
 3. 의결권의 정도 및 가부동수인 경우의 처리방식
 4. 최초의 업무집행사원, 數人の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의 업무집행 대표·지배권의 양태
 5. 감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
 6. 회계검사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최초의 회계검사인
 - ② 필요한 경우 정관에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규정한다.
 1. 현물출자 및 그 평가액
 2. 사원이 책임을 부담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타서비스(부수적 서비스), 그 조건 및 부수적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불되는 위약금액
 3. 填補의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한 사원총회에의 위임
 4. 권리승계의 경우 영업지분의 양도 및 영업지분의 분할의 배제
 5. 영업지분의 소각에 대한 허가
 6. 업무집행 및 대표에 대한 권리가 전체로서의 사원에게 속한다는 취지
 7. 업무집행사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8. 감사위원회 설치
 9. 회계검사인 선출
- ③ 1인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증서의 발행을 요한다. 설립증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정관에 관한 법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률이 정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증서도 함께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158조 ① 회사의 자본금은 각 사원의 납입자본금의 총액으로 구성된다.

② 자본금 총액은 100만 포린트를 하회할 수 없다.

제159조 ① 사원에 의한 자본납입에 있어서 사원간의 금액차이는 허용되며, 각 사원의 자본납입액은 10만 포린트를 하회할 수 없다. 자본 납입은 포린트화로 표시하여야 하며, 1만 포린트 단위로 이를 분할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모든 사원은 각각 1口의 출자를 행한다. 다만, 數人の 소유자가 1口의 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제160조 금전납입총액은 창립자본의 30퍼센트 또는 50만 포린트를 하회할 수 없다.

제161조 ① 회사의 설립은 등기와 공고를 위하여 이를 등기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모든 업무집행사원이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1인회사의 경우 회사는 설립자가 1인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기는 각 금전납입의 50%이상, 1인회사의 경우 전액이 납입되고 회사에의 현물출자가 완전히 이행된 후에만 이를 행할 수 있다.

③ 금전출자의 전액이 회사설립시에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잔액의 납입기한과 방법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회사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내에 모든 금전출자가 이행되어야 한다. 정관은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없다.

제162조 ① 회사에서 회계검사인이 활동하는 경우 회계검사인이 정한 평가액을 상회하여 현물출자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② 사원의 현물출자에 있어 고의로 진실한 평가액을 초과하는 평가액으로 인수하거나 기타 평가액확정에 있어 사기적인 행위를 한 사원은 이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책임의 면제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무효이다.

2. 회사와 사원간의 법률관계

제163조 ① 사원은 금전출자의 납입을 하고 현물출자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② 사원은 출자납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으며 회사를 채무자로 할 수 없다. 정관은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없다.

제164조 ① 출자납입금총액을 정관에 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사원은 연리 20%의 이자를 회사에 지불할 의무를 진다.

② 이행이 지체된 경우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催告하여야 한다.催告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회사로부터 제명됨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위 기간이 경과한 때 사원을 제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활동이 정지된 사원은 납입기일경과로 회사에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65조 ① 제명된 사원의 영업지분(제169조)은 회사가 공개경매에 의하여 양도한다. 제명된 사원의 출자에 한하여 이를 영업지분과 함께 다른 방식으로 환가할 수 있다.

② 불입된 매각가액중에서 우선적으로 제명된 사원이 납입하여야 할 출

자금중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가지는 회사의 만기된 청구를 청산하여야 한다. 그 잔액은 제명된 사원에게 귀속된다.

제166조 ① 제165조에 의한 영업지분의 환가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당해 영업지분을 소각할 수 있으며, 제명된 사원의 출자금의 전액납입에 대하여 다른 사원이 출자비율로 납입할 의무를 진다. 이경우 납입된 총액에 의하여 사원의 자본납입은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② 영업지분소각 또는 자본납입이 다른 사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제명된 사원은 자신이 납입한 지분에 한하여 권리와 가진다.

제167조 ① 사원은 자본납입의 이행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타 서비스(부수적 서비스)의 이행에 대하여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선출된 이사로서가 아닌 사원으로서 수행한 개인적 협력활동은 부수적 서비스로 본다.

② 부수적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원에게 별도의 보수가 지불된다. 보수는 회사의 대차대조표에서 부채항목에 표기한다.

제168조 ① 정관으로 손실전보를 위하여 사원의 추가납입의무를 정하는 권한을 사원총회에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에 의하여 사원이 부담하는 납입최고액을 정하여야 한다. 추가납입은 사원의 자본납입금을 증액하는 것은 아니다.

② 추가납입은 자본납입비율에 따라 정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자본납입의 완전한 이행에도 추가납입을 정할 수 있다.

③ 추가납입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 영업지분매각대금중에서 회사에 귀속되는 미이행 추가납입총액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제164조 및 제1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9조 ① 회사등기후 사원의 권리 및 회사재산중에서 사원에게 귀속되는 지분은 영업지분에 반영된다. 영업지분의 정도는 사원에 의한 자본납입에 준한다.

② 모든 사원은 하나의 영업지분만을 가질 수 있다. 사원이 2이상의 영업지분을 획득하는 경우 당해 사원의 영업지분은 인수한 영업지분의 비율에 따라 증가한다.

③ 하나의 영업지분을 數人の 소유자가 보유할 수도 있다. 이들 소유자는 회사에 대하여는 1인의 사원으로 본다. 그 권리는 공동대표자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사원이 지는 의무는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제170조 영업지분은 회사의 사원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있다. 영업지분이 부수적 서비스를 의무지우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동의를 요한다.

제171조 ① 영업지분은 양도하고자 하는 사원이 자본납입을 全額이행한 경우에만 사원이 아닌 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지분에 대한 선매권은 사원, 회사 또는 사원총회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순으로 귀속된다.

② 회사는 회사를 위하여 자본금을 초과하는 재산으로 영업지분을 매수 할 수 있다.

③ 사원, 회사 또는 사원총회에 의하여 지명된 자가 사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한다는 양도의사의 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5일내에 매수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도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제170조 제2단에 규정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72조 정관은 영업지분양도에 관하여 제170조 및 제171조의 규정보다 유리한 규정을 둘 수 없다.

제173조 범원의 집행절차중에 발생하는 영업지분환가의 경우에는 사원, 회사 또는 사원총회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순으로 영업지분의 선매권이 귀속된다.

제174조 ① 영업지분이 양도된 경우, 사원관계에 기초한 양도자의 권리와 의무는 영업지분취득자에게 이전된다.

② 영업지분양도는 정관의 개정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영업지분소유자의 변경 및 그 기일은 양수인이 사원등록부(제201조)에의 등기를 위하여 이를 신고할 의무를 진다. 신고는 공정증서 또는 양수인에 의하여 서명되어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는 사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그 공정증서나 사문서에 정관규정상의 의무를 승인한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5조 영업지분은 사원의 사망 또는 활동정지에 의하여 법적승계인에게 이전된다. 정관이 이전을 금지하는 경우, 정관에 사원에 의한 영업지분 매수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영업지분은 그 평가액을 보상하는외에 자본금감소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제176조 ① 영업지분은 양도, 활동정지된 사원의 권리승계 및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분할에는 회사의 동의를 요한다.

② 자본납입의 최저한도에 관한 규정은 영업지분 분할의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정관에 영업지분 분할을 배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77조 ① 회사가 존속하는 동안 사원은 회사에 납입자본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따라 이의배당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정관에는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없다.

② 이익은 자본납입비율에 따라 사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제178조 ① 자본금의 기초가 되는 회사재산에 의하여 사원에 지불하는 것은 부수적 서비스를 위한 보수 및 자본금 소멸의 경우외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관에는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없다.

② 손실填补에 필요하지 아니한 추가납입금은 이를 사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환급은 전액납입의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정관에는 후단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이행된 지불은 회사에 환급하여야 한다. 지불받은 사원외에 지불의 이행과 관련하여 업무집행, 감사위원회, 회계검사인의 직무를 관장하는 자,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조치한 업무집행사원, 감사위원회 위원 및 회계검사인이 연대하여 환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79조 ① 회사는 사원총회에서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자본금을 초과하는 재산에 의하여 자기의 영업지분을 최고 3분의 1까지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금 전액이 이행되어 있는 영업지분에 한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매수된 영업지분은 매수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내에 처분하거나 또는 자본금 감소규정을 적용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③ 회사소유인 영업지분은 의결권이 없으며 의결능력을 계산함에 있어

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회사소유의 영업지분에 귀속되는 이익 및 회사해산의 경우 이러한 영업지분에 귀속하는 지분은 사원에게 분배된다.

④ 정관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없다.

제180조 ① 영업지분의 소각은 사원의 제명, 회사에 의한 영업지분취득의 경우 및 정관에 의하여 소각이 허용되는 경우에 행하여진다. 후자의 경우에는 사원이 영업지분을 취득한 시점에서 이미 소각요건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 사원의 동의없이 영업지분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소각이 자본금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각은 자본금을 감소한 후에만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81조 1인회사는 회사를 위하여 영업지분을 취득하거나 영업지분을 소각할 수 없다.

제182조 ① 사원총회는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의무를 서면에 의한催告에 반하여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회사에 남는 것이 회사의 목적달성을 현저히 위협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제명선언할 수 있다. 제명은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정관은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없다.

② 제명결의에 있어 당해 사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사원은 제명을 선언하는 결의에 대하여 결의통지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기한의 경과로 권리는 상실된다. 소의 제기는 제명에 대하여 유예효과를 가지지 아니한다.

④ 제명된 사원의 영업지분의 환가에는 제1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업지분이 제1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환가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당해 영업지분을 소각하여야 한다.

3. 회사의 조직

제183조 ① 사원총회는 회사의 최고기관이며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하여도 결의할 수 있다. 사원총회는 연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② 사원총회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바와 같다.

1. 대차대조표 작성 및 이의배당
2. 추가납입 조치 및 환급
3. 영업지분의 배분 및 소각
4. 사원의 제명

5. 제2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업무집행사원의 선출과 소환 및 그 보수 확정,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행사

6. 제209조 제2항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를 제외한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과 소환 및 그 보수 확정

7. 총액이 자본금의 4분의 1을 넘는 계약의 승인 또는 회사가 자기의 사원,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들의 친족(민법 제685조 제2호)과 체결한 계약의 승인. 후자의 경우 계약체결이 회사의 통상적 업무활동에 속하

는 때에는 예외이다.

8. 회사등기전에 앞서 회사 명의로 체결된 계약의 승인
9. 설립에 책임을 지는 사원, 업무집행사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에서의 회사대표와 관련된 조치
10. 회사의 해산, 조직변경, 연합, 합併 및 분할의 결정
11. 정관의 변경
12. 이 법률 또는 정관이 사원총회의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한 모든 사항
③ 정관은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열거된 규정과 다른 규정을 들 수 없다.

제184조 1인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사원총회에 갈음하여, 설립자가 총회권한을 행사한다.

제185조 위임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원은 사원총회에서는 다른 사원을 대리 할 수 있다. 업무집행사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위임대리권자가 될 수 없다. 위임대리권의 수여는 공정증서 또는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86조 ① 사원총회는 이 법률 또는 정관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출석사원의 단순과반수로 의결한다. 이행된 자본납입은 1만포린트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② 사원총회는 총회가 자본금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경우, 의결능력을 가진다. 정관에는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을 들 수 없다.
 ③ 사원총회가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하여 다시 소집된 사원총회는 원래 의사일정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사원으로 대표되는 자본금의 정도에 관계없이 의결능력을 가진다.

제187조 ① 의결권의 정도 및 가부동수인 경우의 절차는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10표이상이 모든 사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정관에는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을 들 수 없다.
 ② 결의에 의하여 의무 또는 책임이 면제되거나, 회사의 부담으로 다른 특별한 이익을 받는 사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상대방이 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상대방이 되는 사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관에는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을 들 수 없다.

제188조 어떠한 결정이 회사의 중대한 이익을 손상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거나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함으로써 이를 알 수 있었던 자가 그 결정을 채택한 경우에는, 그 결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제189조 ① 이 법률 또는 정관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총회를 소집한다. 이 법률 또는 정관이 다른 자에게 소집권을 수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업무집행사원은 소집권을 가진다.
 ② 이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된 경우외에도 회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자본금이 손실로 인하여 2분의 1이상 감소하고 있음이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명백히 드러난 경우, 지체없이 사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1인회사의 경우에는 총회소집에 갈음하여 설립자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

제190조 ① 자본금의 10분의 1이상을 대표하는 사원은 이유와 목적을 기재하여 언제든지 서면으로 사원총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업무집행사원이 당해 청구를 8일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청구를 행할 수 있는 자의 부재시에는 사원 자신이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사원총회는 제1항에 의하여 소집된 사원총회의 개최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의한다.

제191조 ① 사원총회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을 통지하고 사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소집통지서 발송과 사원총회일 간에는 15일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② 사원총회가 규정에 따라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사원이 출석하고 사원총회개최에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만 결의할 수 있다.

③ 사원은 자신이 제의한 의사일정의 문제에 관하여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의안은 적어도 사원총회의 3일전까지는 사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후 사원에게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사원이 출석하고 당해 문제 심의에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사원총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다.

④ 정관에는 제1항 내지 제3항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없다.

제192조 ① 사원은 사원총회의 소집없이도 결의할 수 있다.

② 총회소집없이 제안된 결의안은 15일의 기한을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결의결과, 결의 및 일자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사원이 의결권이 행사되는 최종서면 도착 후 8일내에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③ 사원이 그 결의안의 심의를 청구한 경우에는, 사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3조 ① 업무집행사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사원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업무집행사원이 법원에 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감사위원회가 지명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한다.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또는 모든 업무집행사원 및 모든 감사위원회 위원이 공동으로 청구한 경우 법원은 회사를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위법한 결정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는 제2장 제4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4조 ① 업무집행사원은 사원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결정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의사록). 채택된 결정은 의사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결정은 기록후 채택에 참가한 사원의 확인이 있는 경우 유효하다.

② 사원은 의사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에 대하여 업무집행사원이 인증된 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1인회사의 경우 설립자의 결정은 설립자가 업무집행을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95조 ① 사원총회가 전년도의 대차대조표 또는 직전 2년간의 업무집행에서 발생된 특정 사고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요한다는 제안을 부결

하거나 사원총회가 규칙에 따라 제출된 이러한 제안에서 결정을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법원은 자본금의 10분의 1이상을 대표하는 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검토를 명할 수 있다.

② 청구는 사원총회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기한의 경과로 권리는 상실된다.

제196조 ① 사원총회가 회사설립에 책임을 지는 사원·업무집행사원·감사위원회 위원·회계검사인·제188조에 의하여 다수 사원에 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부결하거나, 사원총회가 규칙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부결하거나, 사원총회가 규칙에 따라 제출된 이러한 제안에서 결정을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 자본금의 10분의 1이상을 대표하는 사원은 사원총회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내에 회사를 위하여 법원에 제소하여 스스로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게기한 기한이 경과되면 그 권리는 상실된다.

4. 업무집행사원

제197조 ① 회사의 사무처리 및 회사의 대표권은 사원(대표)중에서 또는 대표 이외의 자연인으로부터 일정한 임기로 선출된 1인 이상의 업무집행사원이 처리한다. 정관에는 모든 사원(대표)이 업무집행 및 대표권한을 가진다는 취지의 규정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으로 간주된다.

② 최초의 업무집행사원은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정관에는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을 들 수 없다.

③ 회사에 數人의 업무집행사원이 존재하는 경우, 정관으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들은 공동으로 대표권을 가진다. 어떠한 의사표시를 회사에 대하여 할 때에는 1인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의사표시로도 충분하다.

제198조 1인회사에 있어서 설립자가 자연인인 경우 설립자는 설립자가 업무처리 및 대표권한을 가진다는 취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립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간주된다.

제199조 ① 업무집행사원은 제3자에 대하여 또는 법원과 행정청에서 회사를 대표한다.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은 개별적으로 정한 사항에 한하여 회사근로자에게 위임될 수 있다.

②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회사근로자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사원이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며, 업무집행사원이 數人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명한 업무집행사원이 그 러한 권한을 행사한다.

제200조 ① 업무집행사원은 사원총회의 동의없이는,

1. 회사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영리적 경제활동을 자기명의로 수행할 수 없으며,

2. 회사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으며,

3. 회사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

- ② 업무집행사원이 제1항에서 금지한 행동을 한 경우, 회사는
1.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2.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업무집행사원이 그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의 계산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3.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회사에 의한 청구는 제1항의 업무집행사원외의 다른 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사원이 1명인 경우는 회사의 사원)이 그것을 인지한 때부터 기산하여 3개월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제201조 ① 업무집행사원은 사원에 관한 기록(사원등록부)을 관리할 의무를 진다.

- ② 사원등록부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모든 사원의 명칭(회사명), 주소(소재지) 및 그 자본납입
2. 임의적 추가납입, 부수적 서비스 또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선매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
3. 사원의 일신상 또는 영업지분상의 변동(영업지분의 양도, 배분, 회사에의 소유화 또는 소각 등).
③ 업무집행사원은 사원등록부에 기재된 자료 및 그 변동을 등기하기 위하여 등기법원에 신고할 의무를 진다.
④ 누구든지 이해관계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원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202조 ① 업무집행사원은 회사의 영업장부규칙에 따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사원은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사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3조 ① 업무집행사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회사의 영업장부 및 문서의 열람을 가능하게 할 책임을 진다.
② 업무집행사원이 청구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청구한 사원은 등기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등기법원은 쟁방의 주장을 청취한 후 非訟事件節次에 따라 즉시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04조 업무집행사원은 등기법원에 신고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3자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05조 ① 업무집행사원의 해임에는 사원총회에서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업무집행사원의 일신상의 변동 또는 대표권의 변동은 등기와 공고를 위하여 이를 등기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6조 ①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수가 정관에 정한 수보다 감소된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30일내에 사원총회를 소집할 의무를 진다.

② 회사에 업무집행사원이 없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7조 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이 그 사무범위에 속하는 활동에 의하여 제3자에 초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감사위원회

제208조 ① 사원의 수, 활동의 의의 또는 특징을 고려하여 정관에 의하여 3인 이상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자본금이 2천만포린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사원수가 25인을 초과하는 경우
3. 정식근무자수가 연평균 2백인을 초과하는 경우
- ③ 1인회사의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9조 ① 제210조에 규정된 경우에는 사원총회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 ② 사원총회는 회사근로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 ③ 사원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는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정관에는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을 들 수 없다.

제210조 ①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필수적인 때에는 제20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경우외에는 정관에 의하여 최초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관에는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을 들 수 없다.
② 제20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설치된 감사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의 의견이 감사위원회 의견과 다를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소수의견을 표하여야 한다.

제211조 감사위원회 위원은 사원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2조 감사위원회는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총회소집을 해태하거나 회사 이의상 소집이 요구되는 때에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의무를 진다.

제213조 감사위원회가 지명한 위원은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한다.

제214조 제200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는 위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6. 회계검사인

제215조 1인회사의 경우 회계검사인은 반드시 지명되어야 한다.

7. 정관의 변경

제216조 ① 정관의 변경에는 사원총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요한다.

- ② 정관에 열거된 사원의무의 확대, 의무의 신규확정 또는 일정사원의 특별한 권리 박탈은 사원총회에서의 전원일치에 의한 결의를 요한다.
- ③ 정관에는 제1항 및 제2항과 다른 규정을 들 수 없다.

제217조 정관의 변경은 모든 업무집행사원이 공동으로 등기와 공고를 위하여

여 등기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8. 자본의 증가

제218조 ① 사원총회가 자본금증자를 결의한 때에는, 증자된 자본금은 제221조에 규정한 경우외에는 신규 자본납입(서비스)에 의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② 자본금은 증자 이전의 자본납입이 완전히 이행된 경우에만 증자될 수 있다.

③ 자본금 증자결정이 있는 경우, 모든 업무집행사원은 공동으로 등기와 공고를 위하여 등기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19조 ① 자본금증자 전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원이 증자로 인한 신규 자본납입을 할 경우, 의사록에 기록된 증자결정일로부터 30일내의 기간 동안 선매권이 인정된다. 사원은 선매권을 자본납입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② 사원이 소정의 기한내에 선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사원에 의하여 지명된 자 또는 지명된 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누구든지 신규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신규자본납입의 인수에는 공정증서 또는 인수 당사자가 서명하고 완전한 증명력이 있는 사문서에 의하여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한다.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수시로 부담하는 부수적 서비스를 기재하거나 정관 규정에 의한 의무를 승인함을 표명하여야 한다.

④ 의사표시의 승낙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승낙된 경우 의사표시자는 특별한 정관의 변경없이 회사의 사원이 된다.

제220조 ① 자본납입의 최저액, 납입방법, 그 만기 및 지체의 법적효과에 관한 규정은 신규자본납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② 신규자본납입을 현물로 이행하는 경우, 출자의 평가 및 출자사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신규자본납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221조 사원총회는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재산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금증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납입없이 사원의 납입자본금을 이전의 자본납입비율에 따라 증가시키게 된다.

제222조 ① 자본금의 증자완료에 대하여 모든 업무집행사원은 공동으로 등기와 공고를 위하여 이를 등기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등기는 모든 금전출자의 반액 이상이 이행되거나 또는 현물출자가 완전히 이행된 경우에만 행하여진다.

② 자본금증자는 회사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23조 1인회사가 영업지분분배 또는 자본금증자에 의하여 사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일반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여야 한다. 조직변경에 대하여는 모든 업무집행사원이 공동으로 등기와 공고를 위하여 이를 등기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9. 자본의 감소

제224조 ① 자본금은 100만포린트 이하로 감자할 수 없다. 감자가 납입자

본의 환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잔존하는 납입자본금은 10만포린 트를 하회할 수 없다.

② 사원총회가 채택한 자본금감자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모든 업무집행사원이 공동으로 등기와 공고를 위하여 이를 등기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5조 ① 자본금감자에 관한 결정은 등기법원에 신고한 후, 업무집행사원이 공보에 2회 연속하여 30일 간격으로 공표·공고하여야 한다. 공표에는 창립자본의 감자선언결정을 소개하고 공표의 두번째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내에 회사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를催告하여야 한다.

② 기한내에 회사에 신고하고 자본금감자에 동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6조 ① 제225조 제1항에 정한 기한이 경과된 후 모든 업무집행사원은 자본금감자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를 등기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시에는 공표 완료되었다는 취지를 등기법원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감자는 제1항에 게기한 신고가 행하여진 후 회사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으며,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③ 자본금감자에 의한 사원에의 환급은 회사등기부에 감자를 등기한 후에만 이를 허용한다.

10. 회사의 해산

제227조 회사의 해산은 사원총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을 요 한다. 정관은 이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없다.

제228조 회사가 법적승계인없이 해산할 경우에는 이 法 제229조와 제230조의 규정과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29조 사원총회는 청산대차대조표의 승인과 동시에 청산인(업무행사사원), 회계검사인 및 감사위원회의 해임을 결정한다.

제230조 ①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후 잔여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추가 납입금을 환급하고 다음에는 자본납입비율에 따라 사원간에 분배한다.

② 공보에 의하여 채권자에 대한 최고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분배가 금지된다.

제231조 사원이 1명으로 감소한 후 6개월내에 등기법원에 새로운 사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가 해산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1인회사로서 당해 회사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으로 본다. 모든 업무집행사원은 이것의 등기와 공고를 위하여 등기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주식회사

제 1 절 총 칙

제232조 ① 주식회사라 함은 1주의 금액이 기재된 주식으로 구성되는 자본

을 기초로 하고, 그 자본은 사전에 정하여지며 또, 주주는 액면금액 또는 발행가액의 납입을 한도로 책임지는 회사를 말한다. 주주는 그 이외에는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주식회사는 그 명칭 또는 "rt"라는 약호를 회사의 상호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33조 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식회사에 관한 이 법률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법률에 저촉되는 법규는 무효이다.

1. 주식

제234조 ① 주식은 사원자격의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이다.

② 주식은 사원간의 동일한 권리와 보증한다. 법률 또는 그 주권에 의거하여, 정관으로 사원의 특별한 권리를 보증하는 주식발행을 규정할 수 있다.

③ 동일한 권리를 보증하는 주식은 하나의 종류주식(제242조 - 제245조)을 구성한다. 종류주식과 관련된 권리 및 하나의 종류주식에서 발행되는 주식수 및 액면금액은 이를 정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하나의 종류주식에 속하는 주식은 동일한 액면금액을 가진다.

제235조 ① 주식의 액면금액은 1만 포린트 이상으로 하거나 또는 1만 포린트로 분할할 수 있는 수배액의 것으로 한다.

② 액면금액이하의 주식발행은 무효이다. 발행자는 액면금액이하의 발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③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주식회사의 자본이 된다.

제236조 주권은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이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규정은 주식증서 및 가발행주식에도 적용된다.

제237조 주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및 그 소재지

2. 주권의 일련번호와 액면가, 무기명주식의 경우 소지인 또는 명의에 관한 사항, 기명주식의 경우 소유자의 성명

3. 종류주식 및 당해 종류주식에 정관으로 부가된 권리

4. 발행일자, 발행시의 자본 및 발행 주식수

5. 등기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서명

6. 주식증서와 상환주식이 발행된 경우 이미 납입되어 있는 총금액

제238조 ① 등기된 자본금의 전액납입전 및 주식회사설립의 등기전에 발행된 주권은 무효이다. 단, 주식증서는 설립등기를 할 때까지 등기된 자본금 중 이미 납입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가 설립등기를 한 후에는 자본금을 납입한 당사자에게 가발행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주식증서와 가발행주식은 소유주의 이름을 기재하고, 발행시에 주주가 납입한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발행자 및 이사회의 구성원은 이 규정의 위반으로부터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239조 설립등기를 하고 자본금을 전액 납입한 후, 주주는 자기지분에 대한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0조 무기명주식은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

② 기명주식의 양도는 어음의 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단, 양도는 새로운 소유자의 명의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때에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③ 외국인은 기명주식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무기명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1년내에 기명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241조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기명주식에 대하여 주식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주주명부를 관리한다.

② 주식회사는 주주명부 기재시 양도의 진실성을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주주는 본인과 관련된 주주명부의 사본을 이사회에 청구할 수 있다.

제242조 ① 정관의 해당 규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주식에 우선하여 이익배당을 하는 주식(우선주)을 발행 할 수 있다. 우선주의 의결권은 정관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우선권의 규정은 정관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③ 다른 종류의 우선주 발행은 정관으로 이를 정할 수 없다.

④ 우선주는 회사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제243조 ① 정관에 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공공기금 또는 조합의 소유권으로 이전되는 기명주식의 발행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익기구는 액면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고 액면가 액과 시장가격(시가)의 차액은 주주에게 귀속된다. 단 주주는 정관에 정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그의 권리를 완전히 행사한다.

② 주식회사가 제1항에 정한 기간전에 법적승계인없이 해산하는 경우, 주식의 액면금액 일부(매년 액면금액의 5% 이상)를 수익기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익기구의 구성원이 주식회사의 常勤 근로자이고 그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이익배당금 또는 그 일부를 정관에 정한 조건에 따라 그 수익기구(근로자기금, 협회)에 지급한다는 것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수익기구(근로자기금, 협회)에 지급한다는 것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자본을 증자 정관의 관련 규정은 수익기구에 불리하게 개정될 수 없다. 자본을 증자하는 경우, 정관으로 당해 수익기구에 증자자본금의 10%이상에 대한 인수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주식은 기명주식으로 발행하며 회사의 근로자와 연금생활자간에는 양도가 가능하다. 양도할 경우에는 기명주식의 양도규정에 의한다.

③ 근로자의 사망 또는 고용관계의 종료시(연금을 받는 퇴직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근로자주식에 대한 매입권을 가진다. 회사는 시장가격(그러나 적어도 액면가격 이상)으로 매입한다.

④ 근로자주식의 소유자는 다른 주주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한다. 이사회는 근로자주식의 취득과 양도에 대한 세칙을 정하고 일정한 근로자집단이 그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245조 ①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지급을 보증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단, 그 발행주식 총액이 자본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이자지급을 보증하는 주식의 소유자는 주식에 기재된 이율에 의하여 액면가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다. 그 이자는 주식회사가 특정연도에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된다.

③ 이자지급을 보증하는 주식의 소유자는, 그 이자 이외에 이익배당권

을 포함하여 주식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가진다.

제246조 ① 주식회사는 자본의 50% 한도내에서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전환사채).

② 주식회사는 자본증자시 신주의 인수권을 보증하여 주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신주인수권부사채).

③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규정은 정관으로 이를 정하다.

제247조 ①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초과하는 재산으로 납입이 완료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의 총액면금액은 자본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주식회사는 법률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주주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고, 자기주식을 3년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248조 ① 주식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소각의 방법에 의하여는 자본이 감소되지 아니한다.

② 기명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에서 밀소한다. 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이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주식소각의 동기를 위하여 동기법원에 30일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9조 ① 주식은 수인이 공유할 수 있다. 이들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1인의 주주로 간주된다. 그 권리는 공동대표자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의 의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진다.

② 기명주식이 공동소유로 되는 경우 공동대표자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2 절 설립

제250조 주식회사의 설립은 발기인이 담당하며, 주식회사는 1인이 설립할 수도 있다.

제251조 ①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1,000만포린트이하로 할 수 없다.

② 설립시의 금전출자는 자본의 30% 이하 및 500만포린트이하로 할 수 없다.

제 1 판 주식청약

제252조 ① 자본은 주식에 대한 청약에 의하여 이를 확보한다.

② 청약은 설립정관안에 근거한다. 그 안의 원본은 충분한 증거능력을 가진 공중증서 또는 사적인 증서로 되어야 한다. 그 안의 사본은 공중인의 인증을 요한다.

③ 설립정관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와 소재지, 활동범위, 존속기간

2. 예정된 자본금액

3. 주식의 수와 액면금액 및 발행가액,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명칭과 각 종류에 따른 권리

4. 주식청약의 장소와 기간

5. 발기인이 받을 특별한 이익, 특히 설립후 3년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지명될 권리

6. 현물출자의 목적물, 평가액, 대가로 주어지는 주식의 수, 출자자의 성명(회사명)과 주소(소재지), 잠정평가를 하는 회계검사인의 성명(회사명)

7. 초과청약의 경우 이에 따른 절차

8. 創立總會 소집의 방법

제253조 ① 발기인은 현물출자의 가치를 평가한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공개 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액은 회계검사인이 사전에 정한 최고가격에 근거하여 설립정관안에 이를 정할 수 있다.

제254조 ① 주식의 청약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주식청약서에 서명을 하여 이를 행한다.

② 각 주식청약인(현물출자자를 제외하고)은 청약과 동시에 청약금액의 10%이상을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의 구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55조 ① 발기인은 주식회사가 설립정관안에 따라 발행하고자 하는 액수 이상의 주식이 청약된 경우 그 초과분을 거부할 수 있다. 창립총회는 자본금의 최종 확정 단계에 있어 발기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초과청약분의 승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예산기구 또는 금융기관의 청약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발기인 또는 創立總會에서 초과청약을 거부한 경우, 청약자는 15일 내에 공제없이 초과액을 반환받는다. 발기인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56조 회사가 예정한 자본금에 상당한 주식청약을 청약 마감일까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설립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모든 주식청약인은, 설립을 하지 못하는 경우 15일내에 공제없이 납입한 금액을 반환받아야 한다. 발기인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 2 관 창립총회

제257조 ① 발기인은 성공적으로 수행된 주식청약의 마감일로부터 60일내에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이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창립총회의 소집을 해태한 경우, 주식청약인은 그 의무를 면제받고 납입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기인은 청약증거금을 공제함이 없이 납입된 총액의 반환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주식청약인은 창립총회의 개회전까지 청약한 주식액면가의 30%이상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이 규정은 현물출자를 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58조 창립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자본을 구성하는 주식에 대한 기명인수와 자본의 30%이상이 납입되었음을 확정한다.

2. 초과청약을 수락 또는 거부한다.

3.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한 결의를 한다.

4. 정관을 작성한다.
 5.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설립증에 발기인과 제 3자가 체결한 계약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결정한다.
 6. 창립총회일까지 체결된 계약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결정한다.
 7. 현물출자의 평가액 및 그 이행기일에 대하여 결정한다.
 8. 발기인이 설립정관안으로 창립총회가 가지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구성원 선임권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초대 구성원을 선임한다.
 9. 회사의 회계검사인을 선임한다.
- 제259조 ① 창립총회는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인수한 5명이 직접적으로 또는 그 대리인이 서면으로 자격을 부여받아 출석한 경우에 의결능력을 가진다.
- ② 창립총회의 결의는 단순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설립정관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식청약인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현물출자의 평가액은 그 설립정관안으로 지정된 가액 또는 회계검사인이 평가한 가액 이상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창립총회는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을 회사에 손해가 되도록 변경할 수 없다.
- ③ 현물출자 및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에 대한 결의를 하는 경우 이해 관계가 있는 주식청약인은 의결권이 없다.
- ④ 창립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3 관 발기설립

- 제260조 ① 발기인이 자신이 정한 비율로 모든 주식을 인수하는데 동의하고, 그러한 동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변호사나 법률고문이 인증하는 경우에는, 설립정관안의 작성·주식청약·창립총회의 개최가 필요없다.
- ②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임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립에 관한 일반규정을 준용한다.
- ④ 발기인이 전원 자연인인 경우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은 불가능하다.

제 4 관 정관

- 제261조 ① 정관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의 상호와 소재지
 2. 주식회사의 존속기간
 3. 주식회사의 활동범위
 4. 자본금, 주금납입의 요건
 5. 주식수와 액면가, 무기명주식인지 기명주식인지의 여부
 6. 주식회사 지배권의 태양
 7. 주주총회의 소집방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경우의 처리방법, 의결권 행사의 요건과 방법
 8.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수, 회계검사인의 수, 그 선임방법, 권

한 및 임기

9. 이익배당규정

10. 주식회사의 공고방법

11. 주금납입 해태의 효과

②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임의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1. 현물출자 및 발기인이 받을 특별한 이익에 관한 계약

2.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종류, 수, 액면가 및 그에 부가된

권리

3.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관련규정

4. 주식의 소각 가능성 및 절차

5. 자본증자의 경우 이사회가 가지는 권한의 요건

6. 기타 주주가 정관에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

제 5 관 등기법원에 대한 신고

제262조 ① 주식회사의 설립은 등기와 공고를 위하여 등기법원에 이를 신고한다. 이사는 신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등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

1. 창립총회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소집되었다.

2. 주식청약인이 자본금 전액을 인수하였다.

3. 자본금의 30% 이상을 납입하였다.

제263조 등기를 하기 전에는 주식청약인이 청약을 통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그러한 양도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 3 절 주주의 권리와 의무

제264조 ① 주주는 회사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내에 각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주주는 이 기간안에 정관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최고를 받은 경우 납입하여야 한다. 기명주식의 각 소유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② 주주가 전항의 납입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 20%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③ 주주가 최고일로부터 기산하여 60일내에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는 가발행주식을 무효화하고 당해 주주의 권리와 경매할 권리와 가진다. 경매로 취득한 금액은 제1차적으로 회사의 주식에 관한 청구에 이행되고, 잔여금액은 실권한 전의 주주에게 지급된다.

제265조 주주가 액면금액을 납입하기 전에 그의 가발행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의무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266조 ① 주주는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이익을 재원으로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와 가진다.

② 주주는, 주식회사가 법적승계인없이 해산하는 경우에 자신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권리와 가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각각의 종류주식을 위하여 정관이 특별히

- 부여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자본감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에 대한 자본금의 환급이 금지된다.
- 제267조 ① 주주는 회사의 존속기간동안이나 해산시에 그가 납입한 출자재산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② 주주는 선의로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반환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68조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고 정보를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할 권리 를 가진다. 의결권이 있는 주주는 의안을 제기하고 결의에 참여할 권리 를 가진다.
- ② 이사회는, 주주가 서면으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총회소집일 8 일전까지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가 회사의 중대한 경제적 이익에 손해를 주거나 영업비밀 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제공을 거절하지 못한다.
- ③ 이사회는 적어도 총회개최 30일전에 대차대조표, 이사회와 감사위원 회의 보고서 및 이익배당에 관한 제안 등의 주요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자료의 공개는 공고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한다.
- 제269조 ① 주식에 부여된 의결권은 제242조에 정한 종류주식을 제외하고 주식의 액면금액에 근거한다.
- ② 정관으로 주식에 의하여 대표되는 의결권의 한도를 정하거나 비율을 정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정관으로 자본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가예산기 구 또는 금융기관이 51%의 의결권을 가진다는 규정을 들 수 있다.
- 제270조 ① 의결권의 행사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②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271조 ① 주주는 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사회의 이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및 회계검사인은 대리인이 될 수 없다.
- ② 대리인의 권리는 의사정족수의 미달로 재소집되는 총회를 포함하여 당해 총회기간에 한하여 유효하다. 그 대리권의 수여는 공증증서 또는 충분한 증거능력을 가진 사문서의 양식으로 회사에 제출되어야 한다.
- 제272조 특정년도에 회사가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 다음 연도에도 缺損금 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우선주식의 소유자는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273조 ① 자본의 10분의 1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가 소집의 이유와 목적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총회소집을 청구하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관으로 그보다 적은 부분의 자본을 대표하는 주주에게도 소집청 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가 30일내에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4조 ① 자본의 10분의 1이상을 대표하고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이유와 목적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회에 대하여 총회의 의사일정에 특정사항

의 삽입을 청구할 수 있다. 정관으로 자본의 보다 적은 비율을 대표하는 주주에게도 그러한 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주는 총회소집의 공고일로부터 8일 내에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1항에 의해 청구된 사항을 총회의 의사일정에 삽입시키고, 8일 내에 총회에 관한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가 제3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안전제안을 한 주주들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일내에 이사회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대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75조 ① 자본의 10분의 1을 대표하는 주주는 서면으로 이유를 기재하여

업무집행의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정관으로 자본의 보다 적은 비율을 대표하는 주주에게도 그러한 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정한 주주는, 감사위원회가 30일내에 제1항에 정한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76조 ① 주주, 이사회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위법적인 결정의 시정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이사가 제1항의 제소를 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된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회사의 소송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주주는 1주 이상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제 4 절 기관

제 1 관 총회

제277조 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이며 주주 전원으로 구성된다.

제278조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1. 정관의 작성 및 변경

2. 자본의 증감

3. 각 종류주식에 부가된 권리의 변경

4. 다른 주식회사와의 연합, 합병, 해산, 다른 회사형태로의 조직변경

5. 이사회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원 및 회계검사인의 선임과 해임, 보수

6. 대차대조표 및 연간 이익배당의 승인

7.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대한 결정

8.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제279조 ①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개최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총회는 이사회에 의하여 소집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총회의 개최 30일전에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회사의 명칭과 소재지
2. 총회의 시기와 장소
3. 총회의 의사일정
4. 정관으로 정한 의결권의 행사요건
 - ④ 기명주식의 소유자에게는 총회의 소집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80조 ① 총회에 참석하는 주주의 출석명부를 작성한다. 그 출석명부에는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주식과 의결권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출석명부는 총회의 의장과 의사록의 기록자의 서명으로 이를 증명한다.

제281조 ①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2분의 1 이상의 주주가 출석하는 경우에 결의할 수 있다. 정관으로 그 비율을 가중할 수도 있다.
 ② 총회가 결의할 수 없는 경우, 15일내에 소집되는 제2차 총회는 출석 자수에 관계없이 제1차 총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는 결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총회는,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결의를 할 수 있다.

제282조 총회는 제27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를 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이 조건부의 과반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단순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83조 총회가 특정한 종류주식에 부여된 권리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의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동의는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또는 총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284조 ① 총회개최시, 다음 각호에 게기된 사항을 포함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의 상호와 소재지
 2. 총회의 장소와 시기
 3. 총회의 의장, 의사록의 기록자, 의사록 확인자 및 발언자의 성명
 4. 총회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 확인된 동의안
 5. 결의사항, 찬성, 반대 및棄權票의 수
 6. 이의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결의에 대한 주주,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 회의 구성원의 이의
- ② 의사록은 기록자와 의장이 이에 서명하고, 선임된 2명의 주주가 이를 증명한다.
 ③ 이사회는 총회의 종료일 30일내에 증명된 총회의사록 사본, 출석자 명부, 총회소집을 공고한 신문의 사본을 등기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주는 총회의사록의 사본 또는 등본의 발행을 이사회에 청구할 수 있다.

제 2 관 이사회

제285조 ①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다. 이사회는 제3자, 범원

및 기타 기관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운영조직을 설치, 관리하고 사용자의 권리를 행사한다.

② 이사회는 3인 이상 11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 구성원중에서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③ 이사는 주주 또는 기타 다른 사람중에서 선임된다.

④ 정관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이사는 공동으로 업무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제286조 ① 모든 이사는 회사의 지배권을 가진다. 단, 정관으로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또는 이사회로부터 그러한 권리를 부여받은 자와 공동으로 지배권을 가진다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정관으로, 수인의 이사 또는 근로자에게 회사의 일반적 또는 한정적 업무에 대하여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287조 정관, 총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제한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사회 의 구성원은, 그러한 제한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288조 ① 이사회는 회사의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이익배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업무집행, 재산상태 및 영업정책에 관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보고의 횟수를 정관으로 정하되, 1년에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회사의 영업장부를 관리한다.

제289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총회를 소집하는 동시에 감사위원회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자본의 3분의 1을 상실하였을 때

2. 회사가 지불을 정지하였고 재산이 채무를 충당하지 못하는 때

제290조 ① 이사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지 못한다.

1. 자기명의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는 것

2.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

3.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것

② 회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제1항에 정한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손해배상청구

2. 손해배상 대신에 그 이사가 거래를 자기의 계산으로 체결한 것인 때에는 회사의 계산으로 할 것을 청구

3.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

③ 제2항에 정한 권리는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이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거나 또는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제 3 관 감사위원회

제291조 ① 주식회사는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를 두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주주 또는 기타 다른 사람(제292조에 정한 자를 제외하고)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단, 총회는 회사근로자를 위원으로 선임하지 못한다.

제292조 회사의 연평균 근로자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을 선임한다.

제293조 ①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의사일정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의 의견이 감사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경우, 소수의견은 총회에서 공표되어야 한다.

제294조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그 이사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한다.

제295조 ① 감사위원회는 공동으로 또는 그 위원중의 한 사람을 통하여 권리행사를 위하여 감사를 위하여 감사임무를 위원간에 분담할 수 있다. 단, 그러한 감사임무의 분담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책임 또는 기타 업무를 통제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회사내에서 다른 내부통제자(감독기구)가 활동하는 경우 그러한 감독기구는 감사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제296조 제290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적용한다.

제 4 관 회계검사인

제297조 ① 회사는 1인이상의 회계검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인은 이 법률, 기타 법규 및 정관에 정한 업무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제 5 관 1인 회사

제298조 ① 국가예산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주주가 되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주 한 사람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1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자연인은 단독 주주가 될 수 없다.

제299조 ① 1인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등기와 공고를 위하여 30일내에 법원에 설립을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경우 회사의 채무에 대한 주주의 책임은 납입한 주금액으로 한정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는 총주식의 인수일로부터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③ 1인회사의 계속적인 지불불능으로 인하여 해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주주는 회사의 등기후에 발생한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제300조 기타 모든 경우에 주식회사에 관한 이 법률의 규정은 1인회사에 적용한다. 단, 제298조 제1항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제2항의 경우에는 주

주가 총회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 5 절 자본의 증감

제301조 ① 주식회사는 기발행된 주식의 액면금액이 전액납입된 후에 제304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다. 은행,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와 다른 규정을 들 수 있다.

② 자본의 증자는 신주의 발행, 자본금을 초과하는 회사재산의 자본으로의 전환,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

제302조 ① 자본의 증자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제안으로 총회가 이를 행한다. 총회의 소집공고에는 제279조 제3항에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자본증자의 이유, 방법 및 최소액
 2. 자본증자와 관련된 정관의 개정안
 3. 신주의 수 및 발행가액
 4. 새로운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에 관한 권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주식에 부가된 권리의 명세 및 구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주식청약의 방법으로 자본을 증자하는 경우 그 청약의 기간
 6.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본을 증자하는 경우 그에 관한 제안
- ② 이사회가 자본증자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303조 ① 주식청약의 방법으로 자본을 증자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식청약시 인수한 주금액의 30%이상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4분의 3의 다수결로 찬성하는 경우, 모든 주주에게 그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주주가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한다.

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소유자는 주주보다 우선하여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국가예산기관 및 금융기관의 주식청약권은 당해 사채소유자의 권리에 우선한다.

③ 기타의 경우에 자본증자와 관련된 주식청약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단, 주식청약은 총회의 결정을 등기부에 등기하고 공고한 후에만 이를 개시할 수 있다.

제304조 ① 자본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출자로 하는 경우, 회사는 주금액이 전액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도 현물출자의 평가액에 의하여 증자할 수 있다.

② 현물출자의 평가액 확정 및 그 출자에 부가되는 책임에 관하여서는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5조 ① 주식회사는 연례대차대조표나 특별대차대조표의 승인후, 자본금을 초과하는 재산(또는 그 일부)을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다. 자본으로의 전입은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의 액면가를 증액하여 발행하는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②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주주는 그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다.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이를 최고하여 하며, 기명주식의 소유자에게는 인수장소와 기간을 개별적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 ③ 주주가 다음 총회의 종료시까지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신주를 환가할 수 있다.
- ④ 액면가를 증액하여 발행할 때에는 그舊주식에 보다 높은 액면가를 기재하고 회사의 규정에 따른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06조 자본증자의 요건을 정관으로 정함과 동시에, 회사설립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고 5년내에 자본을 확정된 일정금액까지 증자시키는 업무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이사회가 신주발행에 의하여 또는 자본을 초과하는 회사재산을 자본으로 전입하여 증자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자본의 3분의 1까지로 한다.

제307조 ① 총회는 전환사채의 발행이 있는 경우 자본증자의 목적을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에만 두는 한정적인 증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전환사채의 소유자는 한정적으로 증자된 자본금의 액수를 한도로 주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주식의 수와 액면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총회의 결정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한 주식은 총회의 결정으로 정한 대가가 전액 납입된 후에,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④ 주식의 액면가보다 적은 액수로 사채를 발행한 경우, 권리자가 주식의 액면가와 사채가액간의 차액을 납입한 때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제308조 ① 이사회는 총회 또는 이사회가 자본증자를 결정한 경우, 그 등기 및 공고를 위하여 결정을 행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등기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본의 증자실시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한정적 자본증자의 경우 이사회는 대차대조표를 승인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한정적 증자형식으로 前연도에 행한 자본의 증자에 대하여 등기법원에 신고(등기 및 공고를 위하여)하여야 한다.

③ 자본의 증자는 등기부에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증자의 등기는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주식(假발행주식)은 등기를 한 후에야 발행할 수 있다. 그 등기전에 발행한 주식은 무효로 한다.

제309조 ① 자본의 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정관의 규정 또는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연도의 이익금에서 배당을 받는다.

②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은 기타 주식과 동일한 규정에 의하여 증자된 자본의 구성부분이 된다.

제 2 관 자본의 감소

제310조 총회에서 자본감소에 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한다.

1. 자본감소의 이유 및 방법
2. 자본감소액
3. 주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최종기한

②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회사는 먼저 소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액면가 및 자본의 최저액에 대한 규정은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자본감소는 전환사채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311조 ① 이사회는 자본감소에 대한 총회의 결정내용을 30일내에 등기법 원에 신고(등기를 위하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한후 이사회는 그 결정사항을 30일이상의 간격으로 관보로 2회 공고한다.

제312조 ① 자본감소에 관한 제1차 공고전에 만기된 채권을 회사에 청구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의 채권액을 한도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감소에 대한 결정의 최종 공고일로부터 90일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상실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하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3조 자본의 감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1. 주식의 교환, 기타 그와 유사한 방법의 주식수의 감소(주식병합)

2. 주식소각 및 주주에 대한 주금액의 반환

國有企業에 관한 1977년 第6號 法律의 改正에 관한 1989년 第14號 法律

(國有企業法)

국유기업은 사회주의 국민경제의 경제단위로서 국가의 경제적 임무의 수행, 사회적 제요구의 다각적인 쟁족 및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의 실제적인 실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회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유의하여, 국유기업의 임무·구조·활동·지도에 관하여 다음의 법률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국가의 경제적 제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유기업 기타 국가의 경제 조직을 설립·활동하게 한다.

제2조 ① 국유기업이라 함은 국가가 설립권한을 부여한 제기관에 의하여 설립되고, 국가 소유의 위탁재산을 이 법률이 정한 방법과 책임으로 독립하여 운용하는 경영사업조직을 말한다.

② 이러한 기업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① 국가는 이 법률과 기타의 법규에 정한 방법으로 기업의 경영사업을 지도·감시한다.

② (폐지)

제4조 (폐지)

제5조 (폐지)

제6조 ① 국유기업은 효과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 법규의 범위내에서 - 경영사업의 효율의 지속적인 향상과 더불어 국유기업 종업원의 물질적·도덕적 이익을 보장하는 내부의 회계·감사·이익에 관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진다.

② 국유기업의 종업원은 법령의 제규정 및 국유기업의 내규에 정한 기업 경영사업의 성과의 분배에 참여한다.

제 2 장 국유기업의 설립

제7조 ① 국유기업은 장관, 전국적 관할권을 가지는 기관의 관리자와 평의회 및 각료평의회에 의하여 국유기업의 설립권한이 부여된 기타 국가기관(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이 설립한다.

② (폐지)

③ 국유기업이 법률,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 각료평의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우, 국유기업의 설립자의 권한 및 의무는 그러한 법령에 정한 기관에 귀속된다.

제8조 ① 국유기업의 설립에는 재무부장관의 사전동의를 요한다.

② 설립기관이 각부의 장관이 아닌 者인 경우, 설립자는 국유기업의 설립에 대하여 당해 국유기업의 활동범위를 관할하는 部의 장관의 사전동

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장관 또는 전국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기관의 관리자가 국유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기업이 소재하게 될 지역을 관할하는 평의 회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유기업은 국유기업의 분할, 그 조직적 단위의 독립기업화 및 기업의 합병에 의하여도 설립할 수 있다.

제11조 ① 국유기업의 설립결정서에는 다음 각號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및 소재지
2. 기업의 활동범위
3. 기업의 설립자산
4. 기업의 일반관리를 수행하는 기관
5. 설립기관

6.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 기타 사항 및 관련 사항

② 국유기업이 다른 국유기업 또는 기관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 설립 결정서에 그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국유기업의 설립시에는 그 결정의 공표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에 회사등록부를 관리하는 법원(등기법원)에 설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유기업은 회사등록부 등기에 의하여 그 설립결정의 공표일까지 소급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법원은 그 설립결정이 법규에 저촉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등기법원에 제출된 신청서에는 법원에 의한 회사등기에 관한 각종의 법령에 정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등기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한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동일한 등기법원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국유기업의 조직

제12조 ① 국유기업의 일반관리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수 행한다.

1. 기업의 평의회
2. 기업의 종업원총회 또는 그 대의원총회(이하 "종업원총회"라 한다.)
3. 지배인

② 조직·활동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기업의 평의회는 종업원총회(또는 대의원총회)의 지도부 또는 감독위원회를 선출한다.

③ 지배인이 국유기업의 일반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하 "국가행정의 감독하에 있는 기업"이라 한다), 기업의 설립시에 지배인의 지원 기관으로서 활동하는 지배인평의회의 설립을 결정할 수 있다.

④ 기업의 평의회, 종업원총회 및 관리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배인이 그러한 단체의 각종 결정의 범위내에서 조치를 취한다. 다만,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배인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회사를 관리한다.

제13조 ① 기업의 내부조직에 대하여는 -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 조직·활동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각종업무의 수행에 最適인 조직편성을 고려하고 지도·결정의 권한, 내부의 회계·이익·감사제도의 확립에 대하여도 배려하여야 한다.

② 분리구분된 조직적 단위를 가지는 기업은 조직상의 각 단위의 경영사업상의 독립성과 책임, 기업의 각종 결정에의 당해 단위의 참여방법, 경영사업상 및 개발상의 활동의 실효성 및 단위자신의 회계에 관하여 조직활동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국유기업의 내부조직·활동에 관련된 운용세칙은 - 조직·활동정관의 범위내에서 - 단위 자신의 내부규칙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4조 (폐지)

제15조 국유기업의 일반관리를 기업의 평의회 또는 종업원총회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의 선거 및 해임에 대하여는 당해 내부기관이 결정하고 국가행정의 감독하에 있는 기업에서는 설립기관이 지배인을 임면한다.

제16조 (폐지)

제17조 (폐지)

제18조 (폐지)

제19조 국유기업의 노동자는 이 법률 및 각종의 특별법규 및 기업의 조직·정관에 정한 범위내에서 기업의 관리 또는 관리의 감독에 참여한다.

제20조 (폐지)

제21조 ① 법령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기업의 공장민주주의의 각종 포럼(forum), 포럼의 설치·활동의 체제, 그 권한, 기업의 종업원의 참여방법 및 포럼의 활동원칙에 관하여 조직·활동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폐지)

③ (폐지)

제 4 장 국유기업의 경영

제22조 ① 국유기업은 위탁된 재산 및 고용된 노동자를 각종의 법규의 범위내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② 국유기업은 경제적 전제조건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자주적 사업에의 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기업과 사회의 제이익의 실현, 사회적 제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경영사업, 즉 국유기업에 위탁된 재산의 관리의 범위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모든 권리는 국유기업에 귀속된다.

④ 국유기업은 자신의 제권리를 사회주의의 경영사업의 제원칙에 합치 되도록 사회주의의 경영사업의 목적에 따라 행사한다.

제23조 국유기업의 기본적인 권리·의무는 다음各號에 개기한 바와 같다.

1. 기업의 물질적·정신적 힘의 원천의 효율적인 이용 및 증진
2. 기업의 각종 계획의 수립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작성
4. 기업의 경영·가격정책의 확정, 생산·서비스조직의 편성의 확정
5. 기업의 조직·활동정관의 작성
6. 사용자의 권리의 행사 또는 사용자의 의무의 이행, 인사 및 노동사항의 각종 업무의 수행
7. 자회사의 설립 및 경제적 사단에의 가입

8. 사회적 소유의 보호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諸前提條件의 보장, 내부감사, 정보·회계제도의 편성
9. 노동수행환경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의 수행, 생산의 안전, 공장의 보안 및 防火의 각종 전제조건의 보장
- 10.(폐지)
- 11.(폐지)

제24조 ①(폐지)

- ② 국유기업의 조직·활동정관에는 활동전반에 걸친 정기적인 내부감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 ③ 내부적인 감사의 조직과 임무는 법령으로 정한다.

제25조 ① 국유기업의 활동범위는 국민경제 및 주민의 제요구를 고려하여 기업의 힘의 원천을 최대한으로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 ②(폐지)

제26조 국유기업은 - 제25조에 게기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또는 행정 청의 허가를 얻어 - 그 활동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 ① 국유기업에는 그 설립시에 기업의 활동범위의 수행에 필요한 자

산(설립자산)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유기업은 위탁된 재산의 계획적·경제적 이용 및 증대에 대하여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유기업은 위탁된 재산으로 자신의 각종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④(폐지)

제28조 국유기업에 위탁된 재산은 - 법률이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 박탈되지 아니한다. 국가행정의 감독하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각료 평의회는 이 규정과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 (폐지)

제30조 국유기업을 대표하는 자는 지배인이며, 경우에 따라 그 권한을 기업의 종업원에 양도하거나 그 일정한 업무에 관하여는 - 조직·활동정관에 규정된 - 종업원에 위임할 수 있다.

제 5 장 국가에 의한 국유기업의 지도

제30A조 ① 국가의 감독 및 지도의 형태는 다음 各號에 게기한 바와 같다.

1. 설립자의 권한의 행사
 2. 기업의 평의회 또는 종업원총회의 일반관리하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 는 적법성의 감독
 3. 국가행정의 감독하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국가적 지도 및 감독
 4. 부문별 및 기능별 기관에 의한 지도 및 감독
 5. 시장감독
 6. 행정청의 활동
- ② 설립자의 권한, 감독적 지도 및 감사에 대하여 감독·지도의 권한을 가지는 기관은 그러한 권한의 행사를 다른 기관에 - 협정에 의하여 - 위임할 수 있다.

제30B조 설립기관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다.

1. 기업의 설립
2. 국가행정의 감독하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배인의 임명과 해임 및 각종의 특별법규로 정한 사용자의 권리의 행사
3.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기업의 해산 또는 경제적 사단으로의 개조

제30C조 ① 국가는 적법성의 감독에 의하여 국유기업의 조직·활동정관의 조작·활동에 관한 기타의 내부규칙이 이 법률 및 국유기업의 설립 결정서에 정한 내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감사한다.

② 국유기업의 설립결정이 법령, 설립결정서 및 내부규칙의 제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감사한다.

③ 적법성의 감독은, 경제적·합법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사업 및 결정에 대한 심사외에도 행정각부 및 하급기관의 지도 및 감사, 시장감독, 행정청의 활동에 속하는 사항, 노동쟁의, 재판절차 또는 법령에 의한 국가행정의 절차가 문제시되는 각종 사항의 실체적 판단에까지 미친다.

제30D조 ① 적법성의 감독은 등기법원이 이를 수행한다.

② 국유기업에 관련된 등기법원의 절차에는 법원에 의한 회사등기에 관한 각종 법령을 준용한다.

제31조 ① 국유기업의 감독은 당해 기업의 설립기관이 이를 수행한다.

② 설립기관은 감독권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유기업의 지도와 관련하여 이 법률에 정한 각종의 권한을 행사하고 정부결정의 집행을 조직·감독한다.

2. 국유기업의 활동을 각각도로 평가·감사한다.

3. 경제적·개발적 각종 목적과 수단을 사용하여 국유기업이 경영사업의内外부적 조건에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4. 국유기업의 지배인에 관한 인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고 그 활동을 평가한다.

5. 이 법률·기타 법규에 정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2조 장관(또는 전국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기관의 관리자)은 감독권을 행사함에 있어 지역의 고용 또는 생활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당해 지역평의회에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33조 ① (폐지)

② 각료평의회는 감독권의 범위에 속하는 개개의 임무의 수행을 기업의 설립권한이 부여된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 ① 설립기관의 관리자는 국유기업의 활동이 국민경제의 제목적의 실현을 해치거나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는 경우, 국가행정의 감독하에 있는 기업의 지배인의 임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립기관은 6월 이하의 기간으로 당해 기업에 특별감독관을 파견한다.

② 국유기업에 파견된 특별감독관은 설립기관의 직접적인 지도와 지시에 따라 국유기업을 관리한다.

제35조 (폐지)

제36조 ① 설립기관은 국유기업의 활동을 감사하기 위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각료평의회는 감사위원회에 기타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및 감독의 감사에 관한 세부적인 규칙은 법령으로 정한다.

제37조 ①部門에 대한 지도는 경제부문을 관掌하는 장관이 이를 수행한다. 그 범위내에 속하는 사항은 특히 다음 각號에 게기한 바와 같다.

1. 경제정책의 결정을 정당화하는데 필요한 부문의 제안을 제시한다.

2. 부문의 발전을 위한 각종 목적 및 경제적 규칙과 신용정책의 작성에 참가한다.

3. 국제분업의 확대에 기여하는 부문의 임무 조정에 협력한다.

4. 부문에 소속된 기업이 국민경제의 각종 요청에 따라 그 활동을 수행하도록 촉진하고 이를 감독한다.

②부문의 지도와 감독의 세부적인 규칙은 법규로 정한다.

제38조 부문의 지도를 수행하는 장관(전국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기관의 관리자)과 설립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감독기관 및 중앙시장감독기관은 협력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기관은 국유기업에 관련된 실체적인 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상호 통지한다.

제39조 기능적(계획, 기술개발, 가격, 노동, 재정 등의) 지도와 감사, 시장감독 및 행정청의 활동에 관한 규칙은 법령으로 정한다.

제40조 국유기업에 대한 일정한 경제활동의 지시는, 당해 목적 및 사회전체의 목적이 기타의 제수단에 의하여 달성될 수 없는 경우, 법률, 법률로써 효력을 가지는 명령 또는 법률에 규정된 授權에 근거한 각료평의회의 명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제41조 (폐지)

제 6 장 국유기업의 해산

제42조 국유기업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된다.

1. 당해 국유기업의 분할, 다른 기업과의 합병, 다른 기업에 합병되는 경우

2. 경제적 사단 또는 협동조합으로 개조되는 경우

3. 설립기관이 제42A조 제1항에 정한 사유로 해산되는 경우

4. 법원의 청산절차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

5. 등기법원이 해산을 선언한 경우

제42A조 ①국유기업의 평의회 또는 기업의 종업원총회(또는 대의원총회)가 일반관리를 수행하는 기업의 장부계정상의 순수재산이 직전 2년중 가 일정한 경우, 설립기관은 당해기업을 국가행정의 감독하에 있는 기업에 관한 제규정에 정한 경제적 사단으로 개조하거나 당해 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②국유기업의 평의회 또는 종업원총회(또는 대의원총회)가 일반관리를 수행하는 기업의 장부계정상의 순수재산의 50% 이상이 경제적 사단으로부터 출자된 것인 경우, 당해 기업은 그러한 비율에 도달한 날로부터

로부터 기산하여 2년내에 경제적 사단으로 개조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기업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기관은 당해 기업을 국가행정의 감독하에 있는 기업에 적용되는 제규정에 따라 경제사단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각료평의회의 제안에 의거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립기관이 1년내에 당해 국유기업을 경제적 사단으로 개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국유기업의 평의회 또는 종업원총회(또는 대의원총회)로 하여금 일반관리를 수행하는 기업을 국가행정의 감독하에 있는 기업으로 개조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43조 ① 기업은 회사등록부로부터 말소됨으로써 해산된다.

② 기업이 법적 승계자 없이 해산된 경우,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채무가 청산후의 순수한 잔여재산은 설립기관에 귀속된다.

제44조 (폐지)

제 7 장 공익기업

제45조 ① 공익기업은 공공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본적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보장하는 임무를 가진다.

② 공공기업의 범위는 각료평의회가 이를 확정한다.

③ 기업에 관한 제 법령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과 더불어 공익기업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46조 ① 설립기관은 공익기업에 대하여 급부의 의무를 정할 수 있다. 설립기관의 제수단의 재분배의 금지에 관한 각종 규칙 및 지시권한의 제한에 관한 각종 규칙은 공익사업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익사업체의中期발전계획은 설립기관이 이를 승인한다.

제46A조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지도, 조직 및 활동에 관하여 각료평의회는 제46조에 게기한 규칙외에도 독자적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8 장 트러스트

제47조 ① 설립기관은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수개의 기업의 경영기관 및 지도기관을 결합하기 위하여 트러스트를 조직할 수 있다. 당해 트러스트는 참가기업 및 트러스트부문에 의하여 구성되고 기업의 형태로 활동하는 경영사업조직이다.

② 트러스트 및 그 지도하에 활동하는 트러스트의 기업은 법인으로 한다.

③ 트러스트의 조직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트러스트의 범위내에서 법인으로서 활동하는 기업(이하 "트러스트 기업"이라 한다)을 열거하여야 한다.

④ 트러스트의 조직에 대한 결정을 변경하는 경우 및 트러스트의 권한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료평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트러스트의 해산은 각료평의회의 사전승인을 요한다.

제48조 ① 트러스트는 당해 트러스트의 총지배인 또는 이사회의 지도를 받는다. 이사회는 트러스트의 총지배인 및 트러스트기업의 지배인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트러스트내의 하나의 경제단위가 된 기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트러스트의 총지배인 및 당해 기업의 지배인의 참여하에 결정을 내릴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둘 수 있다.

② 트러스트의 총지배인 및 이사회의 권한은 트러스트의 조직의 결정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트러스트의 조직의 결정서에는 이사회가 트러스트의 권한을 트러스트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행사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들 수 있다.

제49조 ① 트러스트의 조직의 결정서에 이사회 또는 총지배인이 트러스트 기업에 특정한 활동을 지시하고, 그 경영사업을 구속하는 지도적 제원을 정하고 트러스트기업의 재산을 트러스트의 보다 효율적인 경영사업을 위하여 재분배하고, 국가예산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트러스트의 개개의 기업을 하나의 경제단위로 간주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트러스트는 다음 각號에 게기한 사항을 보장하는 내부적인 회계 및 지도의 체제를 조성·실시하여야 한다.

1. 자신의 결정에 따른 투자를 포함하여 트러스트의 기업에 필요한 경제적 독립성과 책임보장

2. 트러스트의 기업의 경영 및 개발활동의 수익성에 대한 관심 및 트러스트기업의 활동에 따른 트러스트의 성과의 배분

② 트러스트의 기업의 재산의 재분배시 은행대부를 채무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부를 제공한 금융기관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50조 ① 트러스트의 총지배인은 - 트러스트 이사회의 의견에 유의하여 - 설립기관이 임명·해임한다.

② 트러스트기업의 지배인은 트러스트의 총지배인이 임명·해임한다. 총지배인은 트러스트기업의 지배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51조 (폐지)

제52조 트러스트에는 국가행정의 감독하에 있는 기업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트러스트기업은 트러스트의 지도하에 둔다.

제52조 (폐지)

<종결규정>

제53조 ① 이 법률은 - 이 條 제2항에 게기한 규정외에는 -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1조 제3항의 규정, 제30D조의 규정, 제42조 제1항 5號의 규정 및 제43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營業利益稅에 관한 法律

영업활동의 통일적인 제조건의 창출·재산증가와 자본유통의 촉진 및 국가의 책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는 다음의 영업이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제 1 장

- 제1조 ① 이익·재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대가를 얻어 영업적 성격의 생산 또는 서비스활동(이하에서는 영업활동이라 한다)을 행하는 납세자에게는 (제2조) 영업이익세(이하 "조세"라 한다)가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 ② 납세의무는 이 법률, 국가재정법 및 회계 그리고 조세행정절차에 관한 법규에 규정된 신고·등기·부기·대차대조표의 작성·세액의 신고·세액의 확정·조세의 사전납부·증명서의 보관 및 보고서의 제출의무를 포함한다.
- ③ 납세의무는 영업활동의 개시일에 발생하여 영업활동의 종료일까지 계속된다. 영업활동의 종료는 종료전의 영업활동의 수행으로 인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제2조 제1항 5호에 규정된 개인영업자의 납세의무는 영업활동을 연도의 중도에 개시하는 경우외에는 세무서에 신고한 익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며, 개인영업자는 이 법률에 개기된 납세를 선택한다.
- ⑤ 제2조 제1항 5호에 규정된 개인영업자가 그 영업활동을 개인소득세에 관한 1987년 법률 제6호 8/A조에 규정된 개인영업자로서 계속하여 활동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同法律에 규정된 납세의무는 그 의사를 세무서에 신고한 익년 12월 31일 소멸한다.

납세자

- 제2조 ① 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이다.

1. 국가기업, Trust, - Trust의 설립결정서에 별단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 Trust구성기업, 국가의 기타 경영사업기관,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기업, - 수자원공급조합외의 - 수리조합, 특정한 법인기업, 금융기관 및 자회사
 2. 회사(회사에 관한 1988년 법률 제6호의 제2조 a호)
 3. 공업 및 서비스에 종사하는 협동조합의 전문집단, 농업의 전문집단, 상급교육시설에서 활동하는 학교의 협동조합집단
 4. 제3조에 열거된 노동단체외의 사인간의 법인격있는 노동공동체
 5. 이 법률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자로서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에 관한 1987년 법률 제6호 8/A조에 규정된 개인영업자
- ② 이 법률의 효력은 헝가리국립은행, 국립개발연구소 및 금융기관중앙조합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조직의 예산과 관련된 의무에 관한 규칙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③ 주택협동조합, 사회조직, 기금, 법정대리인을 두고 있는 법인격있는 노동공동체 및 수자원공급조합은 영업활동을 원인으로 한 - 그 경영사업의 체제에 대하여는 특별법으로 정한다 - 수익에 따라 제12조에 규정된 기준의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직이 이 법률에 규정된 조세우대조치를 청구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률의 효력은 당해 조직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 2 장 과세의 근거

제4조 과세의 근거는 歷年에 획득한 수익 중에서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출된(손익결산서의) 貨邊額(이익 : nyeresség ; Gewinn)으로 한다.

수익의 확정 및 수정

제5조 ① 납세자의 1년간의 판매수익(賣上高)이 2억 5천만포린트에 달하는 경우, 수익(eredmény=Ergebnis)은 연간계상수익에서 판매계상원가 및 제경비를 공제하여 확정한다.

② 납세자의 1년간의 판매수익이 2억5천만포린트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익은 연간계상수익에서 연간계상비용과 제경비를 공제하여 확정한다.

③ 법인격없는 회사 및 제2조 제1항 3호 내지 5호에 규정된 납세자는 1년간의 판매수익이 2천 5백만포린트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수익에서 지급해야 할 생산·거래비용 및 계상된 - 구입된 비품(készlet : Garnitur)의 생신가액에 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수익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는 수익을 簡易簿記의 규정에 따라 日計元帳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열거된 규정의 상세한 계산규칙은 부기규칙에 관한 명령으로 정한다.

제6조 ① 납세자는 자신에 관한 규정에 갈음하여 - 선택에 따라 - 상당히 높은 판매수익액의 결정과 관련된 수익확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납세자의 1년간의 판매수익이 수익확정근거가 되는 판매수익에 대하여 규정한 상기금액의 한도를 15%이상 초과하는 경우 조세신고서의 제출후 차기년도에 상당히 높은 판매수익액의 한도에 대하여 정한 수익확정제도로 변경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③ 납세자는 상당히 높은 판매수익액의 한도를 규율하는 수익확정제도로 歷年の 1월 1일부터 변경하여야 한다.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제1회 세무서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① 수익을 확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은 비용 또는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1. 제1호 부록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감가상각가액은 제2호 부록에 규정된 감가상각률標에 의거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각료명의회는 기술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명령으로 특정한 고정자산의 가속상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2. 이익대표기관의 유지와 연합활동비용을 위하여 제공된 출자액

3. 제2조 제1항의 2호 내지 5호에 규정된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가私人인 사원 또는 개인영업자의 협력활동에 대하여 정한 대가
4. 금융기관이 - 보험기관은 제외 - 貸損充當金으로서 항목을 설정하는 위험준비액 (그 수익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補填하는 경우 직전년도의 대차대조표의 총액의 0.9%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5. 보험기관이 연도 별 손해의 변동을 조절하기 위하여 항목을 설정하는 준비금은 제3호 부록의 규정에 의한다.

6. 수리조합을 위하여 양도된 관계당사자의 출자액

② 납세자들은 공동활동비용에 충당되는 출자를 비용으로 계상하고 공동활동의 收支를 수익의 부채(과목) 또는 이익(과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공동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바와 같다.

1. 공동투자의 수익으로서 완성한 고정자산의 가동

2. 공동의 위험부담에 의거한 거래

3. 공동용자에 의한 교육활동, 기술개발활동

③ 수익의 확정에 있어 고정자산·장기투자·비품·유가증권·설비(재산객체)의 환가로 인한 대가 및 그들의 폐기·소모와 관련하여 획득한 대가는 (판매)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환가, 소모 또는 폐기되는 자산의 등기액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 ① 확정된 수익이 손실되었을 때는 당해 손실액은 납세자가 자신의 결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직후 2년까지 이월할 수 있다.

② 개업자본을 투자한 납세자는 확정된 수익의 손실액을 당해 연도후의各年度에 확정될 수익에 따라 손실액을 填補할 수 있는 한도에서 차기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③ 당해 연도의 손실에서 이월액을 감산하여야 한다.

제9조 ① 확정된 수익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을 감산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前의 각 연도에 계상되지 아니한 손실의 당해 연도귀속액

2. 국가의 기본교부금에 의하여 지불될 유동자금액

② 납세자는 제1항 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상되지 아니한 손실액을 - 제8조 제2항에 게기된 경우외에는 - 당해 손실년도 직후 2년 동안 확정된 수익에서 감산할 수 있다. 손실년도 직후 제2차 연도에서 계상되지 아니한 손실액 또는 제1항 2호에 규정된 액은 수익이 손실을 填補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익에서 減算한다.

과세근거의 산출

제10조 확정되거나 또는 수정된 수익에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을 가산한다.

1. 제4호 부록에서 정한 대표적인 비용이 - 판매된 상품의 구입가액과 하청영업자에의 급여를 공제한 - 판매수익의 천분의 1.5를 초과하는 부분, (다만, 판매수익의 천분의 1.5가 5천 포린트 미만인 경우에는 5천 포린트를 초과하는 비용부분)

2. 물질적 관심제도의 특정한 문제에 관한 법규의 근거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액

제11조 ① 확정되거나 또는 수정된 수익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을

감 산 할 수 있다.

1. 수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예컨대, 표창 또는 노동경쟁에서 입상에 따른 상금)금액
2. 생산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그 상속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보상으로 지불된 금액
3. 가격표시없이 등기되어 있는 경지환가의 경우에는 제5호 부록에 따라 산출된 금액
4. 공익적 성격의 의무부담(민법 제593조 내지 제596조) 또는 기금(민법 제741/A조 내지 제741/F조)에 제공된 금액으로서 租稅控除收益의 부담으로 이러한 목적(제20조 제1항 g호)에 지불된 금액
5.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법규의 근거에 의거하여 정해진 금액
 ② 제1항에 규정된 금액은 수정된 수익을 제10조에 따라 貸邊(記載)한 도액까지 계상할 수 있다.

제 3 장 조세

과세의 기준

제12조 ① 과세의 기준은 과세근거가 3백만포린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0%, 3백만포린트를 초과하는 경우 50%로 한다(이하 “算定租稅”라 한다).
 ② 조세우대조치(제13조 내지 제15조)액을 감산한 산정조세(납부할 조세)액은 수익가 해당금액을 填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수정된 수익에서 감산하여야 한다.

조세우대조치

제13조 ① 납세자는 제6호 부록에 정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획득한 수익에 대한 조세의 80%를 - 조세환급형태로 청구할 수 있는 - 감면받을 수 있다.

1. 공공서비스활동

2. 문화활동, 보건 및 스포츠활동에 대한 80%

② 납세자는 제7호 부록에 정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획득한 수익에 대하여 조세의 40%를 - 조세환급형태로 청구할 수 있는 - 감면받을 수 있다.

1. 농업, 임업 및 제1차적인 목재가공업의 활동

2. 식품가공업의 활동 및 이와 관련한 특정 서비스

3. 식품소매업활동

③ 산정조세중에서 제1항과 제2항의 1호 및 2호에 규정된 활동으로 획득한 수익에 대한 조세를 그 활동에 의거한 판매수익과 납세자의 총판매수익의 비율의 근거에 의거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2항의 1호 및 2호에 게기한 활동의 경우, 총판매수익 및 우대조치의 대상이 되는 활동에 의거한 판매수익에 수익에 산입할 수 있는 보조금도 가산하여야 한

다.

- ④ 산정조세중에서 제2항 3호에 규정된 활동으로 획득한 수익에 대한 조세를 이 활동에 의거한 일반거래세(altalànos forgalmado)를 가산한 판매수익과 납세자의 일반거래세를 가산한 총판매수익의 비율의 근거에 의거하여 확정한다.

제14조 ① 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바와 같이 조세를 감면한다.

1. 설립자의 자산(제24조)중에서 외국인의 출자지분이 20%에 달하거나 5백만포린트에 달하는 경우에는 산정조세의 20%
2. 판매수익의 50%이상이 생산물제조 또는 자신이 건설한 호텔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고, 설립자의 자산이 2천 5백만포린트 이상이며 그 중에 외국인의 출자분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산물 또는 서비스의 판매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최초의 5년간 산정조세의 60%, 6년부터는 40%
3. 2호에 규정된 제요건이 존재하고 제8호 부록의 특히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물 또는 서비스의 판매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최초의 5년간은 산정조세의 100%, 6년부터는 60% - 조세환급형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조세우대조치는 同項에서 정한 기간내에 各要件이 존재하는 한도내에서 또는 변경되는 제요건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③ 각료평의회는 제1항 1호에 게기된 각요건下에서 금융기관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또는 제8호 부록의 특히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를 위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장기의 조세우대조치 또는 더욱 많은 금액의 조세우대조치를 확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2호 및 3호에 규정된 각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外國人社員(주주)이 자신에게 귀속하는 배당(지분)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설립자의 자산의 증가를 위하여 충당하는 때에는 회사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조세액과 동일한 액의 - 조세환급형태로 청구할 수 있는 - 조세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純收益(tiszta eredmény : Reinergebnis)(제22조)이 적어도 설립자의 자산증가 및 이와 관련된 租稅優待措置의 합계의과 동일한 정도일 것을 요건으로 이러한 우대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① 제9호 부록에 규정된 정도의 - 租稅還給形態로 청구할 수 있는 - 조세우대조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활동에 대하여 적용된다.

1. 구조·사회정책에 대한 중앙의 결단과 관계되는 약간의 활동
 2. 교육·기술발전활동
 3. 주민을 위한 특정한 서비스활동
 4. 주민수가 천오백인 이하의 소규모단지 또는 촌락에서의 소매업활동
 5. 민간에게 전송되는 공예미술품과 전통적인 가내공업품의 제작
 6. 입지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농업의 대규모경영
- ② 각료평의회는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經濟構造政策에 대한 중앙의 결정과 관련된 분야에 속하는 산업에 봉사하는 납세자를 위하여 명령으로 조세우대조치를 확정한다.

제16조 각종 法律에서 정한 조세우대조치는 산정조세액의 한도까지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조세우대조치는 次期年度로 이월할 수 없다.

제17조 ① 납부하여야 할 조세액은 이중과세 회피에 관한 국제협정의 규정이나 또는 상호주의의 의거하여 감액할 수 있다.
 ② 상호주의의 적용은 내무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의 합의에 의한다.

제 4 장 조세공제된 수익

제18조 조세공제된 수익이라 함은 수정된 수의과 납부되어야 할 조세의 차액을 말한다.

제19조 조세공제된 수익에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1. 회사에의 참가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부분(배당)
2.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획득한 지원액
3. (사회적인)복지, 문화 및 스포츠를 목적으로 한 투자외에 주택건설지원액, 노동시간외에 수행된 사회활동을 위하여 지불되는 노임
4. 취득한 주택의 사용에 의한 收入價額
5. 貨貸借業에 의거하여 획득한 거래정책지원액
6. 개발과 관련하여, 다른 개발을 목적으로 한 지불에 대하여 그리고 轉嫁할 수 없는 일반거래세부분에 대하여 청구되는 국가의 기본교부금과 예산액
7. 조세공제된 수의과 관련하여, 종전의 각년도에서 감사에 의하여 발견된 조세확정을 원인으로 한 조세초과납부액 및 수의 또는 수의배분으로부터 조세를 감산한 수정확정액

제20조 ① 납세자는 조세공제된 수익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을 계상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1. 투자를 목적으로 한 취득 -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투자를 포함하여 -에 대하여 사전에 견적한 일반거래세 중에서 전가할 수 없거나 또는 반환청구할 수 없는 부분
2. 개발과 관련하여 다른 개발을 목적으로 한 지불 및 당해 지불에 대하여 사전에 견적한 일반거래세
3. 사전에 견적한 일반거래세중에서 전가할 수 없거나 또는 반환청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제공되는 국가의 기본교부금
4.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불입된 금액
5. 주택사용구입지불과 주택임차권의 해제에 대한 금전보상
6. 연금지불
7. 공익적 성격의 의무부담(민법 제593조 내지 제596조)과 기금(민법 제741/A조 내지 제74/F조)에 제공되는 금액
8. 조세공제된 수의과 관련하여 직전의 각年度의 감사에서 발견된 조세부족분과 수의 또는 수의배분으로부터 조세를 감산한 수정확정액
9. 利子附株券의 이자
10. 국가, 회사의 사원(주주), 일정한 법인기업과 자회사의 설립자에게 귀속되는 지분(배당), 개인영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에 투자된 재산가치의 수금액, 금전적 자산의 최종적인 양도후에 당해 양수인으로부터 지불된 출자액

11. 株券과 財產證書에 따라 귀속하는 배당
12. 근로자에게 주택의 취득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반환청구할 수 없는 지원금, 貸借指名 또는 買受指名에 관한 權利의 취득에 대하여 평의회에 납부한 금액, 근로자에 대한 주택건설貸付와 관련된 - 납세자가 인수한 - 보증비용
13. 피선출기관의 구성원,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보수
14. 지도적 근로자를 위한 關心制度를 규율하는 법규에 규정된 지도적 근로자의 특별이익
15. 근로자에의 물질적 목적의 刺激에 제공되는 錄
16. 대가없이 교부된 유가증권·株券의 額面金額相當額
17. 납세자 자신이 결정한 기타 목적에 제공되는 금액
 - ② 제1항에 규정된 계상 또는 지불은 비용(항목)으로 계상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1호 내지 8호에 규정된 지불은 유보자산의 처분에 따라 조세공제된 수익이 이것들을 填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9호 내지 17호에 열거된 지불은 그 한도내에서 제19조에 규정된 금액 또는 유보자산의 처분에 의하여 중액되고, 제1항의 1호 내지 8호에 열거된 지불에 의하여 감액되는 조세공제된 수익의 貸邊額까지 이행할 수 있다.

유보자산

- 제21조 ① 납세자는 조세공제된 수익으로부터 유보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② 유보자산은 조세공제된 수익의 填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순수익

제22조 순수익이라 함은 조세공제된 수익이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또는 유보자산의 形收益 처분에 의하여 수정되어진 금액을 말하며, 축적된 자산을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시키게 된다.

금전적 자산의 양도·양수

- 제23조 ① 납세자는 다른 납세자 또는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금전적 자산을 양도할 수 있다.
 ② 금전적 자산의 일시적 양도의 경우에는 금전적 자산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기간과 이자약관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③ 금전적 자산의 최종적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되는 금전적 자산의 수익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배당)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제 5 장 자 산

- 제24조 ① 납세자의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산을 말한다.
 1. 설립자가 제공한 (설립)자산(설립자의 결정, 정관, 정판에 규정된 자

산)

2. 사용중인 축적된 자산

3. 유보자산

② 자산은 납세자의 투자·고정자산·유동자산 및 기타 어느 항목에 속 한다.

자산의 변동

제25조 ① 설립자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에 의하여 증가된다.

1. 회사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정관에 규정된 자산의 증가액

2.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등기된 지분액

3. 유가증권의 가액

② 설립자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에 의하여 감소된다.

1. 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된 자산의 감소액

2.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반환된 지분액

3. (매각한 것을) 재매입하거나 부도가 난 유가증권의 가액

③ 축적자산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에 의하여 증가된다.

1. 純收益의 대변기재액

2. 특정 법령에 의거하여 지불되는 주민용 net-work개발투자 등 최종적으로 양도되고 판매수익으로 볼 수 없는 금전적 자산금액

3. 국가의 기본 교부금액

4. 예산에서 자산으로 분배되지 아니하는 지원액

5. 협동조합의 「공동원조·개발기금」, 「공동개발기금」, 「상호원조기금」

및 「기업협력기금」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획득된 금액

6. 회사에 출자된 자산의 등기액보다 정관에 규정된 가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그 차액

7. 해외시장에서의 판매와 관련하여 획득한 개발지원액

8. 매수한 자기의 주식을 소각할 경우 액면금액이 그 대가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차액

9. 부도가 난 유가증권의 가액

10. 신용대출금액

④ 축적된 자산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에 의하여 감소한다.

1. 순수익의 (손익결산항목에 대한)차변(기재)액

2. 최종적으로 양도된 금전적 자산의 가액

3. 회사에 출자된 자산의 등기액이 정관에 규정된 그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차액

4. 매수한 자기의 주식을 소각할 경우, 액면금액보다 그 가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그 차액

5. 신용매입금액

6.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가액의 감소액

7. 퇴직한 사원에게 법규의 근거에 의거하여 귀속하는 자산지분

8. 설립자의 자산증가에 제공되는 금액

제 6 장 절차규정

제26조 ① 납세자는 조세를 자발적으로 확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자진납세).

② 납세자는 조세행정法規에 규정된 규율과 방법에 따라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조세와 관련한 절차에는 국가행정절차의 일반적 규율에 관한 1981년 법률 제1호 및 - 이 법률이 달리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 조세행정절차에 관한 제규정을 적용한다.

④ 납세자는 영업활동의 개시 및 종료를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제27조 ① 세무서는 납세자의 조세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납세자가 조세를 부정하게 신고하거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서는 조세를决定에 의하여 확정한다.

②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액이 신고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세액부족), 세무서는 부족세액의 50% 내지 2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족세액이 신고세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액부족신고를 계산·부기·증명규칙의 규정을 수차례 걸쳐 현저히 위반한 경우, 부족세액의 100%를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납세자가 세무서의 조사전에 그 조세를 부정하게 확정하여 신고한 것을 스스로 밝히거나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조세우대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誤率을 시정할 수 있다(자기감독).

④ 조세선납부, 조세납부 및 조세차액의 환급의무의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연율 2%의 할증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자기감독의 경우에는 연율 2% 내지 20%의 자기감독할증금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⑤ 조세, 벌금 및 할증금을 확정하는 권한은 조세부족을 세무서가 인지한 年度의 최종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한 때 또는 法定 조세신고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28조 조세확정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제2차 결정은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변경할 수 있다. 그러한 심사는 조세확정의 법적 근거 및 확정된 조세액에 대하여도 행할 수 있다.

제 7 장 해석규정

제29조 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1. 판매수익이라 함은 영업활동의 일반거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화폐로 표시되는 對價金額을 말하며, 제13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판매수익이라 함은 가격보증에 따라 가산되고, 소비세, 판매되는 제상품의 구입가액 및 하청영업자에의 급부를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

2. 수익금액이라 함은 판매수익과 자산을 직접적으로는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을 증가시키는 제수익의 총액을 말한다.

3. 販賣上自己費用은 1년동안 환가되어진 생산물 및 수행된 서비스에 자신에게 소요된 비용, 판매된 각종 상품의 구입가액과 하청영업자에 대한 급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4. 경비라 함은 생산물(활동)에 직접적으로는 계상할 수 없는 비용 및 수익률 감산하는 여러 가지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5. 입지환경이 부적합하다고 간주되는 농업의 대규모경영이라 함은 1회 타의 경지면적당 평균등기순수입이 19corona금화를 상회하지 아니하는 국가농장, 농업생산협동조합, 농업의 전문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을 말 한다.

제 8 장 종결규정

제30조 이 법률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률의 규정은 1989년도의 수익확정, 계상 및 1989년도의 조세의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1조 ① 합자회사, 농업의 공업연합, 법인격없는 회사(1978년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제4호 제45조 내지 제48조), 민법상 조합(민법 제573조 및 제574조)에는 기업의 경제적 노동공동체로의 개조 또는 해산시까지 이 법률의 제규정을 적용한다.

② 1989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공동기업, 연합, 유한회사, 주식회사 및 경제적 노동공동체에 대하여는 회사에 관한 1989년 법률 제8호에 규정된 정관의 개정시까지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① 각료평의회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규칙을 명령으로 정한다.

1. 기금 및 수자원공급조합의 경영사업체제에 관한 규칙
 2. 법정대리인을 둔 노동공동체의 경영사업체제에 관한 규칙으로서 변호사·법률고문의 보수규정에 관한 법규에 규정된 활동의 범위를 넘는 활동에 한하여 이것을 영업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 규칙
 3. 제10조 2호에 게기한 물질적 관심제도의 규칙
- ② 재무부장관은 수익을 제5조 제3항에 의거하여 확정하는 납세자의 계산규칙의 간소화를 위하여, 제18조 내지 제25조에 열거된 규정에 부기 규칙 관련법규의 적용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 ③ 이 법률의 시행에 따른 잠정규정은 특별법으로 확정한다.

제 1 호 부 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및 감가상각의 각종규칙

I. 총 칙

- ① 1. 연도의 비용은 減價償却記帳 및 이와 동일한 액수의 - 제3항에 규정된 고정자산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 감가상각비를 제2호 부록에 열거된 「감가상각률표」(이하 "기준표"라 한다)의 기준에 의거하여 계상 한다.
 2. 감가상각기장액의 확정을 위하여, 고정자산을 기준표로 정리한 고정자산 도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기준표상의 기준은 가동시간(üzermidö = Betriebszeit)과 관계없이 적용 한다.
- ②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은 - Ⅱ의 3항에 게기된 것은 제외 한다 - 등기된 토지, 고정자산항목에 기재된 예술적 창작물, 부기규칙에 관한 법규에 규정된 재산적 가치를 갖는 권리, 殘價記帳된 고정자산의 정확한 價額 및 각료평의회가 정한 국가의 방위력에 필요하여 계속적으로 공장의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고정자산이다.

③ 계상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라고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바와 같다.

1. 평의회의 借家修繕機關이 관리하고 임대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주택 기타 건조물의 가액

2. 수리조합이 관리하는 관개시설, 도로, 교량, 지상시설, 지하시설의 가액

④ 1. 감가상각비는 기준표 "A"장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율에 따라 3개 월마다 - 제1/4분기의 최초일의 고정자산과 설비의 가액에 의거하여 - 확정하여 계상한다. 특정한 고정자산群에 속하는 고정자산의 경우, 3개 월마다 산출되는 감가상각비의 분기별 합계액은 납세자의 고정자산의 전체에 대하여 계상되는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된다.

2. 감가상각비를 기준표 "B"장에 따라 계상하는 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또는 영업활동개시일의 고정자산·설비의 가액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기간의 비율로 확정하여야 한다. 수익확정제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의 계상규칙도 연초(1월 1일)부터 변경할 수 있다.

3. 납세자는 1호 및 2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특정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율을 확정할 수 있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율은 감가상각의 확정일에 변경할 수 있다.

4. 특정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계산의 근거가 되는 도매가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기준표상의 감가상각율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용기간(futamidö) x 120%의 기간동안 - 반올림하여 정수로 나타나는 年단위의 기간 - 全額計上하여야 한다.

5. 특정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 제3항에 게기된 고정자산외에 - 개별적으로 계상된 감가상각비의 합계액은 납세자가 그 고정자산 전부에 대하여 실제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액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II. 특별규칙

① 1. 공공차량의 감가상각과 감가상각비는 - 기준표 "B"장의 계상을 적용하는 자를 제외하고 - 주행거리에 의하여도 계상할 수 있다. 주행거리에 의한 감가상각기장은 차량의 일부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선택된 기장방법은 당해 차량의 사용기간(elettartarm)내에는 변경 할 수 없다.

2. trolley bus, 노면전차, 지하철차량 및 郊外電車·동 연결차량과 철도 차량의 감가상각 및 감가상각비는 주행거리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납세자는 이 법률의 시행시의 차량에 대하여 시행전에 선택된 기장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② 1. 탄광, 보크사이트광 및 특정한 광석·광물체굴업에 대해서는 이하에 규정된 고정자산의 범위에 관한 產出高比例法의 記帳 (azás-ványvagyonnal aranyos léírás)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오직 하나의 채광장의 용도에 제공되는 건조물·시설·특수기기·장비·비품.

나. 지하의 채광장·시설 및 이들에 장치된 특수기기

2. 產出高比例法에 따라 기장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율은 매년 1월 1

- 일에 각종 재산의 도매가액 및 채광장에서 채굴할 수 있는 광물자원의 잔액으로 항목을 설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3. 채광장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B호에 따라 계산되는 감가상각기준 및 실제의 산출량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4. 새로운 광산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투자의 완전한 懷妊에 달할 때까지는 產出高比例法에 의하여 기장하는 각종 재산의 감가상각율은 각종 재산의 계획투자비용 및 產出計劃礦石資源殘額으로 항목을 설정하여 확정한다.
5. 새로운 광산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투자의 완전한 懷任에 달할 때까지는 연도별 감가상각비를 4호의 기준과 투자기간의 產出高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6. 납세자는 산출가능한 광석자원의 비율로 기장하게 되는 각각의 고정 자산을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할 의무가 있다.
- ③ 채석장·자갈채석장, 煉瓦·屋根瓦製造業과 석탄·시멘트제조업의 경우에는 노천채굴에 제공되는 토지의 가액을 채광자원의 비율로 기장하여야 한다. 감가상각비는 토지의 대변가액과 원재료자원의 잔액에 의거하여 산출기간을 단위로(다만, 最長 3개월마다) 기장하여야 한다. 채광지대의 대변가액은 구입가액(수용가격) 및 농업경작의 수확감소에 대하여 지불하는 보상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④ 석유·천연가스채굴에 있어서는 채광물의 試掘을 위하여 설치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활동의 개시기간 동안(tdrygyevi) 투하된 각종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다.
- ⑤ 중고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I의 제4항 4호에 계기된 규정을 고려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⑥ 임대한 기계 및 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임대인이 I의 제4항 4호에 기한 규정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수익을 제5조의 제2항과 제3항에 의거하여 확정하는 납세자는 연도중에 임대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임대 시점부터기산하여 日단위로 계상할 수 있다.
- ⑦ 고정자산 전체에 대한 감가상각비(I의 제4항 1와 2호)의 계상은 제4항 내지 제6항의 여러 가지 고정자산의 실제에 계상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 ⑧ 설립자의 자산에서 출자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기준표에 규정된 감가상각율에 따라 정관에 확정된 가액(도매가액)에 의거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 2 호 부 록: 감가상각율표

생략

제 3 호 부 록: 보험준비금형성의 규칙

생략

제 4 호 부 록: 대표적인 비용

생략

제 5 호 부 록: 과세근거의 확정시 가액표시되지 않고 등기되어 있는 경지의 견적

생략

제 6 호 부 록: 조세우대조치의 정당한 근거가 되는 공공서비스활동 또는 문화적 보건 및 스포츠활동

제 7 호 부 록: 조세우대조치의 정당한 근거가 되는 농업·임업·제1차적
인 목재가공업, 식품가공업 및 식품소매업 활동
생 략

제 8 호 부 록: 특히 중요한 활동
생 략

제 9 호 부 록: 제15조에 규정된 조세우대조치의 계산방법·기준
생 략

外國人投資法

(1987년 12월 31일 제정)

국제협력증대, 헝가리경제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직접투자촉진을 통한 헝가리경제의 기술발전증진,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비차별적 내국민 대우보장을 위해 국회는 이 법률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 제1조 ① 헝가리 외국인투자는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는다.
② 외국인 투자자는 국유화, 수용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조항 등으로 인한 손실은 지체없이 해당가치로 보상받는다.
③ 정부는 당해 조치를 집행한 기관을 통해 보상한다. 보상과 관련된 행정조치가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행정조치시정에 대한 신청은 법원에 제출한다.
④ 보상은 정당한 권리를 갖는 자에게 투자된 통화로 지불된다.

제2조 이 법률에서,

1. '외국인'이라 함은 외환관리 법령에 의하여 비거주인으로 간주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2. '외국인의 헝가리투자'라 함은 외국합작기업, 외국인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 외국인의 헝가리기업 자산취득을 말한다.(이하 '외국합작기업'이라 한다.)

제3조 외국합작기업은 1988년 법률 제6호(이하 '회사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형태 및 조항에 의하여 설립될 수 있다. 외국합작기업에 대하여는 회사법의 규정과 함께 이 법률이 포함하고 있는 개정 및 추가조항을 적용한다.

- 제4조 ① 외국합작기업은 다른 기업의 설립에 참가하거나, 스스로 기업을 설립하고, 본조 제2항에 정한 제한에 따라 이미 활동 중인 기업에 참여 할 수 있다. 제4장에 포함된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제규정을 외국 합작기업을 제외한 위의 기업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 98호 제13조 2항에 의거하여 폐지됨.

제5조 법의 준수와 관련하여 외국합작기업에 대한 감독은 기업의 등기를 관리하는 법원(이하 '등기법원'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6조 국제조약이 본 법률에 저촉될 경우에는 국제조약이 우선된다.

제 2 장 외국합작기업의 설립 및 활동 중인 기업에 대한 투자

- 제7조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 5호의 제16조 2항에 의거하여 폐지됨.
제8조 외국합작기업의 설립자(청약자)로서 헝가리인의 참여가 허용된다. 즉

회사법 규정에 의해 정부, 법인, 법인격이 없는 기업 및 자연인은 자유롭게 외국합작기업에 참가할 수 있다.

제9조 ① 법률이 외국합작기업의 목적을 금지 또는 제한하지 않는다면 외국합작기업은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설립될 수 있다.

② 외국합작기업의 설립 또는 동 기업의 주식취득을 위한 특별외환관리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제10조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 98조 제13조 2항에 의거하여 폐지됨.

제11조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 98조 제13조 2항에 의거하여 폐지됨.

제12조 ① 국제협약에 반하여 제16조 1항 즉 외국인이 기업의 배당금 중 자신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해당기업의 납입자본금 증액을 위하여 투자하든가 이미 영업중인 기업에 투자 또는 새로 설립되는 형가리기업에 참여하기 위해 투자하거나 외국인이 기존 형가리기업의 지분을 양도한 매각수익이 해당기업 또는 새로운 기업의 설립에 투자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출자를 태환통화로 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는 시장가치가 있는 유형자산 또는 재산가치가 있는 창조적 활동 또는 개인의 권리 등 무형자산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① 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 이상으로 청약이 되어 이를 이유로 한 일부 청약의 거절은 회사법 제255조의 규정을 따른다. 외국합작기업은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의 청약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단지 기명주식만을 취득할 수 있다. 무기명주식이 외국인에게 양도될 경우 무기명주식은 양도전에 기명주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상속의 경우 외국인은 상속 수령일로부터 1년이내에 무기명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업의 활동요건

제14조 ① 외국합작기업(이하 '기업'이라함)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 근거는 당해년도의 기업이익으로 한다. 기업이익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을 위해 그 이상의 세금이나 다른 기부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 법인세의 세율은 300만포린트까지는 35%이고 이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40%로 한다(산정과세).

제15조 ① 기업은 다른 국내기업에게 부여되는 모든 조세우대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

② 기업은 다음과 같은 상황하에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1. 당해년도 총소득의 1/2이상이 아래 각항에 의한 소득일 경우
- 물품의 제조
- 기업이 전설한 호텔의 경영

위의 두 경우 기업의 등록자본금이 5,000만 포린트 이상이고 외국인 참여지분이 30%이상이면 첫번째 5년동안의 조세우대조치는 60%이고 그 후 5년간의 조세우대 조치는 40%이다.

2. 당해년도 총소득의 1/2이상이 이 법률 별표에 포함된 활동의 결과이고, 최초의 납입자본금이 5,000만 포린트 이상이고, 외국인 참여지분이

30% 이상이면 첫번째 5년 동안의 조세우대조치는 100%이고 그후 5년 간의 조세우대조치는 60%이다.

③ 1. 본조 2항에서 결정된 조세우대조치는 지정된 기간동안 일별로 기산된 기간으로 적용한다. 반면 최초 납입자본금 및 외국인 참여지분에 관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 본조 2항에서 언급된 제조공정은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의 근무자에 의한 생산, 중앙통계청이 기록한 ITJ 및 METJ에 의해 공표된 명단에 포함된 제품, 별표에 명기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기업이 설립한 호텔은 구식 호텔의 시설개선 또는 기존호텔 등급의 상향조정등을 포함한다.

④ 기업은 본조에 포함된 조세우대조치 외에도 다른 법령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조세우대조치를 포기할 수 있다.

1. 최초 납입자본금의 증액

2. 이미 영업중인 헝가리기업 또는 법인기업에 투자 당해 기업(자본증가 기업 또는 이미 영업중인 기업 또는 법인기업)은 기업의 과세 근거에 비례하여 조세부담금액까지 원천과세에 의해 조세우대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

⑤ 본조 1항에 포함된 조세우대조치는 순이익이 최초자본의 증가액과 조세우대조치에 이한 금액의 합산액 이상일 경우에 적용된다.

제16조 일반매상세와 관련된 법률규정에 따라 기업이 투자를 한 경우 기업은 당해년도에 부과된 일반매상세 100%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기업의 외국인 구성원이 현물을자로 수입한 생산수단은 면세된다. 생산수단은 기계, 공장설비, 장비, 건물 구조물 및 건축자재, 위생설비, 물품의 생산을 위해(모든 재료의 획득과 완제품의 수송 포함)직접적으로 요구 되는 자동차, 또는 보수를 받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기업이 획득한 재산을 3년 이내에 판매하거나 임대한다면, 기업이 생산수단을 취득 한 시점의 관세가 부과된다.

제18조 기업은 목적수행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1. 모든 재산을 헝가리 법률 및 기업의 정관 또는 법령에 의해 자유로이 운용 할 수 있다.

제19조 국내시장에서의 활동, 가격책정 등의 방법은 가격관리 및 불공정 경쟁금지와 관련된 법률구조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법령이 정한 가격제한이 존재할 경우 그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20조 기업은 헝가리 영업사업조직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에 의해 도매, 소매, 대외무역에 종사할 수 있다.

제21조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이 기업에도 적용된다.

제22조 신용획득과 자금거래에 있어서 기업은 국내의 다른 영업사업조직에 적용 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 국내의 다른 영업사업조직에 적용되는 규정은 기업의 회계규정, 대차대조표작성, 통계표작성, 국가감독 등에도 적용된다.

제24조 계속적인 지불불능의 경우에는 청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25조 ① 기업은 사회보장기금을 국내의 다른 법인이 고용인에게 지불한 급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사회보장기금에 기부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장기금의 기부의무는 사회보험이 제공하는 무료건강보호 및 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 고용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 규정은 준용되어 국가연금기금에 대한 기부에도 적용된다.

외국인은 기업의 임원, 지배인, 감독위원회 위원 및 기타 고용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제26조 ① 공용법규와 기업의 정관구성 및 실질 고용계약이 공용인의 고용 조건 및 기간에 적용된다. 공용인의 책임은 회사법과 고용법규에 의한다.

② 노동조합 구성원의 권리는 고용법규와 고용법규에 근거하여 제정한 법령에 의한다.

제27조 급료의 상한제한 및 최고 경영층의 재정적인 문제해결에 관한 법규 정은 외국인 참여지분이 20% 이하이거나 또는 500만 포린트 이하인 기업에 적용한다.

제28조 관세면제지역에 등록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자산은 포린트화로 표시되어야 하며, 기업의 회계장부도 포린트화로 기장되어야 한다. 외국인의 현물출자금액은 외국인이 사무실을 등록한 장소에서의 환율에 따라 포린트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29조 ① 기업의 외환운용 및 회계는 국내의 다른 영업사업조직에 적용되는 법규에 따라 행한다.

② 기업의 설립, 활동 및 청산과 관련한 외환과 포린트화간의 환율계산은 협가리 국립은행이 결정하는 공정환율에 의한다. 그와같은 규정은 외국인의 송금과 외국기업의 송금에도 적용된다.

③ 외국인에 의한 교환가능통화의 현금출자는 회사구좌에 예입되면, 그 금액은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생산수단, 내구소비재, 부품 등의 구입과 교환가능통화로 발생하는 비용충당을 위하여 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 구좌의 예금으로 생산수단을 수입할시기업은 면세혜택을 받는다. 기업이 구입한 생산수단을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임대하면 수입 당시의 관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30조 ① 기업에 충분한 포린트화가 있고 외국인이 기업을 경영한다면, 기업이익중 외국인에 귀속되는 금액, 기업의 조업중단 및 기업재산중 외국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이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기업의 공동자본 또는 납입자본의 감축으로 인해 외국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 등은 투자시의 통화로 환전된다. 외국인의 출자가 전부 현물이거나 제16조 1항에 의해 배당금 또는 이익 중 외국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외국인이 투자하였다면 외국인 거주지의 법정통화가 투자통화로 간주될 수 있다.

② 기업이 조업을 중단하는 경우 외국인의 채무는 외국인에게 지급이 이루어지기전에 변제되어야 한다.

제31조 외국인 고위간부, 관리자, 감독위원회의 위원, 기타 외국인 고용인은 통상 거주지의 법정통화로 은행구좌에 지급된 보수의 50%를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제32조 기업의 활동이 헝가리 국내기관이 발행하는 특별 면허를 필요로 한다면 기업은 이러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33조 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무역활동중인 기업은 비민사법적 규정과 국가의 경제조직 및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규정에 종속되지 아니한다.

제34조 은행은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기업의 의무를 외국인에게 보증할 수 있다.

제 4 장 관세면제지역의 기업

제35조 ① 관세면제지역에서 기업은 외국인에 의하여 또는 외국인 참여에 의해 설립될 수 있으며, 또한 외국인은 당해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관세면제지역에서 설립될 수 없다.

② 관세면제지역에서의 기업설립, 운영 및 기업의 주식취득은 제4장에 포함되어 있는 변경 및 추가사항을 근거로 하여 이 법률이 적용된다.

③ 관세 및 관세절차상의 규정과 관련된 법은 관세면제지역 영역내의 기술적 발전, 사업활동의 조건과 기간, 특별 프로그램의 설립, 관세면제 지역을 통과하는 인적왕래 및 물적 거래에 적용된다.

제36조 관세, 소비세법, 외환관리규정 등의 목적 및 제39조의 규정을 근거로 대외무역법을 적용하기 위해 관세면제지역은 외국으로 간주되며, 법으로 인기업은 외국기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관세면제지역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규제 및 국가감독에 관한 법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7조 ① 수출입과 관련하여 특정 물품의 개별적 교역 규정뿐만 아니라 헝가리 공화국을 구속하는 대외무역과 관련된 국제협정의 규정은 관세면제지역내의 기업에도 적용된다.

② 헝가리 공화국의 국제협약이 수출입 제품과 유형과 규모를 결정하는 경우 대외경제 관계부의 허가하에 관세면제지역내의 기업은 국제협약에서 규정된 상품 및 국가와의 대외무역에 종사할 수 있다.

제38조 관세면제지역에 설립된 기업의 등기신청서는 기업활동의 장소가 관세면제지역이라는 재무부의 결정사실이 나타나야 한다.

제39조 ① 관세면제지역의 기업은 본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장부를 회사의 규정 또는 정관에서 정한 통화로 기록한다.

② 재무장관은 특정장부에 대해 포린트화 기장 및 포린트화에 의한 대차대조표 작성을 명할 수 있다.

③ 기업은 제42조에서 정하는 예외 및 재무장관이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기업의 경영을 태환통화로 하여야 한다.

④ 관세면제지역의 기업은

1. 기업의 최초 납입자본 또는 합작자본의 일부는 외화 및 국내통화로 국내은행에 예금되어야 하나 기업은 관리하는 여분의 통화 및 외화를 국내은행 또는 외국은행에 예금할 수 있다.

2. 대부는 국내 및 국외에서 자유로이 조달할 수 있다.

3. 태환통화로 표시된 기업장부상의 부채는 국내 및 국외에서 자유로이 청산할 수 있다.

제40조 ① 관세면제지역의 기업은 태환화폐로 기업의 조직형성 및 운영에

필요한 포린트화 자금을 험가리 은행에서 매입할 수 있다. 당해 포린트화 금액은 험가리 금융기관의 구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것은 본조 1항에서 언급된 구좌에 청구된다.

1. 조세
2. 임금, 수당, 기부금, 잡비
3. 임대료 및 공과금
4. 소매거래대금, 빌딩사용료, 수선, 조립 및 기타 유사한 것에 대한 수수료, 대외무역권을 갖지 않는 험가리 개인 및 기업이 필요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제41조 기업의 상품이 국경을 넘지 않을 경우에 재무장관은 관세면제지역의 기업과 비관세면제지역의 외국합작기업에 부여하는 우대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은 제38조에 따라 외국기업으로 간주된다.

제 5 장 종결규정

제42조 외국합작기업의 정관에 관한 분쟁은 기업의 설립자나 서명자의 합의에 의해 국내 혹은 국외의 일반법원 또는 중재재판소에서 관할한다.

제43조 이 법률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1985년 각료평의회 결정 제1016호(3월 20일)의 제11조 제3항은 이 법률 제5조에 의하여 개정된다.

제44조 ① 이 법률규정은 다음 각 사항에 적용된다.

1. 제10조 및 제11조에 정한 허가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본 법률 시행시에 이미 영업중인 외국합작기업.
2. 제9조 제2항의 허가와 관련된 결정을 위한 90일간의 제한기간이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경우 현재 논의 중인 업무들.
- ② 본 법률 시행전에 발급된 허가증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
- ③ 본 법률 시행전에 외국합작기업에 부여된 조세우대조치는 세금납부 보류에 의해 유효기간까지 지속된다.

제45조 이 법률은 외국합작은행 및 금융기관의 설립에 관한 규정(1979년 법률 제2호 제34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주식 전액은 회사법 제264조 1항의 규정과는 대조적으로 법인격 부여로부터 3년 이내에 불입되어야 한다.

有價證券의 公開募集·賣出 및 證券去來所에
관한 1990年 第6號 法律

(證券去來法)

(1990년 1월 25일 제정)

의회는 자본유동의 촉진, 유가증권시장의 발달 및 투자가의 보호를 위하여 또한 - 유가증권시장의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는 경제의 공개성의 촉진, 시장에 유입되는 유가증권의 통일적인 환가를 가능토록 하며 시장거래자의 각종 권리와 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규범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 유가증권시장의 발달을 위한 보충적인 각종제도 특히, 證券去來所 및 국가유가증권감독청의 설치, 그 조직과 기능의 대강을 정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여 이 법률을 제정한다.

제 1 부 총 칙

제1조 이 법률은 국가유가증권감독청(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의 권한, 기능, 절차, 이 법률이 적용되는 유가증권의 공개모집, 매출, 證券去來所(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설치, 조직, 기능, 거래소회원의 각종 권리, 의무, 책임외에 투자가, 유가증권발행인과 유가증권 매출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다.

제2조 ① 이 法律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된다.
1. 債券(그 양도를 법령 또는 발행인이 제한하지 아니한 경우)의 발행 및 매출

2. 株式의 발행 및 매출

3. 민법전에 관한 1959년 제4호 법률에 의거하여, 기타 법률에 규정된 방법 및 양식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여 발행되고 그 발행인과 소지자간의 - 채권채무 또는 사원의 - 법적 제관계를 원인으로 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가능하게 하는 유가증권(a호내지 c호를 이하에서는 일괄적으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매출

② 이 법률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모집과 매출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으로서 공모되지 아니하는

2. 수표, 저축출자와 관련하여 작성된 종서, 예금종서(deposit slip), 협동 조합의 지분, 생산고지분 및 영업지분과 어음

제3조 이 法律을 적용함에 있어서,

1. 채권채무관계를 화제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社債 및 발행인(채무자)이 자신의 처분에 밀려진 소정의 금액이 제공되었음을 승인하여 금전(차입금)의 총액 -이자가 생기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이자 기타 수익(이하 "이자"라 한다) 및 발행인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서비스 - 을 당해 유가증권에 기재된 방법과 기간

- 에 따라 그 소지자(채권자)에게 지급 또는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사원의 각종 권리(화재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주식 및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 또는 통화로 표시된 현물재산이 그의 소유 또는 이용에 제 공되었음을 증인하고 그 소지자에게 기타 일정한 재산적 권리의 보증을 약속하는 종류의 유가증권(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일련번호를 붙여 발행된 유가증권이라 함은 그 발행의 근거가 되는 법적 관계를 원인으로 한 각종 권리와 의무를 다수의 동일한 부분으로 분할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4. 國債라 함은 국가가 발행한 유가증권 및 국가가 분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각급 평의회(공공단체)·헝가리국립은행·국가개발원이 발행하고 이러한 발행인의 의무 이행을 국가가 부담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5. 발행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의무이행을 자기명의로 부담하는 법인을 말한다.
 6. 유가증권의 매출업자라 함은 이 법률에 규정된 면허를 가지고 7호 내지 9호에 제기한 활동의 1 또는 2 이상을 수행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명주권만을 (발행)취급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7. 유가증권의 모집활동이라 함은 그 발행인의 주문에 따라 공개모집을 위하여 안내서(제23조 제1항 b호 및 同 제2항)를 작성하고 그것을 통하여 잠재적인 유가증권의 매수(인수)인을 모집하고 당해 인수절차기간 동안 매수주문을 기록하여 유가증권을 판매하며, 발행인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출업자의 판매(인수)책임을 부담하고, 계약으로 인수발행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판매(인수)가 실패한 때에는 잔여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기명하여 인수(이하 "모집활동"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 유가증권의 (자기)매매활동이라 함은 매매업자가 자기명의로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이하 "매매활동"이라 한다) 것을 말한다.
 9.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업자의 활동이라 함은 위탁매매업자가 委託에 의거하여 자기명의로 他人을 위하여(그자의 計定으로) 유가증권의 매매활동(이하 "委託賣買活動"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7호내지 9호를 이하에서는 일괄하여 "매출활동"이라 한다).
 10. 유가증권의 수탁업활동이라 함은 수탁자가 기탁자를 위하여 행하는 당해 유가증권의 일시보관 및 특히 이자·배당·할부금의 징수 등의 기탁된 유가증권의 보관과 관련한 활동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유가증권의 신탁업활동이라 함은 수탁자가 유가증권소지자의 위탁에 의거하여 신탁에 제공된 유가증권의 가치보전 또는 획득할 수 있는 최대수익을 위하여 이자·배당·할부금의 징수 및 신탁에 제공된 유가증권중에서 일정한 유가증권을 위탁매매업자로서 환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공개신청이라 함은 인쇄물 기타 다른 안내절차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수(인수)를 목적으로 하고 잠재적인 매수자 - 그 범위는 사전에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를 위한 안내서의 공표에 의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13. 인수라 함은 공개신청에 의거하여 유가증권을 매수할 의사를 가진자가 당해 신청용지에 서명하는 것으로서, 유가증권 매매업자를 통하여 당해 용지에 기재된 금액의 현금지급의 의무 또는 재산가치를 가진 현 물출자의 의무를 그 발행인에게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개발행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최초 공개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판매(이하 "발행"이라 한다)를 말한다.
15. 공개모집일은 당해 유가증권의 판매가 지정된 최초의 日 또는 先賣權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위하여 보증된 기간의 만료일에 이은 최초의 日을 말한다.
16. 證券去來所에 상장되는 주식이라 함은 證券去來所의 정관과 각종 규칙에 규정된 상장의 요건에 따라 證券去來所를 통하여 상장으로 인수되는 주식을 말한다.
17. 유가증권업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교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제 2 부 국가의 유가증권 감독청

감독청의 법적 지위, 임무, 권한

- 제4조 ① 감독청은 그 관할이 전국에 미치는 국가행정기관으로 한다.
② 감독청의 감독권한은 이 법률이 적용되는 유가증권의 공개모집과 그 매출 및 證券去來所의 활동에 미친다.
③ 감독청은 어떠한 활동이 이 법률상으로 유가증권의 공개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분쟁을 결정한다.
④ 감독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각종의 업무를 - 이 법률에 규정된 다른 규정에 의하여 - 국가행정절차의 일반적 제규칙에 관한 1981년 법률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⑤ 감독청의 감독권한에 속하는 결정은 무효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⑥ 법원은 제69조내지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감독청의 결정을 재심할 수 없다.
- 제5조 ① 감독청은 유가증권의 발행인, 그 매출업자 및 공개모집된 각종 유가증권에 대하여 이 법률에 규정된 각종 정보를 기록한다.
② 감독청에 송부된 각종 안내, 年次報告 및 이와 관련된 기타 다른 정보 중 공표되어진 것은 누구든지 열람·기록·복사할 수 있다.

감독청의 지도

- 제6조 ① 감독청은 재무부의 감독하에 활동한다.
② 감독청의 長은 각료평의회가 지명하며 그 조직과 활동의 체계는 재무부 장관이 확정한다.

감독청의 근로자에 의한 유가증권의 소지

- 제7조 ① 감독청과 노사관계에 있거나 또는 노동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법적 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직계가족은 감독청의 長의 사전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기명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허가는 유가증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부여할 수도 있다.
- ② 감독청과 노사관계에 있거나 또는 노동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법적 관계에 있는 자는 그 감독청과의 관계 또는 직계가족 관계의 발생후 90 일내에 감독청의 長에게 자신 및 직계가족이 소지한 유가증권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은 감독청과 노사관계에 있는 자외에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가족이라 함은 민법 제685조 b호에 규정된 자와 배우자를 말한다.
- ⑤ 감독청의 長은, 자신이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또는 집행하여야 한다.

案內書의 承認, 訂正

- 제8조 ① 유가증권에 관하여 작성된 안내서의 공표(제23조 제4항)는 감독청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② 그러한 승인은 매출업자, 매출업자가-이 법률에 의거하여- 출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인이 취득하여야 한다.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안내서외에 유가증권(발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매출업자 및 발행인은 감독청의 요구에 따라 안내서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의 眞正性)을 증명할 의무를 진다.
- ④ 감독청은 승인신청에 관한 안내서의 각 정보의 詳細, 안내서의 보충 또는 일정한 정보의 削除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감독청은 안내서가 이 법률 기타 다른 법규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승인은 30일간 유효하다. 안내서는 승인의 유효기간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9조 ① 발행인은 - 및 매출업자와 발행인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출업자 - 안내서의 승인절차기간 중에 안내서의 訂正(보충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는 사정을 알게 된 경우, 안내서의 승인을 받기 전에 감독청에 신속히 통지할 의무가 있다.
- ② 발행인은 - 매출업자가 발행인과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출업자- 안내서의 승인과 인수 또는 판매의 마감기일동안에 안내서의 정정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실이나 사정을 알았을 때에는 안내서의 정정에 책임을 진다. 정정은 안내서의 공표에 관한 제규칙(제30조)에 따른다.
- ③ 감독청은 안내서의 승인과 인수 또는 판매의 기간동안에 안내서의 정정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실 또는 사정을 알게된 경우, 발행인과 판매업자로부터 관련상황을 청취한 후에 안내서의 정정을 명한다.

유가증권 매출활동의 요건

제10조 ① 매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감독청의 면허를 요한다.

② 모집, (자기)매매, 위탁매매활동의 권리와 부여하는 각종 면허는 이 법률에 규정된 제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 - 일괄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 ① 모집 또는 (자기)매매활동의 권리에 관한 면허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다.

1. 5천만 포린트이상의 납입기본자본금 또는 기초자본금을 가질것

2. 모집 또는 (자기)매매활동의 전문적 수행을 예정할 것

3. 활동수행에 필요한 객관적·기술적 요건을 구비할 것

4. 활동의 관리 및 거래를 위하여 전과가 없고 2년이상 전문적 거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감독청이 정한 전문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를 고용할것

5. 감독청에 승인된 규칙을 구비한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명주권만을 (발행)취급하는 주식회사

② 위탁매매활동의 권리에 관한 면허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다.

1.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50,000,000 포린트이상의 납입基本資本金,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0,000,000포린트이상의 납입基本資本金을 보유할 것

2. 위탁매매활동의 전문적 수행을 예정할 것

3. 제1항의 c호내지 5호에 열거된 요건에 합치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명주권만을 (발행)취급하는 주식회사

③ 각종 매출활동을 위하여 면허가 청구된 경우, 감독청은 기본자본금의 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b호와 제2항 b호에 열거된 전문적인 매출활동은 다음 각호의 활동수행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1. 특히 투자에의 조언, 유가증권의 수탁업의 활동, 신탁업의 활동이라 는 유가증권의 매출과 관련한 각각의 활동

2.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유가증권과 관련한 활동

제12조 ① 매출업자가 경제적사단의 총계 10%이상의 직접 또는 간접의 소유지분을 가지며 그 중에서 5%이상의 직접 소유지분을 가지는 경우 또는 경제적사단이 매출업자에 대하여 그러한 소유지분을 가지는 경우, 당해 경제적 사단은 매출활동의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② 매출업자는 다른 매출업자의 총계 10%이상의 직접 또는 간접의(그 중에서 5%이상의 직접)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

③ 매출활동의 권한이 없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복수의 매출업자들에 대하여 각각 5%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그 복수의 매출업자들 상호간에는 매매를 할 수 없다.

④ 매출업자는 다음 각호의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

1. 자기발행주식

2. 당해 매출업자에 대하여 총계 10%이상의 직접 또는 간접의 (그 중에서 5%이상의 직접)지분을 소유한 발행인의 주식

⑤ 주식회사의 형태로 활동하는 매출업자의 경우, 그 주식회사(매출업

자)의 의결(권)의 비율이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각종 제한과 관련하여 그 의결(권)의 비율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매출업자는 반드시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각종 요건을 준수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⑦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직접소유라 함은 주식의 소유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영업지분의 소유를 말하며, 간접소유라 함은 어떠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영업지분의 소유를 말한다.

제13조 ① 매출업자의 활동의 범위 또는 그 규칙의 변경에는 감독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한다.

② 매출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국내외의 지점과 대리점의 개설 또는 폐쇄

2.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3. 당해 매출업자의 기초자본금(기본자본금)의 5%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주주의 지분 및 이러한 주주(사원)의 모든 신규지분

4. 未決去來의 유가증권(제39조) 및 그 유가증권의 시가 및 매수가격 중 보다 큰 가격

5. 감독청이 명히 부여시 규정한 요건에의逸脫

③ 제2항의 신고의무는, 매출업자가 a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후 2일내에, b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익년 1월 15일까지, c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체결후 2일내에, d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주 당해가액이 최고액이 된 날로부터 1주내에,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일내에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④ 제12조 제5항의 규정은 본조 제2항 c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제적인 유가증권 매출

제14조 ① 외국환법규의 적용상 내국인으로 간주되는 법인이 외화로 표시된 유가증권을 국내에서 공개모집하는 경우, 국내 발행된 유가증권을 국외 매출하는 경우, - 형가리국립은행을 제외하고 - 국내에 소재지를 가진 발행인이 유가증권을 국외에서 공개모집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형가리 국립은행의 동의와 감독청의 허가를 요한다. 국내 발행된 유가증권의 국외 매출을 규정한 이 법률의 요건과는 다른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국내의證券去來所가 당해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허가 할 수 있다.

② 외국환법규의 적용상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자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국외 발행된 유가증권의 국내 매출의 경우에 대하여는 형가리 국립은행의 동의와 감독청의 허가를 요한다.

證券去來所의 감독

제15조 ① 證券去來所의 정관 및 규칙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감독청의 승인을 요한다. 證券去來所의 정관 및 규칙의 변경에 대하여도 감독청은 8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청이 임명한 證券去來所 감독관은 證券去來所의 거래를 조사·감독하고 證券去來所의회, 간사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합에 참석할 권한을 가진다.

지속적 감독

- 제16조 ① 감독청은 유가증권의 모집, 매출 및 證券去來所의 기능과 관련한 활동이 법규, 각종 면허(또는 허가), 證券去來所의 정관과 규칙의에 도 투자가의 안전에 합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한다.
 ② 발행인, 유통업자 및 證券去來所는 감독청의 청구에 의거하여 모집 및 매출활동에 관한 기록의 검열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들의 활동에 관한 각종 정보를 - 감독청의 청구가 있는 경우 - 감독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각종 조치 및 제재

제17조 ① 감독청은 법규, 감독청이 부여한 면허(또는 허가), 證券去來所의 정관 및 규칙에 규정된 각종 요건에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개모집·매출활동과 관련한 법규 및 면허(또는 허가)에 규정된 각종 요건을 구비하도록 기한을 표시하여 명령할 수 있다.
 2. 이 법률에 규정된 경우 그 범위내의 벌금(유가증권감독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유가증권의 인수, 매출 또는 판매를 정지시킬 수 있다.
 4. 일정기간동안 특정한 매출활동과 관련하여 영업관리의 수행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5. 지도적 입원 및 고급관리자를 매출활동 관련업무로부터 면직시킬 것을 제의할 수 있다.
 6. 매출활동에 관한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7. 證券去來所의 법규에 위반하는 활동을 금지하거나 證券去來所의 법규에 저촉되는 정관 또는 규칙과 이를 세칙을 무효화하거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證券去來所의 자치적 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규칙을 작성하게 하거나 또는 새로운 결정을 채택하도록 할 수 있다.
 8. 내부자 거래 또는 불공정한 상장조작의 혐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근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할관청에 고발할 수 있다.
- ② 證券去來所의 기능이 이 법률에 규정된 규칙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독청은 證券去來所로 하여금 그 정관과 규칙을 변경 또는 보충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감독청은 제1항의 6호에 따라 매출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매출활동에 관하여 규정된 각종 법규를 3회에 걸쳐 위반하거나 또는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2. 감독청 또는 證券去來所의 규정을 3회에 걸쳐 - 제1항의 a호내지 5호에 규정된 각종 조치의 적용에 반하여 - 위반한 경우

제 2 부 國家有價證券監督廳

有價證券監督制載金

제18조 ① 감독청은 발행인, 매출업자, 證券去來所 및 이들의 지도적 임원 또는 고급관리자 및 내부거래자(제76조)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들에게 유가증권감독제재금의 지급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1. 발행인이 제33조, 제34조 제1항의 a호 내지 7호 및 同 제3항외에 제88조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발행인 또는 매출업자가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4조, 제16조 제2항,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제82조 제1항 및 제85조에 열거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매출업자가 제11조 내지 제13조, 제37조 내지 제39조 및 제41조 제2항에 열거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거나 또는 당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4. 證券去來所가 제16조 제2항 및 제34조 제2항에 열거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76조 제1항에 열거된 내부거래자가 제80조에 열거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발행인, 매출업자 및 證券去來所의 지도적 임원 또는 고급관리자가 일정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기대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금납부의 의무가 없다.
- ③ 감독청은 의무의 위반 또는 해태를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 6월 이후 또는 의무의 위반이나 해태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후는 별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19조 ① 별금액은 이 법률 또는 감독청의 허가(또는 면허)에 규정된 제요건으로부터의 일탈 또는 해태의 정도를 고려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② 별금액은
1.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제23조 제1항의 b호 및 동 제2항, 제33조 제1항과 제4항, 제82조 제1항 및 제85조에 열거된 규정위반의 경우에는 20만포린트 내지 100만포린트
 2. 제16조 제2항, 제30조, 제32조 제3항 및 제4항,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2항 및 제3항, 제37조 내지 제39조 및 제41조 제2항에 열거된 규정위반의 경우에는 2만포린트 내지 20만포린트
 3. 제33조 제3항, 제34조 제1항 a 내지 7호와 제88조에 열거된 각종의무의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1일에 5만포린트, 최고 100만포린트
 4. 제14조의 제규정의 위반의 경우에는 판매된 - 발행가로 계산하여 - 유가증권총액의 10% 내지 25%
 5. 제80조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매매 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거래일 시가의 200% 내지 500%로 한다.

③ 발행인, 유가증권, 證券去來所의 지도적 임원 또는 고급관리자에 대하여 제18조 제1항의 a호 내지 d호에 의거하여 명할 수 있는 벌금액은 5만포린트 내지 10만 포린트로 한다.

제20조 ① 징수된 벌금은 경쟁모집의 방법으로 매출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課外教育, 당해 연구가의 이론연구 또는 유가증권시장과 관련한 각종 연구의 완성에 대한 원조에 충당된다.

② 제1항에 열거된 모집에 관해서는 감독청의 지도자가 형가리 국립은행 총재의 同意를 얻어 결정한다.

公開募集과 매출의 정지

제21조 ① 감독청은 발행인 또는 매출업자가 제9조 제1항과 제2항,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23조 제1항의 b호 및 동 제2항, 제30조, 제32조 제3항 및 제4항, 제33조, 제34조 제1항의 a호 내지 7호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유가증권의 인수, 매출, 또는 판매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감독청은 매출업자가 제9조 제1항, 제13조 및 제14조, 제30조, 제37조 내지 제85조에 규정된 각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는 - 일정한 기간동안, (최고 6개월) - 일정한 매출활동과 관련하여 업무관리의 수행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수수료지급의무

제22조 발행인과 매출업자는 각종 수수료에 관한 1986년 법률 제1호의 제25조에 의거하여 유가증권의 감독절차, 전문가의 서비스의 청구에는 관리서비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① 國債률 제외한 債券의 공개모집은 발행인(또는 권리피승계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건으로 한다.

1. 1년이상 활동을 하고
2. 그 안내서와 공개신청서를 이 법률에 정한 방법과 내용에 따라 공표하고
3. 금융기관이 자기발행의 채권을 모집하는 경우외에, 그 공개모집과 관련한 책임을 매출업자에게 위임하는 것

② 株券의 공개모집은 그 발행인(또는 권리피승계자)이 안내서외에 공개신청서를 이 법률에 정한 방법과 내용에 따라 공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③ 주권의 공개모집이 경제적 사단에 관한 1988년 법률 제6호(회사법)의 제303조의 종자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제2항에 규정된 요건 외에 발행인(또는 권리피승계자)은 최소한 1년전부터 활동하고 있는(회사법 제301조 제3항)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④ 유가증권의 매수(인수)를 위한 공개신청서와 그 안내서는 감독청이 당해 안내서를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24조 유가증권이

1. 감독청이 승인한 안내서없이 발행되거나

2. 제23조 제1항의 5호를 위반하여 발행인 자신이 모집한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 및 발행인 또는 매출업자가 행한 처분은 무효이다.

案 内

제25조 ① 안내서 및 유가증권에 관하여 공표된 광고상의 각종 정보 및 그 주장은 진실에 합치되어야 하고, 발행인의 경제·자금상태의 실태적 판단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안내서에는 이용가능한 최신의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안내서에 기재된 - 최신의 - 자금정보(조세 및 재산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는 과거 6개월전의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안내서에는 발행인 및 - 매출업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 매출업자가 서명한다.

제26조 안내서에는 최소한 다음 각號의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1. 다음 사항을 포함한 발행인의 표시,

- ① 상호
- ② 소재지
- ③ 설립일
- ④ 업무범위
- ⑤ 업무기간
- ⑥ 자본금
- ⑦ 직원수

⑧ 임원과 고급관리자의 연령, 가족구성, 학력, 전문적자격, 전문실무 등 상대적으로 중요한 一身上의 情報와 專門的 情報

2. 발행인의 특히, 생산, 판매, 연구·개발, 투자정보등의 영업활동의 분석에 도움이 되고 그 포괄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記述

3. 회계검사인이 인증한 자금정보(조세 및 재산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4. 발행정보

① 발행의 근거가 되는 결정기일과 그 표시(예. 총회결정일과 그 의결수)

② 발행에 의하여 취득되는 자본의 이용목적

③ 발행계획규모

④ 유가증권(類)의 종류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의)유형, 이와 관련한 각종 권리

⑤ 株券의 경우에는 發行人 및 優先株主가 받을 특별한 이익

⑥ 유가증권의 수량, 액면금액 또는 발행 가액

⑦ 그 일련번호와 리스트번호

⑧ 인수장소, 그 개시일과 종료일

⑨ 판매장소, 그 개시일과 종료일, 先賣權이 있을 경우 선매권에 관한 안내

⑩ 계획되고 있는 발행시기

11. 유가증권의 지정

12. 초과인수와 발행계획에 미달하는 인수의 경우 적용되는 절차
13. 利子附有價證券의 경우 계획되고 있는 이자, 이자의 계산방법 및 지급기일
14. 그 지급, 양도 및 기탁장소의 주소
5. 그 이전의 발행카타로그와 그 업적 및 발행인의 유가증권의 각 유형의 내역
6. 당해 발행인에 의하여 발행되어 그 임원과 고급관리자가 소유하는 기명주권리스트

제27조 ① 주식회사가 승계할 피권리자 없이 설립되어진 경우에는 안내서를 설립정관안(회사법 제252조 제3항)에 게재하고 안내서에 이 법률 제26조의 a호, b호, d호에 규정된 - 계획된 - 각종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표시방법으로 신규로 설립된(자신이 승계하는 피권리자없이) 주식회사가 주식을 공개모집할 것을 회망한다는 취지를 당해 안내서에서 주의환기시켜야 한다.

제28조 주권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號에 정한 정보를 안내서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할부기일
2. 당해 유가증권에 부가되는 각종 요건(인수 등)
3. 의무이행의 재정보증

제29조 ① 발행인 또는 권리피승계자에 대하여,

1. 채권발행의 경우에는 발행전 1년
2.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발행전 3년

이내에 更生節次가 집행되거나 또는 청산절차가 명령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내서에 이에 관한 정보도 또한 게재하여야 한다.

② 유가증권에 化體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어떠한 법인이 보증하는 경우, 안내서에 당해 보증인에 관한 제26조 a호 내지 c호 및 同條 제1항에 규정된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③ 안내서에서 주의를 환기시킴에 있어 특히 발행인의 거래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관한 사실을 강조하여야 한다.

④ 안내서에는 제83조 및 제84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각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공개신청서와 안내의 공표

제30조 공개신청 · 안내에 대하여 감독청이 부여한 승인, 안내서의 검열장소 · 일시 · 방법은 발행인 또는 - 매출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 매출업자가 광고로 공표하여야 한다.

인 수

제31조 법규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인수절차가 실행되어야 하거나 당해 발행인이 인수절차를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안내서에 인수를 행할 수 있는 기간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2조 ① 감독청은 발행인의 신청에 의거하여 인수기간을 - 안내서에 게재된 각종 정보의 정정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서 -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기간의 최종일을 인수종료일로 한다.

② 발행인 또는 인수를 하는 매출업자는 - 발행인의 동의를 얻어 - 발행총량이 인수되고 또 안내서에 그 가능성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수를 지정된 종료일 이전에 종료할 수 있다.

③ 발행인 또는 인수를 하는 유통업자는 인수종료일 또는 인수종료후 6일 내에 감독청에 인수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④ 인수는 광고된 인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의 이전, 그 종료일 또는 종료후에는 수납할 수 없다.

제33조 ① 발행인은 공개모집된 유가증권에 화체된 각종 권리와 의무가 존속하고 또는 당해 유가증권이 지급기일이 되기까지는 - 國債를 제외하고 - 경영·자금상태, 그 사업의 주요한 정보를 매년 1회 공표하여야 한다(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

② 연차보고서 특히 그 감사장소·기일·방법에 대하여는 2개의 全國紙와 證券去來所의 公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연차보고서는 늦어도 당해년도의 익년 5월 31일까지 공표하고 이를 기명주권을 소지하는 주주 및 감독청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 연차보고서에는 발행인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직전년도의 경영에 대한 개요
2. 직전년도의 자금상태 및 대차대조표(조세 및 재산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에 대하여 회계검사이인이 認證한 각종 정보 및 회계검사인의 보고서

3. 직전년도에 발행된 기타 다른 유가증권에 관한 주요한 정보
4. 신규 고급관리자와 지도적 임원의 소개 및 인사이동의 사유

임시안내

제34조 ① 유가증권의 가액 또는 배당에 간접 또는 직접으로 관련되어 있고 경영상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하게 될 변화에 대한 각종 정보가 최신의 연차보고서에 게재 또는 지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은 관련 정보를 2일 이내에 證券去來所와 감독청에 송부하고 공표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특히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말한다.

1. 유가증권과 관련된 권리의 변경계획
2. 고급관리자 및 지도적 임원의 인사이동
3. 발행인의 은행구좌의 폐쇄
4. 更生 또는 청산절차의 개시
5. 활동의 정지 또는 종료
6. 중요한 조직변경에 관한 결정(분할, 흡수합병, 개조 등)
7. 비상사태에 의하여 초래된 자산의 10%이상의 소멸
8. 발행인에 대하여 제기된 중요한 소송절차의 개시
9. 상당한 지원의 철회

10. 상당한 受信 또는 유가증권의 發行
 ② 제1항에 규정된 각종 정보에 대하여 證券去來所는 공보에 공표할 의무를 진다.
 ③ 發行인은 자신에 대하여 공표된 것으로서 자신이 發行한 유가증권의 가액 또는 배당에 관한 부정확한 보도와 관련하여 그訂正을 조치할 의무가 있다.

제 4 부 有價證券의 賣出

제35조 매출업자는 유가증권의 매수 또는 판매에 관한 위탁이 접수된 경우에 유가증권의 시가, 시장의 상태 및 당해 위탁의 실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모든 정보를 명확하게 할 의무를 진다.

제36조 당해 유가증권의 위탁(매매)계약에는 다음 각號에 게기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판매 또는 매수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수량과 종류
2. 특정 목적에 따라 정하여지는 위탁 기간
3. 수탁자가同一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 일정한 기간내에 - 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자와의 결제방법

제37조 ① 매출업자는 위탁을 받은 기일의 순서대로, 복수의 위탁을 기록하고 그 謄本을 작성할 의무를 진다.

- ② (자기)매매업과 위탁매매활동의 권리에 관한 면허를 가진 매출업자는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그 위탁을 실행한 후에만 자기의 계산으로 매출을 할 수 있다.

제38조 매출업자는 證券去來所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위탁을 접수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위탁을 證券去來所에서의 매출에 한하여 - 證券去來所의 회원자격을 보유한 수탁자를 통하여 - 실행할 수 있다.

제39조 ① 매출업자와 매출업자간에 또는 매출업자에 의하여 체결된 거래로서 실행되지 아니한 거래(미결거래)액은 어떠한 시점에서도 당해 매출업자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자기매매 또는 위탁매매의 활동과 동시에 행하여지는 모집활동의 경우, 당해 유가증권의 미결거래액은 당해 모집활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액을 초과하거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총액으로 자기자본의 10배 초과)할 수 없다.

- ③ 모집 또는 자기매매의 활동을 수행하는 매출업자가 소지하는 유가증권의 시가 또는 매수가격 및 미결거래액은 합산하여 어떠한 시점에서도 자기자본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한 계산에 있어서 그 시가와 매수가격 중에서 보다 큰 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0조 유가증권의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률에 정한 별단의 규정에 따라 민법 제42장의 諸規定이 적용된다.

제41조 ① 매출업자는 그 은행구좌를 헝가리국립은행에 개설할 수 있다.
 ② 매출업자는 그가 행하는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證券去來所에 證券去來所의 규칙에 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 각號에 게기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유가증권의 명칭

2. 판매되거나 매수된 유가증권의 수량과 그 시가
3. 거래일 및 거래장소

제 5 부

제 1 장 證券去來所에 관한 총칙 證券去來所의 법적 지위

제42조 ① 證券去來所는 효율적인 자본이동, 자본의 평가 및 상장위험의 분산을 위하여 證券去來所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유통을 집중시키고 공개적인 시가형성을 촉진하는 자치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그 활동을 스스로 결정하며 각종 기관 및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선거하고 그 활동을 규율하며 서비스요금을 확정한다.
② 證券去來所는 법인으로 한다.

證券去來所의 설립

제43조 ① 매출활동의 권한이 부여되는 면허를 가진 경제적 사단은 유가증권의 모집과 관련한 사단상호간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證券去來所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證券去來所의 설립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건으로 한다.
1. 15인이상의 설립회원이 1억5천만포린트이상의 설립재산을 보증하고 證券去來所의 개설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고, 證券去來所의 정관을 작성하여 임원을 선출할 것
 2. 재무부장관의 제의에 의거하여 각료평의회가 그 설립을 승인할 것
 - ③ 證券去來所는 각료평의회의 승인일로부터 법인격을 취득하며 승인을 받은 정관과 각종 규칙에 의거하여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證券去來所의 활동과 규칙

제44조 ① 證券去來所의 정관은 다음 각號에 게기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證券去來所의 명칭과 소재지
 2. 설립회원의 성명과 소재지
 3. 설립재산액
 4. 證券去來所에의 입회, 자격정지, 탈퇴 및 그 폐쇄에 관한 절차규칙
 5. 證券去來所의 조직과 기관(총회, 證券去來所간부회, 윤리위원회등) 및 그 임무·권한
 6. 證券去來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임원
 7. 證券去來所방문, 그 요건
 8. 證券去來所 간부회에 의한 제재 및 그 법적 구제에 관한 규칙
 9. 證券去來所의 회원자격이 소멸한 경우의 청산절차
 10. 證券去來所가 해산된 경우의 證券去來所의 재산의 배분
- ② 證券去來所의 각종 규칙은 다음 각號에 게기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證券去來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
2. 證券去來所의 거래규칙
3. 證券去來所에 上場된 유가증권의 인수, 인수의 정지, 최소한의 요건 및 그 절차규칙
4. 입회일과 立會기간
5. 가격과 가격형성의 절차 및 그 공표방법
6. 證券去來所에 상장되는 유가증권의 종류
7. 證券去來所회원의 유동자본에 관한 규칙
8. 證券去來所회원의 공시의무와 정보제공의무, 證券去來所의 각 위원회의 의사규칙과 그 업무
9. 證券去來所의 정보체계
10. 證券去來所가 징수하는 요금의 범위와 그 정도
11. 證券去來所의 손실에 대한 응자규칙
12. 證券去來所의 청산절차
13. 證券去來所의 전문시험
14. 윤리적 위반

제 2 장 證券去來所 會員資格

證券去來所 회원자격의 발생 및 소멸

제45조 ① 證券去來所 회원은 형가리에 등록된 경제적사단으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감독청이 부여한 - 매출활동의 권한을 부여하는 - 면허를 보유하고
 2. 범죄경력이 없고 최소한 2년간 거래상의 전문적 실무경험이 있으며 전문시험에 합격하여 대표권을 부여받은 직원을 證券去來所에서의 거래체결을 위하여 지명하고
 3. 證券去來所가 확정한 입회요금을 납부하고,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4. 證券去來所의 정관 또는 각종 규칙에 규정된 기타 요건에 합치될 것
- ② 證券去來所 간사회는 입회신청을 30일내에 심사하고 당해 신청자에게 그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 ③ 입회 신청은 그 신청자가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각하할 수 있다.
- ④ 證券去來所의 회원수는 제한할 수 없다.

제46조 證券去來所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멸한다.

1. 탈퇴
2. 제명
3. 감독청에 의한 매출면허의 취소
4. 제12조 및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금지사항의 위반

제47조 거래소의 회원인 경제적 사단에 대하여 출자분을 보유한 자연인은 證券去來所의 기타 회원의 지도적 임원, 고급관리자 또는 證券去來所의 업무집행관이 될 수 없다.

제48조 證券去來所의 모든 임원, 고급관리자 및 업무집행관은 證券去來所에 상장된 유가증권 발행인의 간부사원이 될 수 없으며 당해 발행인과 노사관계를 맺거나 발행인에게 출자할 수 없다.

決 濟

제49조 證券去來所의 去來決濟는 證券去來所회원 상호간의 거래에 있어 매매가격의 차액에 대한 대체결제로 이루어진다.

제 3 장 證券去來所의 組織, 任員 및 職員

總 會

제50조 ① 證券去來所의 최고기관은 회원 전체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회이다.

② 다음 각號에 게기한 사항은 총회의 배타적 권한에 속한다.

1. 정관의 작성과 개정

2. 證券去來所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證券去來所 간사회, 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및 證券去來所 사무국의 보고의 승인

4. 證券去來所 예산의 확정과 결산의 승인

5. 證券去來所 간사회의 결정의 심사

6. 정관이 총회의 배타적 결정사항으로 정한 모든 사안의 결정

제51조 ① 총회는 정관에 규정된 회수로(1년에 최소한 1회) 소집되어야 한다.

② 총회는 회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위원회가 - 그 근거 및 목적을 표시하여 -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 또는 감독청이 명령한 경우 소집된다.

③ 총회는 證券去來所 간사회가 소집한다.

제52조 ① 총회는 의결권있는 회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한 경우 의결능력을 가진다.

② 총회에서 證券去來所의 모든 회원은 1표를 보유한다.

③ 총회소집 전 1년동안 그 매상이 1회원당 평균적 거래 또는 계약체결 건수의 10%에 달하지 못한 회원에 대하여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1년 미만인 경우, 그러한 거래는 기간비율로 계산한다.

④ 총회는 통상적으로 다수결에 의하여 결의한다. 정관의 작성 및 그 개정과 證券去來所 간사회의 결정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총회에 출석한 - 의결권이 있는 - 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⑤ 총회에서 선출과 해임의 결의는 비밀투표에 의한다.

⑥ 證券去來所의 임원은 총회가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이상 5년이하로 한다. 선출된 임원이 법규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활동이 證券去來所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에는 총회에 출석한 - 의결권이 있는 - 회원

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⑦ 소집된 총회가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 15일내에 재소집되는 총회는 原議事日程에 상정된 사안과 관련하여 출석자의 수와 관계없이 의결능력을 가진다. 공표된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아니한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주주전원이 출석하여 당해 사안의 의결에 주주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證券去來所 간사회

제53조 ① 證券去來所 간사회는 證券去來所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그 임무는 證券去來所의 관리, 證券去來所의 각종 규칙의 작성, 그 노동조직의 證券去來所 사무국의 사무총장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각종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 證券去來所 간사회는 5인이상 13인이하의 자연인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원수는 證券去來所 회원수의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③ 證券去來所 간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證券去來所의 임원 또는 그 직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證券去來所 간사회의 구성원중 1인 이상은 투자가 및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발행인대표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④ 證券去來所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 발행인대표에 대하여는 헝가리경제회의소가, 투자가 대표에 대하여는 감독청이 추천한다.

제54조 證券去來所 간사회의 구성원은 하나의 證券去來所의 회원 또는 證券去來所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발행인을 위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있다.

제55조 ① 다음 각號의 者가 제3자 및 법원과 행정청에 대하여 證券去來所를 대표한다.

1. 證券去來所 간사회의 의장

2. 정관이나 證券去來所 간사회에 의하여 證券去來所를 대표하는 권한이 부여된 者

② 대표권한에 대한 제한은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56조 ① 감사위원회는 자연인 5인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총회가 證券去來所의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선출한다. 총회는 證券去來所 간사회의 구성원과 證券去來所 사무국의 직원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제57조 ① 감사위원회는 證券去來所의 일반감독기관으로서 證券去來所의 운영과 證券去來所 각종 기관의 활동 및 證券去來所의 거래를 감독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은 - 의결권 없이 - 證券去來所의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사일정에 대하여 발의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총회에 연간 1회이상 그 활동에 관하여 보고할 의무를 진다.

證券去來所 윤리위원회

제58조 ① 證券去來所는 5인이상으로 구성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당해 위원회는 證券去來所의 거래상에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의 처리를 관掌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총회가 - 우선적으로 證券去來所의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 선출한다. 총회는 證券去來所 간사회, 감사위원회 위원 및 證券去來所 사무국장을 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③ 윤리위원회는 그 활동에 관하여 연간 1회이상 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제59조 ① 윤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그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證券去來所의 회원, 證券去來所 간사회, 감사위원회, 證券去來所 사무국장, 투자가 또는 감독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절차를 개시할 의무를 진다.

제60조 ① 윤리위원회는 절차가 진행중인 동안에 확정된 사실에 의거하여 결정하고 이를 證券去來所 간사회 및 - 당해 절차가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때에는 -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그 윤리의 위반이 있음을 결정한 경우, 證券去來所 간사회에 제재의 부과를 제안할 수 있다.

각종 전문위원회

제61조 證券去來所의 활동의 촉진, 총회 및 證券去來所 간사회의 결정의 준비를 위하여 각종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證券去來所 사무국

제62조 ① 證券去來所 사무국은 證券去來所 거래의 조직화, 내부감사, 총회 및 證券去來所 감사회의 결정의 집행, 證券去來所 운영업무의 수행 및 證券去來所의 각종 정보의 공표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證券去來所 사무국은 업무집행을 수행하는 임원이 주도한다.

③ 담당이사는 證券去來所 사무국의 직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각종 권한을 행사한다.

④ 證券去來所 사무국은 정관에 규정된 방법으로 총회 및 證券去來所 간사회에 그 활동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63조 證券去來所 사무국과 노사관계에 있는 자는 證券去來所의 회원 및 證券去來所에 상장된 유가증권발행인의 임원, 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 되거나 매출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證券去來所의 임원 및 그 직원

제64조 證券去來所의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된 자를 말한다.

1. 證券去來所 간사회의 회장과 동회원
2.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동위원

3.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동위원

4. 각종 전문위원회의 회장

5. 證券去來所 사무국의 사무국장

제65조 감독청과 노사관계에 있는 자는 證券去來所의 임원 및 證券去來所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제 4 장 證券去來所의 運營

제66조 ① 證券去來所의 수입은 다음 각號로 구성된다.

1. 證券去來所 회원의 입회비(1회)

2. 證券去來所 회원의 연회비

3. 證券去來所의 서비스요금

4. 법인 및 자연인의 급부와 기부

5. 기타 수익

② 업무비용 지급후의 잔여 수입은 證券去來所의 거래 및 정보체계의 개선에 이용한다.

③ 證券去來所는 임정적으로 임의처리할 수 있는 금전을 財源으로 하는 경우에는 國債를 매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證券去來所의 계산과 회계제도는 재무부장관이 확정한다.

제67조 證券去來所는 업무수행중에 證券去來所의 기본적 업무의 실행을 촉진하는데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당해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러한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에 참가할 수 있다. 證券去來所는 다른 경영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제67조 證券去來所는 자기의 채무에 대하여 자기의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證券去來所의 회원은 證券去來所의 채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5 장 證券去來所와 관련한 기타 규칙

證券去來所의 중재법원

제68조 ① 민사소송에 관한 1952년 제3호 법률 제360조 제1항 c호에 의거하여 유가증권 발행인간의 소송 및 證券去來所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발행인과 매출업자 간의 - 이 법률이 적용되는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 소송은 證券去來所에 부설되어 활동하는 유가증권시장 중재법원(이하 "證券去來所의 중재법원"이라 한다)이 관할한다. 당해 법원의 구성원은 일정한 임기로 證券去來所 총회에서 선출한다. 證券去來所의 중재법원은 당해 절차에 관한 각종 규칙을 독자적으로 확정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경제적 사단은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證券去來所 중재법원의 절차에 따를 수 있다.

③ 證券去來所 중재법원의 절차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61조 내지 제363조를 적용할 수 없다. 당해 지역의 법원은, 證券去來所 중재법원을 위하여 - 출두가 있는 경우에 - 조사에 의하여 또는 당해 중재법

원의 조사기간동안에 필요한 강제적 수단의 사용에 의하여 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證券去來所 중재법원의 裁定과 決定에 의하여 승인된 화해의 집행에 대하여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법규가 적용된다.

證券去來所에서의 매출정지

제69조 ① 證券去來所 사무국장은 - 발행인에게도 조회를 하여 - 일정한 유가증권의 시가 또는 이와 관련한 거래의 형성이 周知의 정보 또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證券去來所에서의 매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 관련 발행인으로부터 회답을 받은 후에는 매출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3일이상의 매출정지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요한다.

제70조 證券去來所 간사회 또는 감독청은 불법적인 시가형성 또는 거래의 형성으로 인하여 향후의 거래가 證券去來所에서의 적법하고 예견할 수 있는 공정한 매매를 보증하지 아니하고, 투자가의 정당한 제이익 또는 시장의 수급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한 유가증권 및 특정한 발행인에 의하여 발행된 유가증권의 證券去來所에서의 매출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다.

제71조 ① 證券去來所 사무국장은 證券去來所 간사회의 신속한 보고를 받은 후, 그 매출의 계속이 투자가의 정당한 제이익과 시장의 수급 또는 證券去來所의 업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한 유가증권의 매출 또는 證券去來所의 매매의 전부를 1일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證券去來所 간사회 또는 감독청은 금융, 경제, 정치의 일반적 상황으로 보아 證券去來所의 거래를 적법으로 간주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증권거래의 계속적이고 공정한 매출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한 유가증권의 매출 또는 證券去來所의 매매의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證券去來所 간사회의 명령에 의한 정지가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요한다. 유가증권의 상당부분 또는 전부의 證券去來所에서의 매매에 대한 10일이상의 정지에 대하여는 감독청의 견해를 청취한 후 평가리국립은행총재의 동의를 얻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72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證券去來所 또는 감독청은 매매의 정지에 관한 결정외에, 매출 또는 證券去來所에서의 매매의 재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證券去來所의 해산

제73조 證券去來所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된다.

1. 총회가 권리의 승계인 없이 그 해산을 결의한 경우
2. 證券去來所의 회원수가 10인이하로 감소하고 6월내에 신규회원이 입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각료평의회가 - 재무부장관의 견의에 따라 - 證券去來所의 활동에 대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제74조 「有價證券去來所」 또는 「有價證券入會所」의 표시, 「有價證券去來所」 또는 「有價證券入會所」의 용어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의 표시는 제4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설립된 조직에 한하여 상호 또는 영업·선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6 부 내부자거래의 제한

제75조 ①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또는 내부자와 내부정보와 관련된 유가증권을 거래하거나 거래를 위탁하는 것(이하 “내부자거래”라 한다)은 금지된다.
 ② 내부정보라 함은 특히 신규 유가증권의 발행, 중요한 거래, 조직개조, 개생, 청산 등과 관련된 것이 공표되는 경우에 유가증권의 가액 및 시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행인, 매출업자, 보증인, 소지자금(手元資金), 경영 또는 법적 상태와 그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에 관한 - 공표되지 아니한 - 정보를 말한다.

내부자

제76조 ① 내부자라 함은 다음 각號에 게기한 자를 말한다.
 1. 발행인, 매출업자, 발행인이 회사법 제322조에 게기한 상당한 출자를 하고 있는 법인, 발행인에게 회사법 제322조에 게기한 상당한 출자를 하고 있는 법인, 발행인의 구좌를 관리하고 있는 은행의 고급관리자 또는 지도적 임원
 2. a호에 열거된 자의 직계가족(민법 제685조 b호)
 3. 발행인의 자본금(기본자본금)의 10%이상을 보유하는 자연인과 당해

자연인의 직계가족(민법 제685조 b호)

4. 발행인과 관련한 정보의 이용시점 6개월전부터 노사관계 또는 기타 노동수행에 관한 법적 관계에 있었고 노동수행과 관련하여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자(예. 회계검사인, 변호사, 세무조언자 등)
 ② 제1항에 열거된 자외에 내부정보를 제공받거나 기타 방법으로 접근·취득한 정보가 내부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연인도 내부자로 본다.

내부자거래

제77조 내부자거래라 함은 내부자에 의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득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다음 각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유가증권의 거래행위
 2. 제3자에게 이러한 유가증권의 거래를 위탁하는 행위
 3. 거래에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게 내부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제78조 제76조 제1항의 a호 및 b호에 규정된 내부자는, 당해 내부자에 의하여 판매된 유가증권을 3월내에 환매하거나 당해 내부자에 의하여 매수된 유가증권을 3월내에 판매한 자에게 매도하고 내부정보가 이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외에는 내부자거래를 행하였다는 사실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79조 내부자가 다음 각호를 모두 증명하는 경우, 그 거래는 내부자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1. 청산인으로서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유가증권을 환가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2. 동일한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던 자와 거래하였음

제80조 제76조 제1항에 열거된 자는,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과 법적관계가 있는 조직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직접 또는 위탁에 의하여 거래한 경우에 감독청 및 證券去來所에 지체없이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 7 부 투자가의 보호

제81조 안내서 訂正의 공표전에 유가증권을 인수 또는 매수한 자는 정정이 당해 유가증권의 시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당해 정정의 공표일로부터 15일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발행인 및 매출업자는 투자가의 인수 또는 매수와 관련한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연대책임을 진다.

제82조 ① 안내서가 인수와 관련하여 편가의 최소액을 정하고, 또한 인수가 종료일까지 실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발행인 또는 -매출업자의 이용이 있었을 때에는 - 매출업자는 종료일 후 15일내에 이미 납입된 금액을 - 이자의 지급의무는 수반되지 아니함 - 환급할 의무가 있다.

② 실제 발행총량을 초과하여 인수가 행하여진 경우 발행인 또는 - 매출업자의 이용이 있었을 때에는 - 매출업자는 유가증권 판매의 종료후 15일 내에 이미 납입되었지만 보증할 수 없는 인수금액을 - 안내서의 규정에 따라서 - 전액 환급할 의무가 있다.

제83조 詐欺안내로 인하여 유가증권의 소지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발행인 및 - 매출업자의 이용이 있었을 때에는 - 매출업자는 연대 책임을 진다.

제84조 ① 검찰관 및 감독청은 제75조 제1항 및 제83조에 규정된 경우에는 詐欺의 안내로 인하여 발행된 유가증권에 관한 계약 또는 내부자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의 무효를 확정하기 위하여 발행인 및 매출업자 또는 내부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결의 효력은 -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 당해 유가증권의 소지자 모두에게 미친다. 제83조의 규정은 詐欺안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소송은 수도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제85조 발행인 또는 - 매출업자의 이용이 있었을 경우 - 매출업자가, 인수기간중 납입된 금액의 구좌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금융기관의 예금구

좌에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러한 의무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금액을 보관할 의무를 진다.

제 8 부 終決規定

시 행

제86조 이 법률은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제87조 제23조 제1항의 a호에 규정된 요건과 달리 1990년 12월 31일까지 권리를 승계함이 없이 설립된 신규의 발행인도 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제88조 ① 이 법률의 적용을 받고 1990년 2월 1일 전에 모집되어 1990년 12월 31일 현재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늦어도 1990년 6월 30일 까지 제26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안내서를 이 법률의 제규정에 따라서 감독청에 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30일 후에 지체없이 공표할 의무가 있다.

② 이 법률의 시행전에 공개모집한 유가증권의 발행인도 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정기안내 및 임시안내의 의무를 진다.

제89조 안내서 및 연차보고서에 게재되는 대차대조표 및 기타 자금정보에 대한 회계검사인의 認證(제26조 c호 및 제33조 제4항의 b호)은 1990년 7월 1일 후에 의무로서 부과된다.

제90조 ① 1990년 2월 1일 현재 매출활동의 권리를 부여하는 면허를 보유하는 법인은 제10조에 규정된 면허없이 1990년 6월 30일까지 당해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 다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 證券去來所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1990년 2월 1일 현재 매출활동 수행의 권리에 관한 면허를 보유하고 매출활동에 필요한 요건 - 제11조 제1항의 b호 및 동 제2항의 b호에 규정된 요건 - 을 구비한 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감독청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매출활동의 권리에 관한 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③ 감독청 및 證券去來所는 제11조 제1항의 d호 및 제45조 제1항의 b호에 규정된 2년이상의 전문적 거래실무경험에 갈음하여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년이상의 전문적 거래실무경험도 승인할 의무가 있다.

④ 감독청과 證券去來所가 정한 전문시험의 합격에 대하여는 1990년 12월 30일까지 유예를 인정할 수 있다.

제91조 주식회사의 형태로 활동을 하는 매출업자는 그 무기명주권을 1991년 6월 30일까지 기명주권으로 전환할 의무를 진다.

제92조 매출업자는 늦어도 1992년 12월 31일까지 제12조에 규정된 소유비율을 보유하여야 한다.

發券銀行에 관한 특별규정

제93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의 b호, 동 제2항의 b호, 제13조 제1항

및 동 제2항의 a호 및 제39조에 열거된 제규정은 헝가리 국립은행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되는 규정

제94조 헝가리 인민공화국의 형법에 관한 1978년 법률 제4호는 제300조 후미에 제300/A조를 보충한다.

“금지된 유가증권의 거래

제300/A조 취득한 각종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교환계약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다.”

제95조 국가의 재정에 관한 1979년 제2호 법률 제34/F조 제2항은 이를 폐지한다.

제96조 ① 회사법 제252조 제3항은 아래의 9호를 보충한다.

“9 일정한 유가증권의 공개모집, 매출 및 有價證券去來所에 관한 1990년 제6호 법률(이하에는 Ept라 한다) 제27조, 제29조 제1항의 b호 및 동 제2항내지 제4항에 규정되어 있고 a호 내지 8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각종 정보”

② 회사법 제288조는 아래의 제4항을 보충한다.

“④ 주식회사의 공개로 발행된 주식에 관한 Ept 제33조 및 제34조의 정기안내 및 임시안내의 의무이행은 이사회의 임무이다.”

③ 회사법 제301조는 아래의 제3항을 보충한다.

“③ 발행인(또는 발행인에 의하여 권리로 승계받은 자)이 1年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활동을 하는 경우 新株引受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④ 회사법 제235조 제1항 및 동 제260조 제4항은 실효한다.

제97조 채권에 관하여 발령되고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1982년 명령 제28호 제4조는 이를 폐지한다.

제98조 법원의 심사대상이 되는 국가행정기관의 결정에 관한 1981년 각료평의회 명령 제63호 제1조 제1항후미에 아래의 제31호를 보충한다.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 사항)

“31. 國債의 檢查를 행하는 기관에 의한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매출외에 별금규정과 관련한 실질적 결정 및 有價證券去來所에 관한 결정. 다만 특정한 유가증권 및 특정한 종류의 유가증권의 證券去來所에서의 매출에 관한 결정과 證券去來所의 거래전체의 정지에 관한 결정은 제외한다.”

제99조 채권에 관하여 발령되고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1982년 명령 제28호의 집행에 관한 1982년 각료평의회 명령 제65호의 제5조는 실효한다.

土地法

국회는 토지에 관한 경제적·사회적 관계의 사회주의적 특질을 강화하고, 국가적·협동조합적 토지소유의 사회주의적 성격과 더불어 협동조합의 토지소유 및 그 토지사용자의 생산보전, 그 경제적 독립성을 중대하고, 토지에 대한 관계당국의 활동을 보다 간소화함을 목적으로 그 리고 나아가 경지의 보호·그 용의 및 생산성의維持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법률을 제정한다.

제 1 편 도입규정

제1조 이 법률은 삼립외의 헝가리영토내 토지 및 건물 기타의 건조물(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조 ① 이 법률은 부동산의 소유, 사용, 거래 그 밖의 토지의 보호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건물 기타 건조물(이하 "건조물"이라 한다)의 설치, 용도에 대하여는 이 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적용한다.

③ 수리, 광산 및 자연보호에 대하여는 이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토지는 국민의 소유이다. 그 보호와 용도에 합치하는 사용은 사회 전체의 관심사이다.

제4조 ①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號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지

2. 건조물용지

3. 특수한 용도를 가진 토지

4. 이용부적지

② 토지는 그 상태에 따라 시가지내의 토지 또는 시가지외의 토지 - 이 중에는 圍繞地 - 로 구분한다.

제5조 ① 경지가 가옥부지에 부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사용의 성격에 따라 관련 법규정을 적용한다.

집행명령 제1조 토지에 관한 1987년 법률 제1호(이하 "법률"이라 표기한다) 및 그 집행명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이라 함은 국가기업, 트러스트 및 기타 국가경영사업조직, 국가예산기관을 말한다.

2. 사회조직이라 함은 현법으로 승인된 국민의 정치조직, 노동조직, 부인 및 청년조직, 이익대표기관외에 법규법에 사회조직으로 규정된 기타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농업협동조합이라 함은 농업생산협동조합, 어업생산협동조합 및 농업부문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주택협동조합이라 함은 주택건설 및 주택의 유지관리를 하는 조합과, 별장관리인·자가용차 보관자 및 작업소·영업소의 건축 및 유지관리 활동을 행하는 조합을 말한다.

5. 농업의 대규모경영이라 함은 농업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법인을 말한다. 토지의 교환 및 토지의 구획정리에 관한 법규정에 의하여 경지를

-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법인은 농업의 대규모경영으로 본다.
6.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외국에 소재지를 두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법인 및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외국인이 소유하는 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이라 함은 형가리 국민이 아닌 자 및 주소가 외국에 있는 형가리 국민을 말한다.
 8. (폐지)
 9. 경지라고 함은 부동산등기부에 경지, 포도원, 과수원, 잔디밭, 갈대숲, 營林部門 또는 養魚地로 등기되어 있고, 건조물용지 또는 특수용도의 토지로 분류할 수 없는 토지를 말한다.
 10. 건조물용지라 함은 거주, 농업외의 생산, 교통, 통신 기타 水利목적에 제공되는 토지를 말한다.
 11. 특수용도의 토지라 함은 국방·기타 자유보호의 특별목적에 제공되는 토지를 말한다.
 12. 이용부적지라 함은 i호 내지 k호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폐지)
 14. (폐지)
 15. (폐지)
 16. 건축용도의 토지라 함은 주거용지, 別莊地 및 이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기타 건축용지를 말한다.
 17. 거주용지라 함은 건축에 관한 제법령 및 집합주택 배치계획에 따라 개인의 비용으로 집합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건축용지를 말한다.
 18. 별장지라 함은 건축에 관한 제법령 및 집합주택배치계획에 따라 사비로 별장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용지를 말한다.
 19. 개인의 비용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용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ㄱ. 건물의 건축주(건축비용부담자)가 私人이며 건물이 환기를 목적으로 건축되는 토지
 - ㄴ. 국가기관, 사회조직, 협동조합 또는 법인격있는 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법인의 건축목적에 사용되는 토지
 20. (폐지)
 21. (폐지)
 22. (폐지)
 23. 위요지라 함은 집합주택의 주변지로서 대규모경영의 농업경작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농업식품성집행명령

제1조 이 법률 및 그 집행을 위하여 공포된 1987년 각료평의회령령 제26호에 (이하 "명령"이라 한다) 규정된 용어의 정의는 이 명령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 2 편 소유

제 1 장 일반적 제규정

제6조 ① 부동산은 국가, 협동조합 기타 법인 또는 자연인이 소유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권은 포기할 수 없다.

제7조 소유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1.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고 그 수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부동산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 및 당해 부동산에 발생한 손해로서 그 補償을 타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비용을 부담한다.

2.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그 점유를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3. 당해 부동산의 점유, 사용 또는 수익을 취득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부담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8조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의무를 진다.

제9조 ① 부동산 소유권은 민법 및 이 법률에 정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다.

② 경지, 가옥대지, 가옥대지의 附屬地 및 개인비용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그 賃借人은 賃借地에 대하여 先賣權을 가진다.

제 2 장 국가소유

일반규정

제10조 국가는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지도를 행한다. 국가는 이러한 범위내에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1. 부동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2. 그 관리자의 권리를 회수한다.

제11조 ① 소유자로서의 지도는 당해 부동산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을 설립 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이를 행한다. 지역평의회의 집행위원회는 국가기관 또는 사회조직이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무료 또는 무기한으로 농업협동조합의 사용에 제공된 국가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도권한을 행사한다.

② 소유자로서 지도를 행하는 기관은 - 협정에 의거하여 - 국가기관의 설립 권한이 있는 기타 기관, 지역평의회 집행위원회의 주무행정기관 또는 도청이 소재하는 도시의 당국에 위임할 수 있다.

관리자

제12조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은 국가기관 또는 사회조직이 이를 관리 한다.

② 관리자의 권한의 취득은 소유자로서의 지도를 행하는 기관의 결정 또는 당국의 결정, 관리자간의 협정 및 국가를 위한 소유권의 취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③ 관리자의 권한의 취득은 - 소유자로서의 지도를 행하는 기관의 결정 또는 당국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 부동산 등기부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집행명령 제12조 ① 관리자에게는 - 법령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소유권이 귀속되며 소유자로서의 의무를 진다.

②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 건물 기타 건조물(이하 "건조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국가를, 관리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사회조직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3조 ① 국가가 소유하는 경지의 처분, 회사에의 현물출자로서 토지의 출자 및 100만포린트 이상의 토지임대계약에 대해서는 국유기업에 위탁된 재산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사회조직은 자신이 관리하는 국가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조직은 그 관리자의 권한 또는 사용의 권한을 그러한 권리가 있는者 또는 토지소재지의 당국에 대하여만 양도할 수 있다.

제14조 ① 국가소유 부동산은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數人の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가소유 부동산의 관리와 그 토지상의 건조물의 관리는 이를 분리 할 수 있다.

집행명령 · 제3조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數人の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다.

1. 다수의 국가기관이 국가를 위하여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2. 일정한 부분을 - 임차인으로서가 아니라 - 각각 사용하고, 공동 대표자를 통하여 당해 토지를 공동관리하는 경우

집행명령 · 제4조 ① 건조물의 관리와 당해 건조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관리는 - 부동산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 건조물을 용도상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분리 할 수 있다.

② 토지의 관리와 토지상의 건조물의 관리를 분리하는 경우, 당해 건조물의 관리자는 당국에 의한 토지의 할당 또는 그 토지관리자간에 체결된 협정에 정한 요건에 따라 당해 토지를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집행명령 · 제5조 토지상에 그 부동산 전부를 사용하는 독립된 건조물이 있는 경우, 그 관리자는 쌍방 당사자의 협정으로 정한다.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자가 관리한다.

제15조 특수용도를 가진 토지 관리자의 권한은 국가기관 상호간에 위임될 수 있다. 특수용도를 가진 토지는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지도를 행하는 기관이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집행명령 · 제6조 개인비용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용지는 제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집행명령 · 제7조 ① 국유지의 관리자가 평의회의 기관 - 평의회의 보유재산관리기관을 포함하여 - 인 경우, 평의회 집행위원회가 매각할 수 있는 토지를 지정한다. 수도에서는 수도의 전지역 또는 다수 지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구의 평의회 집행위원회가 매각토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당해 지역의 집행위원회는 그 권한을 그 관련 주무행정기관 또는 도청이 소재하는 도시의 당국에 위임할 수 있다(이하 "소유자로서의指導를 행하는 評議會의 기관"이라 한다). 당해 토지매각에 대하여는 관

리기관이 그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언급되지 아니한 국유지중에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는 그 관리기관이 이를 지정하여 매각한다. 건조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指定에는 관할 건축사무당국의 사전허가를 요한다. 허가는 건축에 관한 법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③ 매각자는 국유지의 매각처리를 금융기관 또는 부동산중재의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하 "受任者"라 한다)에 위임할 수 있다.

집행명령·제8조 매각할 수 있는 국유지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號에 게기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가격

2. 건축용지의 경우에는 그 건축용지에 관한 규정 및 판매가격의 확정 시에 고려하여야 할 도로, 보도 및 소규모공장의 유지관리

집행명령·제9조 ① 매매가격은 당해 지역의 유통가격에 의거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별장지의 경우, 매매가격은 그 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된 보상금 또는 구입가격 및 취득시에 고려되지 아니한 용지조성비의 합계액을 상회할 수 없다.

집행명령·제10조 ① 건축용지를 매각하는 때에는 건축의무를 부과한다. 건축의무의 이행기간을 3년미만으로 정할 수는 없다. 당해 건축용지는 건축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다. 당해 용지의 매각자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이행기간을 연장하거나 처분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② 건축용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건축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제된다(해제조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때에는 구소유자는 매매가격의 연 2%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금액은 당해 계약 해제시 유사한 건축용지에 지불되는 구입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지불되는 금액에서 - 저당권의 설정에 의하여 보증되는 - 잔여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

④ 건축용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구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였던 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재배지는 당해 토지와 구별할 수 없다. 반환되지 아니한 각종 소유물건은 평가액에 상당하는 보상을 대가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구소유자는 토지의 평가액을 증대시킨 노동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집행명령 제11조 ① 평의회의 기관 - 평의회의 보유재산관리기관을 포함하여 - 이 관리하고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가 매각되는 경우, 매각자는 자신의 또는 타인의 홍보수단 또는 해당 지역의 관례적 방법으로 공시하고 신청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매각자는,

1. 건축용지에서 건축에 관한 법규정을 이행하거나 경지를 경작하고

2. 매입가격을 지불하는 자 중에서 매입자를 선별하여야 한다.

③ 매입자의 선정에 대하여는 구입신청을 한 관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집행명령 제12조 국유지의 관리자 또는 - 지역 또는 수도의 평의회의 집행

위원회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거하여 - 국유지를 관리하는 권한이 부여된 법인이 자기사업으로써 건축용지를 조성한 경우는 당해 관리자 또는 관리권한이 부여된 법인은 그 매각가격을 정하고 토지매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집행명령 제13조 (폐지)

집행명령 제14조 매매계약은 선정된 구입자와 체결할 수 있다.

집행명령 제15조 ① 매입자가 선정에 관한 통지 도달일로부터 60일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권의 등기는 매각자 또는 그 위임자가 이를 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매입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명령 제16조 ① 소유자로서의 지도를 행하는 평의회의 기관은 일정한 지역에서 선지불한 자만을 매입자로 선정할 수 있음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자는 예비계약에서 선지불을 한 자에게 사전에 확정된 매입가격을 대가로 일정한 기간내에 - 늦어도 3년내에 - 예비계약에 따라 건축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② (폐지)

③ 매각자는 예비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지불금을 반환하고, 선지불금액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④ 건축용지가 조성되었으나 매각자가 매매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지불한 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 선지불금 및 위약금을 지불받지 아니하고 - 매각자에게 계약체결을 청구할 수 있다.

집행명령 제17조 (폐지)

집행명령 제18조 (폐지)

집행명령 제19조 매각자가 환가를 목적으로 조성한 건축용지 및 그 용지상의 건조물은 하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매각가격은 건축용지의 매각가격 및 건조물의 매각가격의 합계이다.

집행명령 제20조 ① (폐지)

② 환가를 목적으로 건축되어지는 건축용지는 소유자로서의 지도를 행하는 평의회기관이 이를 자유롭게 처분하고 매각가격을 확정하여야 한다. 각각의 건조물의 부분(구분소유주택, 별장 등)에 매각가격의 할당은 당해 법인이 매매계약에 정한다. 매매계약은 당해 법인은 매각자로서 건축용지에 대하여도 체결한다.

집행명령 제21조 사적비용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용지는, 다수의 구분소유주택, 다수의 별장으로 구성되는 건물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당해 부동산의 사용자, 임차인, 차지경작인은 각각의 구분소유주택, 별장단위에 대하여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 (폐지)

제17조 ① 관리자는 - 문서에 의한 합의에 의거하여 - 당해 부동산을 관리하는 권리가 부여된 다른 기관에 관리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부동산을 임대, 차지경작,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관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집행명령 제22조 ① 관리자는 관할 당국이 배당한 국가의 부동산 또는 그 일부를 관할 당국이 법령에 의거하여 무기한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당해 토지를 배당한 자에게 임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관리자는 경지외에 제1항이 적용되는 기타 국가 부동산 및 스포츠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타인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또는 임대하거나 차지 경작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일부 기관 또는 사회적 조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국가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사용자)이 법령으로 정한 임차료의 지불에 갈음하여 당해 관리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 중 임차인이 사용하는 부동산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협정을 할 수 있다.

집행명령 제23조 ① 국가 부동산의 관리자는 국가기관 또는 사회적 조직이 아닌 법인 기타 사인에 대하여,

1. 건축불가용지에 새로운 항구적 건조물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고

2. 건축용지에 새로운 항구적 건조물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항구적 건조물을 확충하는 것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동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기존의 건조물의 개축, 개조 또는 개량외에도 토지에 새로운 건조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 기타의 자에게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동의하여야 한다.

집행명령 제25조 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국가기관 또는 사회적 조직이 국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당해 부동산의 관리권자와 관리권한 양도의 문제 또는 그 요건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그 관리자의 지정 또는 이와 관련한 쌍방 당사자의 각종 의무는 - 법령이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 소유자로서의 지도를 행할 기관이 이를 결정한다.

② 관리권의 양도를 당국의 결정 또는 소유자로서의 지도를 행하는 기관이 명하였으나 쌍방 당사자가 관리권 양도의 대가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관리권 양도를命한 기관은 그 대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집행명령 제26조 관리자는 국가의 건조물을 경제적으로 개축하는 경우, 당국이 정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임무의 상당한 활동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달리 사용할 수 없는 건조물을 해체하고, 해체에 의한 废資材를 환가하는 권한을 가진다.

집행명령 제27조 ① 국가부동산의 관리권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한다.

1. 관리자가 부동산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양도한 경우

2. 당국의 결정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리권이 회수된 경우

3. 관리자의 폐지 또는 조직변경(그 조직적 단위의 다른 조직으로의 이전)에 의하여 소유자로서의 지도를 행하는 기관이 관리권을 회수한 경우

② 관리권이 당국의 결정에 따라 회수되는 경우, - 법령이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 관리자에게 보상을 한다.

③ 보상은 당해 관리권의 회수에 관한 결정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결정중 보상액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여 국가행정절차에 따라 청구하

는 것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보상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당사자는 당국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내에 타방 이해 당사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집행명령 제28조 ① 국가부동산의 관리권이 당국의 결정에 의하여 회수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상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1. 관리권이 1969년 4월 1일 이후 무상으로 발생한 경우

2. 관리권자의 사용권이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 당국의 결정에 따라 보상없이 회수되었음을 이유로 관리권이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에 계기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의 평가액을 증대시킨 관리자의 활동에 대하여도 관리자에게 보상한다.

③ 관리자의 관리권에 대한 보상액은 수용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관리자로부터의 사용권회수를 이유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액은 보상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당국은 관리권의 회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상금 지불의무를 당해 부동산의 새로운 관리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

제 3 장 협동조합의 소유

제19조 ① 소유부동산에 대한 협동조합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는 협동조합총회가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이를 행사한다. 회사에의 재산출자로서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양도를 위한 부동산소유권의 처분에는 총회에 출석한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② 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을 위하여 의무로 부과된 산업, 상업 및 서비스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국가소유의 부동산 - 또는 이전의 권리자가 소유한 그러한 부동산 - 을 처분할 수 없다. 협동조합이 상기의 활동을 종료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배려할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평의회에 귀속된다.

제20조 ① 협동조합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각종 법령의 범위내에서 임대하거나, 차지경작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협동조합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③ 협동조합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와 인접한 하천의 河床을 영업의 목적과 기능적인 사용 및 수익향상을 위하여 이용할 권리가 있다.

집행명령 제29조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활동의 종료 및 소유권의 귀속은 지역평의회 집행위원회가 확정한다.

제21조 (폐지)

집행명령 제30조 농업생산협동조합이 청산되는 경우, 환가 또는 용의이 불가능한 경지는 당해 협동조합의 소유가 되며, 토지대장상의 순수익의 100배에 상당하는 포린트액을 대가로 지불하여 국가소유로 하거나 또는 지역평의회의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그 금액은 토지보전기금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농업식품성집행령 제2조 농업생산협동조합이 청산되는 경우, 당해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경지가 국가소유 및 지역평의회의 집행위원회의 관리로 이전됨에 따라 지불되는 포린트총액은, 협동조합의 토지대장상의 순수익에 기초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2조 해산하는 목장위원회가 사용하는 부동산 기타 점유지는 목장의 각종 임무를 인수하는 대규모농업경영기업이 무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한다.

집행령 제31조 목장의 각종 임무를 數個의 대규모농업경영기업이 인수하는 경우, 재산의 분할은 당해 경영기업간의 협정에 따른다. 협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의 평의회집행위원회의 농업·식품업무를 담당하는 전문행정기관이 - 당해 지역이의 대표기관의 견해를 고려하여 - 당해 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 4 장 사인의 소유

일반규정

제23조 사인은 무제한으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소유권취득의 제한은 이를 법률로 정한다.

집행령 제32조 (폐지)

집행령 제33조 (폐지)

제24조 (폐지)

집행령 제34조 (폐지)

집행령 제35조 (폐지)

집행령 제36조 (폐지)

제25조 (폐지)

집행령 제37조 (폐지)

집행령 제38조 (폐지)

집행령 제39조 (폐지)

제26조 (폐지)

집행령 제40조 (폐지)

집행령 제41조 (폐지)

집행령 제42조 (폐지)

집행령 제43조 (폐지)

집행령 제45조 (폐지)

제27조 가옥부지 및 토지가 사인간에 매매되는 경우, 당해 가옥부지 및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대규모경영기업이 선매권을 가진다. 선매권을 행사하여 기타 사인에게 매각할 것을 指定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에 제공되는 토지의 소유

제28조 ①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제공할 의무가 부과된다. 제공되는 토지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용에 제공된다. 다만, 그 평가액 및 장소에 상응하는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은

유지된다. 그러한 토지는 상속가능하며 공동조합원간에 자유로이 양도 될 수 있다. 다만, 매각시에는 협동조합이 선매권을 가진다.

② 제공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지분비율)를 정관에 정한 범위내에서 - 협동조합의 지정된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집행명령 제46조 (폐지)

집행명령 제47조 (폐지)

농업식품省집행명령 제3조 (폐지)

제29조 농업전문협동조합에 출자되어 사용되는 토지는 그 소유자가 조합관 계의 존속을 조건으로 협동조합원 또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者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 5 장 토지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특별규정

제30조 (폐지)

집행명령 제48조 (폐지)

집행명령 제49조 (폐지)

농업식품성집행명령 제4조 (폐지)

제31조 (폐지)

제32조 (폐지)

집행명령 제50조 (폐지)

제33조 (폐지)

집행명령 제51조 (폐지)

농업식품성집행명령 제5조 (폐지)

농업식품성집행명령 제6조 (폐지)

제공의 신청

제34조 ① 사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국가 또는 협동조합에 제공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농업협동조합은 자신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지분비율)를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된 협동조합에 한하여 제공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에의 제공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이를 결정한다. 제공의 신청이 특정한 기관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경우, 토지소재지의 평의회의 집행위원회가 당해 신청에 관하여 결정한다.

집행명령 제52조 농업전문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공동농장에 출자된 토지를 다음 각호에 게기한 순서에 따라 그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이 소속된 농업전문협동조합
2. 그 경영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에 인접한 농업전문협동조합
3. 국가

제35조 국가 또는 협동조합에의 제공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1. 당해 신청에 법률상의 대리인 또는 후견관청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신청된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부상에 처분 또는 담보의 설정

이 금지되고 사용권, 용익권, 선매권, 환매권, 구매권, 부양권, 연금수급권, 저당권 또는 강제집행권이 등기되어 있고 당해 권리자가 등기상의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국가를 위하여 행하여진 경지의 무상제공 신청은 법령이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裁可하여야 한다.

집행명령 제53조 국가를 위하여 경지의 무상제공이 신청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유지분을 증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신청된 경지가 소재하는 구역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조성될 수 없는 경우

2. 신청을 裁可한다 할지라도 국가가 유일한 소유자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37조 토지의 제공이 신청된 경우, 쌍방당사자는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보상금액, 지불방법 및 기타 각종 조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집행명령 제54조 ① 토지제공의 신청을 裁可한 경우, 그 보상금액은 토지 수용시 지불되는 보상의 정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폐지)

외국인의 소유에 관한 규정

제38조 ① 외국의 법인 또는 자연인은 - 법령 또는 조약에 별단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 매매, 교환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무부의 사전허가를 얻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재무부는 관계 장관(전국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

집행명령 제54/1A조 외국의 법인 또는 자연인은 재무부장관이 관계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부여한 허가에 근거하여 부동산을 임차경작할 수 있다.

제 6 장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는私人의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개별규정

(1989년의 각료평의회 명령 제16호에 의하여 폐지).

제 3 편 토지사용

제 7 장 농업협동조합의 공동사용

제40조 ① 농업협동조합은 그 소유 부동산, 토지제공의무에 의하여 제공되는 토지 및 국가가 무상으로 무기한 사용하도록 한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 한다.

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협동조합은,

1. 공동으로 사용되는 토지중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持分比率)를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2. 공동으로 사용되는 토지중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와 국가가 무상으로 무기한 사용하도록 한 토지(지분비율)을 상한으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동사용에 제공되 기전에 발생한 각종 담보를 이유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

집행명령 제59조 토지제공의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경지는 의무 발생일로부터 농업협동조합의 공동사용에 제공된다.

제41조 ① 농업협동조합은 해산된 후, 다른 협동조합과의 토지제공의무에 의거하여 공동사용에 제공된 토지 및 이와 동일한 평가액을 가지는 기타 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당해 토지의 인계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토지거래가격으로 다른 농업 협동조합, 국유농장, 회사 또는 지역평의회의 순서로 매각하여야 한다.

② 해산한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토지를 인수한 농업협동조합에가입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은 제공한 토지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가진다.

③ (폐지)

집행명령 제60조 (폐지)

농업식품성집행명령 제7조 ① 해산하는 농업협동조합의 청산인은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조합이 토지제공의무에 의거하여 공동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정의 기간동안 당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에 의거하여 토지소유자와 토지의 인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인도에 필요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해산하는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사용하고 있는 - 제공의무에 의거하여 -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국유농장, 회사 또는 지역평의회가 토지를讓受한 경우, 그 소유자, 양수인 및 청산인은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의 양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당해 토지를 다른 농업협동조합이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수한 농업협동조합과의 조합관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해산하는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수한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청산인 및 토지를 양수한 농업협동조합은 토지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토지의 인계 또는 토지의 양도에 관한 - 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 협정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에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의 근거가 되는 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의 인계에 필요한 계획서의 작성비용은 그 소유자가, 토지의 양도에 필요한 예정표의 작성비용은 양수인이 각 부담한다.

제 8 장 급여지·자류지·임차경지지

제42조 ① 사용자는 전일제로 고용된 근로자를 위하여 경지를 무상으로 사

용하도록 할 수 있다(급여지의 사용).

② 급여지의 면적 및 사용조건은 국가기관이 조직 및 활동의 정관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되, 회사의 경우에는 내규로 정한다.

③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自留地의 경영을 위하여 - 법령의 규정에 따라 -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自留地의 사용).

집행명령 제61조 (폐지)

집행명령 제62조 (폐지)

집행명령 제63조 급여지의 사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된다.

1. 급여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사용을 포기한 경우,

2. 이용자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3. 급여지의 사용권이 부여된 고용관계가 종료한 경우

집행명령 제64조 ① 급여지의 사용권이 부여된 자가 경작의무의催告에도 불구하고 경작을 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사용자는 그 토지사용을 지체없이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노동법 제55조 1항 C호에 규정된 징계로서 급여지를 감소시키거나 토지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집행명령 제65조 급여지의 사용권이 부여된 자는 고용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청구에 의하여 당해 연도가 종료할 때까지 급여지의 사용을 허가받을 수 있다.

집행명령 제66조 급여지 사용이 종료하는 경우, 급여지사용의 권리가 부여된 자(그 상속인)를 위하여 그 사용이 종료할 때까지 실제로 발생하고 확인된 각종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43조 경지의 임차경작에 대하여는 민법의 관련 규정 및 각료평의회가 정한 특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집행명령 제67조 기한부임차경작계약의 경우, 임차경작자는 경작지임대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소작료를 일괄지불하고 임대경작의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다.

집행명령 제68조 경작지임대자는 - 민법 제457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외에도 - 임차경작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차경작계약을 지체없이 해약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경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2. 동의없이 또는 건축사무법령을 침해하여 건조물을 경지에 설치한 경우

3. 경지의 용도 또는 경작물을 동의없이 또는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한 경우

집행명령 제69조 ① 私人인 임차경작자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임차경작으로 인한 각종 의무의 이행을 방해할 정도로 악화되거나 또는 그 가족환경 및 생활환경이 임차경작으로 인한 각종 의무의 이행을 방해하는 정도로 계속 변동하는 경우에는, 임차경작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개기한 경우, 임차경작자는 - 卽時的 效果를 가진 解約에 갈음하여 - 賃借耕作契約에 있어 그 자에 대신하여, 賃借耕作關係를 조건 변경없이 계속할 사인을 지명할 수 있다.

집행명령 제70조 임차경작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임차경작자는

1. 자신이 설치한 시설 및 장비를 제거할 수 있다.
 2. 제거할 수 없는 시설, 임차경작자가 옮겨심은 식물 및 토질의 개량을 위한 투자 등 확인될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차경작자는 경작자임대자와 별단의 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이 假건조물을 자기의 비용으로 배상청구없이 해체 또는 철거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경작자임대자는 채무자(임차경작자)의 비용부담으로 이를 해체 또는 철거할 수 있다.
- 집행명령 제71조 경작을 위하여 임대된 경지와 관련하여서는 임차경작자에게 우선적 임차경작 및 선매권이 귀속된다.
- 집행명령 제72조 경지의 임차경작에 관한 규정은 다른 용도를 가지는 토지의 농업목적의 임차경작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 9 장 일정한 공공목적을 가지는 사용권의 있어서의 손해배상

- 제44조 ① 법규정에 의하여 전기에너지 또는 가스에너지 수송의 필요에 의하여 또는 우편 및 통신제도, 수리 및 채광의 목적에 사용되는 도관·시설 기타의 설비를 부동산에 敷設하는 경우, 그 부설·운용·정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배상을 하고 채광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손해는 채광손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② 부동산을 그 소유자(관리자)와 협동조합이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 導管, 시설 기타의 설비를 敷設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에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을 손상함으로써
1. 건축용지 및 敷地외에 사인이 소유하는 기타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평가액의 감소에 대하여, 또한
 2. 국가소유 또는 협동조합이 공동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기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 건축용지 또는 敷地가 아닌 -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손해에 의하여 야기된 생산비용증가 및 경작부문과 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의 하락에 대하여 협동조합에게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2호에 계기한 경우, 생산비용증가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16년 동안 계산된 생산비용증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손해를 야기한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배상청구권자와 생산비용증가액을 매년 확정하고 손해배상을 지불한다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농업식품집행명령 제8조 제44조 제1항에 계기된 각종 설비의 敷設은 경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에 있어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제 4 편 토지교환과 토지정리

제 10 장 토지교환

- 제45조 ① 대규모농업경영기업은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 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자신이 공동사용하고 있는 - 토지를 교환할 수 있다.

- ② 대규모농업경영기업의 농업경작에 적합한 토지구획은 우선적으로 토지의 교환에 의하여 조성되어야 한다(자발적인 토지 교환).
- ③ 평가액을 달리 하는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그 차액외에도 당해 토지상의 건조물과 기타 투자, 식물의 성육과 농업노동 등의 평가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 집행명령 제73조 자발적인 토지 교환의 경우, 재산양도의 등기수수료를 면제한다.

제 11 장 토지정리

- 제46조 ① 자발적인 토지의 교환을 위하여 행하여진 제안이 실현되지 못한 경우, 대규모농업경영기업의 농업경작에 적합한 토지구획은 토지의 정리에 의하여 조성될 수 있다. 토지의 정리는 당해 대규모농업경영기업의 신청에 따라 토지 소재지를 수도 또는 州의 토지관할기관(이하 “州의 토지관할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명한다.
- ② 청산 중인 대규모농업경영기업의 토지를 승계하여 그 이용을 위하여 - 청산인이 신청에 의거하여 - 州의 토지관할기관은 당해 대규모농업경영기업의 토지를 포함한 토지의 정리를 명할 수 있다.

집행명령 제74조 토지의 정리를 구하는 신청은 이를 토지 관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신청이 數個의 토지관할기관이 관할하는 지역과 관련되어 있고 數個의 州와 관계된 토지 정리의 경우에는, 「정리대상인 토지」의 최대의 지역을 관할하는 토지관할기관에 관련 토지관할기관의 數대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명령 제75조 ① 토지의 정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유로 인하여 방해받지 아니한다.

1. 토지의 처분과 부담설정의 금지, 부양 및 연금의 권리, 저당권, 用益의 권리, 계약에 의한 사인의 임차경작권
 2. 토지에 대한 기타 제한(토지용익권, 채광권 등)
- ② 제1항 1호에 열거된 각종의 권리는 변경된 토지로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집행명령 제76조 토지정리의 준비, 조직화 및 실행은 토지관할기관의 임무로 한다.

집행명령 제77조 토지정리의 경우, 재산양도의 등기수수료를 면제한다.

농업식품성집행명령 제9조 관련 대규모농업경영기업은 토지구획의 산출계획지역(대규모농업경영기업과 동종의 물을 재배하는 지역)에 필요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자발적인 교환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토지정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47조 ① 토지정리의 경우, 산출계획지역의 내부지역은 토지정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團繞地는 당해 토지의 50%이상을 사인이 소유하는 경우, 토지정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농업식품성집행명령 제10조 ① 수리시설(댐, 수로, 홍수방지시설, 수로보호삼림 등)은 토지정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자연보호지역에 인접한 토지정리의 경우, 그 정리절차에 자연보호를

관찰하는 당국도 이에 참가한다.

제48조 토지정리를 한 토지는 5년내에는 새로운 토지정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49조 자발적인 토지교환을 위하여 행하여진 제안이 충분한 이유없이 거절된 경우 및 집행명령에 있어 대규모농업경영기업의 산출계획지역의 조성 또는 동 재배지역내에서의 다른 소유관계를 간소화할 기회가 있고 예상되는 토지의 평가차액 또는 대가의 지불에 필요한 준비금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정리를 명할 수 있다.

농업식품성집행명령 제11조 집행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대규모 농업경영기업은

1. 그 정리를 제안한 토지에 관한 각종 정확한 사실(형상, 지번, 구획, 경작부문) 및 소유관계에 관한 각종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토지정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열거하여야 한다.
3. 집행명령전의 토지형상略圖 및 정리 후의 토지형상을 포함한隣接地의 약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자발적인 토지교환을 위한 제안 및 그 거부 이유를 소개하여야 한다.
5. 토지정리로 인한 평가차액, 대가 및 정리비용의 지불에 필요한 준비금이 자유롭게 처분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농업식품성집행명령 제12조 자발적인 토지교환이 교환되는 토지평가액을 그 평가차액 또는 그 대가의 補償에 의하여는 보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킨경우, 州의 토지관할기관은 그러한 토지교환의 제안에 대한 거부를 승인할 수 있다.

농업식품성집행명령 제13조 ① 토지정리절차의 개시 및 종료일은 계속적인 농업노동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토지정리를 명하는 결정은, 관계되는 모든 대규모농업경영기업 및 토지관할기관에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당해 지역 평의회의 집행위원회는 토지정리의 명령에 관한 당해 지역의 관습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사인에게 조언을 의뢰하고 당해 결정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50조 ① 토지정리에 있어서 대규모농업경영기업의 토지는, 그 토지소유자가 경제적으로 보다 열악한 상태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사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주용·경영용의 건물은 그 사용에 필요한 토지를 포함하여 대규모농업경영기업의 산출계획지역으로부터 제외시킨다.

② 조성된 대규모농업경영기업의 산출계획지역내에 있는 사인의 토지는, 가능한 한 동일한 토질·경작부문·면적의 토지와 교환하여야 한다.

농업식품성집행명령 제14조 토지정리에 있어서 토지관할기관은 - 관련 대규모농업경영기업 및 당해 토지의 소유자를 소집하여 - 교환에 협의하도록 한다. 교환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작성된 협정은 자발적인 토지교환협정으로 본다.

제51조 토지정리에 의하여 조성된 대규모농업경영기업의 산출계획지역 및 사인을 위하여 제공된 교환토지는 관계자들의 접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농업식품성집행명령 제15조 ① 관계자들에게 접유양도된 장소 및 그 일자에 관해서 수신인에 대하여는 기명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대

규모농업경영기업 및 지역 평의회의 집행위원회의 대표는 점유양도에 관한 협의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점유양도의 사실은 교환협의에 의하여 체결된 협정 또는 점유양도에 즈음하여 작성된 의사록에서 관계자들의 서명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관계자(대리인)가 遠隔地에 제류하는 경우 또는 당해 토지의 점유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에 교환토지의 장소를 지정하고 그 취지를 당해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① 토지정리에 있어서 교환된 토지의 평가차액을 그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토지상의 건조물 기타 투자·식물의 재배 및 농업노동의 평가액을 토지정리로 인하여 열악한 상태에 빠진 대규모농업경영기업에 보상하여야 한다.

② 교환토지 없이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③ 평가차액 및 대가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의가 없는 경우, 그 금액은 토지수용의 보상규정에 따라 토지관할기관이 확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평가차액 또는 대가금액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국가행정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법적구제는 이를 인정한 날로부터 하지 아니한다. 당해 금액을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당사자는 당해 결정의 도달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내에 타방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농업식품성집행명령 제16조 ① 토지의 소유관계에 있어서 토지정리로 인하여 발생한 변동은 점유양도의 종료 후 30일내에 토지관할기관이 이를 결정한다.(토지정리의 결정) 집행명령 결정시에는 평가차액, 대가 및 비용의 정도, 그 지불방법 및 토지등기부상의 변경등기에 대하여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관련된 私人에 대하여는 집행명령의 결정서抄錄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 대규모농업경영기업의 농업경작에 적합하지 아니한 5헥타르이상의 圍繞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者가 신청한 경우, 토지관할기관은 圍繞地로 본다. 다만, 2호 및 3호에 게재된 者에 의한 申請의 경우에는 지역 평의회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요한다.

1. 지역평의회의 집행위원회 또는

2. 당해 대규모농업경영기업

3. 관련된 私人인 소유자

제54조 자발적 토지교환 및 토지정리의 실시비용은 관련된 대규모농업경영기업이 이를 부담하되, 새로운 위요지의 지정 및 그 정리비용은 관계법인 또는 사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 5 편 토지의 이용 및 보호

제 12 장 토지이용

제55조 이용자는 경지를 경작부문에 적합하게 이용하고 토지 생산성의 유지·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56조 ① 농업생산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의 토지이용이 허가된 경우, 그

려한 이용이 될 때까지는 당해 토지에서 농업경작을 계속하여야 한다.
(잠정적 이용)

② 건조물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및 특수용도의 토지에서도 농업경작이 그 토지의 용도에 합치하는 토지이용을 방해 또는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농업경작을 계속할 의무가 있다.(부수적 이용)

③ 농업경작의 용도를 가진 토지이용이 종료한 후, 토지이용자는 당해 토지를 새로운 이용에 적합하도록 조치하고 그 이용을 배려하거나 그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진다.(신규이용)

④ 경지가 생산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계속하여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이용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집행명령 78조 이용자들간에 체결된 협정의 근거에 의거하여 원이용자, 또는 대규모농업경영기업이 타인에게 잠정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배려한 경우 그 농업경영기업이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명령 79조 ① 토지가 농업생산의 용도로 이용되기 전에 농업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종료된 경우, 토지이용자는 토지관할기관에 그 종료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투자계획에서 그 지역을 신규이용에 적합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청서에 신규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반정비·물의 정화·토지보호계획을 첨부하여 농업에 신규이용하는 때에는 토지개량을 위한 영양소의 주입 및 토지에 대한 생물학적 간섭의 정도 및 순서를 정한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목지의 신규이용을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계획서는 토지관할기관이 이를 승인하되,

1. 신규이용의 목적을 확정하고

2. 신규이용을 위하여 신규 이용자의 의무를 정한다.

③ 계획서는 신규이용에 적합한 지역이

1. 다수 토지관할기관의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주의 토지관할기관

2. 주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면적을 차지하는 수도 또는 주의 토지관할기관(이하 "주의 토지관할기관"이라 한다)이 승인한다.

④ 신규이용에 적합하도록 조치된 토지가 경지가 되는 경우, 경지의 등급 및 산출계획지역의 평가에 의하여 추정된 금액은 10년동안 이를 토지보호분담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⑤ 농업외의 목적을 위한 이용이 종료된 후, 토지가 신규이용에 적합하도록 조치되었으나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의 이용이 이용자의 활동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제3자가 그 이용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역평의회집행위원회는 그 토지를 무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 토지소유자가 국가를 위하여 무상으로 그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토지를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국가가 소유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전후의 규정을 준용한다.

집행명령 제80조 대규모 농업산출계획지역내에서 타인이 포기한 지역을 신규이용에 적합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대규모농업경영기업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재경작 노동에 대하여는 - 주의 토지관할기관의 제안에 의거하여 - 토지보호기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농업식품성집행령 제17조 ① 토지의 임정적인 이용기간은 농업외의 목적에 이용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② 시가지내의 토지가 환경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설정에 의하여 임정적 이용 및 부수적 이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57조 ① (폐지)

② 상품생산자는 포도 등 과실의 재배 및 수확 그리고 자연보호지역에 있는 경지의 경작부문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법에 규정된 허가를 요한다.

③ 경지경작부문의 변경시에는 30일내에 토지관할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집행령 제81조 토지보호기금의 지원에 의하여 농업경지로 개량된 토지의 경작부문은 10년내에 변경할 수 없다.

집행령 제82조 (폐지)

집행령 제83조 포도원·과수원·잔디밭 및 영림(營林) 부문에서 양어지로 등기된 토지를 재생의 목적으로 3년이하의 기간동안 경지로 경작하는 경우 경작부문의 변경으로는 볼 수 없다. 다만, 자연보호지역내에 있는 경지의 경우에는 자연보호를 관할하는 당국의 허가를 요한다. 토지의 재생은 개시하는 경우, 토지관할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년을 경과한 후에도 본래의 경작부문이 복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지역은 실제상태에 따라 경지로 등기하여야 한다.

집행령 제84조 경지의 경작부문의 변경을 허가하는 자는, 변경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집행령 제85조 ① 소정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또는 허가와 달리 경지의 경작부분을 변경한 경우, 토지이용자는 당해 토지를 부동산등기부에서 기재된 경작부문으로 복구시킬 의무가 있다.

② (폐지)

③ 복구 또는 경작에 적합한 개량조치의 비용은 생산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④ (폐지)

농업식품성집행령 제18조 제57조에 관련된 허가와 결부된 경작부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의 권한이 부여된자의 요구에 의거하여,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에 의하여 토지관할기관이 심사하여 처리한다.

농업식품성집행령 제19조 실효

농업식품성집행령 제20조 실효

농업식품성집행령 제21조 실효

농업식품성집행령 제22조 경지이용의 중단은 이를 경작이용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8조 당국은 토지이용의무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집행령 제86조 ① 실효 ② 대규모농업경영기업은 당해 기업의 토지등기 및 산출계획지역대장이 최신의 정보를 기재함으로써 토지이용의 점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국가의 육지측량도 및 부동산등기부에 합치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③ 다음 각호에 개기한 기관은 점검한다.

1. 토지이용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대규모농업경영기업이 사용하거나 또는 지역평의회 집행위원회가 관리하는 경지의 경우에는 토지관할기관
2. 기타의 경우에는 지역평의회 집행위원회의 농업·식품사무를 담당하는 전문행정기관 또는 도청소재시의 당국
3. 경지의 생산능력상태의 유지에 대하여는 식물보전·토지보호사무를 담당하는 전문행정시설

농업식품성집행령 제23조 경지의 생산능력상태의 유지라 함은 생산을 계속함이 없이 당해 토지의 생산성을 손쉬운 절차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 13 장 토지보호

제59조 ① 경지의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개기한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1. 자연적 조건에 합치하는 토지보호활동
2. 자연의 능력에 대한 유해한 작용(황무지화)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을 심거나 경우에 따라 보호시설로 토지를 보호
3. 토지의 입지조건 및 생산에 필요한 영양분의 제공
- ② 건조물 기타 시설의 설치·운용은 이로 인한 환경에 대한 영향이 토지의 생산능력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③ 화학물질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토지, 시설에서의 그러한 목적의 활동은 그 주변지역의(물리적·화학적 등의) 오염을 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④ 건조물설치를 위한 용지의 이용, 특수용도의 토지의 이용 및 당해 토지상의 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경지의 질에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집행령 제87조 도평의회 집행위원회의 농업·식품사무를 담당하는 전문행정기관은 토지정리, 토지보호, 농업용의 수로정비 및 토지개량에 관련된 각종 임무의 조정과 계획적인 집행을 위하여 도 단위로 -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水利局을 포함하여 - 토지개량에 관한 장기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집행령 제88조 ① 개활지의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설치되는 건조물 기타 시설이 토지의 생산력에 미치게 될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리한 영향을 완화 또는 제거하는데 필요한 보완적 시설 또는 활동을 투자계획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발계획 및 투자계획은 농업식품省 및 당해 부문을 관할하는 장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승인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개기한 건조물 기타 시설을 계획·설치하는 때에는 - 투자비용부담으로 불리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시설 또는 활동의 계획화 및 실현을 배려하여야 한다.

집행령 제89조 식물보전·토지보호의 전문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경지의 질의 악화를 초래하는 활동에 대하여 결정으로 그 정지를 명령 한다.

- 제60조 ① 당국의 사전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경지를 잠정적 또는 최종적으로 농업생산에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주변지역을 시가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당국의 사전의 허가를 요한다.
- ③ 경지서의 투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 특히 상대적으로 그 질이 낮은 경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2. 대규모농업경영기업의 경지, 포도원, 과수원, 灌水 및 灌溉 및 양질의 경지는 특수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 일반적으로 지역과 관련된 투자를 목적으로 하여 - 요구할 수 있다.
 - ④ 투자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요구된 지역은 그 용도에 부합되는 최소한의 지역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 ⑤ 거주지의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산출계획지역내에서 시가지화를 목적으로 이용에 제공된 지역은 정비계획의 실현에 따라 - 일반적으로 5년의 계획기간내에-시가지에 편입된다.
 - ⑥ 농업생산의 잠정적 중단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다만, 5년 이하)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중단을 요구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농업생산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토지의 질을 회복하고 그 경지를 농업생산을 위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집행명령 제90조 ① 어떠한 활동의 결과, 당해 지역에서 식물의 성장작용이 둔화되거나 또는 1년이상 그 지역이 농업·임업생산에 이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지가 잠정적으로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본다.

- ② 전력시설의 설치를 보장하는 이용권, 전선부설권, 導水・採礦權의 행사로 인하여 경지에서의 생산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경우에 8일내 토지관할기관에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지체된 경우에는 토지보호 분담금외에 그 3배의 금액을 토지보호에 관한 벌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사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경지 중에서 400평방미터 이하의 장소가 건조물설치와 그 용도에 적합한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경지의 생산중단으로 보지 아니한다.

집행명령 제91조 ① 경지의 용도변경 및 경지의 잠정적 생산중단(이하 "생산중단"이라 한다)의 주변지의 시가지로의 편입은 토지관할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경지의 용도변경 또는 잠정적 또는 최종적 생산중단에 관한 신청이 다수의 토지관할기관의 관할지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도의 토지관할기관이 그 신청을 심사·결정한다. 토지가 다수의 도의 영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농업식품성장판이 그 신청을 심사·결정한다.

- ③ 생산중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국의 절차상 필요로 하는 경우, 제1항에 게기된 기관의 전문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국방 및 경찰의 목적상 필요한 경지의 생산중단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다.

집행명령 92조 ① 생산중단을 허가하는 자는 신청자에게 당해 경지 및 그

표토의 보호에 필요한 활동을 실행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농업외의 용도를 가진 경지의 이용이 표토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당해 표토를 개량함으로써 그 장소와 인접지를 보호하거나 표토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등 피해를 제거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③ 잠정적 생산중단은 당해 지역의 원상회복계획서를 신청서에 첨부하고 그 계획서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61조 ① 농업생산의 중단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생산중단된 경지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를 구하는 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업식품성은 그러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집행명령 제93조 다음 각호에 게기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경지의 생산중단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생산중단이 개시될 당시에 허가를 얻지 못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잠정적으로 생산중단된 경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허가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종료되지 아니하였을 것

집행명령 94조 ①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생산중단된 경우, 당해 토지의 이용자는 원상회복이命하여지거나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 때에는 토지보호벌금 또는 잠정적 또는 최종적 생산중단을 근거로 한 토지보호분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게기된 경우에는 벌금, 분담금 및 원상회복과 관련된 투자를 투자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다.

집행명령 제95조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생산중단된 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이命하여진 경우, 그 토지의 이용자는 원상회복의 수행을 토지관할 기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제62조 ①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외에 경지의 질이 손상된 때에는 손해배상 및 동액의 토지보호분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경지가 허가에 의거하여 또는 허가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토지보호분담금은 면제된다.

1. 토지보호를 위한 시설

2. 토지보호를 위한 보호림

3. 관개수로

4. 시가지내의 공공광장

5. 평의회에 의한 주민용 거주지 또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 거주지

③ 생산이 잠정적 또는 최종적으로 중단된 경지에 대하여 분담금과 화해에 의하여 경작을 면제받은 자 또는 5년간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를 투자의 개시전까지 경작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 그 이용을 배려한 자는 토지보호분담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

④ 경작지로 환원된 토지에 대하여 산정된 토지보호분담금의 총액이 다른 경우, 지불되어야 할 분담금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집행명령 제97조 표토보호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토지·경영개선계획서에

정한 활동, 시설, 보호령, 내수의 유도를 위한 운하 및 수로를 포함한다. 집행명령 제98조 ① 분담금총액은 최종적 생산중단을 허가하는 결정시에 잠정적 생산중단의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생산중단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관한 결정시에 또는 경지의 질의 악화를 초래하는 활동의 중지를 명령하는 결정시에 이를 확정한다.

② 분담금 총액의 지분은,

1. 투자의 경우에는 그 실행의 개시(의 근거에 의거하여), 제62조 제2항 5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 주거지의 조성을 경우에는 그 환가에 의거하여
2. 다른 목적을 위한 최종적 생산중단의 경우에는 그 환가에 의거하여
3. 잠정적 생산중단의 경우에는 추출을 허가하는 결정서에서 정한 원상회복기간이 경과한 때
4. 허가를 얻지 아니한 생산중단의 경우에는 원상회복기간이 경과한 때,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에 관한 결정 또는 경지의 질의 악화를 초래하는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결정이 법적효력을 발생한 때 기한이 도달한 것으로 한다.

③ 생산중단이 허가된 범위보다 협소한 구역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분담금의 지불기한이 도달한 날로부터 5년내에 생산중단 허가결정 및 분담금총액을 변경하여야 한다. 생산이 중단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지불된 분담금은, 변경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3조 허가에 의거하여 또는 허가의 근거에 따라 경지를

1. 제62조 제2항 5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거주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2. 대규모농업경영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서 그 활동과 관계되는 투자를 위하여
3. 양어에도 적합한 저수지의 설치를 목적으로
4. 농업에 도움이 되는 홍수방지용 댐의 설치 또는 복원을 목적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 보호분담금을 50% 할증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제64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보호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1. 경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생산의 유지, 잠정적·부수적 이용 또는 신규이용을 태만히 하고 경작부문에 합치되는 활동을 적절한 시기에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표토보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경지를 유해한 물질로 오염시킴으로써 경지의 질이 악화되거나 또는 잠정적으로 생산이 중단된 토지 그 본래의 토지보다 열악한 질의 상태로 생산에 복귀시킨 경우
3. 생산이 중단된 토지를 결정서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 생산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4.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허가한 내용에 반하여 토지를 생산중단시키거나 그 경작부문을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허가한 내용에 반하여 변경한 경우
- ② 토지소유권을 국가 또는 협동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한 사인 또는 토지를 수용당한 사인에 대하여는 제1항 1호에 게기한 벌금지불이 면제

된다.

③ 토지보호벌금은 제1항 4호에 계기한 경우외에는 매년 반복하여 부과 한다. 다만, 토지보호벌금은 연 1회 그 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65조 토지보호분담금 및 토지보호벌금을 임의로 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명령 제99조 토지보호벌금은 다음 각호에 계기한 정도의 금액으로 한다.

1. 제64조 제1항 1호에 계기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황금corona평가액의 1천배

2. 제64조 제1항 2호에 계기한 경우에는 황금corona평가액으로 표현되는 토질의 악화에 상응하는 토지보호분담금의 3배

3. 제64조 제1항 3호에 계기한 경우에는 생산중단을 이유로 지불되는 토지보호분담금의 3배

② 제65조 제1항 2호에 계기한 토지의 질이 2등급이상 악화된 경우 및 제64조 제1항 4호에 계기한 경우, 벌금총액은 경지의 생산중단을 이유로 지불되는 토지보호분담금의 3배로 한다.

③ 경작부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도 토지 이용자에게 토지보호벌금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④ 토지보호벌금은 그 지불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집행명령 제100조 ① 토지보호벌금을 부과한 결정서는 토지이용자외에도 다음 각호에 계기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사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 토지이용자와 동일인이 아니한 그 소유자 및 용의자

2. 지정된 自留地와 급여지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또는 사용자기관의 지도자

② 표토보호규정의 위반, 유해물질에 의한 경지오염 또는 경지의 생산능력상태유지의 태만을 이유로 한 토지보호벌금은 식물보전 및 표토보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행정시설이 이를 확정한다.

집행명령 제101조 ① 토지보호분담금, 토지보호벌금 및 매수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에 소유권이 이전된 국유지에 지불된 보상금은 이를 토지보호기금에 납입한다. 토지보호기금은 기타 재원에 의하여 증액할 수 있다.

② 토지보호기금에 의한 지원은, 법령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신청에 의거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토지보호기금의 관리 및 그 운용은 농업식품성장관이 이를 배려한다.

제66조 ① 토지관할기관은 본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을 태만히 한 토지이용자 또는 5년동안 2회이상 토지보호 벌금이 부과된 자의 경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없이 국유화하거나 관리권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이 條 제1항의 규정은 시가지에 소재하고 1500M 이상의 건축 불가능한 농경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농업식품집행명령 제24조 지역의 형상적 특질과 그 풍토적 특질을 결정하는 각종 요소, 특히 지형 및 전형적인 표층의 구성, 자연의 지하수면,

수원, 경작에 부적합한 조건을 가진 지역의 식물, 문화적·역사적으로 중요한 지방문화재는 경지의 이용, 관개계획의 수립과 그 실행, 기타 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 자연보호 지역으로서 보호된다.

농업식품성집행령 제25조 관개의 경우에는 경지의 전용 및 경작부문의 변경에 관한 토지관할기관의 견해는 당해 계획의 수립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견해는 토지의 생산중단 및 경작 부문의 변경에 대한 허가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농업식품성집행령 제26조 경지의 질의 악화를 초래하는 활동은 금지되며 가능한 한 경지의 질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경지의 질이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식물보전 및 표토보호사무를 담당하는 전문행정기관은 경지의 질의 악화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농업식품성집행령 제27조 ① 경지의 생산중단에 관한 신청서는 토지관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토지수용계획의 수립·심사에 관한 명령에 규정된 지역도와 지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경지를 요구하는 자가 제62조 제3항에서 보장하는 기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도를 경지의 생산중단에 관한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경지의 생산중단이 토지이용허가와 관련된 투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중단허가에 관계하는 당국은 토지관할기관에 송부되는 동의의뢰서에 특별법으로 법령이 정한 부속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농업식품성농업식품성집행령 제28조 ① 토지관할기관은 관련토지를 현장조사한 후 생산중단 결정을 내리거나 그 승인의 권한이 부여된 당국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산중단이 승인된 경우, 다음 각호에 게기한 바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갈·모래·점토·돌 등의 채굴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깊이까지 채굴하고 그 지역의 신규이용에 관한 내용을 투자계획서에 적시할 것.

2. 채굴이 종료된 후 사용되지 아니하는 採掘갱도에 전염성이나 유해한 물질을 매장하는 것을 금지할 것.

3. 농경에 부적합한 지역 또는 토질이 劣惡한 지역에 한하여 폐기물저장용지로 지정할 것.

- ④ 결정서에서 정한 각종 의무는 투자계획을 작성하는 때에 실행하여야 한다.

농업식품성집행령 제29조 ① 토지관할기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이 중단된 토지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② 원상회복이 종료된 경우 토지이용자는 30일내에 토지관할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관할기관은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상회복의 실행을 점검하고 토지보호분담금 및 토지보호벌금의 금액을 확정한다.

농업식품성집행령 제30조 토지사무당국이 경지의 생산중단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관할기관이 별도의 결정으로 토지보호분담금을 확정한다.

농업식품성집행령 제31조 경작의무의 태만을 이유로 부과된 토지보호벌금은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농업식품성집행령 제32조 ①(폐지)

② 도의 토지관할기관은 납부된 금액을 매년 2회에 걸쳐 - 1월 31일까지와 7월 31일까지 - 일괄적으로 농업식품성의 구좌명(토지보호기금), 구좌번호 232-90174-3351로 불입하여야 한다.

농업식품성집행령 제33조 ① 상환할 필요가 없는 토지보호기금을 사용하여

1. 평의회에서 양도된 휴경지
2. 경작이 금지된 토지
3. 사용불가의 출입금지지구
4. 잔디밭
5. 평지의 삼림지대를 경작부분으로 신규이용하고
6. 경지보호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조금은 상환하지 아니한다.

② 상환되는 보조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위하여 토지보호기금에서 지급한다.

1. 자발적인 토지교환 또는 토지정리로 인한 대가 및 평가차액
2. 대규모농업경영기업의 산출계획지역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의 계획과 실시비용
3. 대규모농업경영기업의 경작에 부적합한 국가 또는 협동조합 소유의 토지의 이용을 위한 준비금

농업식품성집행령 제34조 ① 토지보호기금으로 보조금에 지불된 토지에 대하여는 생산에 복귀시키기 위한 보조금을 지불할 수 없다.

②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무이자로 5년내에 균등분할하여 반환한다.

농업식품성집행령 제35조 보조금은 국유경지의 관리자 및 협동조합(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신청서는 매년 1월 31일 까지 토지관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식품성집행령 제36조 ① 신청인은 무상환보조금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규이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
2. 계획중인 작업 및 그 개시일과 종료일
3. 집행이 예정된 각종 비용
4. 필요한 보조금
5. 계획되고 있는 토지의 질
6. 신청인의 경영사업수준을 기초로 한 각종 비용의 회수예정시기

② 신청인은 비상환보조금의 신청서에 당해 경지의 부동산등기부상의 기재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및 비용회수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有상환원조의 경우, 신청서에는 비용계산서만을 첨부한다.

농업식품성집행령 제37조 ① 도의 토지관할기관은 부당한 신청은 기각되어, 정당한 신청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금의 금액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道의 토지관할기관은 무상환보조금 신청에 관한 목록을 작성한다.

목록에는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게기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유상환원조 신청에 관하여 작성되는 목록에는 지원금의 목적 및 요구총액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도의 토지관할기관은 상기의 목록과 제1항에 게기한 계획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 도 또는 수도평의회 집행위원회의 농업식품업무담당 전문행정기관의 견해를 첨부하여, 농업식품성에 송달하여야 한다. 농업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당해 견해에 지역협동조합회의 소견서를 추가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농업식품성집행령 제38조 ① 농업식품성은 토지보호기금의 가치분액 및 신규이용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道가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도의 토지관할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무상환보조금은 농업식품성이 익년 3월 1일까지 도의 토지관할기관의 구좌에 불입한다.

③ 보조금이 신규이용계획의 비용의 50%이상이 50만포린트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그 지불을 할 수 있다.

농업식품성집행령 제39조 ① 도의 토지관할기관은 농업식품성에 처분을 위임한 금액을 고려하여 각종 신청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② 신청서에 기재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확정하는 결정서에서는 지원활동의 종료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유상환원조의 경우에는 지불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후, 도의 토지관할기관은 유상환원조금액을 신청인의 구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납입한다.

농업식품성집행령 제40조 무상환보조금은 신규이용을 위한 비용총액의 50%까지 지불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50% 이상을 지불할 수 있다.

농업식품성집행령 제41조 토지를 경지부문에서 신규이용하는 경우, 유상환보조금은 도의 토지관할기관이 이를 환급할 수 있다.

② 도의 토지관할기관은 토지의 경지화 및 경지부문으로서의 이용에 대하여 조사한다. 전문가의 파견으로 발생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 6 편 종결규정

제 14 장 토지분쟁에 있어서의 분쟁해결절차기관(절차기관)

제67조 토지분쟁은 이 법률 및 기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기관에서 해결한다.

1. 제1심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토지관할기관

2. 제2심은 도의 토지관할기관

제68조 토지관할기관이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경우, 분쟁처리기간은 당국의 승인과 현장조사를 요하는 사건에서는 60일로 한다.

제69조 (폐지)

제 15 장 시행, 경과 규정

제70조 ① 이 법률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진행중인 해결절차는 종전의 관계 법규정에 의한다.

② (폐지)

③ 이 법률이 시행되기전에 수용에 의하여 협동조합, 협동조합기업, 협동조합이 투자한 법인격있는 조합 및 사회조직의 관리하에 있는 국가소유 부동산은 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 그 관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④ 각료평의회는 이 법률의 시행을 감독한다.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관한 각종 규칙은 각료평의회가 이를 제정하여야 한다. 각료평의회는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토지의 소유권을 계속적인 토지이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사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⑤ 건축·도시개발부장관, 법무부장관, 농업식품성장관 및 재무부장관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할권의 범위내에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집행명령 제103조 ① 이 명령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진행중인 분쟁해결절차는 종전의 관련 법규정에 의한다.

② 공동소유권의 처분의무에 관한 법규정은 그러한 의무가 종전 법규정과 이 명령의 규정의 근거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이 조 제2항에 의거하여 1987년 9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는 경우, 종전의 법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집행명령 제104조 (폐지)

제71조 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에 게기한 명령 및 법규정은 폐지된다.

- 농업용지의 보호에 관한 1961년 제6호 법률, 동법을 개정한 1969년의 제3호, 1977년의 제25호, 1979년의 제32호, 1981년의 제30호의 명령
- 우편 및 전신·전화에 관한 1964년 제2호 법률의 제17조 제3항
- 토지소유 및 토지이용의 촉진(발전)에 관한 1967년 제4호 법률, 동법을 개정한 1976년 제34호, 1979년 제33호의 명령
-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의 규제에 관한 1974년 제6호 명령
- 토지정리에 관한 1976년 제23호 명령
- 토지수용에 관한 1976년 제24호 명령의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협동조합」이라는 문언부분, 同제4조 제1항 P호와 同제14조 제3항의 「共同의」이라는 문언부분
- 계속적인 토지이용에 관한 1983년 제21호 명령 제1조 내지 제4조
- 농림업의 부동산매매에 관한 1977년 제27호 명령

研究報告 92-9

헝가리의 經濟改革法制 研究

1992年 12月 27日 印刷

1992年 12月 31日 發行

發行人 李 世 薰

發行處 韓國法制研究院

印刷處 韓國콤퓨터산업(株)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722) 2901~3, 0163~5

등록번호: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 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값 3,200원

